

연구보고 2011-26

한국아동패널 2010 기초분석보고서

이정림 최은영 도남희 송신영 왕영희 이예진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머 리 말

영유아의 성장과 발달을 보다 잘 이해하고, 발달에 적합한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개발을 위하여 장기적인 종단 연구가 필요하다는 데에는 모두 공감하고 있다. 이에 육아정책연구소는 국가 육아정책 수립에 필요한 보다 과학적이고 설 명력 있는 자료를 제공하고, 국가 육아정책 전문연구기관으로서의 사명을 다하고자 ‘한국아동패널’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한국아동패널’은 출생부터의 성장 과정을 장기적으로 조사하여, 각 시기에 발생하는 요구와 양육실태, 아동의 발달 특성, 육아지원기관의 기능과 효과, 그리고 이들을 둘러싼 환경의 영향에 관한 국가수준의 종단자료를 수집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2006년에는 첫 번째 단계로 ‘한국아동패널’의 모형을 개발하였으며, 2007년에는 모형에서 계획된 표본설계와 조사방법의 확정을 위한 예비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2008년도에는 ‘한국아동패널’의 표본을 구축하고 1차년도 조사를 실시하여, 2009년도의 2차년도 조사를 거쳐, 2010년도에는 3차년도 조사를 완료하였다.

본 보고서에서는 한국아동패널의 3차년도인 2010년에 수집된 자료를 이용하여 기초분석한 결과를 정리하였다. 『한국아동패널 2010 기초분석보고서』는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아동발달 특성, 부모됨의 특성, 육아지원관련 특성으로 주제별로 유목화하여, 3차년도인 2010년에 수집된 자료는 횡단적으로 분석하였고, 1·2·3차년도의 경향을 종단적으로 제시하였다. 본 보고서의 발간은 한국아동패널 2008의 1차년도 및 한국아동패널 2009의 2차년도 자료와 종단적으로 연계하여 보다 심도 깊은 정책적·학술적인 연구들을 활성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본 ‘한국아동패널’조사에 참여해주신 패널 가족과 조사원분들, 그리고 패널 연구진에게 감사를 드리며, 이 연구가 아동 발달과 육아지원에 관한 종단연구의 모범적인 틀을 제시하는 데 기여하고 행복한 아동기를 위한 육아정책 수립에 활발히 반영되기를 기대한다.

2011년 12월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이 영

요 약

1. 3차년도 기초분석 개요

- 본 연구는 한국아동패널의 3차년도에 실시한 한국아동패널 2010의 자료를 이용하여 기초 분석한 결과임.
- 한국아동패널 3차년도 조사의 분석은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아동발달 특성, 부모됨의 특성, 육아지원관련 특성으로 나누어 주제별로 분석하였음. 분석주제별 변인 구성은 다음과 같음.
 - 일반적 특성은 아동 특성, 부모 특성, 아버지 특성, 어머니 특성, 가구 및 가구원 특성, 지역사회 특성, 위탁가구 특성으로 구성되었음.
 - 아동발달 특성은 발달검사 결과를 중심으로 K-ASQ, 한국형 Denver-II, 기질, 기초생활습관으로 구성되었음.
 - 부모됨의 특성은 부모됨, 어머니 특성, 부부 관계, 양육 특성으로 구성되었음.
 - 육아지원관련 특성은 육아지원서비스 이용, 육아지원 정책 특성으로 구성되었음.

2. 3차년도 기초분석

- 일반적 특성
 - 아동 특성
 - 아동 성별은 남아 51.5%, 여아 48.5%이며, 출생순위는 첫째아가 48.4%, 둘째아가 40.9%였음. 아동의 월령은 조사일을 기준으로 26개월 30.4%, 25개월 25.0%, 27개월 17.1%이었음.
 - 아동의 체중은 평균 12.55kg이며, 키는 평균 88.82cm이었음.

- 국가필수예방접종은 결핵 99.9%, B형 간염 92.3%,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3~4회) 95.8%, 소아마비 93.6%, 홍역·볼거리·풍진 98.6%, 수두 97.9%, 일본뇌염(1~2회) 96.9%가 권장하는 바와 같이 접종한 것으로 나타났다.
- 아동의 건강상태 중 사고/중독으로 입원치료 경험은 18.6%가 있었고, 사고/중독 횟수는 평균 1.40건이었음.
- 아동 중 15.1%가 질병, 사고 등으로 입원 경험이 있었으며, 횟수는 평균 1.29회, 기간은 8.06일, 2주간 통원 치료 횟수는 0.93회로 나타났다.
- 3차년도 조사 시점까지 모유수유 중인 가구는 출생 후 2차년도까지 모유수유 중이라고 응답한 가구 42.8% 중 3.1%로 나타났으며, 평균 8.93개월에 모유 수유를 중단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 부모특성

- 부모 평균 연령은 어머니 32.79세, 아버지 35.60세이고 어머니의 결혼 상태는 98.9%가 초혼이며, 평균 결혼기간은 5.74년이었음.
- 어머니 53.6%, 아버지 43.4%가 종교가 있으며, 개신교, 불교, 천주교의 순서였음.
- 부모의 학력은 어머니의 경우 초대졸 이상이 71.3%, 아버지는 74.5%이며, 고졸 미만은 모두 1%미만이었음.
- 부모의 가족과 동거하는 경우는 어머니 96.3%, 아버지 95.5%이며, 타지역 근무 등의 이유로 비동거하는 경우는 어머니 3.7%, 아버지 4.5%로 나타났다.
- 부모의 건강 관련 1, 2급 이상의 중증도 장애가 있는 경우는 어머니가 0.3%, 아버지의 0.5%이며, 어머니의 0.1%가 희귀난치성 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어머니의 21.9%, 아버지의 37.6%가 월 2~4회 음주를 하고, 어머니의 1.1%, 아버지의 51.9%가 흡연을 하였음.
- 아버지의 97.5%가 취업 중이며 사무 종사자와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가 많고 72.4%가 정규직에 종사하고 있음. 어머니의 32.9%가 취업 중이며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와 사무종사자가 많으며 70.0%가 정규직이었음.
- 취업모의 93.1%가 재직 중이며 6.9%가 휴직 중임. 휴직 중인 어머니의

71.9%가 복귀할 예정이며, 7.6%는 복귀할 계획이 없었음.

- 취업을 하고 있는 어머니들 중 일을 그만둘 계획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2.6%, 이직할 예정은 1.6%이었으며, 그 이유로는 동생 임신 또는 출산 22.3%, 아이를 맡길 만큼 보수가 넉넉지 않아서 18.3%, 직장생활과 아이 양육을 병행하는 것이 힘들어서 15.5% 등 자녀양육과 관련된 응답이 많았음.
- 학업 중인 어머니는 매우 적었고, 미취학/미취업 어머니의 44%는 결혼 후 직장이나 학교에 다닌 적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남. 일 또는 학업을 중단한 시기를 보면 패널 대상 아동의 임신 전 28.3%, 임신 중 18.8%, 출산 후에 그만 둔 경우는 9.0%이었음.

○ 가구 및 가구원 특성

- 가구원 구성은 평균 2.93명이며, 부부와 자녀로 이루어진 경우가 86.2%, 조부모, 부부와 자녀로 이루어진 3세대 가족이 9.3%이었음.
- 가구의 월평균 소득의 평균은 377.50만원이며, 지출에서 소비성 지출은 196.48만원, 비소비성 지출은 92.76만원으로 나타났음.
- 가족생활사건 중 규범적 사건은 평균적으로 3.59건, 비규범적 사건은 0.71건으로 나타났음.
- 사회적 지원은 지원의 종류에 상관없이 3.87점으로 나타났고 정서적 지원, 도구적 지원, 여가적 지원, 정보적 지원도 비슷한 수준임.
- 거주하는 주택 소유 형태는 자가 44.9%, 전세 38.5%이며, 주택 형태는 아파트가 73.6%, 연립주택(빌라 포함) 10.9%, 단독주택 8.3%이었음.
- 전체 가구의 0.7%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이며, 10.0%가 차상위 계층이었음.

○ 지역사회 특성

- 주거지역의 형태는 일반아파트지역이 68.9%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일반주택지역이 25.2%로 전체의 94.1%가 주거지역에 거주하고 있었음.
- 지역사회 내 어린이집, 유치원 및 사교육기관이 충분한지에 대해 각각 50.1%, 32.9%, 31.4%가 충분하다고 응답하였음. 공공여가 공간·시설 및 문화시설 이용에 대해서는 44.3%, 19.3%가 편리하다고 응답하였음.
- 지역사회의 치안 안전성과 안전사고에 대해 각각 40.3%, 33.7%가 안전하

다고 인식하였음.

- 지역사회 전반적인 육아적절성에 대해 좋다는 응답이 35.7%이었음.

○ 위탁가구 특성

- 전체패널 중 1.8%의 아동이 부모와 다른 지역에 사는 것으로 나타났음.
- 1차년도와 동일한 가구를 이용하는 경우 61.4%, 변경된 경우 38.6%로 나타났음.
- 위탁가구는 대부분 외가 위탁이 50.7%, 친가 위탁이 49.3%로 비슷하게 이용하고 있었으며, 지역은 일반 주택지역이 54.2%, 일반 아파트 지역이 26.8%로 조사되었음.
- 위탁가구 지역의 어린이집, 유치원, 사교육 기관 충분도는 각각 40.2%, 44.0%, 41.3%가 충분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공공시설 이용 편리성과 문화시설 편리성은 각각 49.3%, 31.3%가 충분하다고 응답하였음.
- 위탁가구 지역의 치안 안전성과 안전사고에 관해 각각 44.8%, 35.0%가 비교적 안전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전반적인 양육 적절성은 좋음 25.2%, 매우 좋음 11.9%이었음.

□ 아동발달 특성

- K-ASQ 검사 결과 '위험발달군'에 속하는 경우는 의사소통영역 5.5% 대근육 운동영역 1.1%, 소근육 운동영역 1.8%, 문제해결영역 1.5%, 개인-사회성영역 1.2%로 나타남.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른 발달영역별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음.
- K-ASQ 검사 결과 '의심발달군'에 속하는 경우는 의사소통 영역 영역이 12.3%, 소근육 운동영역 8.9%, 개인-사회성 영역 7.3%, 문제해결 영역 6.4%, 대근육 운동영역 6.0%이었음.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른 발달영역별 차이는 없었음.
- Denver II 검사 결과 전체 아동의 89.8%가 정상 범주로 구분되었으며, 10.2%가 의심스런 발달로 구분되었고 어머니 취업여부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음.
- 아동의 기질은 정서성, 활동성, 사회성 영역의 3개 하위영역으로 측정하였는데, 정서성과 사회성에 비해 활동성의 점수가 높았음. 정서성에서 어머니의 취업 여부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음. 즉, 비취업모의 자녀의 정

서성이 더 높게 나타나 비취업모 자녀가 부정적 정서를 취업모 자녀보다 더 많이 나타내는 것으로 보임.

- 기초생활수급관은 기존의 수면, 식습관, 배변 및 씻기 습관 영역에 놀이와 사회적 활동 영역을 추가하고 문항도 추가하여 조사함. 기초생활수급관 각 영역별로 취업모와 비취업모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음.

□ 부모됨의 특성

○ 부모됨

- 전체 어머니의 32.5%가 후속 출산계획이 있으며, 59.9%는 후속 출산계획 없다고 응답함. 후속 출산계획이 없는 이유는 자녀교육비용 때문이 29.0%, 계획한 수의 자녀 출산이 이루어져서는 24.7%이었음.
- 후속 출산을 계획하는 경우의 계획 자녀수는 1명이 89.2%이며, 후속 출산 시기는 1년 이내 출산할 계획이 41.1%, 1~2년이 36.0%이었음.
- 후속 출산 계획에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사람은 본인이 70.6%, 남편이 22.3%로 나타났음.
-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상 자녀수는 어머니 56.9%, 아버지 60.8%가 2명을 선택하였음. 어머니의 58.8%, 아버지의 61.4%가 성별의 구분 없이 이상 자녀수를 응답하였음. 성별을 구분할 경우 어머니의 35.8%, 아버지의 52.7%가 아들 1명, 딸 1명을 선호하였음.
- 부모가 갖는 자녀가치는 도구적 가치와 정서적 가치로 구성되며, 부모 모두 정서적 가치에 더 의미를 부여하였음. 어머니의 취업 여부에 따른 어머니가 인식한 자녀가치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비취업모의 아버지가 자녀의 정서적 가치를 높게 인식하고 있었음.

○ 어머니 특성

- 자기효능감은 5점척도에서 평균 3.68로 중간보다 높은 점수로 나타났고, 취업모와 비취업모 사이의 유의한 차이는 없었음.
- 자아존중감은 4점척도에서 평균 3.48로 중간보다 높은 점수이고, 취업모가 비취업모보다 상대적으로 자아존중감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어머니의 우울 평균점수는 1.96점으로 낮은 수준이었으나, 전체 어머니의 23.2%는 경도/중등도, 6.6%는 중도 우울을 경험한 것으로 응답하였음. 특히 비취업모가 취업모에 비해 우울이 높게 나타났음.

○ 부부관계

- 결혼만족도는 아내의 평균 점수(3.85)보다 남편의 평균 점수(4.21)의 결혼 만족도가 더 높게 나타남. 취업모와 비취업모에 따른 결혼 만족도의 유의한 차이는 없었음.
- 부부갈등은 아내(2.09)와 남편(2.08)의 평균 점수는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어머니가 인식하는 부부갈등은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라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 그러나 어머니의 취업에 따라 아버지가 인식한 부부갈등은 취업모의 남편이 갈등을 더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양육 특성

- 아버지의 자녀양육 협조 정도는 5점척도에서 평균 3.73점으로 중간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고,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 취업모의 남편들이 더 자녀 양육에 협조적인 것으로 응답하였음. 아버지의 자녀양육 참여시간은 주중 6.69시간 정도, 주말 8.18시간 정도이었음. 한편 어머니의 자녀양육 참여시간은 29.90시간, 주말은 15.34시간이었음.
- 아버지의 84.2%, 어머니의 87.2%가 자녀의 장래에 행복한 가정을 갖기를 희망하였고, 그 다음으로 자녀가 이타심과 금전적 성공을 하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부모의 책임에 대해 어머니의 49.0%, 아버지의 57.4%가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자녀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응답하였음. 취업에 따른 어머니와 아버지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음.
- 가정에서 배울 수 있는 자질과 특성 중 가장 중요한 것으로 부모 모두 '예의바른 생활습관', '책임감', '타인에 대한 포용과 존중' 순으로 나타났음.
- 어머니의 양육실제인 사회적 양육유형의 평균 점수는 5점척도에서 3.80으로 중간보다 높은 수준이었음. 어머니의 취업 여부에 따라 유의한 차이는 없었음.
- 어머니의 50.8%가 총 13개의 양육지식 문항에 대해 평균 70.95점으로 75%이상의 정답률을 보였고, 어머니의 취업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없었음.

음.

-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5점척도에서 평균 2.79점이고, 취업모에 비해 비취업모가 양육스트레스를 더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음.

□ 육아지원 관련 특성

○ 육아지원서비스 이용

- 아동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부모가 직접 양육하는 비율보다 육아지원 서비스 이용률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음. 비취업모의 경우 아이가 만 2세가 되는 시점부터 서서히 육아지원서비스 이용률이 증가하는 반면, 취업모의 경우 아이의 출생 후부터 꾸준히 육아지원서비스 이용률이 증가하고 있었음.
- 2차년도와 3차년도 사이의 개인대리양육자 또는 대리양육기관을 변경한 경험이 있는지를 확인한 결과, 개인대리양육자 14.9%, 어린이집 46.0%, 반일제 이상 학원 1.0%가 변경한 경험이 있었음. 비취업모보다 취업모의 개인대리양육자와 어린이집 변경 비율이 높았음. 또한 변경 횟수를 확인한 결과, 개인대리양육자는 평균 1.03회, 어린이집은 1.02회 변경하였고, 취업모와 비취업모의 변경 횟수도 유사한 비율로 나타났음.
- 조사 시점의 주된 양육자는 어머니는 48.1%, 부모 외의 육아지원서비스는 51.9%로 나타났으며 취업모의 경우는 비취업모에 비해 부모 외 육아지원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율이 높았음.
- 주로 이용하는 육아지원서비스를 조사한 결과, 개인대리양육자 이용이 18.6%, 어린이집 79.4%로 주된 이용 서비스이며, 두 가지 병행이 1.2%이었음. 직접 양육하는 경우, 아이가 너무 어려서 39.3%, 직접 양육하고 싶어서 28.1%로 나타났음.
- 비대가성 양육지원 여부를 알아본 결과, 지원 없이 혼자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가 91.9%, 지원이 있는 경우가 8.1%로 주변의 도움 없이 홀로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가 많았음. 비취업모의 경우는 5.6%만 지원을 받으나 취업모는 37.5%가 지원을 받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도움을 제공하는 인원은 평균 1.40명이었으며, 외할머니 32.8%, 친할머니 27.8%로 주로 자녀의 조모에게 도움을 받고 있었음. 양육지원자의 35.9%가 동거를 하고 있으며, 거주하고 있지 않은 경우 평균 19.65분 거리에

살고 있고 평균 9.85시간의 지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음.

- 육아지원기관을 이용하지 않고 개인대리양육을 이용하는 이유로 '아이가 너무 어려서 기관에 적응하기 힘들어서'라는 응답이 46.8%, '개인대리양육이 더 믿음이 가고 안심이 되어서' 40.5%이었음. 개인 대리 양육자는 외할머니 42.0%, 친할머니 38.3%로 아이의 조부모 비율이 높았음.
- 개인대리양육자의 구인 경로는 주로 주변의 소개가 44.6%가 가장 많았고 여자가 97.9%로 많았으며, 결혼을 한 경우가 83.2%, 학력은 중졸 이하가 47.7%, 고졸이 37.9%이었으며 98.9%가 자녀양육 경험이 있었음.
- 개인대리양육자가 낮시간 동안 자신의 집에서 아이를 보는 경우가 34.8%, 함께 살고 있는 경우가 23.4%이었으며, 주중 5일간(월~금) 이용이 74.6%, 이용시간은 평균 11.61시간이었음.
- 개인대리양육자 이용비용은 정기적 현금지불이 84.6%, 비정기적인 현금 지불이 10.0%이었으며, 지불할 경우의 평균 비용은 62.40만원이었고, 현금으로 지불할 경우는 현금으로 환산 시 30만원 가량을 지불하고 있었음.
- 육아지원기관 이용 이유를 주제별로 보면, 어린이집 이용 이유는 또래와 어울릴 수 있으므로 40.6%, 아이에게 교육적으로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33.2%로 조사되었음. 개인대리양육자나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고 반일제 이상 학원 및 선교원 등의 기타 기관 이용 이유로는 '교육내용이 마음에 들어서'가 22.1%, '또래와 어울릴 수 있어서'가 17.5%이었음.
- 이용 중인 어린이집의 물리적 환경은 일반 아파트지역이 60.6%, 일반 주택지역이 29.9%이었고, 기관 유형은 어린이집(가정어린이집 포함)이 98.9%로 가장 많았음. 이용 중인 어린이집의 설립 유형은 가정 어린이집이 44.4%, 민간 어린이집이 39.4%의 순이었으며, 어린이집의 62.5%가 평가인증 시설이고, 37.5%가 미인증 시설로 나타났음.
- 육아지원기관 평균 이용 시간은 주 5일(월~금) 이용이 96.0%로 하루 평균 7.79시간이었으며, 취업모가 비취업모에 비해 조금 더 많이 사용하였음.
- 어린이집 평균 이용비용은 23.36만원이며, 72.1%가 지불하였고, 27.9%는 지불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음. 육아지원기관 이용 비용부담도는 부담되는 편이라는 응답이 38.3%, 적당하다는 응답이 21.1%이었음. 기관이용 만족도는 비교적 만족이 64.3%로 나타났음.

- 육아지원기관 내 특별활동 프로그램 수를 조사한 결과, 음악 프로그램 39.4%로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었으며, 다음으로 체육 35.3%, 미술 31.4%, 영어 28.1%, 교구이용 프로그램 21.0% 순이었음.
- 특별활동 프로그램을 부모가 선택할 수 있는 지에 대해 86.5%가 선택 없이 무조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음. 특별활동 프로그램에 대해 별도의 비용을 지불하는 경우는 39.4%이었고, 지불하지 않는 경우가 56.7%로 더 많았음.
- 특별활동 프로그램 강사의 유형은 기관의 정규 교사나 강사가 운영하는 경우가 40.5%, 따로 강사가 오는 경우가 52.7%로 좀 더 많은 비율로 나타났음. 또한 특별활동 프로그램에 지불하는 월 평균 비용은 23,411원이었으며 이용시간은 30분이 43.1%로 가장 많았음. 프로그램 이용 만족도는 만족이 62.0%로 응답하였음.
- 육아지원서비스 외에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프로그램이 있는 경우는 22.5%로 나타났고, 평균 1.37개를 이용하고 있었음. 프로그램 내용으로는 통합 프로그램이 36.7%, 체육 프로그램 13.1%, 한글 프로그램 10.8%, 교구이용 프로그램 10.4% 순으로 응답하였음.
- 진행방식은 70.7%가 다른 아동들과 함께 진행하는 방식이었고, 29.3%는 개별적으로 진행하며 프로그램 진행시 학습지 사용 여부는 학습지를 이용하는 경우가 24.9%, 이용하지 않는 경우가 75.1%로 응답하였음. 진행 장소는 54.5%가 사설 문화센터, 집인 경우가 29.3%로 나타났음.
- 프로그램은 월 평균 4.19회, 회당 37.94분, 7개월 정도 이용하며 프로그램 참여 비용은 평균 4.77만원으로 조사되었음.
- 가정 내 영어 학습 자료를 보면, 책 15.6%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 오디오 테이프 또는 CD 15.3%, 비디오테이프 또는 DVD 10.6%이었음.
- 가정 내의 영어 학습 시작 시기는 11~15개월이 33.9%로 가장 많았고, 월 평균 34,407원을 지출하였으며, 주로 부모와 함께 자료를 사용하고 이용시간은 주당 227.85분인 것으로 조사되었음.
- 기관/시설 이용 계획은 자녀의 연령이 어릴수록 어린이집 등의 기관을 이용하지 않고 직접 자녀를 양육하거나 개인대리양육을 이용하겠다고 응답하였고 4세를 기점으로 기관을 이용하려는 계획이 증가하고 있었으며, 5세부터 유치원을 이용할 것이라는 응답이 많았음.

○ 육아지원정책 특성

- 바람직한 육아지원정책 방향으로 모성보호 제도의 정착과 육아지원서비스 확대 모두라는 응답이 54.9%이었음.
- 일과 가정의 양립 정책으로서 여성의 출산 휴가는 매우 필요하다는 응답이 86.8%, 남성의 출산휴가는 56.6%가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음. 취업모와 비취업모간의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취업모가 여성의 출산휴가를 더 필요하다고 여겼고, 비취업모가 남성의 출산휴가가 더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음.
- 직장 어린이집 71.3%, 보육비 지원 85.6%, 시차 출근제 56.9%, 대체 인력 풀 운영 52.0%,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60.2%가 매우 필요하다 하였음.
- 출산 및 육아 지원제도에 대해 우선순위별 질문에 여성의 출산 휴가 55.1%, 여성의 육아 휴직 18.3%, 보육비 지원 13.9%를 1순위로 응답하였음.
- 현금 육아지원정책에 해당하는 농어민가정 육아비,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의 경우 응답자 대부분이 수혜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양육수당과 출산지원금의 경우 전체 응답자의 10% 정도가 수혜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음.
- 현물 육아지원정책에 해당하는 영유아 필수 예방접종은 전체 응답자의 14.9%가, 영유아 건강검진의 경우는 전체의 8.9%가 수혜경험이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으나, 두 서비스를 제외한 현물 육아지원정책들은 응답자 대부분이 수혜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
- 직장의 육아지원 정책 중 시행 여부와 관련하여 여성의 출산휴가 98.7%, 여성의 육아휴직 80.7%, 남성의 출산 휴가 59.2% 순으로 시행하고 있었고, 여성의 출산휴가 87.4%, 여성의 육아 휴직 76.6%, 보육비 지원 29.9%가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음. 직장의 육아지원 제도에 대해 대체로 만족하였음.
- 재정지원 관련 정책은 국가에서 보육시설 무상 지원 시 추가적으로 자녀 출산을 계획하겠다 75.8%, 잘 모르겠다 17.2%로 응답하였음. 한편, 미취학 아동의 양육비용 중 일정 금액을 매월 지불할 경우, 자녀 출산을 계획하겠다는 70.3%, 잘 모르겠다는 24.2%였고, 희망 지원 비용은 30만원 이상이 56.7%나타났음.

차 례

| | |
|-------------------------------------|-----|
| I. 3차년도 기초분석 개요 | 1 |
| 1. 3차년도 자료 | 1 |
| 2. 표본 특성 | 10 |
| II. 3차년도 기초분석 | 11 |
| 1. 일반적 특성 | 11 |
| 2. 아동발달 특성 | 67 |
| 3. 부모됨의 특성 | 90 |
| 4. 육아지원 관련 특성 | 114 |
| 부록 | 197 |
| 부록 1. 어머니대상 질문지 | 199 |
| 부록 2. 아버지대상 질문지 | 214 |
| 부록 3. 면접조사용 질문지 | 219 |
| 부록 4. 한국아동패널 2010 일반 조사 도구 출처 | 243 |

표 차례

| | |
|--|----|
| 〈표 I-1- 1〉 한국아동패널 2008년~2010년 조사 성공률 | 1 |
| 〈표 I-1- 2〉 분석주제별 구성: 일반적 특성 | 2 |
| 〈표 I-1- 3〉 분석주제별 구성: 아동발달 특성 | 5 |
| 〈표 I-1- 4〉 분석주제별 구성: 부모됨의 특성 | 6 |
| 〈표 I-1- 5〉 분석주제별 구성: 육아지원관련 특성 | 8 |
| 〈표 I-1- 6〉 표본 특성 | 10 |
| 〈표 II-1- 1〉 아동의 인구학적 특성 | 11 |
| 〈표 II-1- 2〉 체중 | 12 |
| 〈표 II-1- 3〉 신장 | 13 |
| 〈표 II-1- 4〉 예방접종 횟수 - 생후 24개월 기준 | 14 |
| 〈표 II-1- 5〉 사고/중독으로 인한 치료 여부 | 15 |
| 〈표 II-1- 6〉 사고/중독 건수 | 15 |
| 〈표 II-1- 7〉 입원 경험 여부 | 16 |
| 〈표 II-1- 8〉 입원 횟수 | 16 |
| 〈표 II-1- 9〉 입원 기간 | 16 |
| 〈표 II-1-10〉 최근 2주간 통원 치료 횟수 | 17 |
| 〈표 II-1-11〉 모유 수유 여부 | 17 |
| 〈표 II-1-12〉 모유 수유 중단 시기 | 18 |
| 〈표 II-1-13〉 모유 수유 중단 이유 | 19 |
| 〈표 II-1-14〉 부모 연령 | 20 |
| 〈표 II-1-15〉 어머니 결혼 상태 | 20 |
| 〈표 II-1-16〉 어머니 결혼기간 | 21 |
| 〈표 II-1-17〉 부모 국적 및 귀화 여부 | 21 |
| 〈표 II-1-18〉 부모 종교 | 21 |
| 〈표 II-1-19〉 부모의 가족과의 동거 여부 및 비동거 사유 | 23 |
| 〈표 II-1-20〉 어머니 학력 | 23 |
| 〈표 II-1-21〉 아버지 학력 | 24 |
| 〈표 II-1-22〉 어머니 장애 | 25 |

| | |
|--|----|
| 〈표 II-1-23〉 어머니 희귀난치성 질환 여부 | 25 |
| 〈표 II-1-24〉 아버지 장애 | 25 |
| 〈표 II-1-25〉 아버지 희귀난치성 질환 여부 | 26 |
| 〈표 II-1-26〉 어머니의 음주 여부 및 빈도 | 26 |
| 〈표 II-1-27〉 어머니의 음주 시 주량 | 27 |
| 〈표 II-1-28〉 어머니의 과음 빈도 | 27 |
| 〈표 II-1-29〉 아버지의 음주 빈도 | 28 |
| 〈표 II-1-30〉 아버지의 음주 시 주량 | 28 |
| 〈표 II-1-31〉 아버지의 과음 빈도 | 29 |
| 〈표 II-1-32〉 어머니의 흡연 여부 | 29 |
| 〈표 II-1-33〉 어머니의 니코틴 중독 정도 | 30 |
| 〈표 II-1-34〉 아버지의 흡연 여부 | 30 |
| 〈표 II-1-35〉 아버지의 니코틴 중독 정도 | 30 |
| 〈표 II-1-36〉 아버지 취업/학업 상태 | 31 |
| 〈표 II-1-37〉 아버지 직업(대분류 기준) | 32 |
| 〈표 II-1-38〉 아버지 종사상 지위 | 32 |
| 〈표 II-1-39〉 아버지 주당 총 근로/학업 시간 | 33 |
| 〈표 II-1-40〉 아버지 출퇴근/등하교 소요시간 | 33 |
| 〈표 II-1-41〉 어머니의 취업/학업 상태 | 34 |
| 〈표 II-1-42〉 어머니 직업(대분류 기준) | 34 |
| 〈표 II-1-43〉 어머니 종사상 지위 | 35 |
| 〈표 II-1-44〉 어머니 주 평균 근로시간 | 35 |
| 〈표 II-1-45〉 어머니 주 평균 출/퇴근 소요시간 | 35 |
| 〈표 II-1-46〉 어머니 현재 직업 상태 | 36 |
| 〈표 II-1-47〉 휴직 중인 어머니의 휴직 사유 | 36 |
| 〈표 II-1-48〉 휴직 중 어머니의 향후 직장으로의 복귀 계획 | 37 |
| 〈표 II-1-49〉 현재 재직 중인 어머니의 지난 1년간 휴직 여부 | 37 |
| 〈표 II-1-50〉 현재 재직 중인 어머니의 지난 1년간 휴직 사유 | 37 |
| 〈표 II-1-51〉 지난 1년간 직장 또는 직위 변경 여부 | 38 |
| 〈표 II-1-52〉 지난 1년간 이직한 사유 | 38 |
| 〈표 II-1-53〉 향후 취업 계획 | 39 |

| | |
|---|----|
| 〈표 II-1-54〉 직장을 그만두거나 이직하려는 이유 | 40 |
| 〈표 II-1-55〉 임금근로자의 항목별 직무만족도 | 40 |
| 〈표 II-1-56〉 비임금근로자의 항목별 직무만족도 | 41 |
| 〈표 II-1-57〉 전반적인 직무 만족도 | 42 |
| 〈표 II-1-58〉 어머니의 학업 상태 | 42 |
| 〈표 II-1-59〉 주당 평균 학업 시간 | 43 |
| 〈표 II-1-60〉 일 또는 학업 중단 시기 | 43 |
| 〈표 II-1-61〉 임신 중/출산 후 일 또는 학업 중단 시기 | 43 |
| 〈표 II-1-62〉 일 또는 학업 중단 시기의 취업/학업 상태 | 44 |
| 〈표 II-1-63〉 임신 중/출산 후 일 또는 학업 중단 이유 | 44 |
| 〈표 II-1-64〉 취업 또는 학업 계획 | 45 |
| 〈표 II-1-65〉 가구 구성원 수 (대상 아동 제외) | 46 |
| 〈표 II-1-66〉 가구 구성 | 46 |
| 〈표 II-1-67〉 월평균 가구 소득 | 47 |
| 〈표 II-1-68〉 금융자산 | 47 |
| 〈표 II-1-69〉 소유 부동산 총액 | 48 |
| 〈표 II-1-70〉 부채 및 월 상환금 | 48 |
| 〈표 II-1-71〉 가구 및 아동 총 소비성 지출 | 49 |
| 〈표 II-1-72〉 가구 및 아동 총 비소비성 지출 | 50 |
| 〈표 II-1-73〉 가족생활사건 | 51 |
| 〈표 II-1-74〉 사회적 지원 | 51 |
| 〈표 II-1-75〉 주택 소유형태 | 52 |
| 〈표 II-1-76〉 거주 중인 주택 유형 | 53 |
| 〈표 II-1-77〉 거주 중인 주택 외 주택 소유여부 | 53 |
| 〈표 II-1-78〉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해당 여부 | 54 |
| 〈표 II-1-79〉 아동이 살고 있는 지역 | 55 |
| 〈표 II-1-80〉 어린이집 충분도 | 55 |
| 〈표 II-1-81〉 유치원 충분도 | 56 |
| 〈표 II-1-82〉 사교육기관 충분도 | 57 |
| 〈표 II-1-83〉 공공 여가 공간/시설 이용 편리성 | 57 |
| 〈표 II-1-84〉 문화시설 이용 편리성 | 58 |

| | | |
|-------------|---|----|
| 〈표 II-1-85〉 | 치안 안전성 | 59 |
| 〈표 II-1-86〉 | 안전사고 측면 안전성 | 60 |
| 〈표 II-1-87〉 | 지역사회의 전반적 양육 적절성 | 60 |
| 〈표 II-1-88〉 | 위탁여부 | 61 |
| 〈표 II-1-89〉 | 위탁가구 변경여부 | 62 |
| 〈표 II-1-90〉 | 아동과 위탁가구와의 관계 | 62 |
| 〈표 II-1-91〉 | 위탁가구 지역 | 62 |
| 〈표 II-1-92〉 | 위탁가구 지역 어린이집 충분도 | 63 |
| 〈표 II-1-93〉 | 위탁가구 지역 유치원 충분도 | 63 |
| 〈표 II-1-94〉 | 위탁가구 지역 사교육기관 충분도 | 64 |
| 〈표 II-1-95〉 | 위탁가구 공공 여가 공간/시설 이용편리성 | 64 |
| 〈표 II-1-96〉 | 위탁가구 지역 문화시설 이용편리성 | 65 |
| 〈표 II-1-97〉 | 위탁가구 지역 치안 안전도 | 65 |
| 〈표 II-1-98〉 | 위탁가구 지역 안전사고 측면 안전도 | 66 |
| 〈표 II-1-99〉 | 위탁가구 지역 전반적인 양육 적절성 | 66 |
| 〈표 II-2- 1〉 | K-ASQ 영역별 위험발달·의심발달 분포 | 69 |
| 〈표 II-2- 2〉 | K-ASQ 영역별 총점 평균 비교 | 69 |
| 〈표 II-2- 3〉 | K-ASQ 위험발달(-2SD)·의심발달(-1SD) 개수별 분포 | 70 |
| 〈표 II-2- 4〉 | 모 취업 여부에 따른 K-ASQ 영역별 위험발달(-2SD) 분포 .. | 71 |
| 〈표 II-2- 5〉 | 모 취업 여부에 따른 K-ASQ 영역별 의심발달(-1SD) 분포 .. | 71 |
| 〈표 II-2- 6〉 | 모 취업 여부에 따른 K-ASQ 영역별 총점 평균 비교 | 72 |
| 〈표 II-2- 7〉 | 모 취업 여부에 따른 위험발달(-2SD)·의심발달(-1SD) 개수별 분포 | 73 |
| 〈표 II-2- 8〉 | 덴버 II 최종 분포: 정상·의심발달 | 75 |
| 〈표 II-2- 9〉 | 덴버 II 전체 주의항목개수 분포 | 76 |
| 〈표 II-2-10〉 | 덴버 II 영역별 주의항목개수 분포 | 76 |
| 〈표 II-2-11〉 | 덴버 II 전체 지연항목개수 분포(전체) | 77 |
| 〈표 II-2-12〉 | 덴버 II 영역별 지연항목개수 분포 | 77 |
| 〈표 II-2-13〉 | 모 취업 여부에 따른 덴버 II 최종 분포: 정상·의심발달 | 78 |
| 〈표 II-2-14〉 | 모 취업 여부에 따른 덴버 II 전체 주의항목개수 분포 | 79 |
| 〈표 II-2-15〉 | 모 취업 여부에 따른 덴버 II 영역별 주의항목개수 분포 | 80 |

| | | |
|-------------|---------------------------------|-----|
| 〈표 II-2-16〉 | 모 취업 여부에 따른 덴버 II 전체 지연항목개수 분포 | 81 |
| 〈표 II-2-17〉 | 모 취업 여부에 따른 덴버 II 영역별 지연항목개수 분포 | 82 |
| 〈표 II-2-18〉 | 기질의 일반적 경향 | 84 |
| 〈표 II-2-19〉 | 모 취업 여부에 따른 기질 | 85 |
| 〈표 II-2-20〉 | 기초생활습관 | 87 |
| 〈표 II-2-21〉 | 아동의 하루일과 시간 | 89 |
| 〈표 II-3- 1〉 | 후속 출산 의도 | 91 |
| 〈표 II-3- 2〉 | 모 취업 여부에 따른 후속 출산 의도 | 91 |
| 〈표 II-3- 3〉 | 자녀를 더 낳지 않는 이유 | 92 |
| 〈표 II-3- 4〉 | 후속 출산 계획 자녀수 | 93 |
| 〈표 II-3- 5〉 | 후속 출산 시기 | 93 |
| 〈표 II-3- 6〉 | 출산 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 | 94 |
| 〈표 II-3- 7〉 | 이상적인 자녀수: 어머니 | 95 |
| 〈표 II-3- 8〉 | 이상적인 자녀수: 아버지 | 95 |
| 〈표 II-3- 9〉 | 성별구분에 따른 이상 자녀수: 어머니 | 96 |
| 〈표 II-3-10〉 | 모 취업 여부에 따른 이상 자녀수의 성별구분: 어머니 | 96 |
| 〈표 II-3-11〉 | 성별구분에 따른 이상 자녀수: 아버지 | 97 |
| 〈표 II-3-12〉 | 모 취업 여부에 따른 이상 자녀수의 성별구분: 아버지 | 97 |
| 〈표 II-3-13〉 | 성별 구분 시 이상 자녀수의 성별: 어머니 | 98 |
| 〈표 II-3-14〉 | 성별 구분 시 이상 자녀수의 성별: 아버지 | 98 |
| 〈표 II-3-15〉 | 부모의 자녀가치 | 99 |
| 〈표 II-3-16〉 | 모 취업 여부에 따른 자녀 가치 | 100 |
| 〈표 II-3-17〉 | 어머니의 자기효능감 | 101 |
| 〈표 II-3-18〉 | 어머니의 자아존중감 | 101 |
| 〈표 II-3-19〉 | 어머니의 우울 정도(임상집단 여부) | 102 |
| 〈표 II-3-20〉 | 어머니의 우울 정도(평균) | 103 |
| 〈표 II-3-21〉 | 부부의 결혼만족도 | 103 |
| 〈표 II-3-22〉 | 모 취업 여부에 따른 어머니와 아버지의 결혼만족도 | 104 |
| 〈표 II-3-23〉 | 부부 갈등의 정도 | 104 |
| 〈표 II-3-24〉 | 모 취업 여부에 따른 어머니와 아버지의 부부 갈등 | 105 |
| 〈표 II-3-25〉 | 아버지 자녀양육 협조(어머니 응답) | 106 |

| | | |
|-------------|--|-----|
| 〈표 II-3-26〉 | 아버지 자녀양육 참여시간(어머니 응답) | 106 |
| 〈표 II-3-27〉 | 어머니 자녀양육 참여시간(어머니 응답) | 107 |
| 〈표 II-3-28〉 | 부모의 자녀기대 | 108 |
| 〈표 II-3-29〉 | 모 취업 여부에 따른 어머니의 자녀기대 | 109 |
| 〈표 II-3-30〉 | 모 취업 여부에 따른 아버지의 자녀기대 | 109 |
| 〈표 II-3-31〉 | 어머니와 아버지의 양육신념: 부모의 책임 | 110 |
| 〈표 II-3-32〉 | 모 취업 여부에 따른 부모의 책임 | 111 |
| 〈표 II-3-33〉 | 가정에서 배울 수 있는 자질과 특성(중복응답) | 111 |
| 〈표 II-3-34〉 | 모 취업여부에 따른 가정에서 배울 수 있는 자질과 특성 (중복응답) | 112 |
| 〈표 II-3-35〉 | 양육실제: 사회적 양육유형 | 112 |
| 〈표 II-3-36〉 | 양육지식 | 113 |
| 〈표 II-3-37〉 | 양육 스트레스 | 114 |
| 〈표 II-4 1〉 | 출생 후 육아지원서비스 이용 현황(중복응답) | 115 |
| 〈표 II-4 2〉 | 모 취업 여부에 따른 출생 후 육아지원서비스 이용 현황 (중복응답) | 117 |
| 〈표 II-4 3〉 | 육아지원서비스 변경 경험(중복응답) | 119 |
| 〈표 II-4 4〉 | 육아지원서비스 변경 횟수(중복응답) | 120 |
| 〈표 II-4 5〉 | 육아지원서비스 이용 여부 | 121 |
| 〈표 II-4 6〉 | 주 이용 육아지원서비스 | 123 |
| 〈표 II-4 7〉 | 육아지원서비스 미이용 이유 | 124 |
| 〈표 II-4 8〉 | 비대가성 양육 지원 여부 | 125 |
| 〈표 II-4 9〉 | 비대가성 양육 지원 인원수 | 125 |
| 〈표 II-4-10〉 | 비대가성 양육 지원자(중복응답) | 126 |
| 〈표 II-4-11〉 | 비대가성 양육 지원자 동거 여부(중복응답) | 127 |
| 〈표 II-4-12〉 | 비대가성 양육 지원자 거주 거리(중복응답) | 128 |
| 〈표 II-4-13〉 | 비대가성 양육 지원자 지원 시간(중복응답) | 128 |
| 〈표 II-4-14〉 | 개인대리양육 이용 이유 | 129 |
| 〈표 II-4-15〉 | 개인대리양육자와의 관계 | 130 |
| 〈표 II-4-16〉 | 개인대리양육자 구인 경로 | 131 |
| 〈표 II-4-17〉 | 개인대리양육자 성별 | 132 |

| | | |
|-------------|-------------------------------------|-----|
| 〈표 II-4-18〉 | 개인대리양육자 학력 | 132 |
| 〈표 II-4-19〉 | 개인대리양육자 결혼상태 | 133 |
| 〈표 II-4-20〉 | 개인대리양육자 국적 | 133 |
| 〈표 II-4-21〉 | 개인대리양육자 자녀양육 경험 | 134 |
| 〈표 II-4-22〉 | 개인대리양육자 거주지 | 135 |
| 〈표 II-4-23〉 | 개인대리양육 이용 빈도 | 135 |
| 〈표 II-4-24〉 | 개인대리양육 이용 시간 | 136 |
| 〈표 II-4-25〉 | 개인대리양육자 이용비용 지불방식 | 137 |
| 〈표 II-4-26〉 | 개인대리양육 이용비용 | 137 |
| 〈표 II-4-27〉 | 개인대리양육 이외 추가 지원 비용 | 138 |
| 〈표 II-4-28〉 | 개인대리양육자 이용비용 부담도 | 139 |
| 〈표 II-4-29〉 | 개인대리양육자 만족도 | 140 |
| 〈표 II-4-30〉 | 육아지원서비스 중복 이용 이유 | 141 |
| 〈표 II-4-31〉 | 어린이집 이용 이유 | 142 |
| 〈표 II-4-32〉 | 반일제 이상 학원 및 선교원 등 기타 기관 이용 이유 | 142 |
| 〈표 II-4-33〉 | 육아지원기관 입지 조건 | 143 |
| 〈표 II-4-34〉 | 육아지원기관 이용 유형 | 144 |
| 〈표 II-4-35〉 | 평가인증 여부 | 144 |
| 〈표 II-4-36〉 | 어린이집 설립 유형 | 145 |
| 〈표 II-4-37〉 | 어린이집 대상별 시설 유형(중복응답) | 146 |
| 〈표 II-4-38〉 | 서울형 어린이집 여부 | 146 |
| 〈표 II-4-39〉 | 육아지원기관 이용 빈도 | 147 |
| 〈표 II-4-40〉 | 육아지원기관 이용 시간 | 148 |
| 〈표 II-4-41〉 | 육아지원기관 등/하원 시간 | 148 |
| 〈표 II-4-42〉 | 육아지원 기관 이용비용 | 149 |
| 〈표 II-4-43〉 | 육아지원 기관 이용비용 부담도 | 150 |
| 〈표 II-4-44〉 | 육아지원 기관 이용 만족도 | 151 |
| 〈표 II-4-45〉 | 어린이집 보육비 지원 여부 | 151 |
| 〈표 II-4-46〉 | 어린이집 보육비 지원 이유(중복응답) | 152 |
| 〈표 II-4-47〉 | 특별활동 프로그램 수(중복응답) | 153 |
| 〈표 II-4-48〉 | 부모의 프로그램 선택 유무(중복응답) | 154 |

| | |
|---|-----|
| 〈표 II-4-49〉 프로그램 별도 비용 지불(중복응답) | 154 |
| 〈표 II-4-50〉 프로그램 강사 유형(중복응답) | 155 |
| 〈표 II-4-51〉 프로그램 월 평균 비용(중복응답) | 155 |
| 〈표 II-4-52〉 프로그램 이용 시간(중복응답) | 156 |
| 〈표 II-4-53〉 프로그램 이용만족도 | 156 |
| 〈표 II-4-54〉 육아지원 기관 외 프로그램 이용 여부 | 157 |
| 〈표 II-4-55〉 육아지원 기관 외 프로그램 이용 수 | 158 |
| 〈표 II-4-56〉 육아지원 기관 외 프로그램 내용(중복응답) | 159 |
| 〈표 II-4-57〉 육아지원 기관 외 프로그램 진행 방식(중복응답) | 160 |
| 〈표 II-4-58〉 육아지원 기관 외 프로그램 진행 장소(중복응답) | 160 |
| 〈표 II-4-59〉 육아지원 기관 외 프로그램 진행 시 학습지 이용 여부(중복응답) | 161 |
| 〈표 II-4-60〉 육아지원 기관 외 프로그램 진행 시 교사 유무(중복응답) · | 161 |
| 〈표 II-4-61〉 육아지원 기관 외 프로그램 월별 참여횟수(중복응답) | 162 |
| 〈표 II-4-62〉 육아지원 기관 외 프로그램 회별 참여 시간(중복응답) | 162 |
| 〈표 II-4-63〉 육아지원 기관 외 프로그램 월별 참여 기간(중복응답) | 163 |
| 〈표 II-4-64〉 육아지원 기관 외 프로그램 월별 참여 비용(중복응답) | 164 |
| 〈표 II-4-65〉 영어 학습 자료(중복응답) | 164 |
| 〈표 II-4-66〉 영어 학습 시작 시기 | 165 |
| 〈표 II-4-67〉 영어 학습 자료 월 평균 지출금 | 166 |
| 〈표 II-4-68〉 영어 학습 자료 이용 시간 | 166 |
| 〈표 II-4-69〉 영어 학습 공유자(중복응답) | 167 |
| 〈표 II-4-70〉 기관/시설 이용 계획 | 167 |
| 〈표 II-4-71〉 바람직한 육아 지원 정책의 방향 | 169 |
| 〈표 II-4-72〉 출산휴가 | 170 |
| 〈표 II-4-73〉 육아휴직 | 172 |
| 〈표 II-4-74〉 직장 보육시설 | 173 |
| 〈표 II-4-75〉 보육비 지원 | 173 |
| 〈표 II-4-76〉 수유실 설치 | 174 |
| 〈표 II-4-77〉 근무 중 수유시간 부여 또는 유급 수유시간 | 175 |
| 〈표 II-4-78〉 시차 출근제 | 176 |
| 〈표 II-4-79〉 대체인력풀 운영 | 177 |

| | | |
|-------------|-------------------------------|-----|
| 〈표 II-4-80〉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177 |
| 〈표 II-4-81〉 | 출산 및 육아지원 제도 우선순위 - 1순위 | 178 |
| 〈표 II-4-82〉 | 출산 및 육아지원 제도 우선순위 - 2순위 | 179 |
| 〈표 II-4-83〉 | 출산 및 육아지원 제도 우선순위 - 3순위 | 180 |
| 〈표 II-4-84〉 | 정부지원 육아정책 - 현금지원(중복응답) | 182 |
| 〈표 II-4-85〉 | 정부지원 육아정책 - 현물지원(중복응답) | 183 |
| 〈표 II-4-86〉 | 직장육아지원제도 시행여부(중복응답) | 184 |
| 〈표 II-4-87〉 | 직장육아지원제도 이용여부(중복응답) | 185 |
| 〈표 II-4-88〉 | 출산휴가 | 186 |
| 〈표 II-4-89〉 | 육아휴직 | 186 |
| 〈표 II-4-90〉 | 직장 보육시설 | 187 |
| 〈표 II-4-91〉 | 보육비 지원 | 188 |
| 〈표 II-4-92〉 | 수유실 설치 | 188 |
| 〈표 II-4-93〉 | 근무 중 수유시간 부여 또는 유급 수유시간 | 189 |
| 〈표 II-4-94〉 | 시차 출근제 | 189 |
| 〈표 II-4-95〉 | 대체인력풀 운영 | 190 |
| 〈표 II-4-96〉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190 |
| 〈표 II-4-97〉 | 어린이집 무상 지원 시 자녀 출산 의향 | 191 |
| 〈표 II-4-98〉 | 양육비용 일부 지원 시 자녀 출산 계획 | 192 |
| 〈표 II-4-99〉 | 양육비용 보조 희망 금액 | 192 |

그림 차례

| | | |
|-------------|-----------------------------------|-----|
| [그림 I-1-1] | 한국아동패널 2010 지역별 분포 | 2 |
| [그림 II-2-1] | 아동의 하루일과 시간 | 90 |
| [그림 II-4-1] | 출생 후 육아지원서비스 이용 현황 | 116 |
| [그림 II-4-2] | 모 취업 여부에 따른 출생 후 육아지원서비스 이용 현황 | 118 |
| [그림 II-4-3] | 조사시점의 주 양육자 | 122 |
| [그림 II-4-4] | 기관/시설 이용 계획 - 2차(2009)년도 계획 | 168 |
| [그림 II-4-5] | 기관/시설 이용 계획 - 3차(2010)년도 계획 | 168 |
| [그림 II-4-6] | 출산 및 육아지원제도 우선순위 | 181 |
| [그림 II-4-7] | 직장육아지원제도 시행 및 이용여부(중복응답) | 185 |

I. 3차년도 기초분석 개요

1. 3차년도 자료

가. 3차년도 자료 개요

한국아동패널 3차년도 일반조사 완료한 대상은 1,802명으로 조사 성공률은 병원에서 구축되었던 2,562명의 예비표본 패널 기준 70.3%이며, 1차년도 성공패널 2,078명 기준으로는 86.7%였다(표 I-1-1 참조). 아동의 발달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실시된 한국형 덴버II검사는 1,688명이 완료되었고, K-ASQ의 경우는 1,707명이 조사 완료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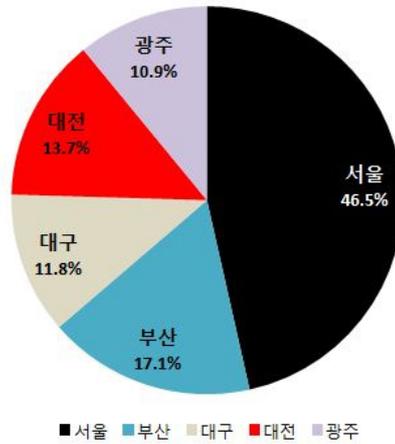
〈표 I-1-1〉 한국아동패널 2008년~2010년 조사 성공률

단위: 명, %

| 패널 현황 | 서울/ 경인권 | 경남권 | 경북권 | 충청/ 강원권 | 전라권 | 총합계 |
|-----------------|------------|------|------|------------|------|-------|
| 예비표본 | 1,236 | 437 | 296 | 316 | 277 | 2,562 |
| 2008년 성공 패널 | 992 | 349 | 240 | 271 | 226 | 2,078 |
| 2009년 성공 패널 | 879 | 320 | 221 | 271 | 213 | 1,904 |
| 2010년 성공 패널 | 839 | 307 | 210 | 253 | 193 | 1,802 |
| 예비표본 기준 성공률 | 67.9 | 70.3 | 70.9 | 80.1 | 69.7 | 70.3 |
| 2008년 패널 기준 성공률 | 84.6 | 88.0 | 87.5 | 93.4 | 85.4 | 86.7 |
| 2008년 패널 기준 유실율 | 15.4 | 12.0 | 12.5 | 6.6 | 14.6 | 13.3 |

주: 패널 거주지 주소를 기준으로 서울/경인권(서울, 경기, 인천), 경남권(부산, 울산, 경남), 경북권(대구, 경북), 충청/강원권(대전, 충청, 강원), 전라권(광주, 전라) 등 5개 권역으로 구분함.

2010년도 조사에 성공한 패널의 지역별 분포를 살펴보면 [그림 I-1-1]과 같이 분포되었다.



단위: %

[그림 1-1-1] 한국아동패널 2010 지역별 분포

나. 분석주제별 변인 구성

한국아동패널 3차년도 조사의 분석은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아동발달 특성, 부모됨의 특성, 육아지원관련 특성으로 구분하여 주제별로 이루어졌으며, 분석주제별 변인의 구성과 해당 질문지는 다음과 같다¹⁾²⁾.

1) 일반적 특성

한국아동패널 3차년도 조사 분석의 일반적 특성은 아동특성, 부모특성, 아버지특성, 어머니 특성, 가구 및 가구원 특성, 지역사회 특성, 위탁가구 특성으로 구분하였으며, 해당하는 변인은 다음 <표 1-1-2>와 같다.

〈표 1-1-2〉 분석주제별 구성: 일반적 특성

| 대상 | 구분 | 하위변인 | 해당질문지 | 비고 |
|------|---------|--------------|-------|----|
| 아동특성 | 인구학적 특성 | 성별, 연령, 출생순위 | 면접조사용 | |

- 1) 한국아동패널 3차년도 조사의 질문지는 부록 1~3에 수록됨.
- 2) 한국아동패널 3차년도 조사의 도구 출처는 부록 4에 수록됨.

| 대상 | 구분 | 하위변인 | 해당질문지 | 비고 | |
|-----------|----------------|---------------------------------|-----------|---|-------------|
| 아동특성 | 건강특성 | 체중, 신장 | 어머니대상 | 09년도에 입원, 사고/ 중독으로 인한 내용 추가 | |
| | | 예방접종 | | | |
| | | 입원횟수/기간, 사고 및 중독으로 인한 치료 | 어머니대상 | | |
| | | 모유수유 여부, 중단 시기, 중단 이유 | 면접조사용 | | |
| 부모특성 | 인구학적 특성 | 연령 | 면접조사용 | 과음여부 '10년도 추가 | |
| | | 결혼 상태, 기간 | | | |
| | | 국적, 귀화여부 | 어머니/아버지대상 | | |
| | | 종교 | | | |
| | | 동거 여부, 비동거 사유 | | | |
| | 건강특성 | 학력 | 면접조사용 | | |
| | | 장애, 희귀난치성 질환 | 면접조사용 | | |
| | | 음주 | 어머니/아버지대상 | | |
| 아버지 특성 | 근로특성 | 취업/학업 상태 | 면접조사용 | '09년도 추가 | |
| | | 직업, 종사상 지위 | | | |
| | | 근로시간 | | | |
| | | 통근시간 | | | |
| 어머니 특성 | 근로특성 | 취업/학업 상태 | 면접조사용 | | |
| | | 직업, 종사상 지위 | | | |
| | 취업모 대상 근로특성 | 근로시간 | 면접조사용 | | '09년도 추가 |
| | | 통근시간 | | | '10년도 추가 |
| | | 휴직중인 취업모의 휴직사유 | | | |
| | | 재직 중인 취업모의 지난 1년간 휴직여부, 휴직사유 | | | |
| | | 향후 취업계획, 취업중단 및 이직 사유 | | '09년도 추가 | |

| 대상 | 구분 | 하위변인 | 해당질문지 | 비고 |
|----------------------|-------------------------|-------------------------------|-------|-------------|
| 어머니 특성 | | 직장 복귀 계획, 복귀 시기 | | |
| | | 직무만족도 | | |
| | 학업모 대상 근로특성 | 학업 상태 | 면접조사용 | |
| | | 학업시간 | | |
| | 미취업/미학 업모 대상 근로특성 | 취업/학업 중단 시기 | 면접조사용 | |
| | | 취업/학업 중단 시기 상태 | | |
| 취업/학업 중단 사유 | | | | |
| 가구 및 가구원 특성 | 일반적 특성 | 가구구성원 수, 가구 구성 | 면접조사용 | |
| | 경제적 특성 | 소득, 지출, 자산, 부채 | | |
| | 역사적 특성 | 가족생활사건 | 어머니대상 | |
| | 사회적 특성 | 사회적 지원 | 면접조사용 | |
| | 물리적 환경 | 주택 소유형태 | | |
| | | 거주 외 주택 소유 여부 | | |
| | 사회보장지원 | 거주 주택 유형 | | |
|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계층 여부 | | | | |
| 지역사회 특성 | 일반적 특성 | 지역유형 | 어머니대상 | |
| | 가용 육아지원 기관 | 어린이집, 유치원, 사교육기관, 기타기관 충분도 | | |
| | | 공공여가·문화시설이용 편리성 | | |
| | 양육 적절성 | 치안 안정성 | | |
| | | 안전사고 측면 안정성 | | |
| 전반적 양육 적절성 | | | | |
| 위탁가구 특성 | 위탁 여부 | 위탁 여부 | 면접조사용 | '09년도 추가 |
| | | 위탁가구 변경 여부 | | |
| | | 대상아동과의 관계 | | |
| | 가용 육아지원 기관 | 위탁가구 지역 | 면접조사용 | |
| | | 시설 및 기관 충분도 | | |
| | | 공공여가·문화시설이용 편리성 | | |
| | 양육 적절성 | 치안 안정성 | 면접조사용 | |
| 안전사고 측면 안정성 | | | | |
| 전반적 양육 적절성 | | | | |

2) 아동발달 특성

한국아동패널 3차년도 조사 분석의 아동발달 특성은 발달검사 결과를 중심으로 한국형 Denver-II, K-ASQ, 기질, 기초생활습관으로 구분하였다. 각 검사도구별 해당하는 변인과 질문지는 다음 <표 I-1-3>과 같다.

K-ASQ와 한국형 Denver-II 검사는 각 검사도구별 윌링 측정방법에 따라 해당 윌링 질문지를 사용한다. 기질은 정서성, 활동성 및 사회성의 하위변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초생활습관은 아동의 수면과 식습관, 배변/씻기, 놀이와 사회적 활동, 하루일과 및 시간 등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I-1-3> 분석주제별 구성: 아동발달 특성

| 구분 | 하위변인 | 해당질문지 | 비고 |
|---------------|---------------------------|---------------|-----------------|
| K-ASQ | 발달전반 | K-ASQ | |
| | 의사소통 영역 | | |
| | 대근육운동 영역 | | |
| | 소근육운동 영역 | | |
| | 문제해결(인지) 영역 | | |
| | 개인-사회성 영역 | | |
| 한국형 Denver-II | 발달전반 | 한국형 Denver II | |
| | 개인-사회발달 영역 | | |
| | 미세운동 및 적응발달 영역 | | |
| | 언어발달 영역 | | |
| | 운동발달영역 | | |
| 기질 | 정서성, 활동성, 사회성 | 어머니대상 | '10년도에 '사회성' 추가 |
| 기초생활습관 | 수면, 식습관, 배변/씻기, 놀이와 사회적활동 | 어머니대상 | |
| | 아동의 하루일과 시간 | | |

3) 부모됨의 특성

한국아동패널 3차년도 조사에서 부모됨의 특성은 부모됨, 어머니 특성, 부부 관계, 양육 특성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해당하는 변인은 다음 <표 I-1-4>와 같으며, 특히 2차년도와 비교하여 달라지는 내용은 아버지의 자녀양육 협조와 어머니의 양육실체에 대한 내용이다.

양육 특성 중 자녀양육참여의 하위변인인 아버지 자녀양육 협조는 1차년도부터 조사된 변인으로 1·2차년도의 보고서에는 아버지 특성으로 구분되었다. 3차년도에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자녀양육 참여시간을 조사하였기에 이 변인들과 함께 아버지의 자녀양육 협조를 양육 특성 중 자녀양육참여 변인으로 구분하였다.

양육 특성 중 어머니의 양육실체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PSQ(The Parental Style Questionnaire)는 20개월 영아의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도구이다. 한국아동패널에서는 PSQ의 3개 요인 중 '사회적 양육유형'의 하위척도를 사용하여 어머니의 양육실체를 측정하였다. 1·2차년도 조사에서는 '사회적 양육유형'의 9개 문항 중 만 2세 이하 부모에게 적절하지 않은 문항 3개를 제외하고 실시하였으며, 패널 아동이 20개월이 넘는 3차년도 조사에는 1차년도와 2차년도에 제외되었던 문항 3개를 포함하였다.

<표 I-1-4> 분석주제별 구성: 부모됨의 특성

| 대상 | 구분 | 하위변인 | 해당질문지 | 비고 | | |
|------------------|------------|--------------------|----------|----------|-------|----------|
| 부모됨 | 향후 출산계획 | 후속출산 의도 | 어머니대상 | '09년도 추가 | | |
| | | 더 낳지 않는 이유 | | | | |
| | | 후속출산 계획 자녀수 | | | | |
| | | 후속출산 시기 | | | | |
| | | 출산계획에 영향을 미친 사람 | | | | |
| | | 어머니의 이상자녀수 | | | | |
| | | 아버지의 이상자녀수 | | | 아버지대상 | '09년도 추가 |
| | | 어머니의 이상성비 | | | 어머니대상 | |
| | 아버지의 이상성비 | 아버지대상 | '09년도 추가 | | | |
| | 부모됨의 태도 | 어머니가 인식한 자녀가치 | 어머니대상 | | | |
| 아버지가 인식한 자녀가치 | | 아버지대상 | | | | |

| 대상 | 구분 | 하위변인 | 해당질문지 | 비고 | |
|-----------|------------|-------------------|-------|---------------------------------------|-------------------|
| 어머니 특성 | 자기효능감 | 자기효능감 | 어머니대상 | | |
| | 자이존중감 | 자이존중감 | | | |
| | 우울 | 우울 | | | |
| 부부관계 | 결혼만족도 | 어머니의 결혼만족도 | 어머니대상 | | |
| | | 아버지의 결혼만족도 | 아버지대상 | | |
| | 부부갈등 | 어머니가 인식한 부부갈등 | 어머니대상 | | |
| | | 아버지가 인식한 부부갈등 | 아버지대상 | | |
| 양육 특성 | 자녀양육참여 | 아버지의 자녀양육 협조 | 어머니대상 | 아버지 특성에서 양육 특성으로 이동 | |
| | | 어머니의 자녀양육 참여시간 | 면접용 | '10년도 추가 아버지 특성에서 양육 특성으로 이동 | |
| | | 아버지의 자녀양육 참여시간 | | '10년도 추가 | |
| | 자녀기대 | 어머니의 자녀기대 | 어머니대상 | | |
| | | 아버지의 자녀기대 | 아버지대상 | | |
| | 양육신념 | 어머니의 양육신념 | 어머니대상 | | |
| | | 아버지의 양육신념 | 아버지대상 | | |
| | 양육실제 | 어머니의 양육실제 | 어머니대상 | | '10년도에 세 문항 추가 |
| | 양육지식 | 어머니의 양육지식 | | | |
| | 양육 스트레스 |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 | | |

4) 육아지원관련 특성3)

한국아동패널 3차 조사의 육아지원관련 특성은 육아지원서비스 이용, 육아지원 정책 특성으로 구분하였으며, 해당하는 변인은 다음 <표 I-1-5>와 같다.

<표 I-1-5> 분석주제별 구성: 육아지원관련 특성

| 대상 | 구분 | 하위변인 | 해당질문지 | 비고 | | |
|-----------------|------------|-----------------------|---------------------------|----------|----------|----------|
| 육아지원 서비스 이용 | 서비스 이용 현황 | 출생 후 육아지원서비스 이용 현황 | 면접조사용 | '09년도 추가 | | |
| | | 육아지원서비스 변경 경험/횟수 | | '09년도 추가 | | |
| | | 육아지원서비스 이용 여부 | | | | |
| | | 현재 주 양육자 | | | | |
| | | 주 이용 육아지원서비스 | | | | |
| | | | 육아지원서비스 미이용 이유 | | '09년도 추가 | |
| | 비대가성 양육 지원 | | 비대가성 양육 지원 여부 | 면접조사용 | '09년도 추가 | |
| | | | 비대가성 양육 지원 인원 | | | |
| | | | 비대가성 양육 지원자 | | | |
| | | | 동거 여부, 거주거리, 지원 시간 | | | |
| | 개인 대리 양육 | | 개인대리양육 이용 이유 | 면접조사용 | | |
| | | | 개인대리양육자와의 관계 | | | |
| | | | 개인대리양육자 구인 경로 | | | |
| | | | 개인대리양육자의 성별, 학력, 결혼상태, 국적 | | | |
| | | | 자녀양육 경험, 거주지 | | | |
| | | | 개인대리양육자 변경 횟수 | | | |
| | | | 이용 빈도, 이용 시간 | | | |
| | | | 이용비용, 비용지불방식, 추가지원 비용 | | | '09년도 추가 |
| | | | 이용비용 부담도 | | | '09년도 추가 |
| | | | 이용 만족도 | | | |
| 육아지원서비스 중복이용 이유 | '09년도 추가 | | | | | |
| 육아지원기관 | | 입지조건 | 면접조사용 | | | |
| | | 서비스 이용 이유 | | | | |
| | | 평가인증 여부 | | | | |
| | | 어린이집 설립 유형, 시설 유형 | | | '10년도 추가 | |
| | | 서울형 어린이집 여부 | | | '10년도 추가 | |
| | | 이용 빈도, 이용 시간, 등/하원 시간 | | | | |

3) 2009년 조사 당시 '보육시설'로 조사된 문항을, 2011년 8월 4일 일부 개정된 영유아보육법 2조 2항, 5항에 근거, 기초분석보고서 작성에 있어서 '어린이집'으로 용어를 통일하여 기술함.

| 대상 | 구분 | 하위변인 | 해당질문지 | 비고 |
|--------------------|---|--|----------|-------------------------|
| 육아지원 서비스 이용 | | 이용비용 | 면접조사용 | |
| | | 이용비용 부담도 | | |
| | | 이용 만족도 | | |
| | | 변경 횟수 | | |
| | | 어린이집 보육비 지원 여부, 이유 | | |
| | 기관 내 특별활동 | 특별활동 프로그램 수, 부모의 프로그램 선택여부/유무, 비용지불여부, 강사유형, 월평균비용, 이용시간, 특별활동에 대한 이용만족도 | 면접조사용 | '10년도 추가 |
| | 기관 외 프로그램 | 프로그램 이용 여부/횟수 | 면접조사용 | '09년도 추가 |
| | | 프로그램 내용 | | |
| | | 진행 방식, 장소 | | |
| | | 학습지 이용 여부, 교사 유무 | | |
| 월별 참여 횟수, 시간, 이용기간 | | | | |
| 가정 내 영어 학습 | 영어 학습자료, 시작시기, 영어 학습자료 월평균 지출, 자료 이용시간, 영어 학습 공유자 | 면접조사용 | '10년도 추가 | |
| 기관/시설 이용 계획 | 기관/시설 향후 이용 계획 | 면접조사용 | | |
| 육아 지원 정책 특성 | 정책의 방향 | 바람직한 육아지원 정책의 방향 | 어머니대상 | '10년도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추가 |
| | 일과 가정의 양립 정책 | 출산 및 육아지원 제도 필요성 (휴가 및 휴직, 보육지원, 모성보호, 유연성 있는 노동환경) 출산 및 육아지원 제도 우선순위 | | |
| | 육아지원서비스 정책 | 농어민 가정 육아비 수혜 도우미 지원 서비스 수혜 (수혜경험여부, 현금지원금액, 현물지원에 대한 비용 지불여부, 이용만족도) | 면접조사용 | '10년도 추가 |
| | 직장의 육아지원 정책 | 직장육아지원제도 시행여부 | 면접조사용 | |
| | | 직장육아지원제도 이용여부 | | |
| | 직장육아지원제도 이용만족도 | | | |
| 재정지원 관련 정책 | 유치원/어린이집 무상 이용에 따른 향후 자녀 출산 계획 | 어머니대상 | '09년도 추가 | |
| | 양육비용 보조에 따른 향후 자녀 출산 계획 및 적정 지원 금액 | 어머니대상 | '09년도 추가 | |

2. 표본 특성

한국아동패널 3차년도 표본의 일반적 특성은 <표 I-1-6>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본의 특성은 가중치를 부여하지 않고 분석하였으며, 다음 장부터 제시될 3차년도 기초분석은 가중치를 부여하여 분석한 결과이다. 이에 표본 특성의 분석결과와 기초분석의 분석한 결과와는 차이가 있다.

<표 I-1-6> 표본 특성

단위: 명, %, 만원

| 구분 | | 빈도 | 비율 | | |
|------------------|--------------|--------|-----------|-----------|--------|
| 아동성별 | 남자 | 917 | 50.9 | | |
| | 여자 | 885 | 49.1 | | |
| | 계 | 1,802 | 100.0 | | |
| 3차 조사 시 아동 월령 | 23개월 | 67 | 3.7 | | |
| | 24개월 | 248 | 13.8 | | |
| | 25개월 | 469 | 26.0 | | |
| | 26개월 | 547 | 30.4 | | |
| | 27개월 | 301 | 16.7 | | |
| | 28개월 | 110 | 6.1 | | |
| | 29개월 | 44 | 2.4 | | |
| | 30개월 | 14 | 0.8 | | |
| | 31개월 | 2 | 0.1 | | |
| | 계 | 1,802 | 100.0 | | |
| 어머니 취업/학업 상태 | 취업모 | 600 | 33.3 | | |
| | 학업모 | 5 | 0.3 | | |
| | 미취업/미학업모 | 1,196 | 66.4 | | |
| | 계 | 1,801 | 100.0 | | |
| 가구형태 | 부부+자녀 | 1,548 | 85.9 | | |
| | 조부모+부부+자녀 | 173 | 9.6 | | |
| | 부부+자녀+친척 | 28 | 1.6 | | |
| | 조부모+부부+자녀+친척 | 40 | 2.2 | | |
| | 기타 | 13 | 0.7 | | |
| | 계 | 1,802 | 100.0 | | |
| 구분 | 빈도 | 평균 | 표준편차 | 중위값 | |
| 가구소득 | 1,801 | 360.56 | 280.16 | 300 | |
| 가구지출 | 1,796 | 285.37 | 220.46 | 250 | |
| 자산 | 금융자산 | 1,752 | 5,490.10 | 17,947.72 | 2000 |
| | 부동산 | 1,744 | 22,933.13 | 52,208.29 | 10,000 |
| 부채 | 총액 | 1,789 | 4,813.04 | 21,037.56 | 800 |
| | 월 상환금 | 1,789 | 25.38 | 50.42 | 2 |

II. 3차년도 기초분석4)5)

1. 일반적 특성

가. 아동 특성

1) 아동의 인구학적 특성

아동의 인구학적 특성을 성별, 연령, 출생순위에 따라 살펴보면 <표 II-1-1>과 같다. 아동의 성별은 남아 51.5%, 여아 48.5%이고, 출생순위는 첫째아와 둘째아가 각각 48.4%, 40.9%로 대다수를 차지하며 셋째아도 9.5% 포함되어 있다. 아동의 연령(월령)은 조사일을 기준으로 26개월 30.4%, 25개월 25.0%, 27개월 17.1%의 순이다.

<표 II-1-1> 아동의 인구학적 특성

단위: %

| 구분 | | 종단비교 | | | 구분 | 3차년도 | |
|----------|---------|-------|-------|-------|------------|-------|------|
| | | 1차년도 | 2차년도 | 3차년도 | | | |
| 성별 | 남자 | 51.5 | 51.5 | 51.5 | 23개월 | 4.8 | |
| | 여자 | 48.5 | 48.5 | 48.5 | 24개월 | 13.8 | |
| | 계 | 100.0 | 100.0 | 100.0 | 25개월 | 25.0 | |
| 출생 순위 | 첫째아 | 48.3 | 47.6 | 48.4 | 연령 (월령) | 26개월 | 30.4 |
| | 둘째아 | 40.9 | 41.2 | 40.9 | | 27개월 | 17.1 |
| | 셋째아 | 9.5 | 9.8 | 9.5 | | 28개월 | 5.1 |
| | 넷째아 | 1.1 | 1.1 | 0.9 | | 29개월 | 2.4 |
| | 다섯째아 이상 | 0.3 | 0.3 | 0.2 | | 30개월 | 1.2 |
| | 계 | 100.0 | 100.0 | 100.0 | | 31개월 | 0.2 |
| 계 | | 100.0 | 100.0 | 100.0 | 계 | 100.0 | |

- 4) 기초분석 중 비율은 모두 3차년도 가중치를 적용하였으며, 통계적 차이 검증은 가중치를 적용하지 않은 결과임.
- 5) 기초분석에 사용한 데이터는 학술대회 및 에디팅 작업 후에 다소 변경될 수 있음.

2) 아동의 건강 특성

건강과 관련된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실시한 조사항목은 체중, 신장의 신체적 특성과 국가필수예방접종 및 모유수유 그리고 사고, 질병 등의 건강상태 관련 사항이다. 먼저 이들 변인에 대한 3차년도 자료를 어머니의 취업 여부로 나누어 살펴본 후, 1·2·3차년도 자료를 종단적으로 비교하여 살펴보았다.

가) 체중, 신장

아동의 평균 체중은 12.55kg이었으며,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라 아동의 체중이 차이가 있는지 *t*검증한 결과, 두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취업모의 아동이 비취업모의 아동에 비해 체중이 더 나갔다.

종단적으로는 생후 출생시 체중을 조사한 1차년도에서 생후 12개월경이었던 2차년도 체중의 평균값이 약 7kg 증가를 보였으며, 2차년도에서 3차년도는 약 2kg의 체중증가를 보였다. 즉,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과 같이 아동은 생후 초기 1년간 급격한 체중증가를 보이다가 생후 12개월 이후로는 완만한 체중증가를 보임을 알 수 있다.

〈표 II-1-2〉 체중

| 구분 | 종단비교 | | | 3차년도 모 취업 | |
|------|----------|-------|-------|-----------|-------|
| | 1차년도 | 2차년도 | 3차년도 | 취업모 | 비취업모 |
| 평균 | 3.27 | 10.12 | 12.55 | 12.72 | 12.46 |
| 표준편차 | 0.41 | 1.12 | 1.41 | 1.38 | 1.42 |
| 최소 | 1.20 | 6.00 | 9.00 | 9.80 | 9.00 |
| 최대 | 4.90 | 15.00 | 17.00 | 17.00 | 17.00 |
| | <i>t</i> | | | 3.34** | |

주: 1) 제시된 1차년도 값은 출생시 체중임.

2) 같은 년도에 수집된 자료라도 조사시점에 따라 아동 월령의 편차가 있음.

** $p < .01$.

아동의 평균 키는 88.82cm이었으며,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라 아동의 키가 차이가 있는지 *t*검증한 결과, 두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종단적으로는 생후 4~9개월이었던 1차년도에서 생후 12개월경이었던 2차년도로 아동의 키의 평균값이 약 27cm 증가를 보였으며, 2차년도에서 3차년도로

는 약 11cm의 증가를 보였다. 즉, 일반적으로 아동의 발달 특성과 동일하게 생후 초기 1년간 급격하게 키가 성장하다가 생후 12개월 이후로는 완만하게 키가 성장함을 알 수 있다.

〈표 II-1-3〉 신장

단위: cm

| 구분 | 종단비교 | | | 3차년도 모 취업 | |
|----------|-------|--------|--------|-----------|--------|
| | 1차년도 | 2차년도 | 3차년도 | 취업모 | 비취업모 |
| 평균 | 50.34 | 77.23 | 88.82 | 89.06 | 88.70 |
| 표준편차 | 2.62 | 4.12 | 3.84 | 3.90 | 3.80 |
| 최소 | 29.4 | 60.00 | 75.00 | 75.00 | 75.00 |
| 최대 | 60.0 | 100.00 | 102.00 | 102.00 | 101.50 |
| <i>t</i> | | | | 0.60 | |

주: 1) 제시된 1차년도 값은 출생 시 신장임.

2) 같은 년도에 수집된 자료라도 조사시점에 따라 아동 월령의 편차가 있음.

나) 국가필수 예방접종

국가필수예방접종은 생후 24개월을 기준으로 결핵(BCG) 1회, B형 간염(HepB) 과 소아마비(폴리오)는 각 3회,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DTaP) 4회, 홍역·볼거리·풍진 1회, 수두 1회를 접종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⁶⁾. 일본뇌염 예방접종은 12개월 이후부터 36개월 사이에 1~3차 접종이 권장되고 있다.

결핵은 99.9%,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3~4회) 95.8%, B형 간염 92.3%, 소아마비 93.6%, 홍역·볼거리·풍진 98.6%, 수두 97.9%, 일본뇌염(1~2회) 96.9%가 권장하는 바와 같이 접종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 1회도 접종하지 않은 아동은 결핵 0.1%,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 0.2%, B형 간염 0.3%, 소아마비 0.1%, 홍역·볼거리·풍진 1.4%, 수두 2.1%, 일본뇌염 3.1%였다.

응답자 특성별로는 어머니의 취업 여부에 따라 접종 횟수에 차이가 있었다. 결핵과 홍역·볼거리·풍진을 제외한 B형 간염,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 소아마비, 수두, 일본뇌염 예방 접종에 대해 취업모가 비취업모에 비해 예방지침에 맞추어 접종한 비율이 낮았다. 이는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을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으며 취업모의 자녀 양육 중 이 부분에 대한 지원이 요구된다.

6) 질병관리본부 질병예방센터 예방접종관리과의 '예방접종 정보 검색 사이트' 참조
<http://nip.cdc.go.kr/introduce.do?MnLv1=1&MnLv2=4>

〈표 II-1-4〉 예방접종 횟수 - 생후 24개월 기준

단위: 회, %

| 구분 | | 3차년도 | 3차년도 모 취업 | |
|-----------------------|-------|-------|-----------|-------|
| | | | 취업모 | 비취업모 |
| 결핵 | 0 | 0.1 | 0.0 | 0.1 |
| | 1 | 99.9 | 100.0 | 99.9 |
| | 계 | 100.0 | 100.0 | 100.0 |
|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 0 | 0.2 | 0.5 | 0.1 |
| | 1 | 1.2 | 2.1 | 0.8 |
| | 2 | 2.9 | 3.8 | 2.4 |
| | 3 | 18.9 | 22.2 | 17.4 |
| | 4 | 76.9 | 71.4 | 79.4 |
| 계 | 100.0 | 100.0 | 100.0 | |
| B형 간염 | 0 | 0.3 | 0.2 | 0.3 |
| | 1 | 1.5 | 2.7 | 1.0 |
| | 2 | 5.8 | 6.6 | 5.5 |
| | 3 | 92.3 | 90.5 | 93.2 |
| 계 | 100.0 | 100.0 | 100.0 | |
| 소아마비 | 0 | 0.1 | 0.1 | 0.1 |
| | 1 | 1.3 | 2.1 | 0.9 |
| | 2 | 5.0 | 6.4 | 4.3 |
| | 3 | 93.6 | 91.3 | 94.6 |
| 계 | 100.0 | 100.0 | 100.0 | |
| 홍역·볼거리·풍진 | 0 | 1.4 | 1.0 | 1.6 |
| | 1 | 98.6 | 99.0 | 98.4 |
| | 계 | 100.0 | 100.0 | 100.0 |
| 수두 | 0 | 2.1 | 2.5 | 1.9 |
| | 1 | 97.9 | 97.5 | 98.1 |
| | 계 | 100.0 | 100.0 | 100.0 |
| 일본뇌염 | 0 | 3.1 | 2.7 | 3.3 |
| | 1 | 12.5 | 16.8 | 10.6 |
| | 2 | 84.4 | 80.5 | 86.1 |
| | 계 | 100.0 | 100.0 | 100.0 |

다) 건강상태

(1) 병력

사고나 중독으로 인한 치료, 입원치료, 통원 치료 경험 여부 및 횟수와 같은 아동의 병력에 대해 살펴보았다.

우선 사고나 중독으로 인한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체 아동의 18.6%가 치료 경험이 있었다.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른 사고/중독으로 인한 치료 여부의 차이를 χ^2 검증한 결과,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표 II-1-5〉 사고/중독으로 인한 치료 여부

단위: %

| 구분 | 종단비교 | | 3차년도 모 취업 | |
|----------|-------|-------|-----------|-------|
| | 2차년도 | 3차년도 | 취업모 | 비취업모 |
| 있음 | 16.4 | 18.6 | 21.1 | 17.4 |
| 없음 | 83.6 | 81.4 | 78.9 | 82.6 |
| 계 | 100.0 | 100.0 | 100.0 | 100.0 |
| χ^2 | | | 1.12 | |

주: 2차년도 조사에서 추가된 문항임.

아동이 경험한 사고/중독 건수는 지난 1년 동안 평균 1.40건이다(표 II-1-6참조).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른 사고/중독 건수의 차이를 χ^2 검증한 결과,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즉, 취업모의 아동이 1.52건으로 비취업모의 아동 1.32건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만 2세 아동 중에서 취업모의 자녀가 비취업모의 자녀보다 사고/중독에 좀 더 노출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II-1-6〉 사고/중독 건수

단위: 건

| 구분 | 종단비교 | | 3차년도 모 취업 | |
|------|------|------|-----------|------|
| | 2차년도 | 3차년도 | 취업모 | 비취업모 |
| 평균 | 1.41 | 1.40 | 1.52 | 1.32 |
| 표준편차 | 0.81 | 1.00 | 1.36 | 0.70 |
| 최소 | 1 | 1 | 1 | 1 |
| 최대 | 7 | 12 | 12 | 5 |
| t | | | 2.15* | |

주: 2차년도 조사에서 추가된 문항임.

* $p < .05$.

전체 아동의 15.1%가 질병, 사고 등으로 인해 병원에 입원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II-1-7참조). 2차년도 조사결과와 비교해보면, 전체의 21.8%가 병원에 입원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던 2차년도에 비해 3차년도에는 입원 경험의 비율이 약 6%정도 낮았다. 입원경험에 있어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른 차이를 χ^2 검증한 결과,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1-7〉 입원 경험 여부

단위: %

| 구분 | 중단비교 | | 3차년도 모 취업 | |
|----------|-------|-------|-----------|-------|
| | 2차년도 | 3차년도 | 취업모 | 비취업모 |
| 있음 | 21.8 | 15.1 | 17.8 | 13.9 |
| 없음 | 78.2 | 84.9 | 82.2 | 86.1 |
| 계 | 100.0 | 100.0 | 100.0 | 100.0 |
| χ^2 | | | 1.32 | |

주: 2차년도 조사에서 추가된 문항임.

입원횟수는 평균 1.29회로 2차년도 1.33회에 비해 약간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라 입원횟수에 차이가 있는지 t 분석을 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표 II-1-8 참조).

〈표 II-1-8〉 입원 횟수

단위: 회

| 구분 | 중단비교 | | 3차년도 모 취업 | |
|------|------|------|-----------|------|
| | 2차년도 | 3차년도 | 취업모 | 비취업모 |
| 평균 | 1.33 | 1.29 | 1.28 | 1.29 |
| 표준편차 | 0.72 | 0.69 | 0.71 | 0.68 |
| 최소 | 1 | 1 | 1 | 1 |
| 최대 | 7 | 7 | 5 | 7 |
| t | | | -0.27 | |

주: 2차년도 조사에서 추가된 문항임.

〈표 II-1-9〉 입원 기간

단위: 일

| 구분 | 중단비교 | | 3차년도 모 취업 | |
|------|-------|------|-----------|------|
| | 2차년도 | 3차년도 | 취업모 | 비취업모 |
| 평균 | 9.26 | 8.06 | 7.78 | 8.24 |
| 표준편차 | 10.15 | 8.37 | 7.04 | 9.11 |
| 최소 | 1 | 1 | 1 | 1 |
| 최대 | 97 | 82 | 41 | 82 |
| t | | | -0.81 | |

주: 1) 2차년도 조사에서 추가된 문항임.

2) 3차년도는 입원기간이 200일 이상인 극단값 3개를 제외하고 분석하였음.

입원기간은 평균 8.06일로 조사되었다(표 II-1-9 참조). 이는 2차년도의 평균 9.26일보다 약 1일정도 감소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라

아동의 입원기간이 차이가 있는지 t 검증한 결과,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일을 기준으로 지난 2주간 통원 치료 횟수는 평균 0.93건이며, 2차년도 0.81건에 비해 약간 증가하였다.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라 최근 2주간 통원치료 횟수의 차이를 t 검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1-10〉 최근 2주간 통원 치료 횟수

단위: 건

| 구분 | 중단비교 | | 3차년도 모 취업 | |
|------|------|------|-----------|------|
| | 2차년도 | 3차년도 | 취업모 | 비취업모 |
| 평균 | 0.81 | 0.93 | 0.96 | 0.92 |
| 표준편차 | 1.49 | 1.59 | 1.71 | 1.52 |
| 최소 | 0 | 0 | 0 | 0 |
| 최대 | 15 | 20 | 20 | 20 |
| t | | | 0.35 | |

주: 2차년도 조사에서 추가된 문항임.

(2) 모유 수유

2차년도 조사 시 모유 수유 중이라고 응답했던 가구를 대상으로 3차년도 조사시점에서 모유 수유 여부를 묻고, 중단한 경우에는 중단 시기 및 중단한 이유에 대해 조사하였다.

2차년도 조사에서 모유 수유 중이라고 응답한 42.8%의 가구 중에서 3.1%가 3차년도 조사시점까지 모유 수유 중이었음(이정립 외, 2010).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라 3차년도 모유 수유 여부에 차이가 있는지 χ^2 검증한 결과,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1-11〉 모유 수유 여부

단위: %

| 구분 | 3차년도 | 3차년도 모 취업 | |
|----------|-------|-----------|-------|
| | | 취업모 | 비취업모 |
| 모유수유 중 | 3.1 | 2.8 | 3.2 |
| 모유수유 안함 | 96.9 | 97.2 | 96.8 |
| 계 | 100.0 | 100.0 | 100.0 |
| χ^2 | | 0.65 | |

주: 전년도 조사 시 이미 모유 수유를 중단한 경우는 해당되지 않은 질문임. 이에 전체 아동에 대해 적용할 수 없으므로 중단비교를 하지 않았음.

모유 수유를 중단한 경우, 모유 수유 중단 시기는 평균 8.93개월이었다.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른 차이를 t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비취업모가 9.96개월로 6.86개월로 응답된 취업모에 비해 약 3개월 가량 오래 모유 수유를 하고 있었다.

〈표 II-1-12〉 모유 수유 중단 시기

단위: 개월

| 구분 | 3차년도 | 3차년도 모 취업 | |
|------|------|-----------|------|
| | | 취업모 | 비취업모 |
| 평균 | 8.93 | 6.86 | 9.96 |
| 표준편차 | 6.64 | 5.95 | 6.73 |
| 최소 | 0 | 0 | 0 |
| 최대 | 27 | 25 | 27 |
| t | | -9.05*** | |

주: 전년도 조사 시 이미 모유 수유를 중단한 경우는 해당되지 않은 질문임. 이에 전체 아동에 대해 적용할 수 없으므로 중단비교를 하지 않았음.

*** $p < .001$.

모유 수유를 중단한 이유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젖을 떼어야 할 시기가 되어서'라는 응답이 38.4%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젖이 나오질 않아서'라는 응답 30.9%, '직장/학교생활 등으로 낮 시간 수유가 어려워서'라는 응답이 11.0% 순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라 모유 수유 중단 이유의 차이가 있는지 χ^2 검증하여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젖을 떼어야 할 시기가 되어서 중단하였다는 응답은 비취업모 집단에서는 44.4%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나 취업모 집단에서는 26.4%로 3순위로 나타났으며, '젖이 나오질 않아서'라는 응답은 취업모 집단에서 32.8%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나, 비취업모 집단에서는 29.9%로 2순위로 나타났다. 한편, '낮시간 수유가 어려워서'라는 응답은 취업모 집단에서 27.5%로 2순위에 해당하며, 이는 비취업모의 2.8%에 비해 월등히 높은 비율임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를 2차년도 조사결과와 비교해보면, 2차년도 취업모 집단의 경우 '젖을 떼어야 할 시기가 되어서'라는 응답이 35.7%로 가장 높은 응답을 보였고, 그 다음으로 '낮시간 수유가 어려워서'가 31.9%, '젖이 나오질 않아서'가 20.6%였던 반면에, 2차년도 비취업모 집단의 경우 '젖을 떼어야 할 시기가 되어

서 48.8%로 과반수에 가까운 비율로 가장 높았고, '젓이 나오질 않아서'가 25.4%로 그 다음 순이었으며, '낮시간 수유가 어려워'는 0.5%로 가장 낮은 순위를 차지했다(이정림 외, 2010). 즉, 아동이 생후 12개월 전후였던 2차년도에 비해 아동이 만 2세에 접어드는 3차년도 조사의 경우 어머니들이 신체적으로 젓이 더 이상 나오지 않게 되어 자연스럽게 모유 수유를 중단하게 되는 경우가 2차년도에 비해서 증가하였고, 취업모의 경우 비취업모에 비해 '직장/학교생활 등으로 낮시간 동안 수유가 어려워'라는 응답이 월등히 많다는 점은 예년과 같았다.

〈표 II-1-13〉 모유 수유 중단 이유

| 구분 | 3차년도 | 3차년도 모 취업 | |
|--------------------------|-------|-----------------------|-------|
| | | 취업모 | 비취업모 |
| 젓이 나오질 않아서 | 30.9 | 32.8 | 29.9 |
| 젓을 떼어야 할 시기가 되어서 | 38.4 | 26.4 | 44.4 |
| 아기가 젓을 잘 빨지 못해서 | 4.1 | 3.4 | 4.4 |
| 직장/학교생활 등으로 낮 시간 수유가 어려워 | 11.0 | 27.5 | 2.8 |
| 육체적으로 힘들어서 | 4.6 | 3.6 | 5.1 |
| 질병, 약 복용 등 의사의 권유로 | 5.2 | 4.2 | 5.6 |
| 함몰유두로 아이가 젓을 빨지 못해서 | 0.1 | - | 0.1 |
| 동생의 임신 또는 출산으로 인해 | 2.4 | 1.3 | 2.9 |
| 아이의 건강과 영양을 위해서 | 0.9 | 0.3 | 1.1 |
| 기타 | 2.6 | 0.5 | 3.6 |
| 계 | 100.0 | 100.0 | 100.0 |
| χ^2 | | 270.14 ^{***} | |

주: 전년도 조사 시 이미 모유 수유를 중단한 경우는 해당되지 않은 질문임. 이에 전체 아동에 대해 적용할 수 없으므로 중단비교를 하지 않았음.

*** $p < .001$.

나. 부모특성

1) 인구학적 특성

부모의 인구학적인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부모의 연령, 결혼 상태, 결혼 기간, 부모의 국적 및 귀화 여부, 부모의 종교, 부모의 동거여부 및 비동거 사유에 대해서 살펴보고, 조사항목을 어머니의 취업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

다. 또한 비교가 가능한 문항에 대하여 1차년도부터 3차년도까지 종단자료결과를 비교 분석하였다. 한국아동패널 아동의 부모 연령은 어머니의 경우 평균 32.79세, 아버지는 35.60세로 나타났다.

〈표 II-1-14〉 부모 연령

| 구분 | 평균 | 표준편차 | 최소 | 최대 |
|-----|-------|------|----|----|
| 어머니 | 32.79 | 3.64 | 21 | 48 |
| 아버지 | 35.60 | 3.94 | 21 | 51 |

어머니의 결혼상태는 98.9%가 초혼으로 현재 배우자가 있으며, 재혼 0.7%, 이혼 0.3%, 별거 0.1%순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결혼 상태에 대한 1~3차년도 조사결과를 종단적으로 비교해보면, 유배우 상태는 1~3차년도 모두 99.6%로 변화가 없었으나, 유배우 재혼상태가 차지하는 비율이 약간 줄어든 것을 알 수 있으며, 별거는 0.1%로 변화가 없었다. 이혼 상태는 미미하지만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므로, 추적 조사를 통하여 이혼률의 변화를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표 II-1-15〉 어머니 결혼 상태

| 구분 | 1차년도 | 2차년도 | 3차년도 |
|--------|-------|-------|-------|
| 유배우 초혼 | 98.7 | 98.9 | 98.9 |
| 유배우 재혼 | 0.9 | 0.7 | 0.7 |
| 별거 | 0.1 | 0.1 | 0.1 |
| 이혼 | 0.0 | 0.2 | 0.3 |
| 사별 | - | - | - |
| 미혼 | 0.2 | 0.1 | 0.0 |
| 계 | 100.0 | 100.0 | 100.0 |

주: 1차년도 일반조사에서는 어머니, 아버지 모두가 응답하도록 되어있었으나, 2차년도 부터는 어머니에게만 결혼 상태를 물음.

어머니의 결혼기간은 평균 5.74년이었다. 어머니의 결혼기간은 최소 1년 이내 부터 최장 23년까지 분포되어 있었다.

〈표 II-1-16〉 어머니 결혼기간

단위: 년

| 구분 | 평균 | 표준편차 | 최소 | 최대 |
|----|------|------|------|-------|
| 전체 | 5.74 | 2.95 | 0.67 | 22.58 |

주: 초혼이 아닌 경우 가장 최근의 결혼 상태를 기준으로 함.

부모의 국적은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가 어머니 99.7%, 아버지 99.7%로 대다수이며, 이 중 어머니 2.6%, 아버지 0.7%는 외국 국적 소유자였으나 대한민국으로 귀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1-17〉 부모 국적 및 귀화 여부

단위: %

| 구분 | | 어머니 | 아버지 |
|-------|-------------|-------|-------|
| 국적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99.7 | 99.7 |
| | 외국 국적 소지자 | 0.3 | 0.3 |
| | 계 | 100.0 | 100.0 |
| 귀화 여부 | 귀화함 | 2.6 | 0.7 |
| | 귀화하지 않음 | 97.4 | 99.3 |
| | 계 | 100.0 | 100.0 |

주: 귀화 및 외국 국적 소지자의 경우 한국어가 불가능한 경우 조사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응답 사례수가 소수이므로 결과를 전체 모집단에 일반화하기 어려움.

종교가 있는 어머니는 53.6%였으며, 아버지는 43.4%로 나타났다. 종교가 있는 부모를 대상으로 어떤 종교를 믿는지 조사한 결과, 개신교가 어머니 42.4%, 아버지 41.6%로 가장 많았고 불교는 어머니 29.3%, 아버지 32.2%로 다음으로 많았다. 천주교는 어머니 26.2%였으며, 아버지 23.7%였으며, 원불교, 증산교 등의 기타 종교를 믿는 부모는 어머니 2.2%, 아버지 2.6%로 나타났다.

〈표 II-1-18〉 부모 종교

단위: %

| 구분 | | 어머니 | 아버지 |
|-------|----|-------|-------|
| 종교 유무 | 있음 | 53.6 | 43.4 |
| | 없음 | 46.8 | 56.6 |
| | 계 | 100.0 | 100.0 |

| 구분 | | 어머니 | 아버지 |
|----|-----------------|-------|-------|
| 종교 | 불교 | 29.3 | 32.2 |
| | 기독교(개신교) | 42.4 | 41.6 |
| | 기독교(천주교) | 26.2 | 23.7 |
| | 유교 | 0.1 | 0.5 |
| | 원불교 | 0.3 | 0.7 |
| | 증산교(대순진리회, 증산도) | 0.3 | - |
| | 천도교 | 0.7 | 0.7 |
| | 기타 | 0.8 | 0.7 |
| | 계 | 100.0 | 100.0 |

어머니와 아버지가 가족과 함께 살고 있는 동거 여부와 직장, 학업 등의 사유로 함께 살고 있지 않은 경우 그 이유에 대해 조사하였다.

우선 가족과 함께 살지 않는 경우는 어머니 3.7%, 아버지 4.5%로 나타났으며, 나머지는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함께 거주하지 않는 사유는 어머니의 경우 어머니 본인이 타 지역에 근무 중인 경우가 88.9%로 대다수였으며, 별거인 경우 2.7%, 학업관계 2.4%로 응답되었다. 아버지는 본인이 타지역에 근무 중이어서 가족과 함께 거주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90.7%였으며, 학업상의 이유가 3.9%, 별거 2.1%, 군복무로 인한 비동거와 장기입원/요양으로 인한 비동거가 각각 0.7%로 응답되었다.

1·2·3차년도 조사결과를 종단적으로 살펴보면, 어머니의 비동거가 1차년도 1.6%, 2차년도 2.5%, 3차년도 3.7%로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 반면, 아버지의 비동거는 1차년도 4.3%에서 2차년도 4.1%로 감소하였다가 3차년도 4.5%로 다시 소폭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었다.

비동거 이유를 종단적으로 살펴보면, 어머니와 아버지 모두 '타지역에 근무 중'이라는 응답의 비율이 1~3차년도 동안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학업관계와 별거로 인한 비동거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경향이 있었고, 2차년도에는 군복무로 인한 비동거도 보고되었다. 아버지의 경우, 어머니와는 달리 1·2차년도에는 학업관계로 인한 비동거는 보고되지 않았고 1·2·3차년도 모두 군복무, 장기입원 및 별거로 인한 비동거가 고루 응답되었다. 즉, 부모가 가족과 떨어져 지내게 되는 이유는 타지역에 근무중인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를 제외하고는 어머니의 경우 학업관계로 인해 가족과 떨어져 사는 경우가 많으며, 아버지는 학업관계보다는 군복무 및 입원 등의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해 가족과 떨어져 사는 경우가 많음을 알 수 있었다.

〈표 II-1-19〉 부모의 가족과의 동거 여부 및 비동거 사유

단위: %

| 구분 | | 1차년도 | | 2차년도 | | 3차년도 | |
|-----------|------------------|-------|-------|-------|-------|-------|-------|
| | | 어머니 | 아버지 | 어머니 | 아버지 | 어머니 | 아버지 |
| 동거 여부 | 동거 | 98.4 | 95.7 | 97.5 | 95.9 | 96.3 | 95.5 |
| | 비동거 | 1.6 | 4.3 | 2.5 | 4.1 | 3.7 | 4.5 |
| | 계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 비동거 사유 | 타지역(해외 포함)에 근무 중 | 88.7 | 90.4 | 93.3 | 97.3 | 88.9 | 90.7 |
| | 학업관계 | 4.5 | - | 4.9 | - | 2.4 | 3.9 |
| | 군복무 | - | 1.0 | 1.8 | - | - | 0.7 |
| | 장기입원/요양 | - | 2.8 | - | - | - | 0.7 |
| | 별거 | 3.8 | 5.0 | - | - | 2.7 | 2.1 |
| | 기타 | 3.1 | 0.8 | - | 2.7 | 6.0 | 1.9 |
| | 계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부모의 최종학력은 4년제 대학교 졸업인 어머니 40.1%, 아버지 45.1%로 가장 많으며, 전문대학졸 이상인 경우가 어머니 71.3%, 아버지 74.5%로 고등교육을 받은 부모가 과반수를 상회하였다. 최종학력 고졸인 경우는 어머니 28.0%, 아버지 24.7%이며, 고졸 미만의 학력은 부모 모두 1%에 못 미치는 소수로 나타났다.

〈표 II-1-20〉 어머니 학력

단위: %

| 구분 | 3차년도 | 3차년도 모 취업 | |
|--------------|-------|----------------------|-------|
| | | 취업모 | 비취업모 |
| 무학 | 0.0 | 0.1 | - |
| 초등학교 졸업 | 0.0 | - | 0.1 |
| 중학교 졸업 | 0.5 | 0.3 | 0.6 |
| 고등학교 졸업 | 28.0 | 18.5 | 32.7 |
| 대학(2·3년제) 졸업 | 25.5 | 26.8 | 24.9 |
| 대학교 졸업 | 40.1 | 44.4 | 38.0 |
| 대학원 졸업(석사) | 5.4 | 9.1 | 3.6 |
| 대학원 졸업(박사) | 0.3 | 0.7 | 0.1 |
| 계 | 100.0 | 100.0 | 100.0 |
| χ^2 | | 54.49 ^{***} | |

*** $p < .001$.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라 부모의 학력이 차이가 있는지를 χ^2 검증한 결과, 부모의 학력은 어머니 취업여부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전문대졸 이상의 학력인 어머니 비율이 취업모집단에서 더 높았으며, 고졸 이하의 학력을 가진 어머니의 비율은 비취업모 집단에서 더 높았다. 특히, 고졸인 어머니의 비율은 비취업모 집단에서는 32.7%인데 반해 취업모인 경우는 18.5%에 불과하였다(표 II-1-20 참조).

아버지의 학력 역시 어머니의 학력과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표 II-1-21 참조). 취업모와 비취업모 모든 집단에서 대졸 이상 학력자가 가장 많았지만, 비취업모 집단에서 고졸인 아버지의 비율이 27.7%로 취업모 집단의 고졸 아버지 18.5%에 비해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반대로 대졸 이상 학력자는 취업모 집단에서는 62.1%인데 반해 비취업모 집단은 54.3%로 절반을 약간 상회하였다.

〈표 II-1-21〉 아버지 학력

단위: %

| 구분 | 3차년도 | 3차년도 모 취업 | |
|--------------|-------|-----------|-------|
| | | 취업모 | 비취업모 |
| 무학 | 0.0 | - | 0.0 |
| 초등학교 졸업 | - | - | - |
| 중학교 졸업 | 0.8 | 0.4 | 0.9 |
| 고등학교 졸업 | 24.7 | 18.5 | 27.7 |
| 대학(2·3년제) 졸업 | 18.4 | 18.9 | 18.1 |
| 대학교 졸업 | 45.1 | 49.9 | 42.8 |
| 대학원 졸업(석사) | 10.1 | 11.1 | 9.6 |
| 대학원 졸업(박사) | 0.9 | 1.1 | 0.9 |
| 계 | 100.0 | 100.0 | 100.0 |
| χ^2 | | 16.91* | |

* $p < .05$.

2) 건강 특성

부모의 건강과 관련된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부모의 1, 2급 장애 여부 및 희귀난치성 질환, 음주, 흡연에 대해 살펴보고, 조사항목을 어머니의 취업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또한 1차년도부터 3차년도 까지 자료를 종단적으로 비교하여 살펴보았다.

가) 장애 및 희귀난치성 질환

3차년도 조사에서 어머니에게 1, 2급 이상의 중증도 장애가 있는 경우는 0.3%이며(표 II-1-22 참조), 희귀난치성 질환에 대해서는 전체 조사 대상 어머니에서 0.1%가 앓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표 II-1-23 참조).

〈표 II-1-22〉 어머니 장애

단위: %

| 구분 | 종단비교 | | | 3차년도 모 취업 | |
|----|-------|-------|-------|-----------|-------|
| | 1차년도 | 2차년도 | 3차년도 | 취업모 | 비취업모 |
| 있음 | 0.4 | 0.2 | 0.3 | 0.3 | 0.3 |
| 없음 | 99.6 | 99.8 | 99.7 | 99.7 | 99.7 |
| 계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주: 빈도수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증이 불가함.

〈표 II-1-23〉 어머니 희귀난치성 질환 여부

단위: %

| 구분 | 종단비교 | | | 3차년도 모 취업 | |
|----|-------|-------|-------|-----------|-------|
| | 1차년도 | 2차년도 | 3차년도 | 취업모 | 비취업모 |
| 있음 | 0.1 | - | 0.1 | 0.2 | - |
| 없음 | 99.9 | 100.0 | 99.0 | 99.8 | 100.0 |
| 계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주: 빈도수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증이 불가함.

아버지의 경우 0.5%가 1, 2급 이상의 중증도 장애를 갖고 있었으며(표 II-1-24 참조), 희귀난치성 질환에 대해서는 전체 조사 대상 아버지에게서는 나타나지 않았다(표 II-1-25 참조).

〈표 II-1-24〉 아버지 장애

단위: %

| 구분 | 종단비교 | | | 3차년도 모 취업 | |
|----|-------|-------|-------|-----------|-------|
| | 1차년도 | 2차년도 | 3차년도 | 취업모 | 비취업모 |
| 있음 | 0.4 | 0.5 | 0.5 | 0.3 | 0.5 |
| 없음 | 99.6 | 99.5 | 99.5 | 99.7 | 99.5 |
| 계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주: 빈도수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증이 불가함.

〈표 II-1-25〉 아버지 희귀난치성 질환 여부

| 구분 | 1차년도 | 2차년도 | 3차년도 |
|----|-------|-------|-------|
| 있음 | 0.3 | 0.1 | - |
| 없음 | 99.7 | 99.9 | 100.0 |
| 계 | 100.0 | 100.0 | 100.0 |

주: 빈도수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증이 불가함.

나) 음주

부모를 대상으로 평상시 음주 빈도에 대해 조사한 결과, 어머니의 38.3%가 최근 1년간 마시지 않았다고 응답하였으며, 월 1회 이하라고 응답한 어머니가 35.0%로 나타났다. 월 2~4회 음주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21.9%로 나타났으며, 주 2~3회라고 응답한 어머니는 4.3%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취업 여부에 따른 어머니의 음주 빈도를 χ^2 검정한 결과, 두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어머니의 음주 빈도의 경우 취업모가 비취업모에 비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1-26〉 어머니의 음주 여부 및 빈도

| 구분 | 종단비교 | | | 3차년도 모 취업 | |
|---------------|----------|-------|-------|-----------|-------|
| | 1차년도 | 2차년도 | 3차년도 | 취업모 | 비취업모 |
| 최근 1년간 마시지 않음 | - | - | 38.3 | 32.2 | 41.3 |
| 월 1회 이하 | 36.2 | 35.8 | 35.0 | 38.9 | 33.2 |
| 월 2~4회 | 53.1 | 54.7 | 21.9 | 23.1 | 21.4 |
| 주 2~3회 | 10.4 | 9.4 | 4.3 | 5.3 | 3.7 |
| 거의 매일 | 0.3 | 0.1 | 0.6 | 0.5 | 0.4 |
| 계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 | χ^2 | | | 14.89** | |

주: 1) 1·2차년도 조사 시에는 '음주 여부'를 먼저 질문하였음.

2) 음주 여부에 '마시지 않음'으로 응답한 비율은 1차년도 전체 응답자의 41.5%, 2차년도 전체 응답자의 35.2%였으며, '평소에 마시나 임신, 수유 등으로 마시지 않음'으로 응답한 비율도 1차년도 41.5%, 2차년도 24.0%에 해당하였음.

** $p < .01$.

어머니의 1회 음주 시 음주량에 대해 60.3%가 1잔 또는 2잔에 응답하였으며, 3잔 또는 4잔 마신다는 응답이 26.8%로 나타났다. 10잔 이상 마신다고 응답한 비율도 1.4%이었다(표 II-1-27 참조). 어머니의 취업 여부에 따른 어머니의 음주

시 주량의 차이를 χ^2 검증을 한 결과, 두 집단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취업모의 경우 1회 음주 시 주량이 비취업모에 비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1-27〉 어머니의 음주 시 주량

단위: %

| 구분 | 종단비교 | | | 3차년도 모 취업 | |
|-------------|----------|-------|-------|-----------|-------|
| | 1차년도 | 2차년도 | 3차년도 | 취업모 | 비취업모 |
| 1잔 또는 2잔 | 54.6 | 47.9 | 60.3 | 53.6 | 62.6 |
| 3잔 또는 4잔 | 28.1 | 28.9 | 26.8 | 31.1 | 25.1 |
| 5잔 또는 6잔 | 11.5 | 16.0 | 8.4 | 11.1 | 7.7 |
| 7잔 또는 9잔 | 2.9 | 5.2 | 3.0 | 3.1 | 2.3 |
| 10잔 또는 그 이상 | 2.8 | 2.1 | 1.4 | 1.0 | 2.2 |
| 계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 | χ^2 | | | 12.10* | |

* $p < .05$.

3차년도에 처음 조사된 부모의 과음 빈도는 어머니의 경우 1회 음주 시 한 번의 술좌석에서 5잔 이상 또는 맥주 3캔 정도의 과음 빈도는 48.3%가 전혀 없다고 응답하였으며, 한 달에 1번 미만 과음한다는 응답이 31.9%로 나타났다. 거의 매일 과음을 한다고 응답한 비율도 0.3%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취업 여부에 따른 어머니의 음주 시 과음에 따른 빈도를 χ^2 검증한 결과, 두 집단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어머니의 1회 음주 시 과음 횟수는 취업모의 경우 비취업모에 비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1-28〉 어머니의 과음 빈도

단위: %

| 구분 | 3차년도 | 3차년도 모 취업 | |
|------------|----------|-----------|---------|
| | | 취업모 | 비취업모 |
| 전혀 없음 | 48.3 | 40.9 | 50.7 |
| 한달에 1번 미만 | 31.9 | 36.5 | 29.9 |
| 한달에 1번 정도 | 12.9 | 16.1 | 12.2 |
| 1주일에 1번 정도 | 6.6 | 6.2 | 6.7 |
| 거의 매일 | 0.3 | 0.3 | 0.4 |
| 계 | 100.0 | 100.0 | 100.0 |
| | χ^2 | | 11.43** |

주: 3차년도 조사에서 추가된 문항임.

** $p < .01$.

아버지의 음주 빈도를 살펴보면, 월 2~4회 음주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37.6%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주 2~3회라고 응답한 경우는 26.2%, 월 1회 이하라고 응답한 아버지가 18.4%로 나타났다. 아버지의 9.9%가 최근 1년간 마시지 않았다고 응답하였으며, 거의 매일이라고 응답한 아버지도 7.9%로 응답되었다. 어머니의 취업 여부에 따른 아버지의 음주 빈도를 χ^2 검증한 결과, 두 집단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표 II-1-29〉 아버지의 음주 빈도

단위: %

| 구분 | 종단비교 | | | 3차년도 모 취업 | |
|------------------|-------|-------|-------|-----------|-------|
| | 1차년도 | 2차년도 | 3차년도 | 취업모 | 비취업모 |
| 최근 1년간 전혀 마시지 않음 | - | - | 9.9 | 10.4 | 9.9 |
| 월 1회 이하 | 11.1 | 11.8 | 18.4 | 16.5 | 18.8 |
| 월 2~4회 | 52.0 | 50.5 | 37.6 | 41.1 | 37.3 |
| 주 2~3회 | 32.1 | 32.2 | 26.2 | 23.8 | 27.1 |
| 거의 매일 | 4.8 | 5.5 | 7.9 | 8.2 | 6.9 |
| 계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 χ^2 | | | | 5.12 | |

주: 1·2차년도 조사 시에는 '음주 여부'를 먼저 질문하였으며, 1차년도 전체 응답자의 21.0%, 2차년도 전체 응답자의 21.4%는 '마시지 않음'으로 응답하였음.

조사대상 아버지의 음주 시 주량은 술의 종류에 상관없이 5잔 또는 6잔 마신다는 응답이 23.0%로 가장 많았으며, 3잔 또는 4잔이 21.2%, 10잔 또는 그 이상 마신다는 응답이 21.1%의 순으로 나타났다(표 II-1-30 참조). 아버지의 음주 시 주량에 경우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른 차이를 χ^2 검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표 II-1-30〉 아버지의 음주 시 주량

단위: %

| 구분 | 종단비교 | | | 3차년도 모 취업 | |
|-------------|-------|-------|-------|-----------|-------|
| | 1차년도 | 2차년도 | 3차년도 | 취업모 | 비취업모 |
| 1잔 또는 2잔 | 6.4 | 6.1 | 14.1 | 13.5 | 14.9 |
| 3잔 또는 4잔 | 16.8 | 16.8 | 21.2 | 24.3 | 21.0 |
| 5잔 또는 6잔 | 21.0 | 22.8 | 23.0 | 19.5 | 24.1 |
| 7잔 또는 9잔 | 26.9 | 26.4 | 20.7 | 19.1 | 20.7 |
| 10잔 또는 그 이상 | 28.8 | 27.9 | 21.1 | 23.5 | 19.2 |
| 계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 χ^2 | | | | 8.75 | |

3차년도에서 처음 조사된 아버지의 1회 음주 시 한 번의 술좌석에서 7잔 이상 또는 맥주 5캔 정도의 과음 빈도는 전체의 13.9%가 전혀 없음에 응답하였으며, 한 달에 1번 정도 마신다는 응답이 32.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거의 매일 과음을 한다고 응답한 비율도 6.7% 응답되었다(표 II-1-31 참조). 어머니의 취업 여부에 따른 아버지의 음주 시 과음에 빈도 차이를 χ^2 검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표 II-1-31〉 아버지의 과음 빈도

단위: %

| 구분 | 3차년도 | 3차년도 모 취업 | |
|------------|-------|-----------|-------|
| | | 취업모 | 취업모 |
| 전혀 없음 | 13.9 | 15.7 | 12.8 |
| 한달에 1번 미만 | 20.2 | 18.5 | 21.5 |
| 한달에 1번 정도 | 32.3 | 33.3 | 31.7 |
| 1주일에 1번 정도 | 26.9 | 25.8 | 27.6 |
| 거의 매일 | 6.7 | 6.7 | 6.5 |
| 계 | 100.0 | 100.0 | 100.0 |
| χ^2 | | 4.16 | |

주: 3차년도 조사에서 추가된 문항임.

다) 흡연

부모의 흡연 여부 및 니코틴 중독여부를 알아보았다. 어머니의 경우 1.1%를 제외하고는 현재 담배를 피우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표 II-1-32 참조), 흡연자의 56.3%는 니코틴 중독이 있는 것으로 응답되었다(표 II-1-33 참조). 어머니의 취업 여부에 따른 어머니의 니코틴 중독 정도를 χ^2 검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표 II-1-32〉 어머니의 흡연 여부

단위: %

| 구분 | 중단비교 | | | 3차년도 모 취업 | |
|------------------|-------|-------|-------|-----------|-------|
| | 1차년도 | 2차년도 | 3차년도 | 취업모 | 비취업모 |
| 피움 | 0.7 | 1.0 | 1.1 | 1.4 | 0.9 |
| 피우지 않음 | 97.3 | 99.0 | 98.9 | 98.6 | 99.1 |
| 임신, 모유수유로 피우지 않음 | 1.9 | na | na | na | na |
| 계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주: 1) 빈도수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증이 불가함.

2) na는 당해 연도 질문지에 포함되지 않은 응답을 의미함.

〈표 II-1-33〉 어머니의 니코틴 중독 정도

단위: %

| 구분 | 중단비교 | | | 3차년도 모 취업 | |
|----------------|-------|-------|-------|-----------|-------|
| | 1차년도 | 2차년도 | 3차년도 | 취업모 | 비취업모 |
| 중독 아님(0점) | 4.4 | 42.7 | 43.7 | 16.7 | 36.4 |
| 매우 낮은 수준(1~2점) | 36.6 | 14.3 | 16.7 | - | 36.4 |
| 낮은 수준(3~4점) | 40.4 | 18.6 | 25.2 | 50.0 | 18.2 |
| 중간 수준(5점) | - | 7.6 | - | - | - |
| 높은 수준(6~7점) | - | 16.9 | 14.4 | 33.3 | 9.1 |
| 계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 χ^2 | | | | 5.32 | |

아버지의 흡연 여부 및 니코틴 중독 정도를 살펴보면, 전체 아버지의 51.9%가 흡연자였으며, 비흡연자는 48.1%였다. 1차년도 흡연율 53.5%, 2차년도 흡연율 52.8%, 3차년도 흡연율 51.9%로, 매해 아버지의 흡연율이 줄어들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표 II-1-34 참조).

〈표 II-1-34〉 아버지의 흡연 여부

단위: %

| 구분 | 중단비교 | | | 3차년도 모 취업 | |
|----------|-------|-------|-------|-----------|-------|
| | 1차년도 | 2차년도 | 3차년도 | 취업모 | 비취업모 |
| 피움 | 53.5 | 52.8 | 51.9 | 50.6 | 52.0 |
| 피우지 않음 | 46.5 | 47.2 | 48.1 | 49.4 | 48.0 |
| 계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 χ^2 | | | | 0.29 | |

〈표 II-1-35〉 아버지의 니코틴 중독 정도

단위: %

| 구분 | 중단비교 | | | 3차년도 모 취업 | |
|-----------------|-------|-------|-------|-----------|-------|
| | 1차년도 | 2차년도 | 3차년도 | 취업모 | 비취업모 |
| 중독 아님(0점) | 15.5 | 15.5 | 15.4 | 4.3 | 15.4 |
| 매우 낮은 수준(1~2점) | 31.9 | 29.7 | 26.7 | 29.4 | 23.8 |
| 낮은 수준(3~4점) | 27.9 | 30.3 | 30.5 | 26.5 | 31.4 |
| 중간 수준(5점) | 11.1 | 7.3 | 10.6 | 11.8 | 11.6 |
| 높은 수준(6~7점) | 11.1 | 14.4 | 13.9 | 14.7 | 15.4 |
| 매우 높은 수준(8~10점) | 2.5 | 2.8 | 2.9 | 3.3 | 2.4 |
| 계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 χ^2 | | | | 4.51 | |

한편, 흡연 아버지의 약 15.4%는 니코틴에 중독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30.5%는 낮은 수준, 26.7%는 매우 낮은 수준의 니코틴 중독 상태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취업 여부에 따른 아버지의 흡연 여부 및 니코틴 중독 정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표 II-1-35 참조).

3) 아버지 특성

아버지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3차년도 아버지의 근로특성에 대해 살펴보고, 조사항목을 어머니의 취업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또한 1차년도부터 3차년도까지 자료를 종단적으로 비교하여 살펴보았다.

가) 근로특성

아버지의 근로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취업/학업 상태에 대해 조사하였다. 무급 가족 종사자의 경우에는 주당 18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만 포함하도록 하였고, 집안일과 가사를 도맡아 하는 경우에는 무직으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아버지는 전체의 97.5%가 취업중이라고 응답하였고, 학생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0.3%, 무직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2.1%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취업 여부에 따른 아버지의 취업/학업상태를 χ^2 검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표 II-1-36〉 아버지 취업/학업 상태

| 구분 | 종단비교 | | | 3차년도 모 취업 | |
|---------|----------|-------|-------|-----------|-------|
| | 1차년도 | 2차년도 | 3차년도 | 취업모 | 비취업모 |
| 취업중 | 98.5 | 98.1 | 97.5 | 97.5 | 97.5 |
| 학업중 | 0.4 | 0.3 | 0.3 | 0.7 | 0.2 |
| 미취학/미취업 | 1.1 | 1.6 | 2.1 | 1.9 | 2.3 |
| 계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 | χ^2 | | | 3.48 | |

주: 시간제 혹은 가족 사업의 경우 주 18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만 취업중으로 제한하였음.

일을 하고 있는 아버지를 대상으로 직업을 한국표준직업분류 제6차 개정판을 기준으로 분류하였다(표 II-1-37 참조). 아버지의 직업은 사무 종사자 27.4%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가 25.1%,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종사자가 13.7%의 순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취업 여부에 따른 아버지의 직업(대분류 기준)을 χ^2 검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즉, 취업모의 남편들이 비취업모의 남편들보다 전문직이나 사무직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기능직과 장치·기계조작 관련 직종에는 비취업모의 남편들이 취업모의 남편들보다 더 많이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1-37〉 아버지 직업(대분류 기준)

단위: %

| 구분 | 종단비교 | | | 3차년도 모 취업 | |
|----------------------|-------|-------|-------|-----------|-------|
| | 1차년도 | 2차년도 | 3차년도 | 취업모 | 비취업모 |
| 관리자(1) | 10.6 | 6.9 | 5.5 | 5.4 | 5.5 |
|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2) | 24.1 | 26.2 | 25.1 | 26.0 | 22.4 |
| 사무 종사자(3) | 30.8 | 26.3 | 27.4 | 28.3 | 26.4 |
| 서비스 종사자(4) | 4.7 | 4.8 | 4.5 | 6.2 | 4.0 |
| 판매 종사자(5) | 8.9 | 7.5 | 9.3 | 9.7 | 8.9 |
| 농업어업숙련 종사자(6) | 1.4 | 1.0 | 1.3 | 0.4 | 1.8 |
| 기능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7) | 9.8 | 13.9 | 10.4 | 9.6 | 11.6 |
|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8) | 8.2 | 9.8 | 13.7 | 11.4 | 16.8 |
| 단순노무 종사자(9) | 1.5 | 2.1 | 1.0 | 0.7 | 1.4 |
| 군인(A) | - | 1.6 | 1.8 | 2.2 | 1.2 |
| 계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 χ^2 | | | | 23.88** | |

주: 통계청의 한국표준직업분류 제6차 개정판을 기준으로 소분류(3자리)까지 작업하였으나, 기초분석에서는 대분류의 분석결과만 제시함.

** $p < .01$.

〈표 II-1-38〉 아버지 종사상 지위

단위: %

| 구분 | 종단비교 | | | 3차년도 모 취업 | |
|------------|-------|-------|-------|-----------|-------|
| | 1차년도 | 2차년도 | 3차년도 | 취업모 | 비취업모 |
| 정규직/상용직 | 81.9 | 83.6 | 72.4 | 73.5 | 72.5 |
| 비정규직 중 임시직 | 4.2 | 3.5 | 2.7 | 3.0 | 2.9 |
| 비정규직 중 일용직 | 2.2 | 2.7 | 2.8 | 2.0 | 3.3 |
| 고용주/자영업자 | - | 10.3 | 20.7 | 20.3 | 20.4 |
| 무급가족 종사자 | - | 0.0 | 1.1 | 1.1 | 0.4 |
| 기타 | 11.7 | 0.0 | 0.4 | 0.2 | 0.2 |
| 계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 χ^2 | | | | 5.56 | |

아버지의 종사상의 지위는 정규직/상용직이 72.4%로 가장 많았으며, 고용주/자영업자 20.7%, 비정규직 종사자는 임시직 2.7%, 일용직 2.8%로 나타났다. 어머니 취업여부 따른 아버지의 종사상 지위를 χ^2 검증한 결과, 두 집단 간에는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표 II-1-38 참조).

일을 하고 있는 아버지를 대상으로 주당 총 근로 또는 학업시간에 할애하는 시간과 출퇴근/등하교에 소요되는 시간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일주일 평균 52.77시간동안 일 또는 학업을 하고(표 II-1-39 참조), 출퇴근/등하교에 소요되는 시간은 평균 5.22시간으로 나타났다(표 II-1-40 참조). 어머니의 취업 여부에 따른 아버지의 근로/학업 시간의 차이를 t 검증 하여 분석한 결과, 두 집단 간에는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표 II-1-39〉 아버지 주당 총 근로/학업 시간

단위: 시간

| 구분 | 종단비교 | | | 3차년도 모 취업 | |
|------|------|-------|-------|-----------|-------|
| | 1차년도 | 2차년도 | 3차년도 | 취업모 | 비취업모 |
| 평균 | 54.5 | 51.94 | 52.77 | 53.11 | 52.49 |
| 표준편차 | 13.4 | 12.03 | 13.35 | 12.41 | 14.32 |
| t | | | | 0.90 | |

〈표 II-1-40〉 아버지 출퇴근/등하교 소요시간

단위: 개월

| 구분 | 종단비교 | | 3차년도 모 취업 | |
|------|------|------|-----------|------|
| | 2차년도 | 3차년도 | 취업모 | 비취업모 |
| 평균 | 5.54 | 5.22 | 5.15 | 4.02 |
| 표준편차 | 4.59 | 4.25 | 5.19 | 4.39 |
| t | | | | -.21 |

주: 2차년도 조사에서 추가된 문항임.

4) 어머니 특성

가) 근로 특성

어머니의 취업/학업 상태를 살펴보면, 취업 중인 어머니는 32.9%, 학업 중인 어머니는 0.2%이며, 나머지 66.9%는 미취업/미학업 상태이다. 취업 중인 어머니의 비율은 1차년도 29.2%, 2차년도 31.3%에 비해 다소 증가하였다.

〈표 II-1-41〉 어머니의 취업/학업 상태

| 단위: % | | | |
|---------|-------|-------|-------|
| 구분 | 1차년도 | 2차년도 | 3차년도 |
| 취업 중 | 29.2 | 31.3 | 32.9 |
| 학업 중 | 0.8 | 0.2 | 0.2 |
| 미취업/미학업 | 70.0 | 68.4 | 66.9 |
| 계 | 100.0 | 100.0 | 100.0 |

취업 중인 어머니의 직업은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가 47.1%로 가장 많았고, 사무 종사자 32.8%, 판매 종사자 14.7%의 순으로 나타났다. 직업별 분포 경향을 살펴본 결과, 1·2차년도와 유사하다. 주목할 만 한 점은 판매 종사자의 비율이 1차년도 8.2%에서 2차년도 19.8%로 크게 늘어난 것이다. 이 같은 경향은 다른 직업군의 비율이 1차년도에 비해 줄어든 것과는 대조적이다. 한편 2차년도에 비해 3차년도에는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사무종사자의 비율이 다소 증가하였다.

〈표 II-1-42〉 어머니 직업(대분류 기준)

| 단위: % | | | |
|-------------------|-------|-------|-------|
| 구분 | 1차년도 | 2차년도 | 3차년도 |
| 관리자 | 3.5 | - | - |
|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 45.0 | 43.1 | 47.1 |
| 사무 종사자 | 33.4 | 31.5 | 32.8 |
| 서비스 종사자 | 5.0 | 4.7 | 3.2 |
| 판매 종사자 | 8.2 | 19.8 | 14.7 |
|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 1.6 | - | 1.1 |
|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 1.4 | - | - |
| 단순노무 종사자 | 1.3 | 0.9 | 1.1 |
| 군인 | 0.7 | - | - |
| 계 | 100.0 | 100.0 | 100.0 |

주: 통계청의 한국표준직업분류 제6차 개정판을 기준으로 소분류(3자리)까지 작업하였으나, 기초분석에서는 대분류의 분석결과만 제시함.

취업모의 종사상 지위는 정규직/상용직 70.0%, 고용주/자영업자 12.7%, 비정규직 중 임시직 12.0%의 순으로 나타났다(표 II-1-43 참조). 정규직 및 상용직의 비율은 매해 감소하고 있으며, 임시직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늘어났다. 이를 통해 취업여성이 영유아기 자녀의 출산과 양육 과정에서 고용상태가 지속적으로 불안정함을 알 수 있다.

〈표 II-1-43〉 어머니 종사상 지위

단위: %

| 구분 | 1차년도 | 구분 | 2차년도 | 3차년도 |
|------------|-------|------------|-------|-------|
| 정규직/상용직 | 86.0 | 정규직/상용직 | 80.8 | 70.0 |
| 비정규직 중 임시직 | 4.9 | 비정규직 중 임시직 | 7.4 | 12.0 |
| 비정규직 중 일용직 | 1.4 | 비정규직 중 일용직 | 2.4 | 1.6 |
| 기타 | 7.7 | 고용주/자영업자 | 7.3 | 12.7 |
| | | 무급 가족종사자 | 2.1 | 3.8 |
| 계 | 100.0 | | 100.0 | 100.0 |

주: 고용주/자영업자, 무급 가족종사자 보기는 2차년도 부터 제시되었으며, 1차년도 조사에서는 기타로 응답되었음.

나) 취업 중인 어머니 특성

어머니의 일주일 평균 근로시간은 42.31시간으로 주 5일 근무를 가정하면, 1일 평균 하루 8.46시간을 근무시간으로 할애하고 있었다(표 II-1-44 참조). 1차년도 어머니의 근로시간은 출퇴근 시간을 포함하여 43.76시간이었다. 출퇴근 시간을 제외한 근무시간의 경우 2차년도는 42.17시간으로 3차년도에는 다소 증가하였으나 큰 차이는 없었다.

〈표 II-1-44〉 어머니 주 평균 근로시간

단위: 시간

| 구분 | 1차년도 | 2차년도 | 3차년도 |
|------|-------|-------|-------|
| 평균 | 43.76 | 42.17 | 42.31 |
| 표준편차 | 12.45 | 11.99 | 10.13 |

주: 1차년도 조사에서는 근무시간에 출퇴근 시간이 포함되었으며, 2차년도 조사부터는 출퇴근 시간을 제외하였음.

주당 평균 출퇴근 소요시간은 4.18시간이며, 4.60시간이었던 2차년도에 비해 다소 줄어들었다.

〈표 II-1-45〉 어머니 주 평균 출/퇴근 소요시간

단위: 시간

| 구분 | 2차년도 | 3차년도 |
|------|------|------|
| 평균 | 4.60 | 4.18 |
| 표준편차 | 3.84 | 3.83 |

주: 2차년도 조사에서 추가된 문항임.

현재 휴직 중인 어머니의 비율은 6.9%로 1차년도 28.8%, 2차년도 12.3%에 비해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표 II-1-46〉 어머니 현재 직업 상태

단위: %

| 구분 | 1차년도 | 2차년도 | 3차년도 |
|------|-------|-------|-------|
| 재직 중 | 71.2 | 87.7 | 93.1 |
| 휴직 중 | 28.8 | 12.3 | 6.9 |
| 계 | 100.0 | 100.0 | 100.0 |

주: 1·2차년도 조사에서는 재직 중인 상태를 일하던 직장으로 복귀, 새로운 직장에 취업으로 나누어 조사하였음.

한편 3차년도 현재, 휴직 중인 어머니를 대상으로 그 사유를 조사한 결과, 2008년 출생한 패널 아동의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있는 어머니의 비율은 33.4%이며, 후속 출산으로 인한 출산/육아휴직을 사용 중인 어머니는 64.2%, 기타의 사유로 휴직중인 경우는 2.4%였다.

〈표 II-1-47〉 휴직 중인 어머니의 휴직 사유

단위: %

| 구분 | 전체 |
|--------------------|-------|
| 패널 아동의 육아휴직 | 33.4 |
| 후속 출산으로 인한 출산/육아휴직 | 64.2 |
| 기타 | 2.4 |
| 계 | 100.0 |

주: 3차년도 조사에서 추가된 문항임.

휴직 중인 어머니의 향후 직장으로의 복귀 계획에 관한 1·2·3차년도 조사 결과는 <표 II-1-48>과 같다. 3차년도 조사 당시 휴직 중인 어머니 중 직장으로 복귀할 것이라고 응답한 어머니의 비율은 71.9%였으며, 복귀할 생각이 없다는 비율은 7.6%이고,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비율은 20.5%였다.

1·2·3차년도 조사를 비교해 보면, 휴직 중인 취업모 중 복귀하겠다는 비율은 점점 감소하였으며, 복귀하지 않겠다는 비율은 증가하는 추세이다. 또한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2차년도 9.1%에서 3차년도 20.5%로 크게 늘어 취업모가 일과 가정의 양립 등의 문제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표 II-1-48〉 휴직 중 어머니의 향후 직장으로의 복귀 계획

단위: %

| 구분 | 1차년도 | 2차년도 | 3차년도 |
|------------|-------|-------|-------|
| 복귀할 계획임 | 97.2 | 83.8 | 71.9 |
| 복귀할 생각이 없음 | 2.8 | 7.1 | 7.6 |
| 잘 모르겠음 | na | 9.1 | 20.5 |
| 계 | 100.0 | 100.0 | 100.0 |

주: na는 당해 연도 설문지에 포함되지 않은 문항을 의미함.

한편 3차년도에는 현재 재직 중인 어머니를 대상으로 지난 1년간 휴직을 했는지에 대해 조사하였다. 그 결과 휴직 경험이 있는 어머니의 비율은 16.8%에 불과하였다(표 II-1-49 참조). 휴직 사유는 패널 아동 육아휴직이 73.1%였으며, 후속 출산으로 출산/육아휴직을 사용했다는 어머니의 비율은 18.0%를 차지하였다(표 II-1-50 참조).

〈표 II-1-49〉 현재 재직 중인 어머니의 지난 1년간 휴직 여부

단위: %

| 구분 | 비율 |
|-----------------|-------|
| 지난 1년간 휴직 경험 있음 | 16.8 |
| 지난 1년간 휴직 경험 없음 | 83.2 |
| 계 | 100.0 |

주: 3차년도 조사에서 추가된 문항임.

〈표 II-1-50〉 현재 재직 중인 어머니의 지난 1년간 휴직 사유

단위: %

| 구분 | 비율 |
|--------------------|-------|
| 패널 아동 육아휴직 | 73.1 |
| 후속 출산으로 인한 출산/육아휴직 | 18.0 |
| 기타 | 8.9 |
| 계 | 100.0 |

주: 3차년도 조사에서 추가된 문항임.

현재 취업 중인 어머니를 대상으로 지난 1년간 직장 또는 직위가 변경되었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전체의 90.0%가 변동이 없다고 응답하였으며, 6.8%는 이직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II-1-51 참조).

〈표 II-1-51〉 지난 1년간 직장 또는 직위 변경 여부

| 단위: % | |
|------------------|-------|
| 구분 | 비율 |
| 변경 없음 | 90.0 |
| 직장은 그대로이나 직위가 바뀜 | 3.2 |
| 직장이 바뀜 | 6.8 |
| 계 | 100.0 |

이직 사유는 출산 및 육아에 장애가 없는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라는 응답이 16.9%로 가장 많아, 일과 가정의 양립이 직접적인 이직 사유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고용상태 등이 보다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라는 응답이 14.2%, 생활터전과 가까운 일자리를 찾기 위해 이직하였다는 응답이 13.4%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응답으로는 회사의 지방 이전 또는 자영업의 시작 등이 있었다(표 II-1-52 참조).

〈표 II-1-52〉 지난 1년간 이직한 사유

| 단위: % | |
|----------------------------|-------|
| 구분 | 비율 |
| 고용상태 등이 보다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기 위해 | 14.2 |
|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일자리를 찾기 위해 | 7.0 |
| 장래의 발전가능성이 높은 일자리를 찾기 위해 | 9.8 |
| 자신의 능력이나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찾기 위해 | 6.9 |
| 임금 또는 수입이 많은 일자리를 찾기 위해 | 9.4 |
| 출산 및 육아에 장애가 없는 일자리를 찾기 위해 | 16.9 |
| 근무환경이 안전한 일자리를 찾기 위해 | 9.9 |
| 나의 생활터전과 가까운 일자리를 찾기 위해 | 13.4 |
| 기타 | 12.6 |
| 계 | 100.0 |

취업 중인 어머니의 향후 계획은 현 직장에 계속 근무할 것이라고 응답한 어머니는 94.9%이고, 그만 둘 것이라는 어머니는 2.6%, 이직을 계획 중인 어머니는 1.6%로 나타났다(표 II-1-53 참조).

향후 취업 계획에 대한 조사 연도별 결과 추이는 계속 근무할 계획이라는 응답이 1차년도 94.0%에 비해 2차년도에 96.1%로 조금 증가하였다가 3차년도에 다시 94.9%로 줄어들었다. 반대로 일을 그만 둘 계획이라는 비율은 1차년도

2.5%에서 2차년도로 넘어가며 1.7%로 다소 줄었다가, 3차년도 2.6%로 다시 증가하였다. 한편 이직하고자 하는 비율은 1차년도 3.5%에 비해 2차년도 1.5%로 절반가량 줄었으며, 3차년도에는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다.

〈표 II-1-53〉 향후 취업 계획

단위: %

| 구분 | 1차년도 | 2차년도 | 3차년도 |
|------------------|-------|-------|-------|
| 현 직장에 계속 근무할 계획임 | 94.0 | 96.1 | 94.9 |
| 이직할 계획임 | 3.5 | 1.5 | 1.6 |
| 일을 그만 둘 계획임 | 2.5 | 1.7 | 2.6 |
| 기타 | - | 0.8 | 0.9 |
| 계 | 100.0 | 100.0 | 100.0 |

직장을 그만 두거나 이직하려는 이유는 <표 II-1-54>에서 보는바와 같다. 기타를 제외하고 패널아동 동생의 임신 또는 출산 때문이라는 응답이 22.3%로 가장 많았으며, 아이를 맡길 만큼 보수가 넉넉지 않아서라는 응답이 18.3%, 직장생활과 아이양육을 병행하는 것이 힘들어서가 15.5%, 아이를 믿고 맡길 곳이 없어서 9.7%였다.

1·2·3차년도 조사 결과 추이를 보면, 직장생활과 아이양육을 병행하기 힘들다는 사유가 점차 감소하였다는 점에서 아이가 자람에 따라 일과 가정 양립에의 부담감은 어느 정도 줄어든 반면, 아이를 믿고 맡길 곳이 없어서, 혹은 아이를 맡길 만큼 보수가 넉넉지 않아서라는 응답이 각각 9.7%, 18.3%로 전체의 28%를 차지하여 여전히 대리양육에 대한 어려움이나 부담이 여성의 취업에 걸림돌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1차년도에서 2차년도로 가면서 25.0%에서 7.7%로 현격히 줄었던 대리양육에 대한 부담에 관한 문제는 3차년도에 18.3%로 다시 크게 늘어났으며, 믿고 맡길 만한 서비스의 부재 또한 지속적으로 비율이 늘어나고 있다. 또한 아이를 직접 돌보고 싶다는 응답 비율은 3차년도에 3.3%로 2차년도 27.1%에 비해 현저히 감소하여 생후 1년까지의 시기를 매우 중요시하여 다른 사람이나 기관에 맡기기보다는 직접 키우고 싶어함을 알 수 있다.

즉, 대리양육서비스 이용에 대한 주요 결정요인이 믿을만한 보육서비스의 존재여부와 이용 가능성의 여부도 있겠지만, 아이의 발달과정과 관련된 어머니의 욕구이므로, 여성의 경제참가율을 지속적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1년 이상의 육아 휴직 확대가 더 효율적임을 알 수 있다.

〈표 II-1-54〉 직장을 그만두거나 이직하려는 이유

단위: %

| 구분 | 1차년도 | 2차년도 | 3차년도 |
|-----------------------------|-------|-------|-------|
| 아이로 인한 직장에서의 분위기 또는 불이익 때문에 | 7.8 | 3.1 | 2.6 |
| 아이를 믿고 맡길 곳이 없어서 | 5.1 | 8.8 | 9.7 |
| 아이를 맡길 만큼 보수가 넉넉지 않아서 | 25.0 | 7.7 | 18.3 |
| 직장생활과 아이양육을 병행하는 것이 힘들어서 | 29.8 | 26.4 | 15.5 |
| 아이를 직접 돌보고 싶어서 | 18.2 | 27.1 | 3.3 |
| 가족이 원해서 | 2.0 | 4.6 | 4.9 |
| 동생 임신 또는 출산으로 | na | na | 22.3 |
| 기타 | 12.1 | 22.2 | 23.4 |
| 계 | 100.0 | 100.0 | 100.0 |

주: na는 당해 연도 질문지에 포함되지 않은 응답을 의미함.

취업 중인 어머니의 직무만족도를 임금근로자와 비임금근로자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우선 임금근로자의 전반적인 직무만족도는 5점 척도에 3.68점이고, 항목별로 모두 3점 이상이다. 가장 낮은 항목은 복리후생에 관한 것으로 3.43점이고, 가장 높은 항목은 취업의 안정성 3.86점, 의사소통 및 인간관계 3.84점, 업무 내용 3.82점이다(표 II-1-55 참조).

임금근로자의 직무만족도는 항목별로 다소 차이가 있으나 1차년도에서 2차년도로 넘어가며 다소 감소했다가 3차년도에서는 1차년도에는 못 미치지만, 다소 높아졌다.

〈표 II-1-55〉 임금근로자의 항목별 직무만족도

단위: 점

| 구분 | | 1차년도 | 2차년도 | 3차년도 |
|------------|------|------|------|------|
| 전반적인 직무만족도 | 평균 | 3.70 | 3.64 | 3.68 |
| | 표준편차 | 0.60 | 0.61 | 0.59 |
| 임금 또는 소득 | 평균 | 3.53 | 3.44 | 3.50 |
| | 표준편차 | 0.81 | 0.81 | 0.76 |
| 취업의 안정성 | 평균 | 3.98 | 3.82 | 3.86 |
| | 표준편차 | 0.72 | 0.71 | 0.69 |
| 업무내용 | 평균 | 3.90 | 3.83 | 3.82 |
| | 표준편차 | 0.70 | 0.67 | 0.64 |
| 근로환경 | 평균 | 3.89 | 3.75 | 3.75 |
| | 표준편차 | 0.74 | 0.74 | 0.71 |
| 근로시간 | 평균 | 3.75 | 3.69 | 3.65 |
| | 표준편차 | 0.92 | 0.82 | 0.80 |

| 구분 | | 1차년도 | 2차년도 | 3차년도 |
|-------------|------|------|------|------|
| 개인의 발전가능성 | 평균 | 3.65 | 3.55 | 3.62 |
| | 표준편차 | 0.83 | 0.81 | 0.74 |
| 의사소통 및 인간관계 | 평균 | 3.98 | 3.83 | 3.84 |
| | 표준편차 | 0.59 | 0.62 | 0.64 |
| 인사고과의 공정성 | 평균 | 3.58 | 3.56 | 3.55 |
| | 표준편차 | 0.71 | 0.76 | 0.77 |
| 복리후생 | 평균 | 3.64 | 3.48 | 3.43 |
| | 표준편차 | 0.84 | 0.87 | 0.89 |

3차년도 조사에서 비임금근로자의 전반적인 직무만족도는 3.75점이고, 항목별로 살펴보면, 근로시간이 3.62점으로 가장 낮고, 만족도가 높은 항목은 업무내용 3.87점, 근로환경 3.78점, 의사소통 및 인간관계 3.77점의 순으로 나타났다(표 II-1-56 참조). 전반적으로 임금근로자에 비해 만족도가 높지만 취업의 안정성, 근로시간, 의사소통 및 인간관계 항목은 임금근로자에 비해 다소 점수가 낮았다. 1·2·3차년도 연구결과를 비교해보면, 임금근로자가 대체로 2차년도에서 만족도가 떨어졌던 것과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다만, 임금 또는 소득에 대한 만족도는 시간이 지날수록 높아지고, 의사소통 및 인간관계 만족도는 점차 떨어지고 있었다.

〈표 II-1-56〉 비임금근로자의 항목별 직무만족도

단위: 점

| 구분 | | 1차년도 | 2차년도 | 3차년도 |
|-------------|------|------|------|------|
| 전반적인 직무만족도 | 평균 | 3.70 | 3.52 | 3.75 |
| | 표준편차 | 0.62 | 0.76 | 0.59 |
| 임금 또는 소득 | 평균 | 3.43 | 3.47 | 3.64 |
| | 표준편차 | 0.89 | 0.77 | 0.78 |
| 취업의 안정성 | 평균 | 3.67 | 3.50 | 3.76 |
| | 표준편차 | 0.80 | 0.76 | 0.72 |
| 업무내용 | 평균 | 3.92 | 3.69 | 3.87 |
| | 표준편차 | 0.63 | 0.76 | 0.68 |
| 근로환경 | 평균 | 3.79 | 3.51 | 3.78 |
| | 표준편차 | 0.69 | 1.03 | 0.74 |
| 근로시간 | 평균 | 3.68 | 3.58 | 3.62 |
| | 표준편차 | 0.85 | 0.93 | 0.85 |
| 개인의 발전가능성 | 평균 | 3.71 | 3.65 | 3.75 |
| | 표준편차 | 0.85 | 0.90 | 0.75 |
| 의사소통 및 인간관계 | 평균 | 3.89 | 3.81 | 3.77 |
| | 표준편차 | 0.75 | 0.69 | 0.67 |

임금근로자와 비임금근로자를 나누지 않고 전반적인 직무만족도를 비교해 보아도 마찬가지로 전반적인 직무만족도는 1차년도 3.68점에서 2차년도 3.63점으로 다소 떨어졌다(표 II-1-57 참조). 그러나 3차년도에는 3.69점으로 1차년도에 비해서 올라간 것을 알 수 있었다.

각 연도의 사회적 요인이 작용할 수 있겠지만, 자녀를 낳아 기르면서 취업 활동을 지속적으로 참가함에 따라 어려움을 겪으며 직무 만족도도 떨어졌으나, 3년차에 들어서면서 어느 정도 안정을 되찾고 종전 수준을 회복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다.

〈표 II-1-57〉 전반적인 직무 만족도

단위: 점

| 구분 | 1차년도 | 2차년도 | 3차년도 |
|------|------|------|------|
| 평균 | 3.68 | 3.63 | 3.69 |
| 표준편차 | 0.63 | 0.63 | 0.59 |

다) 학업 중인 어머니 특성

3차년도 조사에서 학업 중이라고 응답한 어머니 중 90.5%는 학업에 복귀, 또는 신규 입학하여 재학 중이고 9.5%만 휴학 중이었다(표 II-1-58 참조).

〈표 II-1-58〉 어머니의 학업 상태

단위: %

| 구분 | 1차년도 | 2차년도 | 3차년도 |
|------|-------|-------|-------|
| 재학 중 | 38.4 | 92.4 | 90.5 |
| 휴학 중 | 61.6 | 7.6 | 9.5 |
| 계 | 100.0 | 100.0 | 100.0 |

주: 학업 중인 어머니의 응답 사례수가 소수(n=3)이므로 결과를 모집단에 일반화하기 어려움.

주당 평균 학업에 할애하는 시간은 평균 24.96시간이었다(표 II-1-59 참조). 1차년도에서 등하교 시간을 포함하고도 11.08시간에 불과했던 반면, 2차년도에서는 26.72시간으로 대폭 늘어났으며, 3차년도에서는 24.96시간으로 다소 줄었다. 그러나 학업 중인 어머니의 응답 사례수가 소수이므로 조사 결과를 모집단에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표 II-1-59〉 주당 평균 학업 시간

단위: 시간

| 구분 | 1차년도 | 2차년도 | 3차년도 |
|------|-------|-------|-------|
| 평균 | 11.08 | 26.72 | 24.96 |
| 표준편차 | 11.31 | 10.91 | 11.37 |
| 최소 | 2 | 5 | 15 |
| 최대 | 50 | 40 | 40 |

- 주: 1) 1차년도 조사에서는 '등하교 시간 포함'으로 조사됨.
 2) 학업 중인 어머니의 응답 사례수가 소수(n=3)이므로 결과를 모집단에 일반화하기 어려우며, 이에 '통학시간', '지난 1년간 휴학기간'에 해당하는 응답은 별도의 분석을 제시하지 않음.

라) 미취업/미학업 어머니 특성

현재 직장이거나 학교에 다니지 않는 어머니 중 44.0%는 결혼 후 현재까지 직장 또는 학교에 다닌 적이 없었고, 28.3%는 대상 아동 임신 중에 그만 둔 것으로 나타났다. 임신 전에 그만 둔 경우도 18.8%였으며 출산 후에 그만 둔 경우는 9.0%이었다(표 II-1-60 참조).

〈표 II-1-60〉 일 또는 학업 중단 시기

단위: %

| 구분 | 3차년도 |
|------------------------------|-------|
| 결혼 후 지금까지 직장 또는 학교에 다닌 적이 없음 | 44.0 |
| 패널 아동 임신 전에 그만 둔 | 28.3 |
| 패널 아동 임신 중에 그만 둔 | 18.8 |
| 패널 아동 출산 후에 그만 둔 | 9.0 |
| 계 | 100.0 |

일 또는 학업을 그만 둔 시기를 임신 중 그만 둔 사람과 출산 후 그만 둔 사람을 나누어 평균을 낸 결과 임신 중에 그만 둔 경우 평균시기는 임신 5.3개월에 그만둔 것으로 나타났으며, 출산 후에는 13.49개월에 그만둔 것으로 응답되었다(표 II-1-61 참조).

〈표 II-1-61〉 임신 중/출산 후 일 또는 학업 중단 시기

단위: 개월

| 구분 | 임신 중 | 출산 후 |
|------|------|-------|
| 평균 | 5.30 | 13.49 |
| 표준편차 | 2.81 | 7.57 |
| 최소 | 1 | 1 |
| 최대 | 10 | 29 |

일 또는 학업을 그만 둔 당시의 취업 또는 학업 상태를 보면 직장에 복귀한 뒤 그만 둔 비율이 57.3%로 가장 많았고, 육아휴직 중 그만 둔 어머니의 비율은 23.0%, 출산휴가 중 그만 둔 사람은 8.7%이었다(표 II-1-62 참조).

〈표 II-1-62〉 일 또는 학업 중단 시기의 취업/학업 상태

| 구분 | 3차년도 | |
|--------|-------|--|
| | 단위: % | |
| 학업에 복귀 | 1.2 | |
| 출산휴가 중 | 8.7 | |
| 육아휴직 중 | 23.0 | |
| 직장에 복귀 | 57.3 | |
| 기타 | 9.8 | |
| 계 | 100.0 | |

임신 중 또는 출산 후에 그만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사유를 조사한 결과 3차년도 조사에서는 아이를 직접 돌보고 싶어서라는 응답이 35.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아이를 믿고 맡길 곳이 없어서 19.3%, 동생의 임신 또는 출산 때문이라는 응답이 15.3%의 순으로 나타났다(표 II-1-63 참조).

〈표 II-1-63〉 임신 중/출산 후 일 또는 학업 중단 이유

| 구분 | 중단 비교 | | | 패널아동 생후 12개월 이후 중단자 |
|---------------------------------|-------|-------|-------|---------------------------|
| | 1차년도 | 2차년도 | 3차년도 | |
| 직장에서의 분위기 또는 불이익 때문에 | 7.2 | 3.6 | 1.1 | 1.0 |
| 아이를 믿고 맡길 곳이 없어서 | 23.3 | 24.0 | 19.3 | 23.2 |
| 아이를 맡길 만큼 보수가 넉넉하지 않아서 | 6.2 | 1.0 | 1.5 | - |
| 직장/학교생활과 아이 양육을 병행하는 것이 힘들어서 | 12.2 | 12.1 | 9.7 | 7.7 |
| 아이를 직접 돌보고 싶어서 | 40.0 | 46.4 | 35.7 | 28.5 |
| 가족이 원해서 | 4.8 | - | 1.8 | 1.0 |
| 다른 일자리나 공부를 시작하기 위해 | na | 3.4 | 3.5 | 5.7 |
| 건강상의 이유로 | na | 1.0 | 2.7 | 4.4 |
| 직장사정으로 | na | 6.9 | 1.5 | 1.1 |
| 동생의 임신 또는 출산으로 | na | 1.8 | 15.3 | 15.9 |
| 기타 | 6.3 | - | 7.7 | 11.2 |
| 계 | 100.0 | 100.0 | 100.0 | 100.0 |

중단 사유를 조사차수별로 살펴보면 아이를 직접 돌보고 싶어서라는 응답이 1·2·3차년도 전반에 걸쳐 가장 많았으며, 아이를 믿고 맡길 곳이 없어서 역시 지속적으로 주요한 중단 사유로 나타났다. 또한 3차년도에서는 동생의 임신 또는 출산 때문에 중단하려는 응답 비율이 15.3%로 전년도에 비해 크게 늘었다.

한편 3차년도 조사에 포함된 중단 사유에는 1·2차년도에 그만 둔 어머니의 응답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생후 12개월 이후 일 또는 학업을 중단한 어머니만을 선택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아이를 직접 돌보고 싶어서 중단했다는 응답이 28.5%로 2차년도 조사에 비해서 큰 폭으로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아이를 믿고 맡길 곳이 없어서라는 응답은 23.2%로 전년도에 비해 여전히 높았다. 아이 외의 요인이 다소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육아로 인한 요인이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저하에 주요 원인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어머니의 향후 취업 계획은 계획이 없다는 응답이 여전히 64.8%로 가장 많았고, 3~5년 이내가 9.9%, 1~2년 이내가 8.3%의 순이었다(표 II-1-64 참조). 1·2·3차년도 조사결과를 비교하면 향후 취업 또는 학업 계획이 없다는 응답이 64.8%로 크게 증가하였고, 1~2년 이내, 2~3년 이내, 3~5년 이내 취업하겠다는 응답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었다. 재취업 및 재학업에 대한 의지가 외부 또는 내부적인 이유로 점차적으로 줄어들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표 II-1-64〉 취업 또는 학업 계획

단위: %

| 구분 | 1차년도 | 2차년도 | 3차년도 |
|-----------|-------|-------|-------|
| 계획 없음 | 41.0 | 53.0 | 64.8 |
| 6개월 이내 | 2.7 | 3.2 | 3.6 |
| 6개월~1년 이내 | 5.2 | 5.1 | 5.4 |
| 1~2년 이내 | 13.1 | 10.2 | 8.3 |
| 2~3년 이내 | 13.1 | 9.0 | 6.4 |
| 3~5년 이내 | 22.0 | 16.3 | 9.9 |
| 5년 이후 | na | 2.2 | 0.5 |
| 기타 | 2.8 | 0.9 | 1.2 |
| 계 | 100.0 | 100.0 | 100.0 |

주: na는 당해 연도 질문지에 포함되지 않은 문항을 의미함.

다. 가구 및 가구원 특성

1) 일반적 특성

각 가구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먼저 가구의 구성원 수를 조사하였다. 가구원 수에는 비혈연 고용인이나 동거자, 혼인으로 독립한 경우는 제외하며, 현재 함께 살고 있는 식구 외에 생계, 교육 등의 이유로 떨어져 살고 있는 식구, 따로 사는 아동의 생부와 생모를 포함한다.

대상 아동을 제외한 가구 구성원 수는 평균 2.93명이었으며, 2차년도에 비해 약 0.1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른 가구원 수를 t 검증하여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표 II-1-65 참조).

〈표 II-1-65〉 가구 구성원 수 (대상 아동 제외)

| 구분 | 종단비교 | | | 3차년도 모 취업 | |
|------|------|------|------|-----------|------|
| | 1차년도 | 2차년도 | 3차년도 | 취업모 | 비취업모 |
| 평균 | 2.86 | 2.82 | 2.93 | 2.92 | 2.94 |
| 표준편차 | 0.93 | 0.92 | 0.90 | 0.91 | 0.89 |
| t | | | | -0.03 | |

가구원 구성으로는 부부와 자녀로 이루어진 가구 구성이 86.2%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조부모와 부부, 자녀로 구성된 3세대 가족이 9.3%, 조부모와 부부, 자녀와 친척으로 구성된 가구원 구성이 2.2% 순으로 나타났다(표 II-1-66 참조). 2차년도에 비해 3차년도에 조부모와 함께 사는 비율이 증가하였다. 특히 취업모가 비취업모보다 조부모와 함께 사는 가구가 더 많았으며,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취업 중인 부모를 대신해 아이를 양육하기 위해 조부모와 함께 사는 것으로 짐작해 볼 수 있다.

〈표 II-1-66〉 가구 구성

| 구분 | 종단비교 | | | 3차년도 모 취업 | |
|--------------|-------|-------|-------|----------------------|-------|
| | 1차년도 | 2차년도 | 3차년도 | 취업모 | 비취업모 |
| 부부+자녀 | 86.7 | 88.2 | 86.2 | 80.6 | 89.0 |
| 조부모+부부+자녀 | 8.9 | 7.8 | 9.3 | 13.9 | 7.0 |
| 부부+자녀+친척 | 2.1 | 1.3 | 1.6 | 1.1 | 1.9 |
| 조부모+부부+자녀+친척 | 2.3 | 2.7 | 2.2 | 3.3 | 1.7 |
| 기타(무응답 가구) | - | - | 0.6 | 1.1 | 0.4 |
| 계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 χ^2 | | | | 28.48 ^{***} | |

*** $p < 0.01$.

2) 경제적 특성

패널 가구의 경제적인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월평균 가구 소득, 금융자산, 부동산 총액, 부채, 지출에 대해 살펴보고, 조사항목을 어머니의 취업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또한 1차년도부터 3차년도까지 자료를 종단적으로 비교하여 살펴보았다.

먼저 월평균 가구 소득은 377.50만원이었고, 취업모 가구의 월평균 가구 소득은 467.07만원으로 비취업모 가구의 307.04만원보다 약 160만원이 높았다.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라 *t*검증하여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1-67〉 월평균 가구 소득

단위: 만원

| 구분 | 종단비교 | | | 3차년도 모 취업 | |
|----------|--------|--------|--------|----------------------|--------|
| | 1차년도 | 2차년도 | 3차년도 | 취업모 | 비취업모 |
| 평균 | 318.16 | 341.04 | 377.50 | 467.07 | 307.04 |
| 표준편차 | 151.93 | 305.00 | 353.09 | 317.52 | 210.74 |
| 중위값 | 300 | 300 | 300 | 400 | 280 |
| 최소 | 0 | 50 | 0 | 70 | 0 |
| 최대 | 1,300 | 7,000 | 6,000 | 4,000 | 6,000 |
| <i>t</i> | | | | 10.71 ^{***} | |

^{***} $p < .001$.

금융자산의 전체 평균은 5,838.97만원으로 조사되었으며, 비취업모가 취업모에 비해 평균 금융자산이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그 차이를 *t*검증하여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표 II-1-68〉 금융자산

단위: 만원

| 구분 | 종단비교 | | | 3차년도 모 취업 | |
|----------|----------|-----------|-----------|-----------|-----------|
| | 1차년도 | 2차년도 | 3차년도 | 취업모 | 비취업모 |
| 평균 | 3,340.16 | 3,453.99 | 5,838.97 | 5,179.34 | 5,689.46 |
| 표준편차 | 6,625.17 | 14,192.67 | 21,377.32 | 12,892.99 | 22,478.28 |
| 중위값 | 2,000 | 1,000 | 2,000 | 2,000 | 2,000 |
| 최소 | 0 | 0 | 0 | 0 | 0 |
| 최대 | 75,001 | 550,000 | 350,000 | 200,000 | 350,000 |
| <i>t</i> | | | | -0.10 | |

다음으로 전세금과 월세보증금을 포함하여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총액을 분석한 결과, 평균 23,237.66만원으로 응답하였다. 비취업모가 취업모보다 소유 부동산 총액이 조금 높은 평균치를 보였으나, *t*검증하여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표 II-1-69 참조).

〈표 II-1-69〉 소유 부동산 총액

단위: 만원

| 구분 | 중단비교 | | | 3차년도 모 취업 | |
|----------|-----------|-----------|-----------|-----------|-----------|
| | 1차년도 | 2차년도 | 3차년도 | 취업모 | 비취업모 |
| 평균 | 15,982.92 | 23,354.21 | 23,237.66 | 20,879.25 | 23,445.80 |
| 표준편차 | 23,169.31 | 62,738.08 | 50,596.81 | 39,897.58 | 51,688.23 |
| 중위값 | 9000 | 10000 | 10,000 | 12000 | 10,000 |
| 최소 | 0 | 0 | 0 | 0 | 0 |
| 최대 | 500,000 | 800,000 | 800,000 | 500,000 | 800,000 |
| <i>t</i> | | | | -0.53 | |

부채는 전체 평균 4,881만원으로 부채에 대한 월 상환금은 24.11만원으로 조사되었다. 부채는 비취업모 가구가 5,172.58만원으로 취업모 가구의 4,293.17만원보다 약 880만원이 더 많은 부채를 갖고 있었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는 않았다. 반면 월 상환금을 *t*검증하여 분석한 결과 취업모 가구가 약 10만원이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표 II-1-70〉 부채 및 월 상환금

단위: 만원

| 구분 | 중단비교 | | | 3차년도 모 취업 | | |
|----------|------|---------|----------|---------------------|----------|----------|
| | 1차년도 | 2차년도 | 3차년도 | 취업모 | 비취업모 | |
| 부채 | 평균 | 2988.80 | 3909.54 | 4881.00 | 4293.17 | 5172.58 |
| | 표준편차 | 5379.47 | 13016.13 | 21196.71 | 10778.44 | 24784.63 |
| | 중위값 | 1000 | 500 | 800 | 1000 | 500 |
| | 최소 | 0 | 0 | 0 | 0 | 0 |
| | 최대 | 50000 | 250000 | 500050 | 200000 | 500050 |
| <i>t</i> | | | | -0.46 | | |
| 월 상환금 | 평균 | 37.41 | 23.60 | 24.11 | 31.07 | 20.66 |
| | 표준편차 | 143.58 | 59.01 | 47.43 | 57.24 | 41.29 |
| | 중위값 | 5 | 0 | 0 | 5.4 | 0 |
| | 최소 | 0 | 0 | 0 | 0 | 0 |
| | 최대 | 2200 | 2000 | 600 | 500 | 600 |
| <i>t</i> | | | | 4.23 ^{***} | | |

^{***} $p < .001$.

가구 지출에 대한 조사는 소비성 지출과 비소비성 지출로 나누고, 그 중에서 패널아동을 위한 지출을 따로 조사하였다.

가구의 총 소비성 지출은 월 평균 196.48만원으로, 어머니의 취업 여부에 따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 총 소비성 지출은 1차년도부터 3차년도까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었다. 소비성 지출 중 아동을 위해 소비하는 지출은 월 평균 38.04만원이었다(표 II-1-71 참조). 취업모 가구의 아동 총 소비성 지출은 54.78만원, 비취업모 가구는 29.77만원으로 약 25만원 차이가 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또한, 1·2차년도와 비교하여 점점 감소하고 있는데, 이는 아동이 태어났을 때 지출되는 초기 양육비용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표 II-1-71〉 가구 및 아동 총 소비성 지출

단위: 만원

| 구분 | | 종단비교 | | | 3차년도 모 취업 | |
|----|----------|--------|--------|--------|-----------|---------|
| | | 1차년도 | 2차년도 | 3차년도 | 취업모 | 비취업모 |
| 가구 | 평균 | 167.72 | 187.43 | 196.48 | 230.87 | 179.51 |
| | 표준편차 | 90.64 | 197.56 | 160.89 | 143.745 | 166.11 |
| | 중위값 | 150 | 150 | 170 | 200 | 150 |
| | 최소 | 0 | 20 | 10 | 40 | 10 |
| | 최대 | 900 | 3600 | 3000 | 3000 | 3000 |
| | <i>t</i> | | | | | 6.13*** |
| 아동 | 평균 | 48.89 | 38.51 | 38.04 | 54.78 | 29.77 |
| | 표준편차 | 60.16 | 62.51 | 51.64 | 56.55 | 46.89 |
| | 중위값 | 30 | 25 | 25 | 50 | 20 |
| | 최소 | 0 | 2 | 1 | 5 | 1 |
| | 최대 | 600 | 1800 | 2000 | 2000 | 700 |
| | <i>t</i> | | | | | 9.23*** |

*** $p < .001$.

다음으로 각종 세금, 보험 등을 포함한 가구의 총 비소비성 지출은 월 평균 92.76만원으로 조사되었다. 취업모는 비취업모보다 약 44만원의 지출이 많은 것으로 응답하였고,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이는 소득에 따른 세금 등이 반영된 결과로 생각해볼 수 있다. 또한, 1·2·3차년도의 가구 총 비소비성 지출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을 위해 지출하는 총 비소비성 지출은 평균 10.71만원으로 1·2차년도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모는 월 평균 12.77만원의 아동을 위한 비소비성 지출을 하는 반면, 비취업모는 9.69만원으로 응답하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표 II-1-72〉 가구 및 아동 총 비소비성 지출

단위: 만원

| 구분 | | 종단비교 | | | 3차년도 모 취업 | |
|----|----------|-------|--------|--------|-----------|---------------------|
| | | 1차년도 | 2차년도 | 3차년도 | 취업모 | 비취업모 |
| 가구 | 평균 | 76.66 | 88.93 | 92.76 | 122.03 | 78.31 |
| | 표준편차 | 61.00 | 107.60 | 148.78 | 236.70 | 69.05 |
| | 중위값 | 60 | 70 | 70 | 90 | 60 |
| | 최소 | 0 | 1 | 0 | 4 | 0 |
| | 최대 | 600 | 2000 | 2700 | 2700 | 1600 |
| | <i>t</i> | | | | | 6.34 ^{***} |
| 아동 | 평균 | 12.43 | 11.75 | 10.71 | 12.77 | 9.69 |
| | 표준편차 | 16.48 | 30.18 | 15.71 | 17.13 | 14.86 |
| | 중위값 | 6 | 6 | 7 | 10 | 6 |
| | 최소 | 0 | 0 | 0 | 0 | 0 |
| | 최대 | 200 | 1200 | 400 | 400 | 300 |
| | <i>t</i> | | | | | 3.46 ^{**} |

** $p < .01$. *** $p < .001$.

3) 역사적 특성

지난 1년간 가족이 생활하면서 일상생활이나 아동 양육에 영향을 미칠만한 사건을 겪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가족생활사건을 알아보았다. 가족생활사건은 규범적 사건, 비규범적 사건으로 나누어 각 문항의 사건을 경험했는지에 대해 조사하였다(표 II-1-73 참조).

먼저 규범적 사건은 불경기로 인한 수입의 영향, 병원비, 의식주 비용, 자녀 교육비용 등의 지출로 인한 가계 부담, 그리고 빚, 직장 변동, 이사, 자녀의 학교 성적 등 부담이 될 만한 사건을 16개 문항으로 조사하여 해당 경험 유무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규범적 사건은 지난 1년간 평균 3.59건을 겪은 것으로 응답되었으며, 어머니의 취업 여부에 따른 통계적인 차이는 없었다.

비규범적 사건은 부모 자신 또는 가족이 겪은 사건 중 가족이나 친인척이 심하게 상해를 입거나 사망, 또는 가정폭력, 가출, 구속, 병간호 부담 등과 같은 사건을 포함한 16개의 문항으로 조사하였다. 비규범적 사건은 지난 1년간 평균 0.71건을 겪은 것으로 응답되었고, 취업모는 0.66건을 겪었고 비취업모는 0.75건으로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이는 비취업모가 가정에 할당하는 시간과 노력이 취업모에 비해 많으므로, 비규범적 사건을 더 많이 겪었을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표 II-1-73〉 가족생활사건

단위: 점

| 구분 | | 종단비교 | | | 3차년도 모 취업 | |
|------------|----------|------|------|------|-----------|------|
| | | 1차년도 | 2차년도 | 3차년도 | 취업모 | 비취업모 |
| 규범적 사건 | 평균 | 3.62 | 3.86 | 3.59 | 3.42 | 3.68 |
| | 표준편차 | 2.34 | 0.67 | 2.40 | 2.43 | 2.37 |
| | <i>t</i> | | | | -1.50 | |
| 비규범적 사건 | 평균 | 0.64 | 0.67 | 0.71 | 0.66 | 0.75 |
| | 표준편차 | 0.95 | 0.99 | 1.01 | 0.94 | 1.04 |
| | <i>t</i> | | | | -1.50** | |

** $p < .01$.

4) 사회적 특성

어머니가 가족을 제외한 다른 사회적 관계에서 정서적, 도구적, 사교적, 정보적 지원을 포함한 사회적 지원을 얼마나 받는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조사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의 <표 II-1-74>와 같다.

〈표 II-1-74〉 사회적 지원

단위: 점

| 구분 | | 종단비교 | | | 3차년도 모 취업 | |
|-----------|----------|------|------|------|-----------|------|
| | | 1차년도 | 2차년도 | 3차년도 | 취업모 | 비취업모 |
| 전체 | 평균 | 4.15 | 3.91 | 3.87 | 3.89 | 3.87 |
| | 표준편차 | 0.60 | 0.73 | 0.63 | 0.65 | 0.62 |
| | <i>t</i> | | | | 0.75 | |
| 정서적 지원 | 평균 | 4.17 | 3.89 | 3.84 | 3.84 | 3.84 |
| | 표준편차 | 0.71 | 0.86 | 0.76 | 0.76 | 0.75 |
| | <i>t</i> | | | | 0.18 | |
| 도구적 지원 | 평균 | 4.23 | 3.96 | 3.91 | 3.91 | 3.91 |
| | 표준편차 | 0.68 | 0.79 | 0.70 | 0.70 | 0.70 |
| | <i>t</i> | | | | 0.37 | |
| 여가적 지원 | 평균 | 4.09 | 3.92 | 3.90 | 3.93 | 3.89 |
| | 표준편차 | 0.68 | 0.79 | 0.68 | 0.69 | 0.67 |
| | <i>t</i> | | | | 0.94 | |
| 정보적 지원 | 평균 | 4.10 | 3.86 | 3.82 | 3.83 | 3.81 |
| | 표준편차 | 0.70 | 0.85 | 0.72 | 0.74 | 0.71 |
| | <i>t</i> | | | | 0.99 | |

지원의 분류와 관계없이 전체 사회적 지원은 5점 척도 기준에 3.87점으로 나타났다고,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털어놓고 의지하거나 함께 걱정해주는 등의 정서적 지원은 평균 3.84점으로, 돈이나 물건이 필요할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등의 도구적 지원은 평균 3.91점으로 두 지원 모두 어머니의 취업 여부에 따라 차이가 없었다.

함께 놀러가거나 시간을 보내는 등의 여가적 지원은 평균 3.90점이었고, 자녀 양육, 살림 등에 대한 정보를 주는 등의 정보적 지원은 평균 3.82점이었다. 그러나 여가적 지원, 정보적 지원 모두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라 차이가 없었다.

1·2·3차년도를 비교해보았을 때 네 가지 지원 점수 모두가 점점 감소하고 있는데, 이는 아동이 커감에 따라 사회적 지원을 덜 받고 있는 것으로 인식한다고 볼 수 있다.

5) 물리적 환경

가족이 거주하는 집의 물리적 환경을 알아보기 위하여 주택소유형태와 주거 특성을 통해 주거 안정성을 살펴보았다. 현재 살고 있는 집이 자가인 경우가 44.9%, 전세 38.5%로 전체의 89.7%가 자가나 전세의 형태로 거주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무상 주택 7.0%, 전월세(보증부 월세) 6.3%순이었다. 어머니의 취업에 따른 차이는 없었으며, 1·2차년도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II-1-75〉 주택 소유형태

| 구분 | 종단비교 | | | 3차년도 모 취업 | |
|----------------|----------|-------|-------|-----------|-------|
| | 1차년도 | 2차년도 | 3차년도 | 취업모 | 비취업모 |
| 자가 | 43.0 | 42.5 | 44.9 | 44.6 | 45.0 |
| 전세 | 42.2 | 40.8 | 38.5 | 40.1 | 37.7 |
| 전월세(보증부 월세) | 8.4 | 8.1 | 6.3 | 6.5 | 6.1 |
| 보증금 없는 월세(사글세) | 0.2 | 0.5 | 0.2 | 0.2 | 0.1 |
| 무상 | 5.7 | 7.0 | 7.0 | 6.3 | 7.4 |
| 공공임대 | - | - | 1.7 | 0.8 | 2.1 |
| 기타 | 0.5 | 1.2 | 1.5 | 1.5 | 1.5 |
| 계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 | χ^2 | | | 4.17 | |

현재 거주 중인 주택의 유형은 아파트가 73.6%로 가장 많았고, 연립주택 10.9%, 단독주택 8.3%, 다세대주택 4.7%의 순으로 나타났다. 1·2·3차년도에 걸쳐 아파트 거주 비율은 점점 늘어나고, 다세대주택 거주 비율은 줄어들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표 II-1-76 참조).

〈표 II-1-76〉 거주 중인 주택 유형

단위: %

| 구분 | 종단비교 | | | 3차년도 모 취업 | |
|---------------------------------|-------|-------|-------|-----------|-------|
| | 1차년도 | 2차년도 | 3차년도 | 취업모 | 비취업모 |
| 단독주택 | 9.1 | 7.4 | 8.3 | 7.7 | 8.6 |
| 아파트(상가아파트 포함) | 67.6 | 71.0 | 73.6 | 74.1 | 73.4 |
| 연립주택(빌라 포함) | 13.5 | 12.2 | 10.9 | 9.8 | 11.4 |
| 다세대주택(다가구주택) | 7.2 | 6.9 | 4.7 | 5.8 | 4.2 |
| 비주거용 건물 내의 주택 (상가 또는 사무실 안쪽) | 2.1 | 1.7 | 1.9 | 1.5 | 2.1 |
| 오피스텔 | 0.4 | 0.6 | 0.4 | 0.6 | 0.2 |
| 기타 | - | 0.0 | 0.2 | 0.5 | 0.1 |
| 계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 χ^2 | | | | 3.09 | |

현재 거주 중인 주택 외에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있는지에 대한 문항에서 82.9%가 없다고 답하였고, 17.1%가 있다고 답하여, 1·2차년도에 비해 거주 주택 외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는 응답의 비율이 줄어들었다(표 II-1-77 참조). 취업모의 거주 주택 외 소유 주택이 있다는 응답을 어머니의 취업 여부에 따른 차이를 χ^2 검증으로 살펴본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는데, 취업모 19.7%, 비취업모 15.8%의 비율이었다. 즉, 취업모가 비취업모 보다 거주 주택 외 소유주택이 있는 경우가 많았다.

〈표 II-1-77〉 거주 중인 주택 외 주택 소유여부

단위: %

| 구분 | 종단비교 | | | 3차년도 모 취업 | |
|----------|-------|-------|-------|-----------|-------|
| | 1차년도 | 2차년도 | 3차년도 | 취업모 | 비취업모 |
| 있음 | 22.0 | 18.8 | 17.1 | 19.7 | 15.8 |
| 없음 | 78.0 | 81.2 | 82.9 | 80.3 | 84.2 |
| 계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 χ^2 | | | | 7.07** | |

** $p < .01$.

6) 사회보장지원

국가가 생계, 주거, 교육, 의료 등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해주는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대상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지를 조사한 결과, 전체 가구의 0.7%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라고 응답하였으며, 10.0%가 차상위계층이라고 답하였다(표 II-1-78 참조).

1·2·3차년도를 비교해보았을 때, 3차년도에서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해당 없다는 가구의 비율이 줄어들었고, 차상위계층에 해당한다는 응답 비율이 늘어난 것을 알 수 있다.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라 사회보장지원을 받는 가구의 차이를 χ^2 검정으로 살펴본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취업모의 경우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없었으며, 차상위계층의 경우도 비취업모보다 적은 비율인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비취업모가 취업모보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해당자가 더 많으므로 사회보장 지원을 받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1-78〉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해당 여부

단위: %

| 구분 | 종단비교 | | | 3차년도 모 취업 | |
|-----------|----------|-------|-------|-----------|-------|
| | 1차년도 | 2차년도 | 3차년도 | 취업모 | 비취업모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1.1 | 1.1 | 0.7 | 0.0 | 1.1 |
| 차상위계층 | 2.6 | 3.9 | 10.0 | 7.5 | 11.2 |
| 해당 없음 | 96.2 | 95.0 | 89.3 | 92.5 | 87.7 |
| 계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 | χ^2 | | | 13.16** | |

** $p < .01$.

라. 지역사회 특성

아동이 살고 있는 지역의 지역사회 특성을 알아보기 위한 주거지역의 형태에 대한 조사 결과는 <표 II-1-79>에 제시하였다.

일반아파트지역이 68.9%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일반주택지역이 25.2%로 전체의 94.1%가 주거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 취업여부에 따른 주거지역 특성은 두 집단 간의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1-79〉 아동이 살고 있는 지역

단위: %

| 구분 | 종단 비교 | | | 3차년도 모 취업 | |
|----------|-------|-------|-------|-----------|-------|
| | 1차년도 | 2차년도 | 3차년도 | 취업모 | 비취업모 |
| 일반주택지역 | 32.1 | 25.9 | 25.2 | 26.3 | 24.6 |
| 일반아파트지역 | 59.5 | 66.4 | 68.9 | 68.7 | 69.0 |
| 상가/회사지역 | 4.2 | 3.0 | 2.0 | 2.3 | 1.9 |
| 공장(단)지역 | 1.0 | 1.0 | 0.7 | 0.4 | 0.8 |
| 농어가지역 | 2.6 | 3.3 | 2.9 | 1.7 | 3.5 |
| 기타 | 0.6 | 0.4 | 0.3 | 0.5 | 0.2 |
| 계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 χ^2 | | | | 6.90 | |

다음으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 자녀를 양육하기에 얼마나 적절한지에 대해 알아보기 위하여 어린이집과 유치원, 사교육기관의 충분 정도, 공공 여가 공간이나 시설, 문화시설 이용이 편리성과 안전성에 대해 조사하였다.

우선 어린이집의 충분정도에 대해 충분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38.3%로 가장 많았고, 보통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34.9%, 매우 충분하다는 응답이 11.8%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불충분하다는 의견도 15%로 상당수 있었다(표 II-1-80 참조). 5점 척도에서 평균 점수는 3.44점으로 보통보다 약간 높은 수준으로, 어린이집의 충분도에 대한 주양육자들의 인식은 보통 정도라고 볼 수 있다. 어머니의 취업 여부에 따라 t 검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표 II-1-80〉 어린이집 충분도

단위: %, 점

| 구분 | 종단 비교 | | | 3차년도 모 취업 | |
|---------|-------|-------|-------|-----------|-------|
| | 1차년도 | 2차년도 | 3차년도 | 취업모 | 비취업모 |
| 매우 불충분함 | 3.5 | 3.4 | 3.3 | 2.4 | 3.7 |
| 불충분함 | 15.7 | 12.9 | 11.7 | 12.1 | 11.6 |
| 보통임 | 25.4 | 37.1 | 34.9 | 35.5 | 34.6 |
| 충분함 | 44.2 | 36.2 | 38.3 | 37.0 | 38.9 |
| 매우 충분함 | 11.2 | 10.3 | 11.8 | 12.9 | 11.3 |
| 계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 평균 | 3.44 | 3.37 | 3.44 | 3.46 | 3.43 |
| 표준편차 | 1.00 | 0.95 | 0.96 | 0.95 | 0.96 |
| t | | | | 0.61 | |

1·2·3차년도 조사 결과를 종단 비교하면, 어린이집 충분도에 대한 만족도는 1차년도 3.44점에서 2차년도 3.37점으로 다소 낮아졌으며, 3차년도에서는 3.44점

으로 다시 높아졌다(표 II-1-80 참조). 이는 주양육자들이 만 2세경의 영아에 비해 어린 만 1세경의 영아를 맡길 만한 어린이집이 상대적으로 더 적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유치원의 충분도를 물어본 결과, 보통이라는 응답이 38.0%로 가장 많았으며 충분하다는 의견이 26.3%, 불충분하다는 의견이 21.6%의 순이었다(표 II-1-81 참조). 5점 척도에서 평균 3.03점이었으며, 1차년도 3.27점에 비해 2차년도에 2.98점으로 다소 낮아졌으며, 3차년도는 3.03점으로 2차년도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어머니의 취업 여부에 따른 집단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표 II-1-81〉 유치원 충분도

| 구분 | 종단 비교 | | | 3차년도 모 취업 | |
|----------|-------|-------|-------|-----------|-------|
| | 1차년도 | 2차년도 | 3차년도 | 취업모 | 비취업모 |
| 매우 불충분함 | 4.4 | 7.1 | 7.5 | 7.1 | 7.6 |
| 불충분함 | 19.5 | 23.2 | 21.6 | 21.8 | 21.6 |
| 보통임 | 29.4 | 39.5 | 38.0 | 35.9 | 39.0 |
| 충분함 | 38.4 | 24.8 | 26.3 | 28.2 | 25.4 |
| 매우 충분함 | 8.3 | 5.4 | 6.6 | 7.0 | 6.4 |
| 계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 평균 | 3.27 | 2.98 | 3.03 | 3.06 | 3.01 |
| 표준편차 | 1.01 | 0.99 | 1.02 | 1.03 | 1.02 |
| <i>t</i> | | | | 0.41 | |

다음으로 영어유치원이나 놀이학교, 문화센터 등의 사교육기관이 충분한지에 대해 물었다. 사교육기관 역시 유치원과 마찬가지로 보통이라는 응답이 전체의 38.0%로 가장 많았으며, 충분하다는 의견과 불충분하다는 의견이 각각 25.1%, 24.0%로 나타났다(표 II-1-82 참조). 충분도에 관한 5점 척도에서 평균 3.00점으로 보통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 취업 여부에 따라서는 취업모 3.07점, 비취업모 2.97점으로 거의 차이가 없었고, *t*검증하여 차이를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지 않았다.

사교육기관 충분도에 대한 1·2·3차년도 조사 결과를 비교하면 다른 기관에 대한 조사 결과와 마찬가지로 2차년도에 다소 줄었다가 3차년도에 거의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다. 다만 1차년도 조사에서는 충분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35.6%로 가장 많았지만, 2, 3차년도 조사에서는 다소 줄었고 보통이라는 응답이 39.2%, 38.0%로 가장 많았다.

〈표 II-1-82〉 사교육기관 충분도

| 구분 | 중단 비교 | | | 3차년도 모 취업 | |
|----------|-------|-------|-------|-----------|-------|
| | 1차년도 | 2차년도 | 3차년도 | 취업모 | 비취업모 |
| 매우 불충분함 | 4.2 | 7.0 | 6.7 | 6.9 | 6.6 |
| 불충분함 | 21.6 | 23.9 | 24.0 | 20.3 | 25.8 |
| 보통임 | 28.6 | 39.2 | 38.0 | 37.3 | 38.2 |
| 충분함 | 35.6 | 24.4 | 25.1 | 29.3 | 23.0 |
| 매우 충분함 | 10.0 | 5.6 | 6.3 | 6.1 | 6.4 |
| 계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 평균 | 3.26 | 2.98 | 3.00 | 3.07 | 2.97 |
| 표준편차 | 1.04 | 0.99 | 1.01 | 1.01 | 1.00 |
| <i>t</i> | | | | 1.65 | |

공공여가시설이나 공간 이용 편리성에 대해서는 35.3%가 편리한 편이라고 응답하였고, 매우 편리하다는 응답 9.0%를 포함하면 44.3%가 공공 여가 시설 이용이 편리하다고 응답하였다(표 II-1-83 참조). 반면 불편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매우 불편함과 불편한 편임을 포함하여 25%로, 1/4 정도가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5점 척도에서 평균은 3.22점이었으며, 2차년도 3.13점에 비해 다소 높아졌다.

어머니의 취업 여부에 따라 살펴보면, 취업모가 느끼는 편리성이 3.37점으로 비취업모 3.15점에 비해 조금 더 높았고, 두 집단 간 점수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였다. 1·2·3차년도 조사 결과를 비교해보면, 5점 척도에서 대체로 3점대 초반을 유지하고 있었으며, 편리하다는 응답과 보통이라는 응답이 대다수이었다.

〈표 II-1-83〉 공공 여가 공간/시설 이용 편리성

| 구분 | 중단 비교 | | | 3차년도 모 취업 | |
|----------|-------|-------|-------|---------------------|-------|
| | 1차년도 | 2차년도 | 3차년도 | 취업모 | 비취업모 |
| 매우 불편함 | 7.0 | 4.3 | 6.0 | 3.0 | 7.4 |
| 불편한 편임 | 23.6 | 22.0 | 19.0 | 16.0 | 20.5 |
| 보통임 | 23.3 | 28.4 | 30.7 | 31.2 | 30.4 |
| 편리한 편임 | 37.3 | 34.6 | 35.3 | 40.6 | 32.7 |
| 매우 편리함 | 9.9 | 7.7 | 9.0 | 9.2 | 8.9 |
| 계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 평균 | 3.22 | 3.13 | 3.22 | 3.37 | 3.15 |
| 표준편차 | 1.10 | 1.07 | 1.05 | 0.96 | 1.08 |
| <i>t</i> | | | | 4.00 ^{***} | |

^{***} $p < .001$.

박물관, 기념관, 미술관, 도서관 등의 문화시설 이용 편리성은 불편한 편이라는 응답이 35.5%로 가장 많았고 보통은 29.4%이었다(표 II-1-84 참조). 5점 척도로 환산한 점수는 2.55점으로 다른 항목에 비해서는 다소 낮은 편이었다.

어머니의 취업 특성에 따라 살펴보면, 취업모 집단이 2.64점, 비취업모 집단이 2.50점으로 취업모가 문화시설 이용이 조금 더 편리하다고 응답하였으며, *t*검증하여 분석한 결과 두 집단의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였다. 조사년도별로 응답 경향을 보면, 문화시설 이용 편리성에 관하여는 대체로 2.5점 전후로 다른 항목에 비해 점수가 낮았다. 전반적으로 불편하다고 한 응답이 매해 50%를 상회하고 있어 문화시설 이용에 있어서는 다소 불편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표 II-1-84〉 문화시설 이용 편리성

| 구분 | 종단 비교 | | | 3차년도 모 취업 | |
|--------|----------|-------|-------|-----------|-------|
| | 1차년도 | 2차년도 | 3차년도 | 취업모 | 비취업모 |
| 매우 불편함 | 16.7 | 18.6 | 15.8 | 12.3 | 17.6 |
| 불편한 편임 | 39.4 | 34.8 | 35.5 | 36.0 | 35.3 |
| 보통임 | 22.1 | 27.1 | 29.4 | 29.5 | 29.3 |
| 편리한 편임 | 17.6 | 17.2 | 16.5 | 19.8 | 14.9 |
| 매우 편리함 | 4.3 | 2.3 | 2.8 | 2.4 | 3.0 |
| 계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 평균 | 2.53 | 2.50 | 2.55 | 2.64 | 2.50 |
| 표준편차 | 1.09 | 1.05 | 1.03 | 1.01 | 1.04 |
| | <i>t</i> | | | 2.57* | |

* $p < .05$.

치안측면에서 자녀를 키우기에 안전한지에 대한 결과는 보통이라는 응답이 44.2%로 가장 많았고, 비교적 안전하다는 응답이 37.8%이었다. 5점 척도에서 평균 3.25점으로 치안 안정성 점수는 보통보다 약간 높았다(표 II-1-85 참조).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라 차이를 비교해 보면 취업모 3.33점, 비취업모 3.21점으로 취업모가 치안 안정성을 더 높게 평가했으며, *t*검증하여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두 집단 간 차이가 유의미하였다. 즉, 취업모가 비취업모 집단에 비해 사는 곳의 치안이 안전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1·2·3차년도 결과를 비교해 보면, 전반적으로 3.3점대의 점수를 유지하고 있지만, 1차년도 3.34점, 2차년도 3.26점, 3차년도 3.25점으로 소폭 감소하고 있었다. 특히 1차년도에는 비교적 안전하다는 응답 비율이 45.4%로 가장 많았던 반

면, 2·3차년도 부터는 보통이라는 응답이 각각 45.7%, 44.2%로 가장 많았고 비교적 안전하다는 응답과 매우 안전하다는 응답은 감소하였다.

아동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대체적으로 지역사회 치안 안정성에 대하여 안전하다기 보다는 위험하다고 판단하는 경향이 많아지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1차년도 시기에는 4, 5개월 영아로, 아동 스스로 이동할 수 없는 시기였기 때문에 치안 문제가 그리 큰 관심사가 아니다가 아동이 걸어 다니게 되고, 지역사회에서 아동의 생활반경이 점점 넓어짐에 따라 부모들이 치안에 대한 관심을 더 많이 가지게 됨으로써 위험성을 더 많이 지각하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여겨진다.

〈표 II-1-85〉 치안 안전성

단위: %, 점

| 구분 | 종단 비교 | | | 3차년도 모 취업 | |
|----------|-------|-------|-------|-----------|-------|
| | 1차년도 | 2차년도 | 3차년도 | 취업모 | 비취업모 |
| 매우 위험함 | 1.9 | 2.2 | 2.3 | 1.7 | 2.7 |
| 비교적 위험함 | 15.9 | 12.1 | 13.2 | 11.7 | 13.9 |
| 보통임 | 32.2 | 45.7 | 44.2 | 41.8 | 45.3 |
| 비교적 안전함 | 45.4 | 37.1 | 37.8 | 41.7 | 35.9 |
| 매우 안전함 | 4.6 | 2.9 | 2.5 | 3.1 | 2.2 |
| 계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 평균 | 3.34 | 3.26 | 3.25 | 3.33 | 3.21 |
| 표준편차 | 0.87 | 0.79 | 0.80 | 0.79 | 0.81 |
| <i>t</i> | | | | 2.71** | |

** $p < .01$.

안전사고 측면에서 안전한지에 대해서는 보통이라는 의견이 44.3%로 가장 많았고, 비교적 안전한 편이라는 의견이 31.8%로 나타났다(표 II-1-86 참조). 비교적 위험하거나 매우 위험하다는 응답도 22%로 상당수의 어머니가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다고 인지하고 있었다. 어머니의 취업 여부에 따른 차이는 취업모 집단이 비취업모 집단에 비해 안전사고 측면의 안정성 점수가 약간 더 높았으나, *t*검증하여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1·2·3차년도 결과를 비교해 보면, 3.1점대의 점수를 유지하고 있었으며, 대체로 점수가 낮아지고 있었다. 치안 안정성과 마찬가지로 1차년도에는 비교적 안전하다는 응답이 37.4%로 가장 많았지만 2차년도 부터는 보통이라는 응답이 2차년도 43.0%, 3차년도 44.3%로 가장 많았다. 이는 치안 안정성과 마찬가지로 아동의 연령증가와 더불어 아동의 활동성과 활동범위가 더 커짐으로서 부모들

이 아동의 안전에 더 민감해짐으로써 안전사고에 대한 위험성을 더 많이 지각하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여겨진다.

〈표 II-1-86〉 안전사고 측면 안전성

단위: %, 점

| 구분 | 종단 비교 | | | 3차년도 모 취업 | |
|----------|-------|-------|-------|-----------|-------|
| | 1차년도 | 2차년도 | 3차년도 | 취업모 | 비취업모 |
| 매우 위험함 | 3.1 | 1.9 | 3.4 | 2.0 | 4.1 |
| 비교적 위험함 | 23.2 | 19.5 | 18.6 | 18.0 | 18.9 |
| 보통임 | 32.7 | 43.0 | 44.3 | 45.0 | 44.0 |
| 비교적 안전함 | 37.4 | 33.7 | 31.8 | 32.9 | 31.3 |
| 매우 안전함 | 3.6 | 1.9 | 1.9 | 2.2 | 1.8 |
| 계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 평균 | 3.15 | 3.14 | 3.10 | 3.15 | 3.08 |
| 표준편차 | 0.92 | 0.82 | 0.84 | 0.81 | 0.85 |
| <i>t</i> | | | | 1.62 | |

각 항목별 만족도 외에 거주지역의 전반적 양육 적절성에 대해서는 보통이라는 의견이 47.7%로 가장 많았다. 긍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은 35.7%, 부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은 16.5%이었다. 5점 척도에서 평균 3.21점이었으며, 1차년도 3.22점, 2차년도 3.20점으로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다. 어머니의 취업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표 II-1-87 참조).

〈표 II-1-87〉 지역사회 전반적 양육 적절성

단위: %, 점

| 구분 | 종단 비교 | | | 3차년도 모 취업 | |
|----------|-------|-------|-------|-----------|-------|
| | 1차년도 | 2차년도 | 3차년도 | 취업모 | 비취업모 |
| 매우 좋지 않음 | 2.4 | 2.3 | 1.8 | 1.6 | 2.0 |
| 좋지 않음 | 16.6 | 15.0 | 14.7 | 13.2 | 15.4 |
| 보통임 | 42.4 | 47.1 | 47.7 | 46.5 | 48.3 |
| 좋음 | 33.9 | 31.8 | 32.3 | 34.4 | 31.3 |
| 매우 좋음 | 4.7 | 3.9 | 3.4 | 4.3 | 3.0 |
| 계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 평균 | 3.22 | 3.20 | 3.21 | 3.27 | 3.18 |
| 표준편차 | 0.86 | 0.82 | 0.80 | 0.80 | 0.80 |
| <i>t</i> | | | | 1.66 | |

지역사회의 특성에 대한 각 항목별, 그리고 전반적인 양육 적절성에 대한 결과 분석에서 알 수 있듯이 문화시설 편리성 외에는 대체로 3점에서 3.5점 사이의 수준이었으며, 전반적으로 취업모가 비취업모에 비해 더 좋게 인식하고 있었다. 특히 공공 여가 시설 및 공간, 문화시설 이용 편리성과 치안 안정성에 있어서는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실제로 취업모가 비취업모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곳에 살고 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 문화시설이나 공공시설에 대한 이용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어서 특별히 불편했던 경험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만족도가 오히려 높게 나타났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마. 위탁가구

1) 위탁여부

취업이나 건강 등의 이유로 부모가 거주하는 곳이 아닌 다른 가정에서 사는 경우, 아동이 실제 살고 있는 곳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위탁 가구에 대한 조사를 하였다. 아동이 부모와 다른 지역에 사는 경우는 전체의 1.8%에 해당되었으며, 1·2차년도에 비해 다소 감소하였고, 2차년도보다 다소 위탁 비율이 줄어든 것을 알 수 있었다. 어머니의 취업 여부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취업모의 경우 아동을 위탁한 비율은 4.8%인데 비해 비취업모는 0.3%에 불과하였다(표 II-1-88 참조).

〈표 II-1-88〉 위탁여부

| 구분 | 종단비교 | | | 3차년도 모 취업 | |
|-----|----------|-------|-------|---------------------|-------|
| | 1차년도 | 2차년도 | 3차년도 | 취업모 | 비취업모 |
| 위탁 | 2.1 | 2.5 | 1.8 | 4.8 | 0.3 |
| 비위탁 | 97.9 | 97.5 | 98.2 | 95.2 | 99.7 |
| 계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 | χ^2 | | | 6.94 ^{***} | |

*** $p < .001$.

아동을 위탁한 가구가 작년과 동일한 경우는 61.4%, 다른 가구에 위탁한 경우는 38.6%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표 II-1-89 참조).

〈표 II-1-89〉 위탁가구 변경여부

단위: %

| 구분 | 종단비교 | | 3차년도 모 취업 | |
|-----------------------|-------|-------|-----------|-------|
| | 2차년도 | 3차년도 | 취업모 | 비취업모 |
| 지난 조사 때와 동일한 가구임 | 37.3 | 61.4 | 59.0 | 80.2 |
| 지난 조사 때와 다른 가구임 | 4.8 | 38.6 | 41.0 | 19.8 |
| 지난 조사 때에는 아이를 맡기지 않았음 | 57.9 | 0.0 | 0.0 | 0.0 |
| 계 | 100.0 | 100.0 | 100.0 | 100.0 |
| χ^2 | | | 0.31 | |

주: 2차년도 조사에서 추가된 문항임.

아동이 거주하고 있는 위탁가구와 아동과의 관계를 확인해보면, 외조부모 및 이모, 외삼촌을 포함한 외가에 맡겨진 아동은 50.7%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친조부모 및 고모, 삼촌을 포함한 친가에 맡겨진 아동은 49.3%였다(표 II-1-90 참조). 이는 1·2차년도와 비교해보았을 때 유사한 경향인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II-1-90〉 아동과 위탁가구와의 관계

단위: %

| 구분 | 종단비교 | | | 3차년도 모 취업 | |
|------------------|-------|-------|-------|-----------|-------|
| | 1차년도 | 2차년도 | 3차년도 | 취업모 | 비취업모 |
| 친가 | 28.8 | 42.3 | 49.3 | 44.4 | 100.0 |
| 외가 | 63.4 | 55.5 | 50.7 | 55.6 | 0.0 |
| 베이비시터(비혈연 지인 포함) | 6.0 | - | - | - | - |
| 친조부/친조모+외조부/외조모 | 1.7 | - | - | - | - |
| 기타 | 0.0 | 2.2 | 0.0 | 0.0 | 0.0 |
| 계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 χ^2 | | | 2.14 | | |

〈표 II-1-91〉 위탁가구 지역

단위: %

| 구분 | 1차년도 | 2차년도 | 3차년도 |
|----------|-------|-------|-------|
| 일반 주택지역 | 32.1 | 25.9 | 54.2 |
| 일반 아파트지역 | 56.5 | 66.4 | 26.8 |
| 상가/회사지역 | 4.2 | 3.0 | 0.0 |
| 공장(단)지역 | 1.0 | 1.0 | 0.0 |
| 농어가지역 | 2.6 | 3.3 | 19.1 |
| 학교지역 | 0.6 | 0.4 | - |
| 계 | 100.0 | 100.0 | 100.0 |

위탁가구 지역의 입지적 특성을 조사한 결과, 일반 주택지역에 54.2%, 일반 아파트지역에 26.8%, 농어가 지역에 19.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II-1-91 참조). 1·2차년도에는 일반 아파트지역에 아동을 위탁하는 비율이 높았으나, 3차년도에는 주택지역과 농어가지역의 비율이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아동이 거주하고 있는 위탁가구 지역의 어린이집 및 유치원 충분도는 5점 척도 기준으로 조사하였다(표 II-1-92, 표 II-1-93 참조).

먼저 위탁가구 지역의 어린이집 충분도를 살펴본 결과, 보통이라는 의견이 49.8%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충분하다 28.3%, 매우 충분하다 11.9%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어린이집의 충분도는 평균 3.37점으로 나타났다. 1·2차년도와 비교해보았을 때 매우 불충분하다는 의견은 줄어들고, 매우 충분하다는 응답은 늘어났다. 평균점수 또한 1차년도 2.74, 2차년도 3.22, 3차년도 3.37로 평균 점수가 지속적으로 높게 나타나, 연령이 증가할수록 주변에 충분한 시설과 기관이 있는 곳에 위탁하고자 하는 경향을 알 수 있다.

〈표 II-1-92〉 위탁가구 지역 어린이집 충분도

단위: 점

| 구분 | 1차년도 | 2차년도 | 3차년도 |
|---------|-------|-------|-------|
| 매우 불충분함 | 25.1 | 2.0 | 5.2 |
| 불충분함 | 16.6 | 18.2 | 4.7 |
| 보통임 | 19.0 | 40.0 | 49.8 |
| 충분함 | 37.6 | 35.2 | 28.3 |
| 매우 충분함 | 1.7 | 4.6 | 11.9 |
| 계 | 100.0 | 100.0 | 100.0 |
| 평균 | 2.74 | 3.22 | 3.37 |
| 표준편차 | 1.24 | 0.87 | 0.94 |

〈표 II-1-93〉 위탁가구 지역 유치원 충분도

단위: 점

| 구분 | 1차년도 | 2차년도 | 3차년도 |
|---------|-------|-------|-------|
| 매우 불충분함 | 25.1 | 4.3 | 8.0 |
| 불충분함 | 18.8 | 19.5 | 6.4 |
| 보통임 | 32.0 | 39.9 | 40.5 |
| 충분함 | 22.4 | 30.4 | 33.1 |
| 매우 충분함 | 1.7 | 5.9 | 11.9 |
| 계 | 100.0 | 100.0 | 100.0 |
| 평균 | 2.57 | 3.14 | 3.35 |
| 표준편차 | 1.14 | 0.94 | 1.04 |

위탁가구 지역의 유치원 충분도도 어린이집 충분도와 마찬가지로 보통이라는 응답이 40.5%로 가장 많았으며, 충분함이 33.1%, 매우 충분하다가 11.9%의 순이었다(표 II-1-93 참조). 평균 점수도 3.35점으로 보통정도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는데, 1차 평균은 2.57점, 2차 평균은 3.14점으로 3차년도 조사에서 충분도에 대한 응답이 높아졌다.

사교육기관의 충분정도에 대한 응답에서는 <표 II-1-94>와 같이, 보통이라는 응답이 41.1%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충분하다는 의견이 29.4%였다. 5점 척도 평균에서 3.29점으로 1·2·3차년도에 걸쳐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1-94〉 위탁가구 지역 사교육기관 충분도

단위: 점

| 구분 | 1차년도 | 2차년도 | 3차년도 |
|---------|-------|-------|-------|
| 매우 불충분함 | 27.0 | 4.3 | 7.2 |
| 불충분함 | 14.6 | 19.5 | 10.4 |
| 보통임 | 34.7 | 39.9 | 41.1 |
| 충분함 | 23.7 | 30.4 | 29.4 |
| 매우 충분함 | 0.0 | 5.9 | 11.9 |
| 계 | 100.0 | 100.0 | 100.0 |
| 평균 | 2.55 | 3.18 | 3.29 |
| 표준편차 | 1.12 | 1.01 | 1.04 |

위탁가구 지역의 시설 이용편리성에 대한 공공여가시설 이용의 편리성을 조사한 결과, 보통이라는 응답이 34.4%, 편리한 편이라는 응답 33.5%, 불편한 편이라는 응답이 16.2%의 순으로 나타났다. 5점 만점에 평균 3.37점으로 나타났다.

〈표 II-1-95〉 위탁가구 공공 여가 공간/시설 이용편리성

단위: 점

| 구분 | 1차년도 | 2차년도 | 3차년도 |
|--------|-------|-------|-------|
| 매우 불편함 | 18.7 | 1.1 | 0.0 |
| 불편한 편임 | 12.7 | 12.1 | 16.2 |
| 보통임 | 44.1 | 29.3 | 34.4 |
| 편리한 편임 | 24.5 | 32.7 | 33.5 |
| 매우 편함 | 0.0 | 24.9 | 15.8 |
| 계 | 100.0 | 100.0 | 100.0 |
| 평균 | 2.75 | 3.68 | 3.37 |
| 표준편차 | 1.03 | 1.01 | 0.94 |

문화시설 이용의 편리성에 대한 응답은 불편한 편임이 41.2%로 가장 많았고, 편리한 편임이 19.4%, 매우 불편한 편임이 14.7%순으로 나타났다. 평균 점수는 2.73점으로 1차년도의 2.36점, 2차년도 2.67점보다 증가하였다(표 II-1-96 참조).

〈표 II-1-96〉 위탁가구 지역 문화시설 이용편리성

| 단위: 점 | | | |
|--------|-------|-------|-------|
| 구분 | 1차년도 | 2차년도 | 3차년도 |
| 매우 불편함 | 24.7 | 5.7 | 14.7 |
| 불편한 편임 | 31.6 | 53.3 | 41.2 |
| 보통임 | 26.6 | 39.6 | 12.8 |
| 편리한 편임 | 17.1 | 1.3 | 19.4 |
| 매우 편함 | 0.0 | 0.0 | 11.9 |
| 계 | 100.0 | 100.0 | 100.0 |
| 평균 | 2.36 | 2.67 | 2.73 |
| 표준편차 | 1.03 | 0.72 | 1.26 |

위탁가구 지역의 치안안전도로 지역의 안정도를 조사한 결과, 보통이라는 응답이 50.9%, 비교적 안전함이 30.0%로 나타났다. 5점 만점에서 3.55점으로 응답되어 대부분 위탁한 가구 지역의 치안이 안전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표 II-1-97〉 위탁가구 지역 치안 안전도

| 단위: 점 | | | |
|---------|-------|-------|-------|
| 구분 | 1차년도 | 2차년도 | 3차년도 |
| 매우 위험함 | 0.0 | 0.0 | 0.0 |
| 비교적 위험함 | 6.1 | 11.8 | 4.3 |
| 보통임 | 39.0 | 45.5 | 50.9 |
| 비교적 안전함 | 52.6 | 40.0 | 30.0 |
| 매우 안전함 | 2.4 | 2.6 | 14.8 |
| 계 | 100.0 | 100.0 | 100.0 |
| 평균 | 3.51 | 3.33 | 3.55 |
| 표준편차 | 0.65 | 0.72 | 0.79 |

다음으로 안전사고 측면의 안전도는 보통이 52.1%로 가장 높았고, 비교적 안전하다는 의견이 28.4% 순으로 나타났으며, 평균 3.24점으로 나타났다. 종단 비교에서는 3차년도로 갈수록 평균 점수가 줄어들고 있는데, 비교적 안전하다는 인식이 감소하고 매우 안전함과 매우 위험함이 1·2차년도에 비해 증가하였다(표 II-1-98 참조).

〈표 II-1-98〉 위탁가구 지역 안전사고 측면 안전도

단위: 점

| 구분 | 1차년도 | 2차년도 | 3차년도 |
|---------|-------|-------|-------|
| 매우 위험함 | 0.0 | 0.0 | 4.3 |
| 비교적 위험함 | 6.9 | 2.5 | 8.6 |
| 보통임 | 44.3 | 55.0 | 52.1 |
| 비교적 안전함 | 46.5 | 41.5 | 28.4 |
| 매우 안전함 | 2.4 | 1.1 | 6.6 |
| 계 | 100.0 | 100.0 | 100.0 |
| 평균 | 3.44 | 3.41 | 3.24 |
| 표준편차 | 0.66 | 0.56 | 0.86 |

위탁가구 지역의 전반적인 양육 적절성은 보통임은 60.1%, 좋음은 25.2%로 나타났다. 5점 만점에서 평균 3.46점으로 대부분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였다(표 II-1-99 참조). 또한 1·2·3차년도를 비교해보면 2차년도에 양육 적절성이 다소 감소하였지만, 3차년도까지 증가하는 경향을 볼 수 있다. 특히 1·2차년도에 비해 3차년도에 전반적으로 매우 좋다는 응답이 증가하였다.

〈표 II-1-99〉 위탁가구 지역 전반적인 양육 적절성

단위: 점

| 구분 | 1차년도 | 2차년도 | 3차년도 |
|----------|-------|-------|-------|
| 매우 좋지 않음 | 0.0 | 1.9 | 0.0 |
| 좋지 않음 | 4.8 | 12.8 | 2.8 |
| 보통임 | 57.2 | 49.3 | 60.1 |
| 좋음 | 35.6 | 27.6 | 25.2 |
| 매우 좋음 | 2.4 | 8.4 | 11.9 |
| 계 | 100.0 | 100.0 | 100.0 |
| 평균 | 3.36 | 3.28 | 3.46 |
| 표준편차 | 0.61 | 0.86 | 0.74 |

2. 아동발달 특성

가. K-ASQ(Korean-Ages & Stage Questionnaires)

1) 검사 개요

한국의 유아모니터링 체계(K-ASQ)는 발달선별검사로서 조기 중재대상의 유아를 적절한 시기에 판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검사는 발달 지연이 의심되는 영유아를 발견하고, 발견된 고위험군 영유아 집단의 발달에 대한 진단 평가를 실시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1980년대 미국의 Oregon 대학에서 개발된 ASQ는 4개월에서 60개월의 영유아에게 적용할 수 있는 도구로 원문 ASQ 2판을 한국 실정에 맞게 2006년에 전국의 영유아 3,220명을 대상으로 표준화하였다(허계형·Squires·이소영·이준식, 2006).

K-ASQ는 부모나 주 양육자가 작성하도록 설계된 19개의 질문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질문지는 간단하고 직접적인 용어로 이루어져 있다. 총 5가지 발달 영역인 의사소통(communication)영역, 대근육운동(gross motor)영역, 소근육운동(fine motor)영역, 문제해결(problem solving)영역, 개인-사회성(personal-social)영역에 각 6개씩 총 3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영유아발달의 제 영역에 대한 자료를 포괄적으로 수집할 수 있다. 30개의 점진적 문항에 대해 응답자는 자녀의 수행 정도에 따라 '예-가끔-아니오'로 나누어 표시하며, 점수는 10-5-0점으로 환산하고 각 영역별로 6개 문항에 대한 응답의 총점을 산출한다.

K-ASQ의 결과는 각 5개 영역의 점수를 선별 절선점수(cut-off point)와 비교함으로써 분석한다. 전체 아동 분포 중 5개 영역별로 평균으로부터 표준편차 2배수 영역(신뢰구간 95%)에 해당하는 2SD 기준점은 '절선점수 미만 여부'로 코딩하여 '위험발달'군⁷⁾으로, 평균으로부터 표준편차 1배수 영역(신뢰구간 68%)에 해당하는 1SD 기준점은 '의심발달 여부'로 코딩하여 '의심발달'로 명명하여 두 가지 기준을 제시하였다. 이 검사 도구는 5개 영역별로 위험발달 및 의심발달 판별을 제시하나, 아동의 발달 전반에 관한 전체적인 판별은 제시하지 않는다. 다만, 위험발달 영역 총 개수와 의심발달 영역 총 개수가 제공된다.

7) '위험발달'군이란 정상발달이 '의심발달'군 보다 더 의심스러운 집단으로, 전문가에게 진단을 받기를 권유하는 집단임.

2) 검사 결과

가) K-ASQ검사 결과의 전반적 경향

한국아동패널의 K-ASQ검사 결과는 각 영역별 위험발달과 의심발달로 추정되는 비율은 <표 II-2-1>에 제시하였다. 2SD 절선 미만을 '위험발달군'으로 분류한 결과, 5개 영역 중 의사소통영역에서 발달위험에 속하는 아동의 비율이 전체 5.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대근육 운동 영역이 2.1%, 소근육 운동이 1.8%, 문제해결 영역이 1.5%로 나타났으며, 개인-사회성 영역이 1.1%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K-ASQ검사 결과, '위험발달군'에 속하지 않는 정상발달의 비율이 전체 5개 영역 평균 97.60%로 높은 편이었다.

또한 1SD 의심발달 여부를 기준으로 '의심발달군'에 해당하는 아동을 분류한 결과, 5개 영역 중 의사소통 영역이 12.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소근육 운동이 8.9%, 개인-사회성 영역이 7.3%, 문제해결이 6.4%, 대근육운동 영역이 6.0%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위험발달군에서와 같이 함께 의사소통 영역이 12.3%의 비율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의심발달군'에 속하지 않은 비율은 전체 5개 영역에서 91.82%로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3차년도 K-ASQ검사 결과를 볼 때, 1·2차년도에 비하면 위험발달군과 의심발달군의 평균 비율은 높아졌지만, 발달 영역별로 변화가 나타났다. 유아기에 들어서면서 발달 위험성이 의사소통 영역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다른 영역들은 상대적으로 높지 않음을 알 수 있다.

1차년도 결과와 2차년도 결과의 의심발달분포를 비교해보면, 1차년도에 '위험발달군'에 속하는 비율이 1.44%이었다가 패널 아동이 1년 성장하면서 2차년도에는 '위험발달군'에 속하는 비율이 2.66%로 조금 높아졌다. 그러나 3차년도에는 다시 2.40%로 약간 낮아졌다. 한편 1차년도에는 의사소통 영역이 3.7%로 가장 위험발달군 비율이 높았던 반면, 2차년도에는 대근육운동이 5.4%, 문제해결 2.6%, 소근육운동이 2.1%로 나타나 1년 사이에 영역별 위험발달군 분포의 변화를 보였다. 3차년도에는 의사소통 영역이 5.5%로 다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전체 패널 아동 중 '의심발달군'에 속하는 비율이 1차년도에 5.48%였던 것에 비해, 2차년도에 '의심발달군'에 속한 비율은 10.66%로 다소 증가하였다가 3차년도에는 8.18%로 조금 감소하였다.

〈표 II-2-1〉 K-ASQ 영역별 위험발달·의심발달 분포

단위: %

| 구분 | 위험발달(-2SD) | | | 의심발달(-1SD) | | |
|--------|------------|------|------|------------|-------|------|
| | 1차년도 | 2차년도 | 3차년도 | 1차년도 | 2차년도 | 3차년도 |
| 의사소통 | 3.7 | 1.2 | 5.5 | 9.8 | 7.3 | 12.3 |
| 대근육운동 | 0.3 | 5.4 | 2.1 | 3.4 | 10.7 | 6.0 |
| 소근육운동 | 0.4 | 2.1 | 1.8 | 4.0 | 15.1 | 8.9 |
| 문제해결 | 1.6 | 2.6 | 1.5 | 4.4 | 12.4 | 6.4 |
| 개인-사회성 | 1.2 | 2.0 | 1.1 | 5.8 | 7.8 | 7.3 |
| 평균 | 1.44 | 2.66 | 2.40 | 5.48 | 10.66 | 8.18 |

다음으로 3차년도 K-ASQ 영역별 총점 평균을 비교한 결과, 대근육운동이 57.17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개인-사회성은 54.50점, 문제해결이 54.11점, 소근육운동이 53.25점, 의사소통 52.48점 순이었다(표 II-2-2 참조). 1차년도와 2차년도와 비교할 때 총점 평균이 대근육 운동 영역을 제외하고는 낮아졌다가 다시 3차년도로 가면서 모든 발달 영역에서 총점이 높아진 것을 알 수 있다.

〈표 II-2-2〉 K-ASQ 영역별 총점 평균 비교

단위: 점

| 구분 | 의사소통 | 대근육운동 | 소근육운동 | 문제해결 | 개인-사회성 | |
|----------|-------|-------|-------|-------|--------|-------|
| 1차년도 평균 | 53.53 | 57.10 | 54.59 | 56.02 | 54.37 | |
| 2차년도 평균 | 48.98 | 56.27 | 47.21 | 49.03 | 52.43 | |
| 3차 년도 | 평균 | 52.48 | 57.17 | 53.25 | 54.11 | 54.50 |
| | 표준편차 | 11.38 | 6.24 | 8.97 | 7.76 | 9.18 |
| | 최소 | 0 | 0 | 0 | 0 | 0 |
| | 최대 | 60 | 60 | 60 | 60 | 60 |

K-ASQ 검사결과 위험발달과 의심발달 개수별 분포는 <표 II-2-3>에서 보는 바와 같다. 위험발달 영역 총 개수 중 0개의 비율이 91.6%이고, 의심발달 영역 총 개수는 73.7%였다. 위험발달 영역 총 개수가 0개인 집단은 1차년도 94.7%에서 2차년도 90.6%로 다소 감소하였다. 이는 3차년도에 들어 91.6%로 다소 증가하였으나, 1차년도 조사 시점에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약간 낮은 비율로 나타났다. 의심발달 영역에서도 마찬가지로 총 개수가 0개인 집단은 1차년도 82.6%에서 2차년도로 68.0%로 다소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이는 3차년도에 들어 73.7%로 증가하였으나, 1차년도 조사 시점에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로 나타났다.

〈표 II-2-3〉 K-ASQ 위험발달(-2SD)·의심발달(-1SD) 개수별 분포

단위: %

| 구분 | | 0 | 1 | 2 | 3 | 4 | 5 | 계 |
|----------------|------|------|------|-----|-----|-----|-----|-------|
| 위험 발달 영역 | 1차년도 | 94.7 | 4.1 | 0.9 | 0.1 | 0.2 | - | 100.0 |
| | 2차년도 | 90.6 | 7.6 | 1.1 | 0.4 | 0.2 | 0.1 | 100.0 |
| | 3차년도 | 91.6 | 6.5 | 1.0 | 0.4 | 0.2 | 0.2 | 100.0 |
| 의심 발달 영역 | 1차년도 | 82.6 | 11.7 | 2.8 | 1.1 | 1.4 | 0.4 | 100.0 |
| | 2차년도 | 68.0 | 18.7 | 7.8 | 3.4 | 1.5 | 0.5 | 100.0 |
| | 3차년도 | 73.7 | 17.3 | 6.0 | 1.4 | 0.9 | 0.7 | 100.0 |

나)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른 K-ASQ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른 각 영역별 위험발달과 의심발달로 추정되는 비율을 살펴본 결과는 <표 II-2-4>와 <표 II-2-5>와 같다.

2SD 절선미만 '위험발달군'을 분류한 결과, 취업모인 경우 5개 영역 중 의사소통영역에서 위험발달에 속하는 아동의 비율이 전체 6.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대근육운동이 1.8%, 소근육운동과 문제해결이 각각 1.5%, 개인-사회성 영역이 1.1% 순이었다. 비취업모의 경우에도 의사소통영역 5.2%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대근육운동이 2.3%, 소근육운동이 2.0%, 문제해결이 1.4%, 개인-사회성 영역이 1.0%의 순이었다(표 II-2-4 참조).

또한 1SD 의심발달 여부를 기준으로 '의심발달군'에 해당하는 아동을 분류한 결과, 취업모인 경우 5개 영역 중 의사소통 영역에서 위험발달에 속하는 아동의 비율이 전체 13.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개인-사회성 9.3%, 소근육운동 7.1%, 문제해결 6.6%, 대근육운동이 6.1%의 순서로 나타났다. 비취업모의 경우 의사소통 11.9%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소근육운동 영역이 9.8%, 문제해결 6.3%, 개인-사회성 6.2%, 대근육운동이 5.9% 순으로 취업모와 영역별 분포비율이 다소 다르게 나타났다.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른 K-ASQ 영역별 위험발달 분포와 의심발달분포의 차이를 χ^2 검정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즉, 비취업모와 취업모 집단간 위험발달군과 의심발달군의 분포상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1·2차년도와 3차년도 결과를 비교해 보면, 먼저 2차년도에는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른 K-ASQ 영역별 위험발달 분포가 취업모, 비취업모 모두 의사소통을 제외한 4영역 소근육운동, 대근육운동, 문제해결, 개인-사회성 영역에서 비율이

증가하였다. 3차년도에는 의사소통 영역의 위험발달 분포의 비율이 증가하고 다른 영역에는 비율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표 II-2-4> 모 취업 여부에 따른 K-ASQ 영역별 위험발달(-2SD) 분포

단위: %

| 구분 | | 의사소통 | 대근육운동 | 소근육운동 | 문제해결 | 개인-사회성 |
|----------|----------|------|-------|-------|------|--------|
| 1차 년도 | 취업모 | 3.0 | - | 0.4 | 1.3 | 0.5 |
| | 비취업모 | 4.0 | 0.4 | 0.4 | 1.7 | 1.4 |
| 2차 년도 | 취업모 | 1.1 | 4.9 | 1.6 | 1.8 | 1.2 |
| | 비취업모 | 1.2 | 5.6 | 2.2 | 3.0 | 2.4 |
| 3차 년도 | 취업모 | 6.0 | 1.8 | 1.5 | 1.5 | 1.1 |
| | 비취업모 | 5.2 | 2.3 | 2.0 | 1.4 | 1.0 |
| | χ^2 | 0.50 | 1.08 | 1.44 | 0.19 | 0.02 |

한편,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른 K-ASQ 영역별 의심발달 분포는 취업모인 경우 1차년도에 비해, 2차년도에 의심발달군 분포는 의사소통 영역을 제외한 네 영역에서 모두 비율이 증가하였다. 반면, 비취업모인 경우에는 2차년도 의심발달군 분포는 1차년도 의심발달군 분포 비율에 비해 의사소통 영역의 비율은 감소한 반면, 대근육운동, 소근육운동, 문제해결 영역에서 비율이 증가하였다.

3차년도의 의심발달 분포를 2차년도와 비교하면, 취업모와 비취업모 집단 모두 의사소통 영역을 제외하고는 다른 영역에서 비율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의심발달 분포에서도 취업모와 비취업모 모두 의사소통 영역에서 13.0%와 11.9%로 전년도에 비해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는 점에서 위험발달 분포와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표 II-2-5> 모 취업 여부에 따른 K-ASQ 영역별 의심발달(-1SD) 분포

단위: %

| 구분 | | 의사소통 | 대근육운동 | 소근육운동 | 문제해결 | 개인-사회성 |
|----------|----------|------|-------|-------|------|--------|
| 1차 년도 | 취업모 | 11.5 | 3.8 | 4.6 | 4.7 | 4.8 |
| | 비취업모 | 9.0 | 3.3 | 3.7 | 4.4 | 6.3 |
| 2차 년도 | 취업모 | 6.7 | 10.0 | 12.3 | 9.8 | 7.0 |
| | 비취업모 | 7.6 | 11.0 | 16.4 | 13.6 | 8.1 |
| 3차 년도 | 취업모 | 13.0 | 6.1 | 7.1 | 6.6 | 9.3 |
| | 비취업모 | 11.9 | 5.9 | 9.8 | 6.3 | 6.2 |
| | χ^2 | 0.16 | 0.01 | 1.53 | 1.03 | 0.48 |

다음으로 K-ASQ 영역별 총점 평균을 비교한 결과는 <표 II-2-6>과 같다. 취

업모 경우에는 대근육운동이 57.08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문제해결 54.48점, 개인-사회성은 54.07점, 소근육운동 53.87점, 의사소통 52.17점 순이었다. 비취업모 경우에도 대근육운동이 57.21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개인-사회성은 54.73점, 문제해결 53.95점, 소근육운동 52.95점, 의사소통 52.65점 순이었다.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른 K-ASQ 영역별 평균을 비교한 결과, 모든 영역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즉, 취업모와 비취업모의 아동들의 발달 영역별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1차년도와 비취업모 자녀의 K-ASQ 영역별 평균을 살펴보면, 취업모와 비취업모 자녀 모두 발달 영역별 고른 발달 분포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2차년도에는 대근육운동 영역과 개인-사회성 영역을 제외하고는 낮은 평균 발달 점수로 변화하였다. 3차년도에도 대근육운동 영역, 개인-사회성과 문제해결 영역이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유지하면서 1차년도와 유사한 발달 양상으로 나타났다.

〈표 II-2-6〉 모 취업 여부에 따른 K-ASQ 영역별 총점 평균 비교

단위: 점

| 구분 | | 의사소통 | 대근육운동 | 소근육운동 | 문제해결 | 개인-사회성 | |
|----------|----------|-------|-------|-------|-------|--------|-------|
| 1차 년도 | 취업모 | 52.74 | 56.56 | 54.58 | 55.68 | 53.89 | |
| | 비취업모 | 53.37 | 57.08 | 54.61 | 56.22 | 54.41 | |
| 2차 년도 | 취업모 | 49.17 | 56.58 | 47.63 | 49.40 | 53.38 | |
| | 비취업모 | 48.90 | 56.12 | 47.00 | 48.87 | 54.41 | |
| 3차 년도 | 평균 | 취업모 | 52.17 | 57.08 | 53.87 | 54.48 | 54.07 |
| | | 비취업모 | 52.65 | 57.21 | 52.95 | 53.95 | 54.73 |
| | 표준 편차 | 취업모 | 11.85 | 5.98 | 8.37 | 7.50 | 9.05 |
| | | 비취업모 | 11.13 | 6.37 | 9.24 | 7.82 | 9.22 |
| | 최소 | 취업모 | 0 | 25 | 20 | 20 | 25 |
| | | 비취업모 | 0 | 0 | 0 | 0 | 0 |
| | 최대 | 취업모 | 60 | 60 | 60 | 60 | 60 |
| | | 비취업모 | 60 | 60 | 60 | 60 | 60 |
| | χ^2 | | -0.61 | 0.03 | 1.76 | 1.28 | 0.08 |

K-ASQ 검사결과에 의한 위험발달과 의심발달 개수별 분포를 살펴보면 <표 II-2-7>과 같다. 상대적 고위험군에 속하는 위험발달에서 0개의 비율은 취업모가 90.8%, 비취업모가 91.7%로 비취업모가 약간 더 높게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경미한 수준의 의심발달 분포에서 0개의 비율은 취업모가 73.2%, 비취업모가

73.9%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표 II-2-7〉 모 취업 여부에 따른 위험발달(-2SD)·의심발달(-1SD) 개수별 분포

단위: %

| 구분 | | | 0 | 1 | 2 | 3 | 4 | 5 | 계 | χ^2 |
|----------------|----------|------|------|------|-----|-----|-----|-----|-------|----------|
| 위험 발달 영역 | 1차 년도 | 취업모 | 95.7 | 3.5 | 0.2 | 0.2 | 0.2 | - | 100.0 | - |
| | | 비취업모 | 94.4 | 4.0 | 1.0 | 0.2 | 0.4 | - | 100.0 | |
| | 2차 년도 | 취업모 | 91.6 | 7.2 | 0.4 | 0.5 | 0.3 | - | 100.0 | - |
| | | 비취업모 | 89.1 | 8.6 | 1.4 | 0.4 | 0.4 | 0.1 | 100.0 | |
| | 3차 년도 | 취업모 | 90.8 | 7.7 | 0.6 | 0.3 | 0.5 | 0.0 | 100.0 | 3.32 |
| | | 비취업모 | 91.7 | 6.3 | 1.2 | 0.3 | 0.2 | 0.3 | 100.0 | |
| 의심 발달 영역 | 1차 년도 | 취업모 | 80.8 | 14.0 | 2.4 | 0.8 | 1.9 | 0.1 | 100.0 | 8.56 |
| | | 비취업모 | 83.3 | 10.7 | 3.6 | 1.3 | 0.7 | 0.4 | 100.0 | |
| | 2차 년도 | 취업모 | 70.7 | 19.6 | 5.6 | 2.3 | 1.2 | 0.7 | 100.0 | 11.36* |
| | | 비취업모 | 66.8 | 18.3 | 8.8 | 3.9 | 1.7 | 0.4 | 100.0 | |
| | 3차 년도 | 취업모 | 73.2 | 16.6 | 7.5 | 1.0 | 1.0 | 0.7 | 100.0 | 6.71 |
| | | 비취업모 | 73.9 | 17.6 | 5.2 | 1.6 | 0.9 | 0.8 | 100.0 | |

주: 1, 2차년도 위험발달 영역은 빈도수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증이 불가함.

* $p < .05$.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른 위험발달과 의심발달 개수별 분포에 대해 χ^2 검증하여 분석한 결과, 위험발달 영역에서 취업모와 비취업모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한편 의심발달 영역에서는 취업모와 비취업모 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기도 했다.

1차년도와 2차년도 패널의 위험발달과 의심발달 개수별 분포와 비교해보면, 1차년도 취업모의 경우에 위험발달 영역 총 개수가 0개인 비율이 95.7%이며, 의심발달 영역 총 개수가 0개 비율이 80.8%였다. 비취업모의 경우에는 위험발달 영역 총 개수가 0개인 비율이 94.4%이며, 의심발달 영역 총 개수가 0개 비율이 83.3%였다.

한편, 2차년도에는 1차년도에 비해 위험발달 영역 총 개수가 0개인 비율이 취업모 91.6%, 비취업모 89.1%로 모두 감소하였다. 의심발달 영역 총 개수 0개인 비율도 1차년도에 비해 취업모 70.7%, 비취업모 66.8%로 모두 감소하였다. 특히, 의심발달 영역은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라 유의한 집단 간 차이를 보였는데, 취업모 아동의 의심발달 영역의 총 개수 0개인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차년도에는 2차년도에 비해 취업모의 경우는 위험발달 영역 총 개수가 0개

인 비율이 감소하였으나 비취업모의 비율은 증가하였고, 의심발달 영역 총 개수 0개인 비율에 있어서는 2차년도와 비교할 때 취업모와 비취업모 모두 비슷한 비율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 한국형 Denver II

1) 검사 개요

Denver Developmental Screening Test(DDST)라고 하는 덴버검사는, 1967년 미국의 Frankenburg에 의해 1차 개발된 후, 1990년에 문제점들을 보완하여 Denver II로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다. 한국형 덴버 II는 0세부터 만 6세까지의 아동을 대상으로 해당 연령에 적합한 검사항목별로 아동의 수행정도를 측정하는 표준화된 도구이다. 덴버검사는 반복적으로 시행함으로써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하는 발달 속도나 발달의 양상을 알아보는데 유용하다. 또한 주양육자가 아닌 제 3자가 아동의 수행을 근거로 해서 이루어지는 아동-수행평가 (child performance-based evaluation)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하다.

한국형 덴버 II 검사는 개인-사회성, 미세운동-적응, 언어, 전체운동의 4개 영역을 측정하는 도구로서 아동의 발달 영역들을 포괄적으로 측정하고 있다. Denver II 검사는 본래 총 12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문화적으로 적합하지 않은 문항을 제외하고 개인-사회성 발달 영역 22문항, 미세운동 및 적응발달 영역 27문항, 언어발달 영역 34문항, 운동발달영역 27문항으로, 총 110항목으로 표준화되었다. Denver II 검사는 24개월 이하는 월별로, 그 이후는 3개월 단위로 연령이 구분되어 있다. 개인-사회성발달, 미세운동-적응발달, 언어발달, 전체 운동발달의 4개 영역에 대해 아동의 교정연령별로 연령에 해당하는 문항과 연령 이전 문항, 연령 이후 문항으로 구성된다. 즉, 표준집단의 25%만이 통과한 연령을 하한선으로, 90%가 통과한 연령을 상한선으로 하여, 연령에 따라 영역별로 실시하여야 할 문항을 결정한다.

검사 판별은 검사 아동을 해당 연령의 다른 아동들과 비교하는 과정을 통해 아동의 수행능력을 월등(advanced)-정상(normal)-주의(caution)-지연(delayed) 항목으로 구분한다. 한 항목에서라도 같은 연령대 아동의 90%가 통과한 항목을 수행하지 못할 경우 발달 '지연(delayed)'으로 분류한다. '주의(caution)' 항목은 한 항목이라도 같은 연령대 아동의 75%가 통과한 항목을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

해당된다. 최종적으로 4개 영역별로 주의 및 지연 항목수를 합산하여, '정상'과 '의심발달' 범주로 구분한다. 지연항목이 없고 주의항목이 최대 1개인 경우를 '정상' 범주로 구분하여, 1개 항목에서 지연이거나 2개 이상의 항목에서 주의인 경우에는 '의심발달' 범주로 구분한다.

2) 검사 결과

가) 덴버 검사 결과의 전반적 경향

덴버검사의 실시 후 개인-사회성발달, 미세운동 및 적응발달, 언어발달, 운동발달의 4개 영역에 대한 정상-의심발달 분포를 분석한 결과, 3차년도 한국아동패널 전체의 89.8%가 정상 범주로 구분되었으며, 10.2%가 의심스런 발달, 즉 발달지체의 위험군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II-2-8 참조).

이러한 3차년도 결과는 2차년도와 비교할 때, 정상 범주의 발달의 15.6% 증가하였고, 의심 발달의 비율은 2배나 감소하였다. 2차년도 한국아동패널 덴버 II 검사 결과를 살펴보면, 정상 74.2%, 의심스런 발달 25.8%를 보였다. 1차년도와 2차년도와 비교해 보면, 2차년도에는 1차년도에 비해 정상 발달 비율이 16.1% 감소했으며, 의심 발달 비율은 3배 증가하였다.

요약하면, 1차년도의 정상 발달 비율이 2차년도에 감소했다가 3차년도에 다시 회복되는 양상을 나타냈다. 또한 의심스런 발달의 경우도 1차년도에 비해 2차년도에는 증가했다가 3차년도에 와서는 다시 감소하는 비슷한 양상을 보여주었다.

〈표 II-2-8〉 덴버 II 최종 분포: 정상-의심발달

단위: %

| 구분 | 1차년도 | 2차년도 | 3차년도 |
|---------|-------|-------|-------|
| 정상 | 90.7 | 74.2 | 89.8 |
| 의심스런 발달 | 8.4 | 25.8 | 10.2 |
| 검사불능 | 0.9 | - | - |
| 계 | 100.0 | 100.0 | 100.0 |

덴버 II 검사 결과, 전체 주의항목개수 분포를 살펴보면, 전체의 85.8%가 주의항목개수가 0개인 것으로 나타났다(표 II-2-9 참조). 1개는 11.4%, 2개는 2.0%, 3개는 0.5%순으로 나타났다. 3차년도 패널아동의 85%이상이 주의항목이 거의 없고 정상발달 범주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1.2.3차년도의 덴버 II 검사 결과의 전체 주의항목개수 분포를 비교해 보면, 1

차년도에 비해 2차년도에 전체 주의항목개수의 분포비율이 전반적으로 증가하였다가, 다시 3차년도에 주의항목개수가 0개인 비율이 증가하면서 상대적으로 주의항목 개수가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표 II-2-9〉 덴버 II 전체 주의항목개수 분포

| 구분 | 단위: % | | | | | | | 계 |
|------|-------|------|-----|-----|-----|-----|-----|-------|
| | 0 | 1 | 2 | 3 | 4 | 5 | 6 | |
| 1차년도 | 86.8 | 10.1 | 2.2 | 0.6 | 0.3 | - | - | 100.0 |
| 2차년도 | 77.6 | 16.7 | 4.1 | 1.1 | 0.3 | 0.1 | 0.2 | 100.0 |
| 3차년도 | 85.8 | 11.4 | 2.0 | 0.5 | 0.2 | 0.0 | 0.0 | 100.0 |

덴버 II검사의 영역별 주의항목 개수 분포를 살펴보면, 각 영역별로 0개인 비율이 운동발달 99.9%, 미세운동 및 적응발달 97.7%, 개인-사회성 95.7%, 언어발달 90.1% 순으로 나타났다. 주의항목 개수 1개인 비율은 언어발달 8.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개인-사회성 3.7%, 미세운동 및 적응발달이 2.1%의 순서로 분포를 보였다.

1차년도 덴버 II검사의 영역별 주의항목 개수 분포를 먼저 살펴보면, 각 영역별로 0개인 비율이 개인-사회성 99.2%, 언어발달 98.0%, 운동발달 96.0%, 미세운동 및 적응발달 91.1% 순으로 나타났다. 2차년도 영역별 주의항목 0개 분포는 운동발달을 제외한 언어발달, 개인-사회성, 미세운동 및 적응발달 영역의 주의항목 0개 분포 비율이 1차년도에 비해 감소하였다.

〈표 II-2-10〉 덴버 II 영역별 주의항목개수 분포

| 영역 | 개수 | 단위: % | | | | 계 |
|----------------|------|-------|------|-----|-----|-------|
| | | 0 | 1 | 2 | 3 | |
| 개인-사회성 발달 | 1차년도 | 99.2 | 0.8 | - | - | 100.0 |
| | 2차년도 | 92.2 | 6.7 | 1.0 | 0.1 | 100.0 |
| | 3차년도 | 95.7 | 3.7 | 0.5 | 0.1 | 100.0 |
| 미세운동 및 적응발달 | 1차년도 | 91.1 | 7.9 | 0.9 | 0.1 | 100.0 |
| | 2차년도 | 87.7 | 10.4 | 1.6 | 0.3 | 100.0 |
| | 3차년도 | 97.7 | 2.1 | - | - | 100.0 |
| 언어발달 | 1차년도 | 98.0 | 1.6 | 0.4 | - | 100.0 |
| | 2차년도 | 95.1 | 4.7 | 0.2 | - | 100.0 |
| | 3차년도 | 90.1 | 8.8 | 0.9 | 0.2 | 100.0 |
| 운동발달 | 1차년도 | 96.0 | 3.7 | 0.2 | - | 100.0 |
| | 2차년도 | 98.3 | 1.4 | 0.2 | 0.1 | 100.0 |
| | 3차년도 | 99.9 | - | - | 0.1 | 100.0 |

한편, 덴버 II검사의 전체 지연항목개수 분포는 전체의 91.0%가 0개인 것으로 나타났고, 1개는 5.8%, 2개는 1.9%, 3개는 0.6%순으로 나타났다(표 II-2-11 참조). 3차년도 패널리동의 90%이상 지연항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1·2·3차년도 전체 지연항목 개수의 변화를 살펴보면, 1차년도에는 0개가 93.9%, 1개가 4.0%, 2개가 1.2% 였다가, 2차년도에는 전체 지연항목개수 0개가 76.1%, 1개사 15.9%, 2개가 3.9%로 감소하면서 지연항목 개수의 전반적인 분포 비율이 증가하였다. 한편 3차년도에는 지연항목 개수 0개가 91.0%로 증가하면서 지연항목 개수는 전년도에 비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표 II-2-11〉 덴버 II 전체 지연항목개수 분포(전체)

| | | | | | | | | | | | | | 단위: % | |
|------|------|------|-----|-----|-----|-----|-----|-----|-----|-----|-----|-----|-------|-------|
| 개수 | 0 | 1 | 2 | 3 | 4 | 5 | 6 | 7 | 8 | 9 | ... | 12 | 13 | 계 |
| 1차년도 | 93.9 | 4.0 | 1.2 | 0.5 | 0.3 | - | - | - | - | - | - | - | - | 100.0 |
| 2차년도 | 76.1 | 15.9 | 3.9 | 2.5 | 0.6 | 0.4 | 0.1 | 0.1 | 0.2 | 0.1 | - | 0.0 | 0.1 | 100.0 |
| 3차년도 | 91.0 | 5.8 | 1.9 | 0.6 | 0.1 | 0.2 | 0.0 | 0.2 | 0.1 | 0.1 | - | - | - | 100.0 |

덴버 II 영역별 지연항목개수 분포를 살펴보면, 각 영역별로 0개인 비율이 미세운동 및 적응발달 98.8%, 개인-사회성 98.7%, 운동발달 97.4%, 언어발달 94.3% 순으로 나타났다.

〈표 II-2-12〉 덴버 II 영역별 지연항목개수 분포

| | | | | | | | | | | | | | 단위: % |
|-------------------|------|------|------|-----|-----|-----|-----|-----|---|-----|-----|-------|-------|
| 영역 | 개수 | 0 | 1 | 2 | 3 | 4 | 5 | 6 | 7 | 8 | 9 | 계 | |
| 개인- 사회성 발달 | 1차년도 | 97.9 | 2.0 | 0.1 | - | - | - | - | - | - | - | 100.0 | |
| | 2차년도 | 92.9 | 4.0 | 1.5 | 1.0 | 0.5 | 0.1 | - | - | - | - | 100.0 | |
| | 3차년도 | 98.7 | 1.0 | 0.1 | 0.0 | 0.1 | 0.1 | 0.0 | - | 0.0 | - | 100.0 | |
| 미세운동 및 적응발달 | 1차년도 | 97.7 | 1.7 | 0.5 | 0.1 | - | - | - | - | - | 0.1 | 100.0 | |
| | 2차년도 | 98.2 | 11.2 | 0.9 | 0.4 | 0.0 | 0.0 | 0.0 | - | 0.1 | - | 100.0 | |
| | 3차년도 | 98.8 | 0.8 | 0.3 | 0.1 | 0.0 | 0.0 | - | - | - | - | 100.0 | |
| 언어발달 | 1차년도 | 98.7 | 1.1 | 0.2 | 0.1 | - | - | - | - | - | - | 100.0 | |
| | 2차년도 | 91.7 | 7.0 | 0.9 | 0.2 | 0.1 | 0.1 | - | - | - | - | 100.0 | |
| | 3차년도 | 94.3 | 4.3 | 0.8 | 0.3 | 0.1 | 0.2 | - | - | - | - | 100.0 | |
| 운동발달 | 1차년도 | 98.0 | 1.5 | 0.4 | 0.1 | - | - | - | - | - | - | 100.0 | |
| | 2차년도 | 99.0 | 0.7 | 0.1 | 0.2 | - | - | - | - | - | - | 100.0 | |
| | 3차년도 | 97.4 | 2.2 | 0.1 | 0.1 | 0.2 | - | - | - | - | - | 100.0 | |

덴버 II 영역별 지연항목 개수 분포에서 지연항목 개수가 1개인 비율은 언어 발달 4.3%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운동발달 2.2%, 개인-사회성 1.0%, 미세운동 및 적응발달이 0.8%로 순으로 분포를 보였다(표 II-2-12 참조). 1·2·3차년도를 비교하여 살펴 볼 때, 운동발달을 제외한 개인-사회성발달, 미세운동 및 적응발달, 언어발달 영역의 지연항목 0개인 개수 분포 비율이 2차년도에 감소하였다가, 3차년도에 들어 2차년도에 99.0%의 높은 비율을 나타낸 운동발달을 제외하고는 다시 지연항목 0개 분포 비율이 증가하였다.

나)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른 덴버 검사 결과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라 개인-사회성발달, 미세운동 및 적응발달, 언어발달, 운동발달의 4개 영역에 대한 정상-의심발달 분포를 분석한 결과, 취업모인 경우 전체의 90.5%가 정상 범주로 분류되었으며, 9.5%가 의심스런 발달, 즉 발달 지체의 위험군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취업모인 경우에는 89.1%가 정상 범주, 10.9%가 의심스런 발달로 분류되었다.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라 덴버 II 최종 분포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차년도에는 정상 범주 분류 비율이 비교적 높았고, 취업모와 비취업모 간의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나, 비취업모의 아동들이 정상 범주 비율이 높은 것으로 보였다. 2차년도에는 정상 범주의 분류가 1차년도보다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비취업모의 자녀 집단이 취업모의 자녀 집단에 비해 더 많은 의심발달 판정 비율을 보였다. 그러나 다시 3차년도에서는 정상 범주의 비율이 증가하였으나, 3차년도에는 취업모와 비취업모 간의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표 II-2-13〉 모 취업 여부에 따른 덴버 II 최종 분포: 정상-의심발달

단위: %

| 구분 | 1차년도 | | 2차년도 | | 3차년도 | |
|----------|-------|-------|---------|-------|-------|-------|
| | 취업모 | 비취업모 | 취업모 | 비취업모 | 취업모 | 비취업모 |
| 정상 | 88.4 | 91.7 | 79.0 | 72.0 | 90.5 | 89.1 |
| 의심스런 발달 | 9.5 | 7.9 | 21.0 | 28.0 | 9.5 | 10.9 |
| 검사불능 | 2.1 | 0.4 | - | - | - | - |
| 계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 χ^2 | 4.40* | | 10.66** | | 0.56 | |

* $p < .05$. ** $p < .01$.

다음으로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른 전체 주의항목개수 분포를 살펴보면, 0개인 경우 취업모는 84.7%, 비취업모 86.3%이었으며, 1개인 경우 취업모 12.1%, 비취업모 11.0%, 2개인 경우 취업모 1.8%, 비취업모 2.1%로 유사하게 나타났다. 두 집단 간의 전체 주의항목개수 분포 차이는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한편, 1차년도 한국아동패널 덴버 II검사 결과 취업모의 자녀 전체 주의항목개수 분포를 살펴보면, 0개가 81.5%, 1개가 12.9%, 2개가 3.8% 였다. 비취업모의 자녀 전체 주의항목개수 분포를 살펴보면, 0개가 84.6%, 1개가 12.3%, 2개가 2.2%로 나타났다. 한편 2차년도에는 취업모, 비취업모 자녀의 전체 주의항목개수의 분포비율이 전반적으로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즉, 주의항목 개수 0개인 비율은 취업모가 79.7%, 비취업모가 76.7%로 높지 않지만, 주의항목 개수 1개 이상의 비율이 취업모가 16.0%, 비취업모가 16.9%로 1차년도에 비해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그런데 3차년도에는 취업모의 전체 주의항목개수 분포가 0개인 경우가 84.7%, 비취업모는 86.3%로 변화하면서 주의항목 개수는 줄어드는 추세였다. 1·2·3차년도 모두 취업모와 비취업모 간의 유의미한 집단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표 II-2-14〉 모 취업 여부에 따른 덴버 II 전체 주의항목개수 분포

단위: %

| 전체 개수 | | 0 | 1 | 2 | 3 | 4 | 5 | 6 | 계 | χ^2 |
|-------|------|------|------|-----|-----|-----|-----|-----|-------|----------|
| 1차년도 | 취업모 | 81.5 | 12.9 | 3.8 | 1.1 | 0.5 | 0.2 | - | 100.0 | 4.85 |
| | 비취업모 | 84.6 | 12.3 | 2.2 | 0.6 | 0.2 | - | 0.1 | 100.0 | |
| 2차년도 | 취업모 | 79.7 | 16.0 | 3.6 | 0.5 | - | - | 0.2 | 100.0 | 18.46 |
| | 비취업모 | 76.7 | 16.9 | 4.4 | 1.3 | 0.4 | 0.1 | 0.2 | 100.0 | |
| 3차년도 | 취업모 | 84.7 | 12.1 | 1.8 | 0.9 | 0.4 | 0.1 | | 100.0 | 6.02 |
| | 비취업모 | 86.3 | 11.0 | 2.1 | 0.3 | 0.1 | 0.1 | | 100.0 | |

3차년도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른 덴버 II검사 영역별 주의항목개수 분포를 살펴보면, 언어발달 영역을 제외하고는 개인-사회성발달, 미세운동 및 적응발달, 운동발달 영역에서 주의항목 개수가 0개인 비율은 취업모와 비취업모가 유사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표 II-2-15 참조).

언어발달 영역은 0개의 주의항목 개수 분포의 비율이 다른 영역에 비해 낮은

비율을 보이고, 1개 이상의 주의항목 개수의 비율은 다른 발달 영역에 비해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3세아의 언어발달이 가속화되면서 개인차를 나타내는 것으로 추측이 된다. 특히, 비취업모(91.3%)에 비해 취업모(88.2%)의 자녀의 언어발달의 주의항목 개수의 0개 비율이 낮게 나타났다. 그러나 취업모와 비취업모의 집단 간의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1차년도에는 전반적으로 주의항목 개수 0개 비율이 높았고 미세운동 및 적응발달 영역만 1개 이상의 주의항목 개수 분포가 약간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미세운동 및 적응발달 영역과 운동 발달 영역에서 주의항목 개수가 눈에 띄는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2차년도에는 주의항목 개수 분포 비율이 전반적으로 높아졌고 미세운동 및 적응발달 영역의 1개 이상의 주의항목 개수 분포가 약간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집단 간 차이를 보면 개인-사회성 영역에서 주의항목개수가 비취업모에 비해 취업모인 경우 더 높게 나타났다. 3차년도에는 1·2차년도에 상대적으로 주의항목개수 1개 비율이 높았던 미세운동 및 적응발달 영역과 운동 발달 영역의 주의항목개수 0개 비율이 높아졌고, 언어발달 영역의 주의항목 개수가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I-2-15〉 모 취업 여부에 따른 덴버 II 영역별 주의항목개수 분포

단위: %

| 영역 | 개수 | 1차년도 | | 2차년도 | | 3차년도 | |
|-------------|----------|-------|-------|-------|--------|-------|-------|
| | | 취업모 | 비취업모 | 취업모 | 비취업모 | 취업모 | 비취업모 |
| 개인-사회성 발달 | 0 | 98.4 | 99.2 | 94.7 | 90.9 | 96.4 | 95.4 |
| | 1 | 1.6 | 0.8 | 4.8 | 7.7 | 3.1 | 3.7 |
| | 2 | - | - | 0.3 | 1.4 | 0.4 | 0.8 |
| | 3 | - | - | 0.2 | - | 0.1 | 0.1 |
| | 계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 | χ^2 | | 1.65 | | 10.32* | | 0.82 |
| 미세운동 및 적응발달 | 0 | 87.0 | 89.8 | 87.3 | 88.0 | 97.8 | 97.8 |
| | 1 | 10.9 | 9.3 | 10.1 | 10.5 | 1.8 | 2.1 |
| | 2 | 1.8 | 0.8 | 2.4 | 1.2 | 0.1 | 0.1 |
| | 3 | 0.1 | 0.1 | 0.2 | 0.3 | 0.1 | 0.1 |
| | 4 | 0.2 | - | - | - | 0.1 | - |
| | 5 | - | - | - | - | 0.1 | - |
| | 계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 χ^2 | | 3.17 | | 7.56 | | 9.31 | |

| 영역 | 개수 | 1차년도 | | 2차년도 | | 3차년도 | |
|------|----------|-------|-------|-------|-------|-------|-------|
| | | 취업모 | 비취업모 | 취업모 | 비취업모 | 취업모 | 비취업모 |
| 언어발달 | 0 | 97.9 | 97.4 | 96.1 | 94.8 | 88.2 | 91.3 |
| | 1 | 1.8 | 2.1 | 3.9 | 5.0 | 9.9 | 8.1 |
| | 2 | 0.3 | 0.5 | - | 0.2 | 1.2 | 0.6 |
| | 3 | - | 0.1 | | | 0.7 | 0.1 |
| | 계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 | χ^2 | | 0.91 | | 2.81 | | 8.21 |
| 운동발달 | 0 | 93.8 | 95.6 | 99.5 | 97.7 | 99.9 | 100.0 |
| | 1 | 5.4 | 4.3 | 0.5 | 1.8 | 0.1 | - |
| | 2 | 0.8 | 0.1 | - | 0.3 | - | - |
| | 3 | - | - | - | 0.2 | - | - |
| | 계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 | χ^2 | | 1.30 | | 1.03 | | 1.97 |

* $p < .10$.

3차년도의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른 전체 지연항목개수 분포를 살펴보면, 0개인 경우 취업모 91.7%, 비취업모 91.2%로 나타났다. 1개인 경우는 취업모 4.8%, 비취업모 5.6%, 2개인 경우 취업모 1.9%, 비취업모 2.3%로 분포되었다.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른 덴버 II 전체 지연항목개수 분포 차이를 검증한 결과, 두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II-2-16> 모 취업 여부에 따른 덴버 II 전체 지연항목개수 분포

| 전체 개수 | | 단위: % | | | | | | | | | | 계 | χ^2 |
|----------|------|-------|------|-----|-----|-----|-----|-----|-----|-----|-----|-------|----------|
| 0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 | |
| 1차 년도 | 취업모 | 90.6 | 7.0 | 0.5 | 0.6 | 1.3 | - | - | - | - | - | 100.0 | 10.20 |
| | 비취업모 | 93.3 | 4.2 | 1.7 | 0.5 | 0.2 | - | - | - | - | 0.1 | 100.0 | |
| 2차 년도 | 취업모 | 80.5 | 13.1 | 2.6 | 3.0 | 0.4 | 0.3 | 0.2 | - | - | - | 100.0 | 8.98 |
| | 비취업모 | 74.1 | 17.3 | 4.4 | 2.3 | 0.7 | 0.5 | - | 0.1 | 0.3 | 0.4 | 100.0 | |
| 3차 년도 | 취업모 | 91.7 | 4.8 | 1.9 | 1.1 | | 0.2 | | - | 0.1 | 0.2 | 100.0 | 8.31 |
| | 비취업모 | 91.2 | 5.6 | 2.3 | 0.3 | 0.2 | 0.1 | 0.1 | - | 0.1 | 0.2 | 100.0 | |

1·2·3차년도의 전체 지연항목 개수 분포를 분석하면 <표 II-2-16>와 같다. 1차년도 검사 결과 전반적으로 지연항목개수가 많지 않아 취업모의 자녀 전체

지연항목개수 0개가 90.6%, 1개가 7.0%, 비취업모의 자녀 전체 지연항목개수 0개가 93.3%, 1개가 4.2%로 나타났다. 2차년도에는 전체 지연항목개수에서 볼 수 있듯이 전체 지연항목 개수 0개인 비율도 낮아졌고 전체 지연항목 개수 1개인 비율이 상대적으로 증가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3차년도에는 전체 지연항목 개수 0개의 비율이 증가하였고, 지연항목개수가 전반적으로 넓게 분포되어 아동 내의 편차가 커졌음을 추측할 수 있다.

〈표 II-2-17〉 모 취업 여부에 따른 덴버 II 영역별 지연항목개수 분포

단위: %

| 영역 | 개수 | 1차년도 | | 2차년도 | | 3차년도 | |
|-------------------|----|------|-------|-------|-------|-------|-------|
| | | 취업모 | 비취업모 | 취업모 | 비취업모 | 취업모 | 비취업모 |
| 개인- 사회성 발달 | 0 | 96.7 | 97.8 | 93.3 | 92.6 | 99.0 | 98.3 |
| | 1 | 3.3 | 2.1 | 5.0 | 3.5 | 0.4 | 1.4 |
| | 2 | - | 0.2 | 1.4 | 1.6 | 0.3 | 0.1 |
| | 3 | - | - | 0.3 | 1.3 | 0.1 | 0.1 |
| | 4 | - | - | - | 0.8 | 0.1 | 0.1 |
| | 5 | - | - | - | 0.2 | - | - |
| | 계 |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 χ^2 | | 2.21 | | 9.16* | | 10.48 | |
| 미세운동 및 적응발달 | 0 | 95.7 | 97.8 | 90.1 | 86.0 | 98.7 | 98.8 |
| | 1 | 3.5 | 1.4 | 9.0 | 12.2 | 0.6 | 0.9 |
| | 2 | 0.6 | 0.6 | 0.6 | 1.0 | 0.3 | 0.2 |
| | 3 | 0.2 | - | 0.2 | 0.5 | 0.1 | 0.1 |
| | 4 | - | - | - | 0.1 | 0.2 | 0.1 |
| | 5 | - | - | - | 0.1 | 0.1 | - |
| | 6 | - | - | - | 0.1 | - | - |
| | 8 | - | - | - | 0.1 | - | - |
| | 9 | - | 0.1 | - | - | - | - |
| | 계 |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 χ^2 | | 3.58 | | 0.70 | | 5.30 | |
| 언어발달 | 0 | 98.3 | 98.4 | 92.9 | 91.3 | 95.1 | 94.2 |
| | 1 | 1.3 | 1.3 | 5.8 | 7.5 | 3.2 | 4.4 |
| | 2 | - | 0.3 | 0.8 | 0.9 | 0.8 | 1.1 |
| | 3 | 0.4 | - | 0.4 | 0.1 | 0.7 | 0.2 |
| | 4 | - | - | 0.2 | 0.1 | 0.1 | 0.1 |
| | 5 | - | - | - | 0.1 | 0.1 | 0.1 |
| | 계 |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 χ^2 | | 4.03 | | 2.21 | | 4.92 | |

| 영역 | 개수 | 1차년도 | | 2차년도 | | 3차년도 | |
|----------|----|-------|-------|-------------------|-------|-------|-------|
| | | 취업모 | 비취업모 | 취업모 | 비취업모 | 취업모 | 비취업모 |
| 운동발달 | 0 | 96.7 | 97.7 | 98.5 | 99.1 | 97.1 | 97.8 |
| | 1 | 2.7 | 1.7 | 1.2 | 0.5 | 2.3 | 1.9 |
| | 2 | 0.4 | 0.5 | - | 0.2 | 0.2 | 0.1 |
| | 3 | 0.2 | 0.1 | 0.3 | 0.2 | 0.2 | 0.1 |
| | 4 | - | - | - | - | 0.1 | |
| | 5 | - | - | - | - | | 0.1 |
| | 계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 χ^2 | | 2.18 | | 6.38 ⁺ | | 3.40 | |

⁺ $p < .10$, * $p < .05$.

3차년도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른 덴버 II 영역별 지연항목개수 분포를 살펴보면, 모든 발달 영역에서 94%~99% 내외의 지연항목개수 0개의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표 II-2-17 참조). 언어발달 영역의 전체 지연항목개수 0개인 비율만 다소 낮게 나타나며 지연항목 1개 개수 분포도 언어발달과 운동발달 영역을 제외하고는 그리 높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모든 발달 영역에서 취업모와 비취업모 간의 유의미한 차이도 나타나지 않았다.

1차년도에서 3차년도까지의 덴버 II 영역별 지연항목 개수 분포를 살펴보면, 운동발달 영역을 제외하고는 지연항목개수 0개의 비율이 1차년도에 비해 2차년도에 약간 낮아졌다가 다시 3차년도에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지연항목개수 1개의 비율은 미세운동 및 적응발달 영역과 언어발달 영역이 2차년도에 1차년도와 3차년도에 비교할 때 높게 나타났다.

다. 기질

1) 도구 개요

Buss와 Plomin(1984)에 의해 제작된 EAS(Emotionality, Activity and Sociability) 기질척도는 부모평정용으로 비교적 문항 수가 적으며, 1세 영아부터 성인기까지 대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도구이다. 정서성, 활동성 및 사회성의 3개 하위영역으로 구분되어 정서성 5개 문항, 활동성 5개 문항, 사회성 10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서성에서 높은 점수는 아동이 부정적인 정서를 많이 나타냄을 의미하며, 활동성에서 높은 점수를 보인 아동은 움직이는 것을 좋아하고 활동적인 특성을

가지며, 사회성에서의 높은 점수는 아동이 타인과 잘 어울리며 덜 수줍어함을 의미한다. 1차년도와 2차년도까지 기질은 정서성과 활동성의 2개영역의 총 10개 문항을 조사하였으나, 3차년도에는 사회성 10개 문항을 추가하여 20개 문항을 조사하였다.

2) 검사 결과

가) 기질의 전반적 경향

3차년도 패널아동의 기질의 전반적 경향을 살펴보면 <표 II-2-18>과 같다. 정서성은 평균 2.84점, 활동성은 평균 3.91점이었고, 올해 처음 측정한 사회성은 3.01점으로 나타났다. 평균 점수는 정서성이나 사회성에 비해 활동성의 점수가 높게 나타났는데, 표준편차의 경우는 정서성의 편차가 크고 다음으로 활동성이었으며, 사회성의 편차는 상대적으로 작았다.

<표 II-2-18> 기질의 일반적 경향

| 구분 | | 1차년도 | 2차년도 | 3차년도 |
|-----|------|------|------|------|
| 정서성 | 평균 | 2.72 | 2.72 | 2.84 |
| | 표준편차 | 0.61 | 0.63 | 0.61 |
| 활동성 | 평균 | 3.73 | 3.91 | 3.91 |
| | 표준편차 | 0.55 | 0.57 | 0.58 |
| 사회성 | 평균 | na | na | 3.01 |
| | 표준편차 | | | 0.23 |

주: 1·2차년도에 na로 표기된 기질의 사회성은 3차년도 조사에서 추가된 문항임.

사회성은 3차년도에 처음 조사된 항목으로 종단비교가 불가능하여 정서성과 활동성에서만 종단비교를 하였다. 1차년도와 2차년도에 동일하였던 한국아동패널의 기질의 정서성 평균 점수는 3차년도에 약간 증가하는 양상을 나타냈으며, 1차년도에 비해 2차년도에 약간 증가한 활동성 점수는 3차년도에는 전년도와 동일한 평균값을 유지하였다.

나)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른 기질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라 기질을 분석한 결과는 <표 II-2-19>에 제시하였다.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라 정서성 기질의 차이를 살펴보면, 취업모 자녀는 평균 2.79점, 비취업모의 자녀는 2.87점으로 *t*검증하여 분석한 결과, 취업모와 비취업

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비취업모가 취업모에 비해 자녀의 정서성을 더 높게 인식함을 알 수 있었다. 활동성의 경우, 비취업모의 자녀는 3.91점이었고 취업모의 자녀는 3.93점이었으며, *t*검증 결과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즉, 자녀의 활동성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비취업모와 취업모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사회성을 보면, 취업모와 비취업모 집단 모두 평균 점수가 3.01점으로, 취업모와 비취업모 집단의 자녀의 사회성 인식 정도에서는 동일하였다.

〈표 II-2-19〉 모 취업 여부에 따른 기질

단위: 점

| 구분 | | 1차년도 | | 2차년도 | | 3차년도 | |
|-----|----------|-------|------|---------|------|--------|------|
| | | 취업모 | 비취업모 | 취업모 | 비취업모 | 취업모 | 비취업모 |
| 정서성 | 평균 | 2.69 | 2.73 | 2.70 | 2.73 | 2.79 | 2.87 |
| | 표준편차 | 0.57 | 0.62 | 0.62 | 0.63 | 0.61 | 0.61 |
| | <i>t</i> | -1.95 | | -0.96 | | -2.00* | |
| 활동성 | 평균 | 3.76 | 3.72 | 3.99 | 3.88 | 3.93 | 3.91 |
| | 표준편차 | 0.53 | 0.56 | 0.56 | 0.58 | 0.56 | 0.59 |
| | <i>t</i> | 2.12* | | 3.98*** | | 1.06 | |
| 사회성 | 평균 | na | | na | | 3.01 | 3.01 |
| | 표준편차 | na | | na | | 0.23 | 0.23 |
| | <i>t</i> | - | | - | | -0.08 | |

주: 1·2차년도에 na로 표기된 기질의 사회성은 3차년도 조사에서 추가된 문항임.

* $p < .05$. *** $p < .001$.

1·2차년도와 3차년도와의 한국아동패널의 기질 평균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은 변화가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취업모의 자녀 정서성과 비취업모의 정서성의 평균 점수를 고려할 때, 1·2차년도에는 두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3차년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활동성의 경우는, 정서성과 달리, 1·2차년도에는 두 집단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 취업모가 비취업모보다 자녀의 활동성을 높다고 인식하였고, 3차년도에는 두 집단간에 차이가 없었다.

라. 기초생활습관

1) 도구 개요

기본생활습관(Developmental Profiles - Daily Routines)은 수면, 식습관, 배변

/씻기 습관으로 구분하여서 조사하였다. 도구는 Allen과 Martoz(2003)의 Developmental Profiles에서 12~24개월 유아가 완수하여야할 기초과업에 대해 단계적으로 서술된 문항을 5점 척도의 문항으로 수정하여 개발하였다. 기본생활 습관 측정 도구는 아동의 발달과 연령에 맞추어 매해 문항을 추가하거나 삭제 하여 재구성하고 있다. 한국아동패널 3차년도에서 측정한 기본생활습관은 기존 문항에서 수면 습관 4문항, 식습관 5문항, 배변/씻기 습관 5문항과 놀이와 사회적 활동 5문항으로 새롭게 구성되었다.

2) 검사 결과

가) 기초생활습관의 전반적 경향

한국아동패널의 3차년도 기초생활습관을 조사한 결과, 전반적인 경향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표 II-2-20 참조). 먼저 수면습관에 대한 4개 문항 중 ‘낮잠을 지는 편임’ 4.36점이 가장 높은 점수이며 ‘밤에 9~12시간 정도는 잠’은 4.09점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식습관에 대한 5개 문항 중 ‘물을 쏟기도 하지만 컵이나 유리잔을 사용하여 물을 마심’이 4.54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이고, ‘어른이나 손위 형제자매의 식사예절을 모방하면서 배움’이 3.49점으로 그 다음 높은 점수이며, ‘좋아하는 음식과 싫어하는 음식이 분명함’은 3.29점, ‘혼자서 먹는 식사습관이 형성됨’은 3.12점, ‘늘 먹던 친숙한 음식을 고집함’은 2.89점으로 나타났다.

또한 배변/씻기 습관 5문항에 대해 ‘옷을 스스로 벗을 수 있고 입힐 때 잘 따름’이 3.67점, ‘유아용 변기에 앉아 있으려고 하거나 젖은 상태에 불편함을 느낌’을 가진다는 문항은 3.59점, ‘자기 스스로 대소변을 참을 수 있음’은 3.18점, ‘머리감는 것을 싫어하거나 저항함’은 2.79점, ‘남이 씻겨주는 것을 싫어하고 혼자 씻으려고 함’은 2.71점 순으로 나타났다.

놀이와 사회적 활동의 5문항은 ‘주변 모든 환경에 호기심을 갖고 탐색함’이 4.08점, ‘다른 아이들과 함께 있는 것으로 좋아하고 놀이를 따라 하기도 함’이 3.82점, ‘앞치마를 두르고 가족의 행동을 흉내 내는 것을 즐김’이 3.56점, ‘상상속의 친구가 실제 친구인 것처럼 행동함’이 2.93점, ‘부모나 아이를 돌보는 사람의 말을 순순히 따르지 않고 고집부리거나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함’이 2.91점으로 나타났다. 높은 평균 점수를 나타낸 문항들은 유아기 아동의 전형적인 발달의 양상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표 II-2-20〉 기초생활습관

단위: 점

| 영역 | 문항 | 3차년도 | | 취업모 | | 비취업모 | | t |
|------------|---|------|-------|------|-------|------|-------|---------|
| | | 평균 | 표준 편차 | 평균 | 표준 편차 | 평균 | 표준 편차 | |
| 수면 습관 | 밤에 9~12시간 정도는 잠 | 4.09 | 0.77 | 4.07 | 0.75 | 4.09 | 0.78 | -3.80* |
| | 낮잠을 자는 편임 | 4.36 | 0.75 | 4.37 | 0.71 | 4.35 | 0.77 | 0.63* |
| |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일상적인 습관이 있음 | 3.69 | 0.96 | 3.74 | 0.87 | 3.66 | 1.00 | 1.75 |
| | 피곤한 날에는 잠이 들 때 시간이 걸림 | 2.59 | 1.00 | 2.63 | 0.97 | 2.57 | 1.01 | 1.19 |
| 식 습관 | 좋아하는 음식과 싫어하는 음식이 분명함 | 3.29 | 0.97 | 3.25 | 0.94 | 3.31 | 0.98 | -0.29† |
| | 늘 먹던 친숙한 음식을 고집함 | 2.89 | 1.01 | 2.89 | 0.97 | 2.89 | 1.02 | -0.12** |
| | 혼자서 먹는 식사습관이 형성됨 | 3.12 | 0.99 | 3.10 | 0.95 | 3.13 | 1.01 | -0.38* |
| | 어른이나 손위 형제자매의 식사예절을 모방하면서 배움 | 3.49 | 0.84 | 3.44 | 0.83 | 3.52 | 0.84 | -1.64 |
| | 물을 쏟기도 하지만 컵이나 유리잔을 사용하여 물을 마심 | 4.54 | 0.64 | 4.52 | 0.65 | 4.56 | 0.63 | -0.16** |
| 배변/ 씻기 습관 | 남이 씻겨주는 것을 싫어하고 혼자 씻으려함 | 2.71 | 0.98 | 2.76 | 1.00 | 2.68 | 0.97 | 1.47 |
| | 머리감는 것을 싫어하거나 저항함 | 2.79 | 1.11 | 2.81 | 1.76 | 2.78 | 1.12 | -0.05** |
| | 옷을 스스로 벗을 수 있고 입힐 때 잘 따름 | 3.67 | 0.86 | 3.64 | 0.85 | 3.68 | 0.87 | -0.62† |
| | 자기 스스로 대소변을 참을 수 있음 | 3.18 | 1.05 | 3.12 | 1.07 | 3.22 | 1.04 | -0.77† |
| | 유아용 변기에 앉아 있으려고 하거나 젖은 상태에 불편함을 느낌 | 3.59 | 1.03 | 3.53 | 1.05 | 3.62 | 1.02 | -2.20 |
| 놀이와 사회적 활동 | 앞치마를 두르고 가족의 행동을 흉내내는 것을 즐겁 | 3.56 | 0.85 | 3.51 | 0.90 | 3.58 | 0.82 | -1.53 |
| | 다른 아이들과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하고 놀이를 따라하기도 함 | 3.82 | 0.67 | 3.81 | 0.68 | 3.83 | 0.66 | -0.86* |
| | 부모나 아이를 돌보는 사람의 말을 순순히 따르지 않고 고집부리거나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함 | 2.91 | 0.78 | 2.88 | 0.77 | 2.92 | 0.78 | -0.76* |
| | 상상 속의 친구가 실제 친구인 것처럼 행동함 | 2.93 | 0.96 | 2.96 | 2.91 | 2.91 | 0.98 | 0.77* |
| | 주변 모든 환경에 호기심을 갖고 탐색함 | 4.08 | 0.66 | 4.09 | 0.63 | 4.07 | 0.68 | 1.46* |

주: '놀이와 사회적 활동'은 3차년도 조사에서 추가된 문항임.

* $p < .05$. ** $p < .01$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른 기초생활습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 II-2-20 참조). 먼저 수면습관에 대해 살펴보면, 4개 문항 중 '낮잠을 자는 편임', '잠자리 들기 전에 일상적인 습관이 있음', '피곤한 날에는 잠이 들 때 시간이 걸림'의 3개 문항에서는 취업모의 자녀 평균 점수가 높았다. '밤에 9~12시간 정도는 잠'에서는 비취업모의 자녀의 평균 점수가 높았다. 두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t검증으로 살펴본 결과, 밤에 자는 시간과 낮잠의 2개 문항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식습관에 대한 5개 문항 중 대부분의 문항에서 비취업모의 자녀가 취업모의

자녀보다 평균 점수가 높았다. 두 집단 간의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어른이나 손위 형제자매의 식사예절을 모방하면서 배움'의 문항을 제외하고는 다른 4문항에서 취업모와 비취업모의 자녀의 식습관에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 주었다. 즉, 비취업모가 취업모에 비해 자녀가 식습관을 잘 익히고 있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다.

또한 배변/씻기 습관 5문항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낮은 점수 분포를 나타냈다. '남이 씻겨주는 것으로 싫어하고 혼자 씻으려함'과 '머리감는 것으로 싫어하거나 저항함'의 문항에 대해서는 취업모가 비취업모보다 자녀에 대해 평균 점수가 높았고, '옷을 스스로 벗을 수 있고 입힐 때 잘 따름', '자기 스스로 대소변을 참을 수 있음'과 '유아용 변기에 앉아 있으려고 하거나 젖은 상태에 불편함을 느낌'의 문항에 대해서는 비취업모가 취업모보다 높았다.

두 집단 간의 유의한 차이를 분석한 결과, '머리감는 것을 싫어하거나 저항함', '옷을 스스로 벗을 수 있고 입힐 때 잘 따름'과 '자기 스스로 대소변을 참을 수 있음'의 3개 문항에 대해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비취업모가 취업모보다 배변/씻기 습관에 대해 자신의 자녀에 대해 긍정적으로 습관을 형성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

놀이와 사회적 활동에 관한 5개의 문항에 대한 조사 결과, '앞치마를 두르고 가족의 행동을 흉내내는 것을 즐김', '다른 아이들과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하고 놀이를 따라 하기도 함', '주변 모든 환경에 호기심을 갖고 탐색함'의 문항에서 비교적 높은 평균 점수를 나타냈다.

취업모와 비취업모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t*검증으로 알아본 결과, '앞치마를 두르고 가족의 행동을 흉내내는 것을 즐김' 문항을 제외하고 다른 놀이와 사회적 활동에 관해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다른 아이들과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하고 놀이를 따라 하기도 함'과 '부모나 아이를 돌보는 사람의 말을 순순히 따르지 않고 고집부리거나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함'의 2개 문항에 대해서는 비취업모가, '상상 속의 친구가 실제 친구인 것처럼 행동함'과 '주변 모든 환경에 호기심을 갖고 탐색함'의 2개 문항에 대해서는 취업모의 점수가 높았다.

나) 아동의 하루일과

올해 새로 추가된 문항인 아동의 하루 일과 시간을 알아보았다(표 II-2-21, 그림 II-2-1 참조).

〈표 II-2-21〉 아동의 하루일과 시간

단위: 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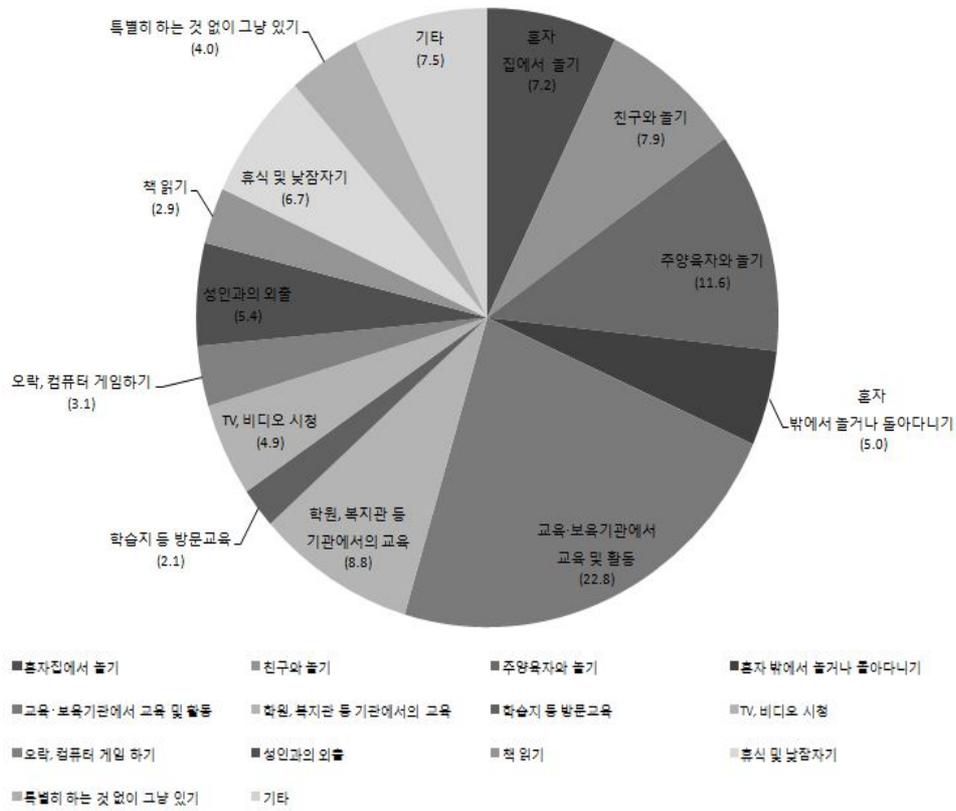
| 구분 | 3차년도 | | 취업모 | | 비취업모 | | t |
|-----------------------|--------|--------|--------|--------|--------|--------|----------|
| | 평균 | 표준편차 | 평균 | 표준편차 | 평균 | 표준편차 | |
| 혼자 집에서 놀기 | 121.12 | 102.77 | 101.80 | 87.60 | 129.15 | 107.49 | -4.50*** |
| 친구와 놀기 | 133.17 | 120.24 | 165.43 | 154.41 | 119.87 | 99.79 | 3.38** |
| 주양육자와 놀기 | 194.11 | 135.60 | 201.84 | 139.76 | 190.41 | 133.40 | 1.73 |
| 혼자 밖에서 놀거나 돌아다니기 | 83.90 | 81.64 | 85.46 | 90.43 | 83.29 | 77.90 | 0.31 |
| 교육·보육기관에서 교육 및 활동 | 383.45 | 146.88 | 433.57 | 143.47 | 341.14 | 136.10 | 9.34*** |
| 학원, 복지관 등 기관에서의 교육 | 147.69 | 167.59 | 271.28 | 230.07 | 110.50 | 120.97 | 4.68*** |
| 학습지 등 방문교육 | 35.55 | 29.88 | 34.20 | 25.19 | 36.05 | 31.42 | 0.09 |
| TV, 비디오 시청 | 82.02 | 58.16 | 71.97 | 44.54 | 86.31 | 62.59 | -4.62*** |
| 오락, 컴퓨터 게임 하기 | 52.84 | 37.65 | 63.85 | 46.61 | 47.91 | 31.63 | 1.34 |
| 성인과의 외출 | 90.23 | 55.74 | 78.36 | 47.35 | 94.96 | 58.08 | -3.49** |
| 책 읽기 | 49.32 | 34.89 | 47.06 | 33.03 | 50.35 | 35.65 | -1.22 |
| 휴식 및 낮잠자기 | 111.86 | 43.24 | 109.85 | 43.56 | 112.81 | 43.05 | -1.15 |
| 특별히 하는 것 없이 그냥 있기 | 67.59 | 94.70 | 63.41 | 49.11 | 69.38 | 108.46 | -0.87 |
| 기타 | 125.27 | 65.73 | 115.05 | 65.97 | 128.53 | 65.32 | -0.29 |

주: 3차년도 조사에서 추가된 문항임.

** $p < .01$. *** $p < .001$.

하루 일과 중 가장 많은 시간으로 보내는 것은 교육과 보육 기관에서 교육 및 활동이 383.45분으로 조사되었고, 주양육자와 놀기 194.11분, 학원, 복지관 등 기관에서의 교육 147.69분, 친구와 놀기 133.17분, 혼자 집에서 놀기 122.12분, 휴식 및 낮잠자기 111.86분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아동의 하루일과 시간이 어머니의 취업 여부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가져오는지 분석한 결과, 교육·보육기관에서 교육 및 활동, 학원, 복지관 등 기관에서의 교육, TV, 비디오 시청, 혼자집에서 놀기, 친구와 놀기, 성인과의 외출 등의 문항에서는 취업모와 비취업모 간의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즉, 취업모의 자녀들은 학원과 복지관을 포함한 보육기관이나 교육기관에 보내져 시간을 보내거나 친구와 보내는 시간이 많았다. 한편 비취업모의 자녀들은 혼자 집에서 놀거나 TV, 비디오 시청과 성인과의 외출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I-2-1] 아동의 하루일과 시간

3. 부모됨의 특성

가. 부모됨

1) 향후 출산계획

가) 후속 출산 의도

한국아동패널 대상 아동이 만 2세가 된 어머니들에게 앞으로의 출산계획을 묻는 질문에 32.5%가 추가적인 출산계획이 있는 것으로 응답한 반면, 59.9%는

출산계획이 없다고 응답하였고,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7.4%였다. ‘출산계획이 있다’는 응답은 1차년도 조사에 비해서는 증가하였지만 2차년도 조사에 비해서는 감소하였다. 반면에 ‘출산계획이 없다’는 응답은 1·2차년도에 비해 모두 증가하였고,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2차년도 조사에 비해 감소하였다. 이는 ‘잘 모르겠다’에 응답한 어머니들이 후속 출산을 하지 않은 방향으로 의사결정을 한 것으로 추측된다. 따라서 후속 출산에 대해 미결정상태에 있는 어머니들에 대한 교육 및 출산 정책에 대한 홍보의 강화가 요구된다.

〈표 II-3-1〉 후속 출산 의도

단위: %

| 구분 | 종단비교 | | | 3차년도 모 취업 | |
|--------|-------|-------|-------|-----------|-------|
| | 1차년도 | 2차년도 | 3차년도 | 취업모 | 비취업모 |
| 낳겠음 | 28.0 | 35.0 | 32.5 | 35.2 | 31.2 |
| 낳지 않겠음 | 49.7 | 52.9 | 59.9 | 57.7 | 60.9 |
| 잘 모르겠음 | 22.2 | 10.7 | 7.4 | 6.8 | 7.7 |
| 기타 | 0.2 | 0.1 | 0.2 | 0.2 | 0.2 |
| 계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어머니의 취업 여부에 따라 앞으로의 출산계획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잘 모르겠음’과 ‘기타’에 응답한 집단을 제외하고, ‘낳겠음’과 ‘낳지 않겠음’에 응답한 집단 간의 차이에 대해 χ^2 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표 II-3-2>와 같다. 어머니의 취업 여부에 따라 ‘낳겠음’ 또는 ‘낳지 않겠음’이라고 응답한 집단 간에는 차이가 없었으므로, 어머니의 취업과 후속 출산 의도는 관련성이 없음을 알 수 있다. 이 결과는 2차년도와 동일하며, 취업모를 위한 육아지원정책인 일과 가정의 양립 정책뿐만 아니라 비취업모에 대한 출산과 양육지원 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표 II-3-2〉 모 취업 여부에 따른 후속 출산 의도

단위: %

| 구분 | 3차년도 | 3차년도 모 취업 | |
|----------|-------|-----------|-------|
| | | 취업모 | 비취업모 |
| 낳겠음 | 35.2 | 37.9 | 33.9 |
| 낳지 않겠음 | 64.8 | 62.1 | 66.1 |
| 계 | 100.0 | 100.0 | 100.0 |
| χ^2 | | 0.72 | |

나) 자녀를 더 낳지 않는 이유

자녀를 더 낳지 않는 이유로는 '자녀 교육 비용 때문에(유치원/어린이집/학교 이용비용, 사교육 비용 등)'라는 응답이 전체의 29.0%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서 '이미 계획한 수만큼의 아이를 낳아서'라는 응답이 전체의 24.7%로 그 뒤를 이었다. 자녀에게 드는 비용을 세부적으로 나누어 볼 때, 취업모는 비취업모에 비해 자녀 양육 비용(아기 관련 생필품, 유급 도우미 비용 등)'이, 비취업모는 취업모에 비해 '자녀 교육 비용(유치원/어린이집/학교 이용비용, 사교육 비용 등)'이 자녀를 더 낳지 않는 이유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3차년도 조사 모두에서 자녀수와 자녀 교육 비용이 후속 출산을 하지 않은 주된 두 가지 이유임을 알 수 있다. 1차년도에 비해 2차년도에는 다소 감소하였던 '육체적으로 힘들어서(출산 및 양육 등)'라는 응답이 3차년도에서는 다시 증가하였고, '자녀 양육 비용(아기 관련 생필품, 유급 도우미 비용 등)'에 대한 응답은 자녀의 성장과 함께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3-3〉 자녀를 더 낳지 않는 이유

단위: %

| 구분 | 종단비교 | | | 3차년도 모 취업 | |
|---|-------|-------|-------|-----------|-------|
| | 1차년도 | 2차년도 | 3차년도 | 취업모 | 비취업모 |
| 자녀 양육 비용 때문에 (아기 관련 생필품, 유급 도우미 비용 등) | 5.7 | 8.4 | 10.5 | 14.2 | 8.9 |
| 자녀 교육 비용 때문에 (유치원/어린이집/학교 이용비용, 사교육 비용 등) | 30.5 | 28.2 | 29.0 | 22.6 | 32.0 |
| 직장/학업 때문에 | 2.0 | 3.6 | 2.8 | 7.4 | 0.6 |
| 개인시간/여가 또는 자아성취를 위하여 | 4.5 | 5.0 | 5.9 | 5.4 | 6.2 |
| 이미 계획한 수만큼의 아이를 낳아서 | 33.8 | 25.4 | 24.7 | 24.7 | 24.7 |
| 나이가 많아서 | 7.1 | 6.9 | 6.5 | 3.9 | 7.8 |
| 육체적으로 힘들어서(출산 및 양육 등) | 16.4 | 11.0 | 20.1 | 21.6 | 19.3 |
| 남편과의 관계가 좋지 않아서 | - | 0.5 | - | - | - |
| 모름/무응답 | - | - | 0.5 | 0.3 | 0.5 |
| 계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다) 후속 출산 계획 자녀수

후속 출산 계획이 있는 경우, 현재 자녀 외에 추가로 몇 명을 더 출산할 계획인지를 묻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89.2%가 1명이라고 응답했으며, 2명이라고 답한 비율은 9.6%, 3명 또는 4명이상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매우 낮았다(표

II-3-4 참조). 3차년도의 결과도 1·2차년도 및 어머니의 취업 여부에 따른 응답 경향과 동일하였다.

〈표 II-3-4〉 후속 출산 계획 자녀수

단위: %

| 구분 | 중단비교 | | | 3차년도 모 취업 | |
|------|-------|-------|-------|-----------|-------|
| | 1차년도 | 2차년도 | 3차년도 | 취업모 | 비취업모 |
| 1명 | 85.3 | 85.6 | 89.2 | 92.6 | 87.3 |
| 2명 | 13.7 | 14.2 | 9.6 | 6.3 | 11.4 |
| 3명 | 0.9 | 0.2 | 0.7 | 1.2 | 0.5 |
| 4명이상 | 0.1 | 0.0 | 0.5 | 0.0 | 0.8 |
| 계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라) 후속 출산 시기

후속 출산 계획이 있는 경우, 구체적으로 언제 낳을 예정인지에 대한 질문에 어머니들의 41.1%가 '1년 이내(또는 현재 임신 중)'에 출산을 할 계획이라고 응답하여 가장 많았으며, '1~2년 이내'라고 응답한 비율이 36.0%로 그 뒤를 이었다(표 II-3-5 참조). 즉, 77.1%가 2년 이내에 다음 자녀를 출산할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라서는 비취업모의 경우 가장 많은 45.5%가 '1년 이내(또는 현재 임신 중)'에 출산할 계획이라고 응답한 반면, 취업모의 경우는 가장 많은 44.2%가 '1~2년 이내'에 출산을 할 계획이라고 응답하였다.

〈표 II-3-5〉 후속 출산 시기

단위: %

| 구분 | 중단연구 | | 3차년도 모 취업 | |
|-------------------|-------|-------|-----------|-------|
| | 2차년도 | 3차년도 | 취업모 | 비취업모 |
| 1년 이내(또는 현재 임신 중) | 23.9 | 41.1 | 33.3 | 45.5 |
| 1~2년 이내 | 39.8 | 36.0 | 44.2 | 31.3 |
| 2~3년 이내 | 14.5 | 7.7 | 11.0 | 5.8 |
| 3년 이후 | 9.1 | 4.9 | 2.3 | 6.5 |
| 미정(또는 잘 모르겠음) | 12.6 | 10.2 | 9.0 | 10.9 |
| 낳았음 | 0.1 | - | - | - |
| 기타 | - | 0.1 | 0.2 | 0.0 |
| 계 | 100.0 | 100.0 | 100.0 | 100.0 |

주: 2차년도 조사에서 추가된 문항임.

후속 출산 시기를 종단적으로 비교하면, 2차년도에는 '1~2년 이내' 출산할 계획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3차년도에서 2차년도와 순위가 바뀐 이유는 3차년도 조사 시기에 패널 대상 아동의 연령이 만2세인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어머니의 취업에 따라서는 2차년도에는 취업모와 비취업모 모두 가장 많은 응답자가 '1~2년 이내'에 출산할 계획이라고 응답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어머니의 취업상태가 후속 출산을 지연시키는 요인임을 추정할 수 있다.

마) 후속 출산 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

후속 출산 계획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사람으로는 어머니 본인이 70.6%로 가장 많았고, 남편이 22.3%로 그 뒤를 이었다. 친정과 시부모님 등을 포함하여 주변 인물들의 영향을 받은 응답자의 비율은 근소하였고, 부부라는 응답은 없었다. 이런 응답 경향은 어머니의 취업 여부에 따라서도 동일하여, 다음 자녀의 출산 계획은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상관없이 어머니 본인 스스로의 결정이 제일 많음을 알 수 있다. 2차년도 조사와의 종단비교 결과도 모두 동일하였다.

〈표 II-3-6〉 출산 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

단위: %

| 구분 | 종단비교 | | 3차년도 모 취업 | |
|-------------|-------|-------|-----------|-------|
| | 2차년도 | 3차년도 | 취업모 | 비취업모 |
| 본인 | 70.8 | 70.6 | 70.6 | 70.6 |
| 남편 | 21.4 | 22.3 | 20.8 | 23.0 |
| 친정부모님 | 1.3 | 1.6 | 1.2 | 1.8 |
| 시부모님 | 2.3 | 1.3 | 1.1 | 1.4 |
| 본인의 형제자매 | 1.0 | 0.9 | 1.0 | 0.8 |
| 남편의 형제자매 | 0.3 | 0.4 | 0.5 | 0.4 |
| 본인의 친인척 | 0.2 | 0.1 | 0.2 | 0.0 |
| 남편의 친인척 | 0.1 | 0.1 | 0.0 | 0.1 |
| 친구, 동료 및 이웃 | 0.9 | 0.6 | 0.7 | 0.5 |
| 다른 자녀 | 0.3 | 2.0 | 3.8 | 1.1 |
| 부부 | 1.0 | - | - | - |
| 양가 부모님 | 0.3 | - | - | - |
| 기타 | 0.1 | 0.2 | 0.0 | 0.3 |
| 계 | 100.0 | 100.0 | 100.0 | 100.0 |

주: 2차년도 조사에서 추가된 문항임.

바) 이상 자녀수

한국패널연구 대상 아동들의 부모에게 이상 자녀수, 즉 자신의 가족계획이나 현재 자녀수에 관계없이 일반적으로 자녀는 몇 명을 두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 질문하였다. 이상 자녀수에 대하여 어머니와 아버지 각각으로부터 얻은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상 자녀수

어머니들 중 가장 많은 56.9%가 2명이 이상 자녀수라고 응답하였고, 29.6%가 3명의 자녀수에 응답하였으며, 4명 이상이라는 응답도 9.9%였다. 반면에 이상 자녀수가 1명이라는 응답은 2.4%에 불과하였다(표 II-3-7 참조). 1·2차년도 결과 및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라서도 동일한 응답 경향을 보였다.

〈표 II-3-7〉 이상적인 자녀수: 어머니

단위: %

| 구분 | 종단비교 | | | 3차년도 모 취업 | |
|--------|-------|-------|-------|-----------|-------|
| | 1차년도 | 2차년도 | 3차년도 | 취업모 | 비취업모 |
| 무자녀 | 0.6 | 0.2 | 0.1 | 0.3 | 0.1 |
| 1명 | 2.2 | 1.9 | 2.4 | 2.8 | 2.2 |
| 2명 | 57.8 | 57.3 | 56.9 | 56.6 | 57.0 |
| 3명 | 31.0 | 29.9 | 29.6 | 30.5 | 29.1 |
| 4명 | 6.3 | 9.0 | 9.3 | 8.7 | 9.6 |
| 5명 | 0.4 | 0.4 | 0.6 | 0.5 | 0.7 |
| 잘 모르겠음 | 1.8 | 1.4 | 1.1 | 0.7 | 1.3 |
| 계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표 II-3-8〉 이상적인 자녀수: 아버지

단위: %

| 구분 | 종단비교 | | 3차년도 모 취업 | |
|--------|-------|-------|-----------|-------|
| | 2차년도 | 3차년도 | 취업모 | 비취업모 |
| 무자녀 | 0.1 | 0.3 | 0.9 | 0.1 |
| 1명 | 3.5 | 4.4 | 4.6 | 4.3 |
| 2명 | 61.7 | 60.8 | 62.8 | 59.8 |
| 3명 | 26.6 | 27.8 | 26.5 | 28.4 |
| 4명 | 5.0 | 4.6 | 4.0 | 4.8 |
| 5명 | 1.1 | 1.0 | 0.5 | 1.2 |
| 잘 모르겠음 | 2.0 | 1.1 | 0.7 | 1.4 |
| 계 | 100.0 | 100.0 | 100.0 | 100.0 |

주: 2차년도 조사에서 추가된 문항임.

<표 II-3-8>은 아버지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상 자녀수를 보여주고 있다. 아버지 역시 제일 많은 60.8%가 2명이 이상 자녀수라고 응답하였고, 27.8%가 3명이라고 응답하였다. 2차년도 결과 및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라서도 모두 동일한 응답 경향을 보였다. 이상 자녀수가 1명이라는 응답은 3.5%로 낮지만 어머니의 1.9%보다 높았다.

종합해 보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상 자녀수는 부모,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상관없이 모두 2명이 제일 많았고, 그 다음이 3명이었다.

(2) 성별에 따른 이상 자녀수

이상 자녀수가 자녀의 성별에 따라 구분되는지를 알아본 결과, 어머니의 58.8%가 아들·딸 구분이 없다고 응답하였고, 40.0%가 성별을 구분하여 이상 자녀수를 응답하였다. 어머니의 취업 여부에 따라서도 동일한 응답 경향을 보였다. 이는 1·2차년도 조사와 비슷한 결과로, 성별에 따른 이상 자녀수에 대한 어머니의 응답에 일관성이 있음을 나타낸다. 자녀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딸·아들 구분 없이'에 대한 응답률은 증가하고 '딸·아들 구분해서'에 대한 응답률이 감소하고 있는 현상을 볼 수 있다.

<표 II-3-9> 성별구분에 따른 이상 자녀수: 어머니

단위: %

| 구분 | 중단비교 | | | 3차년도 모 취업 | |
|------------|-------|-------|-------|-----------|-------|
| | 1차년도 | 2차년도 | 3차년도 | 취업모 | 비취업모 |
| 딸·아들 구분 없이 | 54.2 | 56.6 | 58.8 | 60.4 | 58.1 |
| 딸·아들 구분해서 | 44.3 | 41.6 | 40.0 | 38.5 | 40.8 |
| 잘 모르겠음 | 1.4 | 1.6 | 1.0 | 1.1 | 0.9 |
| 구분 없이 동성으로 | - | 0.2 | 0.1 | - | 0.2 |
| 계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표 II-3-10> 모 취업 여부에 따른 이상 자녀수의 성별구분: 어머니

단위: %

| 구분 | 3차년도 | 3차년도 모 취업 | |
|------------|-------|-----------|-------|
| | | 취업모 | 비취업모 |
| 딸·아들 구분 없이 | 59.5 | 61.1 | 58.7 |
| 딸·아들 구분해서 | 40.5 | 38.9 | 41.3 |
| 계 | 100.0 | 100.0 | 100.0 |
| χ^2 | | 3.23 | |

3차년도에서 분석에서 어머니가 생각하는 이상 자녀수의 성별구분의 차이에 대하여, '잘 모르겠음'을 제외하고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라 χ^2 검증한 결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II-3-10 참조).

아버지의 61.4%가 아들·딸 구분이 없다고 응답하였고, 37.7%가 성별을 구분하여 이상 자녀수를 응답하였다. 아내의 취업여부에 따라서도 동일한 응답 경향을 보였으며, 2차년도의 결과도 동일한 경향으로 나타났다.

〈표 II-3-11〉 성별구분에 따른 이상 자녀수: 아버지

단위: %

| 구분 | 종단비교 | | 3차년도 모 취업 | |
|------------|-------|-------|-----------|-------|
| | 2차년도 | 3차년도 | 취업모 | 비취업모 |
| 딸·아들 구분 없이 | 58.7 | 61.4 | 62.4 | 61.0 |
| 딸·아들 구분해서 | 39.2 | 37.7 | 37.0 | 38.0 |
| 잘 모르겠음 | 2.0 | 0.9 | 0.6 | 1.0 |
| 구분 없이 동성으로 | 0.1 | - | - | - |
| 계 | 100.0 | 100.0 | 100.0 | 100.0 |

주: 2차년도 조사에서 추가된 문항임.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라 아버지가 생각하는 이상 자녀수의 성별구분을 '잘 모르겠음'을 제외하고 χ^2 검증한 결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3-12〉 모 취업 여부에 따른 이상 자녀수의 성별구분: 아버지

단위: %

| 구분 | 3차년도 | 3차년도 모 취업 | |
|------------|-------|-----------|-------|
| | | 취업모 | 비취업모 |
| 딸·아들 구분 없이 | 62.0 | 62.7 | 61.6 |
| 딸·아들 구분해서 | 38.0 | 37.3 | 38.4 |
| 계 | 100.0 | 100.0 | 100.0 |
| χ^2 | | 0.20 | |

부모의 이상 자녀수를 성별을 구분하여 한 질문에서, 아들 1명, 딸 1명이라는 응답에 어머니의 35.8%, 아버지의 52.7%가 응답하여 가장 많았으며, 아들 1명, 딸 2명에 어머니의 31.5%, 아버지의 19.3%가 응답하여, 아버지와 어머니가 생각하는 처음과 두 번째의 이상 자녀수의 성비가 같았다(표 II-3-13, 표 II-3-14 참조).

〈표 II-3-13〉 성별 구분 시 이상 자녀수의 성별: 어머니

단위: %

| 구분 | 중단비교 | | | 3차년도 모 취업 | |
|-------------|-------|-------|-------|-----------|-------|
| | 1차년도 | 2차년도 | 3차년도 | 취업모 | 비취업모 |
| 딸만 1명 | 0.5 | 0.1 | 0.1 | - | 0.1 |
| 딸만 2명 | 1.4 | 0.6 | 0.8 | - | 1.1 |
| 딸만 3명 | 0.1 | - | 0.1 | 0.3 | - |
| 아들만 1명 | 0.4 | 0.1 | 0.4 | 0.5 | 0.3 |
| 아들만 2명 | 0.8 | 0.8 | 0.2 | - | 34.5 |
| 딸 1명, 아들 1명 | 52.5 | 40.7 | 35.8 | 38.4 | 32.7 |
| 딸 2명, 아들 1명 | 23.1 | 31.1 | 31.5 | 29.0 | 0.4 |
| 딸 3명, 아들 1명 | 0.3 | 0.5 | 0.4 | 0.3 | 0.3 |
| 딸 1명, 아들 2명 | 9.1 | 8.1 | 8.8 | 10.9 | 7.8 |
| 딸 2명, 아들 2명 | 11.2 | 17.7 | 21.2 | 20.0 | 21.8 |
| 딸 3명, 아들 2명 | 0.5 | 0.4 | 0.8 | 0.5 | 1.0 |
| 딸 1명, 아들 3명 | 0.1 | - | - | - | - |
| 딸 2명, 아들 3명 | - | 0.1 | - | - | - |
| 계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표 II-3-14〉 성별 구분 시 이상 자녀수의 성별: 아버지

단위: %

| 구분 | 중단비교 | | 3차년도 모 취업 | |
|-------------|-------|-------|-----------|-------|
| | 2차년도 | 3차년도 | 취업모 | 비취업모 |
| 딸만 2명 | 0.7 | 0.8 | - | 1.1 |
| 딸만 5명 | 0.1 | - | - | - |
| 아들만 1명 | - | 0.4 | 1.1 | 0.4 |
| 아들만 2명 | 0.6 | 1.8 | 4.1 | 0.7 |
| 아들 1명, 딸 1명 | 55.8 | 52.7 | 51.8 | 53.1 |
| 아들 1명, 딸 2명 | 16.8 | 19.3 | 18.3 | 19.8 |
| 아들 1명, 딸 3명 | 0.1 | - | - | - |
| 아들 2명, 딸 1명 | 14.2 | 13.8 | 13.8 | 13.8 |
| 아들 2명, 딸 2명 | 10.4 | 10.1 | 10.2 | 10.1 |
| 아들 2명, 딸 3명 | 0.9 | 0.3 | 0.4 | 0.3 |
| 아들 3명, 딸 1명 | - | 0.7 | 0.5 | 0.8 |
| 아들 3명, 딸 2명 | 0.1 | 0.1 | - | 0.2 |
| 계 | 100.0 | 100.0 | 100.0 | 100.0 |

주: 2차년도 조사에서 추가된 문항임.

그러나 어머니의 21.2%가 아들 2명, 딸 2명에 응답하였고, 아버지의 13.8%가 딸 1명, 아들 2명에 응답함으로써 세 번째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선택이 달라짐을 보여주었다. 어머니와 아버지의 응답 경향은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라서도

동일한 양상을 보였고, 어머니들의 1·2차년도 조사 결과와 아버지들의 2차년도 조사에서도 동일한 응답 경향을 나타내었다.

2) 부모됨의 태도

가) 자녀가치

자녀 가치는 총 7개 문항의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문항은 개념적으로 '정서적 가치'와 '도구적 가치'요인으로 구분되며, 각각 3개, 4개 문항이 해당된다. 전체 응답범위는 7~35점이며, 정서적 가치는 3~15점, 도구적 가치는 4~20점 사이에 분포된다. 부모의 자녀가치, 정서적 가치 및 도구적 가치인식의 문항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II-3-15>에 제시되어 있다. 3차년도 조사에서 자녀가치 점수의 평균은 어머니 3.50점, 아버지 3.82점으로 모두 중간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어머니와 아버지 점수 각각의 차이를 *t*검정으로 분석한 결과, 어머니와 아버지 간의 자녀가치 점수의 차이는 모두 유의하였다. 전체적으로 아버지들이 어머니들보다 자녀가치를 더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각 하위척도 모두에서 아버지들이 자녀의 정서적·도구적 가치를 어머니들보다 상대적으로 더 인식하였다.

<표 II-3-15> 부모의 자녀가치

| 구분 | | 1차년도 | | 2차년도 | | 3차년도 | |
|-----|----------|------|------|------|------|-----------------------|------|
| | | 어머니 | 아버지 | 어머니 | 아버지 | 어머니 | 아버지 |
| 전체 | 평균 | 3.60 | 3.79 | 3.53 | 3.82 | 3.50 | 3.82 |
| | 표준편차 | 0.57 | 0.58 | 0.58 | 0.57 | 0.58 | 0.57 |
| | <i>t</i> | | | | | -19.41 ^{***} | |
| 정서적 | 평균 | 4.46 | 4.50 | 4.32 | 4.48 | 4.29 | 4.46 |
| | 표준편차 | 0.54 | 0.53 | 0.58 | 0.52 | 0.58 | 0.56 |
| | <i>t</i> | | | | | -9.78 ^{***} | |
| 도구적 | 평균 | 2.96 | 3.26 | 2.93 | 3.33 | 2.91 | 3.33 |
| | 표준편차 | 0.78 | 0.80 | 0.77 | 0.79 | 0.76 | 0.78 |
| | <i>t</i> | | | | | -19.84 ^{***} | |

주: 점수가 높을수록 자녀의 가치를 크게 생각하는 것임.

^{***} $p < .001$.

자녀가치에 대한 1·2·3차년도 결과의 경향성에서 아버지의 자녀가치 인식은 거의 변화하지 않은 반면, 어머니의 자녀가치 인식이 자녀의 연령 증가와 함께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의 각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자녀의 정서

적 가치에 대하여 어머니와 아버지의 점수 모두가 근소하게 감소하고 있으며, 자녀의 도구적 가치에 대하여는 어머니의 점수가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자녀가 자라면서 어머니의 전체적인 자녀가치 인식이 낮아지고 있으며, 하위가치로는 부모 모두 자녀의 정서적 가치에 대한 인식이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II-3-15 참조).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른 부모의 자녀가치, 정서적 가치 및 도구적 가치 인식은 <표 II-3-16>에 제시되어 있다.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라 어머니의 각 가치 점수의 차이를 t 검정으로 분석한 결과, 이 차이가 모두 유의하지 않음을 보여주었다. 즉, 어머니의 취업여부와 어머니의 자녀가치 인식은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2차년도와 동일하였다.

아버지의 자녀가치 인식의 차이를 아내의 취업여부에 따라 t 검정한 결과는 정서적 가치에서 유의하여, 아내가 취업하지 않은 아버지들이 자녀의 정서적 가치를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차년도에는 아내의 취업에 따라서 아버지들이 인식하는 자녀의 정서적 가치에 차이가 없었다.

〈표 II-3-16〉 모 취업 여부에 따른 자녀 가치

단위: 점

| 구분 | | 자녀가치 | | 정서적 | | 도구적 | |
|-----|------|-------|------|--------|------|-------|------|
| | | 취업모 | 비취업모 | 취업모 | 비취업모 | 취업모 | 비취업모 |
| 어머니 | 평균 | 3.49 | 3.51 | 4.29 | 4.29 | 2.90 | 2.92 |
| | 표준편차 | 0.58 | 0.59 | 0.60 | 0.57 | 0.75 | 0.77 |
| | t | -0.94 | | -0.35 | | -1.08 | |
| 아버지 | 평균 | 3.77 | 3.84 | 4.42 | 4.48 | 3.29 | 3.35 |
| | 표준편차 | 0.58 | 0.57 | 0.55 | 0.56 | 0.78 | 0.77 |
| | t | -1.71 | | -2.09* | | -1.17 | |

주: 점수가 높을수록 자녀의 가치를 크게 생각하는 것임.

* $p < .05$.

나. 어머니 특성

1) 자기효능감

한국아동패널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자기효능감을 4개 문항에 대해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가능한 점수범위는 4~20점이고, 점수가 높을수록 부정적인 자기효능감을 나타낸다. 한국아동패널의 3차보고서에서는 어머니의 자기효능감의 평균

문항값을 사용하여 결과를 제시하였다. 어머니의 자기효능감의 평균점수는 3.68 점으로, 중간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어머니 취업여부에 따른 자기효능감의 차이를 t 검증하여 분석한 결과, 두 집단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즉, 어머니들의 자기효능감은 본인의 취업여부에 따라 다르지 않았다. 어머니의 자기효능감 점수는 자녀의 연령 증가와 더불어 근소하게 증가함을 보여주고 있다.

〈표 II-3-17〉 어머니의 자기효능감

단위: 점

| 구분 | 종단비교 | | | 모 취업 | |
|------|------|------|------|------|------|
| | 1차년도 | 2차년도 | 3차년도 | 취업모 | 비취업모 |
| 평균 | 2.22 | 2.31 | 3.68 | 3.69 | 3.67 |
| 표준편차 | 0.69 | 0.69 | 0.72 | 0.73 | 0.72 |
| t | | | | 0.35 | |

주: 점수가 높을수록 부정적인 자기효능감을 의미함.

2) 자아존중감

인간의 긍정적인 특성을 측정하는 자아존중감은 10개 문항에 대해 4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가능한 점수범위는 10~40점 사이이고,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인 자아존중감을 의미한다. <표 II-3-18>에는 어머니의 자아존중감의 문항평균값이 제시되어있다. 3차년도에 측정한 어머니의 자아존중감 평균은 3.48점으로 중간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표 II-3-18〉 어머니의 자아존중감

단위: 점

| 구분 | 종단연구 | | | 모 취업 | |
|------|------|------|------|---------------------|------|
| | 1차년도 | 2차년도 | 3차년도 | 취업모 | 비취업모 |
| 평균 | 2.52 | 2.53 | 3.48 | 3.56 | 3.45 |
| 표준편차 | 0.21 | 0.21 | 0.41 | 0.42 | 0.40 |
| t | | | | 5.72 ^{***} | |

주: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인 자아존중감을 의미함.

^{***} $p < .001$.

어머니의 취업에 따른 차이를 t 검증하여 분석한 결과, 두 집단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본인의 취업여부에 따라 어머니들의 자아존중감 수준이 다른 것으로, 취업모가 비취업모에 비해 긍정적인 자아존중감을 가지고 있음을 의

미한다. 이는 2차년도와 동일한 결과이었다.

3차년도에 측정된 어머니의 자기존중감은 1·2차년도에 비해 평균점수와 표준편차가 모두 증가하였고, 이는 어머니의 자아존중감이 증가하였지만 어머니들 간의 개인차가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3) 우울

인간의 부정적 심리특성인 우울을 6개 문항에 대해 5점 척도로 측정하였고, 가능한 점수 범위는 6~30점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하며, 6~13점은 정상수준, 14~18점은 경도/중증도(mild/moderate) 우울, 19~30점은 중도(severe) 우울로 분류된다. 우울의 정도를 정상, 경도/중등도와 중도로 나누어보면, 70.2%는 정상군에 속하는 반면, 나머지 23.2%는 경도/중증도 우울, 6.6%는 중도 우울 집단에 속함을 알 수 있다. 어머니의 취업 여부에 따라 어머니가 느끼는 우울 정도의 차이를 χ^2 검증하여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인의 취업상태와 우울 정도와는 관련이 없음을 의미한다. 종단비교를 보면 어머니의 우울의 정도 결과는 1·2·3차에 걸쳐 동일하여, 모두 70%이상이 정상군에 속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I-3-19〉 어머니의 우울 정도(임상집단 여부)

단위: %

| 구분 | 종단비교 | | | 3차년도 모 취업 | |
|--------|----------|-------|-------|-----------|-------|
| | 1차년도 | 2차년도 | 3차년도 | 취업모 | 비취업모 |
| 정상 | 71.5 | 72.5 | 70.2 | 75.5 | 68.1 |
| 경도/중등도 | 22.0 | 22.1 | 23.2 | 19.3 | 25.1 |
| 중도 | 6.5 | 5.4 | 6.6 | 6.2 | 6.8 |
| 계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 | χ^2 | | | 5.50 | |

<표 II-3-20>에서 보듯이, 3차년도에 측정된 어머니 우울의 평균점수는 1.96점으로 중간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어머니의 취업 여부에 따른 어머니들 간의 우울 점수의 차이를 t 검증하여 분석한 결과, 두 집단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비취업모들이 취업모에 비해서 우울의 정도가 더 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2차년도의 결과와 동일하였다.

〈표 II-3-20〉 어머니의 우울 정도(평균)

단위: 점

| 구분 | 중단비교 | | | 3차년도 모 취업 | |
|----------|------|------|------|-----------|------|
| | 1차년도 | 2차년도 | 3차년도 | 취업모 | 비취업모 |
| 평균 | 1.94 | 1.92 | 1.96 | 1.88 | 2.00 |
| 표준편차 | 0.71 | 0.69 | 0.70 | 0.70 | 0.70 |
| <i>t</i> | | | | -2.52* | |

주: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의 정도가 심한 것을 의미함.

* $p < .05$.

다. 부부관계

부부관계는 결혼만족도와 부부갈등의 두 변인을 어머니와 아버지 모두에게 질문하였고, 각각의 결과를 제시하였다.

1) 결혼만족도

결혼만족도는 4개 문항에 대해 5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응답가능한 점수의 범위는 4~20점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결혼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결혼만족도의 결과도 3차년도에서는 문항의 평균값을 제시하였다. 어머니의 결혼만족도 점수는 3.75점, 아버지의 결혼만족도 점수는 4.21점으로 모두 중간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아버지의 결혼만족도가 어머니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t*검정으로 분석한 결과는 이 차이가 유의함을 보여주었다. 즉, 어머니들에 비해 아버지들이 결혼에 더 만족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2차년도와 동일한 결과이었다.

〈표 II-3-21〉 부부의 결혼만족도

단위: 점

| 구분 | 1차년도 | | 2차년도 | | 3차년도 | |
|----------|------|------|------|------|-----------|------|
| | 어머니 | 아버지 | 어머니 | 아버지 | 어머니 | 아버지 |
| 평균 | 3.81 | 4.28 | 3.86 | 4.28 | 3.85 | 4.21 |
| 표준편차 | 0.76 | 0.68 | 0.79 | 0.71 | 0.77 | 0.70 |
| <i>t</i> | | | | | -17.83*** | |

주: 점수가 높을수록 결혼만족도가 높은 것을 의미함.

*** $p < .001$.

어머니의 취업에 따른 어머니와 아버지의 결혼만족도는 <표 II-3-22>와 같다.

취업모와 비취업모의 결혼만족도 점수를 t 검정으로 분석한 결과, 어머니와 아버지 모두에서 이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어머니의 취업여부와 어머니 및 아버지의 결혼만족도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 수 있다. 이 결과 역시 2차년도와 동일하였다.

〈표 II-3-22〉 모 취업 여부에 따른 어머니와 아버지의 결혼만족도

단위: 점

| 구분 | 어머니 | | 아버지 | |
|------|-------|------|-------|------|
| | 취업모 | 비취업모 | 취업모 | 비취업모 |
| 평균 | 3.86 | 3.84 | 4.20 | 4.21 |
| 표준편차 | 0.80 | 0.75 | 0.70 | 0.71 |
| t | -0.12 | | -0.75 | |

주: 점수가 높을수록 결혼만족도가 높은 것을 의미함.

2) 부부갈등

부부가 느끼는 갈등의 정도를 8개 문항,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응답 가능한 점수 범위는 8~40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부부갈등이 많음을 의미한다.

아래의 <표 II-3-23>에 부부 각각에 대한 문항평균값과 표준편차가 제시되어 있다. 부부갈등의 점수에서 어머니의 점수는 2.09점, 아버지의 점수는 2.08점으로 중간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아내와 남편의 부부갈등의 차이가 유의미한가를 t 검정으로 분석한 결과는 부부가 인지하는 갈등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차년도에는 어머니들이 아버지들보다 부부갈등을 더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부갈등의 점수가 부부 모두에게서 1차년도에서 보다는 2차년도에, 2차년도에서 보다는 3차년도에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II-3-23〉 부부 갈등의 정도

단위: 점

| 구분 | 1차년도 | | 2차년도 | | 3차년도 | |
|------|------|------|------|------|------|------|
| | 어머니 | 아버지 | 어머니 | 아버지 | 어머니 | 아버지 |
| 평균 | 1.99 | 1.88 | 2.03 | 2.01 | 2.09 | 2.08 |
| 표준편차 | 0.78 | 0.69 | 0.77 | 0.71 | 0.77 | 0.74 |
| t | | | | | 0.71 | |

주: 점수가 높을수록 부부간 갈등의 정도가 심각한 것을 의미함.

어머니의 취업에 따른 어머니와 아버지의 부부갈등 정도는 <표 II-3-24>와 같다. 취업모와 비취업모의 부부갈등 점수의 차이를 *t*검증으로 분석한 결과, 이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본인의 취업에 따라 어머니들이 인지하는 부부갈등 정도에는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표 II-3-24> 모 취업 여부에 따른 어머니와 아버지의 부부 갈등

단위: 점

| 구분 | 어머니 | | 아버지 | |
|----------|------|------|--------|------|
| | 취업모 | 비취업모 | 취업모 | 비취업모 |
| 평균 | 2.11 | 2.01 | 2.14 | 2.05 |
| 표준편차 | 0.78 | 0.76 | 0.78 | 0.71 |
| <i>t</i> | 1.04 | | 2.93** | |

주: 점수가 높을수록 부부간 갈등의 정도가 심각한 것을 의미함.

** $p < .01$.

반면에 아버지가 인지한 부부갈등 정도가 아내의 취업여부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었다. 즉, 아내가 취업한 남편들이 부부갈등을 더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차년도에는 어머니의 취업에 따른 부부갈등 정도에서 어머니와 아버지 모두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라. 양육 특성

부모의 양육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아버지의 자녀양육 협조 정도 및 아버지와 어머니 각각의 자녀양육 참여 시간을 어머니로부터 조사하였다.

1) 자녀양육 참여

아버지의 자녀양육 협조 정도를 어머니에게 5점 평정 척도로 조사한 결과, 아버지의 양육협조 정도는 평균 3.73으로 중간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어머니의 취업 여부에 따른 아버지의 자녀양육 협조 정도의 차이를 *t*검증으로 분석한 결과, 두 집단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취업모일 경우 남편들이 자녀 양육에 더 협조적이라고 보고하였다. 2차년도의 결과도 동일하였다. 아버지의 자녀양육 협조 정도를 종단비교하면, 1차년도 조사 시에는 평균 3.60점, 2차년도 조사 시에는 평균 3.64점, 3차년도 조사 시에는 평균 3.73점으로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아버지가 양육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I-3-25〉 아버지 자녀양육 협조(어머니 응답)

단위: 점

| 구분 | 종단비교 | | | 3차년도 모 취업 | |
|----------|------|------|------|-----------|------|
| | 1차년도 | 2차년도 | 3차년도 | 취업모 | 비취업모 |
| 평균 | 3.60 | 3.64 | 3.73 | 3.80 | 3.68 |
| 표준편차 | 0.80 | 0.88 | 0.83 | 0.85 | 0.84 |
| <i>t</i> | | | | 2.95** | |

주: 점수가 높을수록 남편의 양육 협조가 잘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함.

** $p < .01$.

아버지와 어머니의 자녀 양육 참여시간을 3차년도에서 처음으로 조사하였다. 어머니가 응답한 아버지의 자녀 양육 참여 시간의 경우, 아버지들이 주중에는 평균 6.69시간 양육참여를 하며, 주말에는 평균 8.18시간 양육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들은 주중보다는 주말에 아버지의 양육 참여시간이 높다고 응답하였다. 어머니의 취업 여부에 따른 아버지의 자녀양육 참여시간을 *t*검정으로 분석한 결과, 주중에는 두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주말에만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취업모들은 남편들이 주말 동안 자녀 양육에 더 많이 참여하는 것으로 인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I-3-26〉 아버지 자녀양육 참여시간(어머니 응답)

단위: 시간

| 구분 | 3차년도 | 3차년도 모 취업 | | |
|----|----------|-----------|---------|------|
| | | 취업모 | 비취업모 | |
| 주중 | 평균 | 6.69 | 7.02 | 6.89 |
| | 표준편차 | 6.52 | 7.10 | 6.34 |
| | 최소 | 0.00 | 0.00 | 0.02 |
| | 최대 | 80.0 | 72.0 | 80.0 |
| | <i>t</i> | | 0.42 | |
| 주말 | 평균 | 8.18 | 8.87 | 7.73 |
| | 표준편차 | 5.82 | 5.86 | 5.90 |
| | 최소 | 0.02 | 0.02 | 0.02 |
| | 최대 | 48.0 | 32.0 | 48.0 |
| | <i>t</i> | | 3.85*** | |

주: 3차년도 조사에서 추가된 문항임.

*** $p < .001$.

어머니들은 주중에는 평균 29.90 시간 양육참여를 하며, 주말에는 평균 15.34 시간 양육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II-3-27 참조).

본인의 취업 여부에 따른 자녀양육 참여시간을 *t*검증으로 분석한 결과, 주중에는 두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주말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취업모들은 직장생활을 하는 주중에는 비취업모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시간을 양육에 사용하고 있었으며, 주말 동안에는 취업에 따른 자녀양육 참여시간이 다르지 않았다. 이는 취업모들이 주말에는 비취업모와 동일한 수준으로 자녀양육에 시간을 사용함을 의미한다.

〈표 II-3-27〉 어머니 자녀양육 참여시간(어머니 응답)

단위: 시간

| 구분 | | 3차년도 | 3차년도 모 취업 | |
|----|----------|--------|-----------|--------|
| | | | 취업모 | 비취업모 |
| 주중 | 평균 | 29.90 | 17.56 | 34.41 |
| | 표준편차 | 20.80 | 12.94 | 21.54 |
| | 최소 | 0.02 | 0.02 | 1.00 |
| | 최대 | 120.00 | 120.00 | 120.00 |
| | <i>t</i> | | -17.57*** | |
| 주말 | 평균 | 15.34 | 15.04 | 15.02 |
| | 표준편차 | 7.71 | 7.37 | 8.12 |
| | 최소 | 0.02 | 0.02 | 1.00 |
| | 최대 | 48.00 | 48.00 | 48.00 |
| | <i>t</i> | | 0.03 | |

주: 3차년도 조사에서 추가된 문항임.
*** $p < .001$.

2) 자녀 기대

부모가 자녀의 장래에 대해 갖는 기대는 1) 돈을 잘 번다 2) 명성을 얻거나 유명해진다 3) 높은 사회적 지위를 얻는다 4) 다른 사람을 기꺼이 도우려고 한다 5) 행복한 가정을 갖는다 6) 일보다 취미나 여가를 중시한다는 총 6개 문항에 대해 4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각 항목을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모두 질문하였고,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평정한 점수를 '매우 원한다' 1점, '다소 원한다' 2점, '별로 개의치 않는다' 3점, '전혀 개의치 않는다' 4점으로 환산하였다. 응답률과 문항평균으로 결과를 제시하였다(표 II-3-28 참조).

아버지의 84.2%, 어머니의 87.2%가 자녀가 행복한 가정을 갖기를 '매우 원한다'고 응답해, 부모 모두 자녀의 장래에서 행복한 가정을 가장 중시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는 이타심과 금전적 성공이 그 뒤를 이었다.

〈표 II-3-28〉 부모의 자녀기대

단위: %, 점

| 구분 | | 3차년도 | | | | 계 | 종단비교 | | | | | | |
|-----------|-----|-----------|-----------|------------------|------------------|-------|------|----------|------|----------|------|----------|----------|
| | | 매우 원한다 | 다소 원한다 | 별로 개의치 않는다 | 전혀 개의치 않는다 | | 1차년도 | | 2차년도 | | 3차년도 | | t |
| | | | | | | | 평균 | 표준 편차 | 평균 | 표준 편차 | 평균 | 표준 편차 | |
| 금전 | 아버지 | 27.9 | 59.7 | 11.3 | 1.1 | 100.0 | 1.89 | 0.66 | 1.84 | 0.65 | 1.86 | 0.64 | 3.41** |
| | 어머니 | 29.5 | 62.2 | 8.0 | 0.3 | 100.0 | 1.83 | 0.61 | 1.78 | 0.58 | 1.79 | 0.58 | |
| 명성 | 아버지 | 20.1 | 48.0 | 30.0 | 2.0 | 100.0 | 2.14 | 0.75 | 2.11 | 0.77 | 2.14 | 0.75 | -4.82*** |
| | 어머니 | 17.3 | 46.1 | 34.2 | 2.3 | 100.0 | 2.23 | 0.77 | 2.20 | 0.75 | 2.22 | 0.75 | |
| 사회적 지위 | 아버지 | 20.1 | 45.2 | 32.4 | 2.3 | 100.0 | 2.14 | 0.76 | 2.12 | 0.78 | 2.17 | 0.77 | -1.54 |
| | 어머니 | 18.3 | 47.0 | 33.2 | 1.5 | 100.0 | 2.17 | 0.76 | 2.17 | 0.74 | 2.18 | 0.74 | |
| 이타심 | 아버지 | 35.5 | 53.6 | 10.3 | 0.6 | 100.0 | 1.75 | 0.63 | 1.71 | 0.64 | 1.76 | 0.65 | -2.72** |
| | 어머니 | 30.6 | 59.4 | 9.8 | 0.2 | 100.0 | 1.78 | 0.63 | 1.79 | 0.62 | 1.80 | 0.61 | |
| 행복한 가정 | 아버지 | 84.2 | 14.5 | 0.9 | 0.4 | 100.0 | 1.14 | 0.37 | 1.15 | 0.39 | 1.17 | 0.43 | 3.09** |
| | 어머니 | 87.2 | 12.3 | 0.5 | 0.1 | 100.0 | 1.10 | 0.33 | 1.12 | 0.35 | 1.13 | 0.36 | |
| 취미나 여가 | 아버지 | 14.7 | 50.9 | 31.9 | 2.3 | 100.0 | 2.30 | 0.69 | 2.21 | 0.73 | 2.22 | 0.73 | -4.08*** |
| | 어머니 | 11.1 | 49.6 | 37.3 | 1.9 | 100.0 | 2.38 | 0.68 | 2.34 | 0.67 | 2.30 | 0.69 | |

주: 점수가 낮을수록 각 항목을 원하는 정도가 크다는 의미임.

** $p < .01$. *** $p < .001$.

각 항목에 대한 아버지와 어머니의 점수 차이를 t 검정으로 분석한 결과를 각각 <표 II-3-29>, <표 II-3-30>에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사회적 지위를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보인 반응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아버지가 어머니보다 자녀에게 더 기대하는 항목은 금전과 행복한 가정이었으며,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더 기대하는 항목은 명성, 사회적 지위, 이타심 및 취미나 여가 생활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응답률은 1·2차년도와 동일하며, 아버지와 어머니의 응답 차이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은 사회적 지위를 제외한 모든 결과가 2차년도와 동일하였다.

어머니의 취업 여부에 따른 어머니 본인의 자녀에 대한 기대의 차이를 t 검정한 결과, 이타심과 취미나 여가생활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표 II-3-29 참조). 즉, 취업모가 비취업모에 비해 자신의 자녀들이 이타심을 더 갖기를 원하고, 취미나 여가생활을 더 하기를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의 취미나 여가생활에 대한 취업모의 기대는 2차년도와 동일한 결과로써, 이는 취업모 자신들이 직장생활로 인해 취미나 여가생활을 즐기지 못하는 현 상태에 대한 반영으로 추정된다.

〈표 II-3-29〉 모 취업 여부에 따른 어머니의 자녀기대

단위: %, 점

| 구분 | | 매우 원한다 | 다소 원한다 | 별로 개의치 않는다 | 전혀 개의치 않는다 | 계 | 평균 | 표준 편차 | t |
|-----------|------|-----------|-----------|------------------|------------------|-------|------|----------|---------|
| 금전 | 취업모 | 29.2 | 33.0 | 7.8 | 0.3 | 100.0 | 1.79 | 0.58 | 0.65 |
| | 비취업모 | 29.6 | 67.0 | 8.1 | 0.2 | 100.0 | 1.79 | 0.59 | |
| 명성 | 취업모 | 16.5 | 48.5 | 32.8 | 30.4 | 100.0 | 2.21 | 0.73 | -2.03 |
| | 비취업모 | 17.7 | 45.0 | 34.9 | 69.6 | 100.0 | 2.22 | 0.76 | |
| 사회적 지위 | 취업모 | 18.8 | 50.3 | 29.6 | 1.3 | 100.0 | 2.13 | 0.72 | -1.48 |
| | 비취업모 | 18.0 | 45.4 | 35.0 | 1.6 | 100.0 | 2.20 | 0.74 | |
| 이타심 | 취업모 | 33.5 | 59.5 | 6.6 | 0.4 | 100.0 | 1.74 | 0.59 | -2.75** |
| | 비취업모 | 29.2 | 59.4 | 1.4 | 0.1 | 100.0 | 1.82 | 0.62 | |
| 행복한 가정 | 취업모 | 87.7 | 12.0 | 0.1 | 0.2 | 100.0 | 1.13 | 3.52 | -1.04 |
| | 비취업모 | 86.9 | 12.4 | 0.7 | 0.0 | 100.0 | 1.14 | 3.63 | |
| 취미나 여가 | 취업모 | 13.0 | 49.7 | 35.8 | 1.5 | 100.0 | 2.26 | 0.69 | -1.85* |
| | 비취업모 | 10.1 | 49.6 | 38.2 | 2.1 | 100.0 | 2.32 | 0.68 | |

주: 점수가 낮을수록 각 항목을 원하는 정도가 크다는 의미임.

* $p < .05$. ** $p < .01$.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른 아버지의 자녀에 대한 기대의 차이를 t 검증하여 분석한 결과,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항목은 없었다. 2차년도에도 같은 결과를 보였으며, 이는 아내의 취업여부에 따라 아버지의 자녀에 대한 기대가 다르지 않음을 의미한다.

〈표 II-3-30〉 모 취업 여부에 따른 아버지의 자녀기대

단위: %, 점

| 구분 | | 매우 원한다 | 다소 원한다 | 별로 개의치 않는다 | 전혀 개의치 않는다 | 계 | 평균 | 표준 편차 | t |
|-----------|------|-----------|-----------|------------------|------------------|-------|------|----------|-------|
| 금전 | 취업모 | 27.3 | 59.9 | 12.4 | 0.4 | 100.0 | 1.86 | 0.63 | 0.42 |
| | 비취업모 | 28.2 | 59.7 | 10.7 | 1.4 | 100.0 | 1.85 | 0.65 | |
| 명성 | 취업모 | 21.8 | 47.6 | 27.9 | 2.7 | 100.0 | 2.12 | 0.77 | -1.03 |
| | 비취업모 | 19.2 | 48.2 | 31.0 | 1.6 | 100.0 | 2.15 | 0.74 | |
| 사회적 지위 | 취업모 | 23.4 | 42.3 | 31.6 | 2.7 | 100.0 | 2.14 | 0.80 | -1.49 |
| | 비취업모 | 18.5 | 46.7 | 32.8 | 2.1 | 100.0 | 2.19 | 0.75 | |
| 이타심 | 취업모 | 36.2 | 54.6 | 8.9 | 0.2 | 100.0 | 1.73 | 0.62 | -0.94 |
| | 비취업모 | 35.1 | 53.0 | 11.0 | 0.8 | 100.0 | 1.78 | 0.67 | |
| 행복한 가정 | 취업모 | 82.7 | 16.2 | 0.6 | 0.5 | 100.0 | 1.19 | 0.45 | 1.29 |
| | 비취업모 | 85.0 | 13.7 | 1.0 | 0.3 | 100.0 | 1.17 | 0.42 | |
| 취미나 여가 | 취업모 | 14.9 | 49.8 | 33.3 | 26.7 | 100.0 | 2.23 | 0.72 | 0.28 |
| | 비취업모 | 14.7 | 51.4 | 31.2 | 73.3 | 100.0 | 2.22 | 0.73 | |

주: 점수가 낮을수록 각 항목을 원하는 정도가 크다는 의미임.

3) 양육신념

부모의 양육신념은 부모의 책임과 가정에서 배울 수 있는 중요한 자질과 특성으로 나누어 조사되었다.

가) 부모의 책임

부모의 책임 범위에 관하여,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자녀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와 '자녀 때문에 본인을 희생하도록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진술 중 더 동의하는 항목을 선택하도록 하였다.

어머니들은 위의 두 가지 진술을 비슷한 비율로 선택한 반면, 아버지들은 57.4%가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자녀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에 동의하였다 (표 II-3-31 참조). 어머니와 아버지의 응답률의 차이를 χ^2 검증으로 분석한 결과, 차이가 있었다. 즉, 아버지가 어머니보다 자신을 희생하더라도 자녀를 위해 최선을 다 한다는 양육신념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상대적으로 아버지가 어머니보다 부모로서의 책임을 더 막중하게 느끼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2차년도와 동일한 결과이다.

종단비교를 하면, 어머니와 아버지 모두에서 자녀의 연령 증가와 더불어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자녀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에 대한 응답률이 증가하였다.

〈표 II-3-31〉 어머니와 아버지의 양육신념: 부모의 책임

| 구분 | 1차년도 | | 2차년도 | | 3차년도 | |
|---------------------------|----------|-------|-------|-------|-----------|-------|
| | 어머니 | 아버지 | 어머니 | 아버지 | 어머니 | 아버지 |
|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자녀를 위해 최선을 다함 | 47.7 | 52.0 | 48.2 | 53.2 | 49.0 | 57.4 |
| 자녀 때문에 본인을 희생하도록 요구해선 안 됨 | 52.3 | 48.0 | 51.8 | 46.8 | 51.0 | 42.6 |
| 계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 | χ^2 | | | | 116.08*** | |

*** $p < .001$.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른 부모의 책임에서 취업모의 46.9%, 비취업모의 50.0%가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자녀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에 동의하였으며, χ^2 검정한 결과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른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아내가 취업한 남편의 56.9%, 아내가 취업하지 않은 남편의 57.7%가 '자신을 희생해서

〈표 II-3-34〉 모 취업여부에 따른 가정에서 배울 수 있는 자질과 특성(중복응답)

단위: %

| 구분 | 아버지 | | 어머니 | |
|----------------|-------|-------|-------|-------|
| | 취업모 | 비취업모 | 취업모 | 비취업모 |
| 예의바른 생활습관 | 17.5 | 18.0 | 18.2 | 18.4 |
| 독립심 | 9.5 | 9.7 | 10.1 | 9.9 |
| 근면함 | 11.8 | 11.1 | 9.8 | 9.9 |
| 책임감 | 17.3 | 17.0 | 17.6 | 17.3 |
| 상상력 | 4.7 | 3.9 | 4.5 | 3.3 |
| 타인에 대한 포용과 존중 | 13.8 | 13.7 | 15.5 | 14.8 |
| 검소함, 저축하고 절약하기 | 7.2 | 7.9 | 5.8 | 7.3 |
| 결단력과 끈기 | 8.7 | 9.7 | 9.9 | 10.2 |
| 종교적 신념 | 1.6 | 2.2 | 2.8 | 2.9 |
| 이타심 | 2.3 | 1.6 | 1.8 | 1.6 |
| 어른 말씀 잘 듣기 | 5.4 | 5.1 | 4.0 | 4.3 |
| 계 | 100.0 | 100.0 | 100.0 | 100.0 |

어머니의 취업 여부에 따라 부모 각각이 가정에서 배우기를 원하는 자녀의 자질과 특성을 비교하여 제시한 <표 II-3-34>에서 보듯이 모든 집단에서 동일하게 '예의바른 생활습관', '책임감', '타인에 대한 포용과 존중'의 순서로 선택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1·2차년도와 동일하였다.

4) 양육실제: 사회적 양육유형

어머니의 양육실제는 양육스타일의 하위척도 중 하나인 '사회적 양육유형'을 측정하는 도구를 선정하여, 한국아동패널 3차년도에는 총 9개 문항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가능한 점수 범위는 9~45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인 양육유형임을 의미한다. 어머니의 양육실제 평균점수는 3.80점으로 중간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표 II-3-35〉 양육실제: 사회적 양육유형

단위: 점

| 구분 | 종단비교 | | | 3차년도 모 취업 | |
|----------|------|------|------|-----------|------|
| | 1차년도 | 2차년도 | 3차년도 | 취업모 | 비취업모 |
| 평균 | 4.05 | 3.89 | 3.80 | 3.80 | 3.80 |
| 표준편차 | 0.50 | 0.49 | 0.51 | 0.52 | 0.51 |
| <i>t</i> | | | | 0.62 | |

주: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인 양육유형을 의미함.

어머니의 취업에 따른 양육실제의 차이를 *t*검증으로 분석한 결과,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즉,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른 어머니의 사회적 양육유형 방식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2차년도와 동일하였다.

5) 양육지식

양육지식은 총 13개의 문항에 대해 그렇다/아니다로 대답하도록 하여, 그 중 정답인 응답 수의 비율을 산출하여 평균과 표준편차를 계산하였다.

정답의 비율은 75% 이상 정답을 알고 있는 비율이 50.8%로 가장 많았으며, 50~75%는 38.3%에 해당하였다. 전체 평균은 70.95점이었다.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라 어머니의 양육지식의 차이를 *t*검증으로 분석한 결과, 취업모와 비취업모 간에 양육지식의 차이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취업여부와 양육에 대한 지식을 얼마나 정확히 알고 있는가는 관련이 없었다.

1차년도에는 정답의 비율에서 50~75%가 45.8%로 가장 많았고, 2차년도에는 75% 이상이 45.8%로 가장 많았고, 3차년도에는 75% 이상이 과반수가 넘음으로써 자녀의 성장과 함께 양육지식도 증가함을 알 수 있다.

〈표 II-3-36〉 양육지식

단위: %, 점

| 구분 | 종단비교 | | | 3차년도 모 취업 | |
|---------|----------|-------|-------|-----------|-------|
| | 1차년도 | 2차년도 | 3차년도 | 취업모 | 비취업모 |
| 25미만 | 1.2 | 1.5 | 1.4 | 0.9 | 1.7 |
| 25-50미만 | 12.3 | 10.4 | 9.4 | 6.0 | 11.0 |
| 50-75미만 | 45.8 | 42.3 | 38.3 | 43.2 | 36.0 |
| 75이상 | 40.7 | 45.8 | 50.8 | 49.8 | 51.3 |
| 계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 평균 | 67.51 | 69.51 | 70.95 | 71.92 | 70.49 |
| 표준편차 | 15.99 | 16.40 | 16.47 | 15.19 | 17.03 |
| | <i>t</i> | | | .79 | |

6) 양육스트레스

양육스트레스는 총 10개 문항, 5점 척도로 측정하였고, 점수범위는 10~50점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양육 관련 스트레스가 높음을 의미한다. 양육스트레스 역시 문항 평균값으로 제시하였는데,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의 평균값은 2.79점이

었다(표 II-3-37 참조). 어머니의 취업 여부에 따라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의 차이를 *t*검정으로 분석한 결과, 취업모와 비취업모 간에 양육스트레스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취업모에 비해 비취업모가 양육스트레스를 더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2차년도와 동일하였다. 1·2·3차년도에 걸친 종단비교를 하면, 2차년도에 약간 감소했던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점수가 3차년도에 증가했고, 개인차는 크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표 II-3-37〉 양육 스트레스

단위: 점

| 구분 | 종단비교 | | | 3차년도 모 취업 | |
|----------|------|------|------|----------------------|------|
| | 1차년도 | 2차년도 | 3차년도 | 취업모 | 비취업모 |
| 평균 | 2.75 | 2.73 | 2.79 | 2.68 | 2.84 |
| 표준편차 | 0.62 | 0.64 | 0.63 | 0.61 | 0.64 |
| <i>t</i> | | | | -4.29 ^{***} | |

주: 점수가 높을수록 양육 관련 스트레스가 높음을 의미함.

*** $p < .001$.

4. 육아지원 관련 특성

가. 육아지원서비스 이용

1) 서비스 이용 현황

가) 출생 후 낮 시간 주 양육자

지난 조사 이후 낮 시간동안의 육아지원서비스 이용 현황을 알아보기 위하여 조사 시점을 기준으로 1년간 낮 시간동안 주로 아이를 돌본 주 양육자를 조사하였다. 조사 시점을 기준으로 1년간의 변화 추이를 살펴봤기에 각 패널의 참여 시점의 차이로 발생하는 응답 시기의 차이를 고려하여, 1차년도 조사 시기인 2008년 4월부터 이후 3차년도 조사 시기인 2010년까지의 응답을 병합하여 살펴 보았다(표 II-4-1 참조).

출생 4개월 이후 육아지원서비스 이용 현황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하여 주로 육아지원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와 주로 이용하는 육아지원서비스의 개인 대리양육자와 어린이집 등 시설-이용률을 살펴본 것은 [그림 II-4-1]과 같다.

〈표 II-4-1〉 출생 후 육아지원서비스 이용 현황(중복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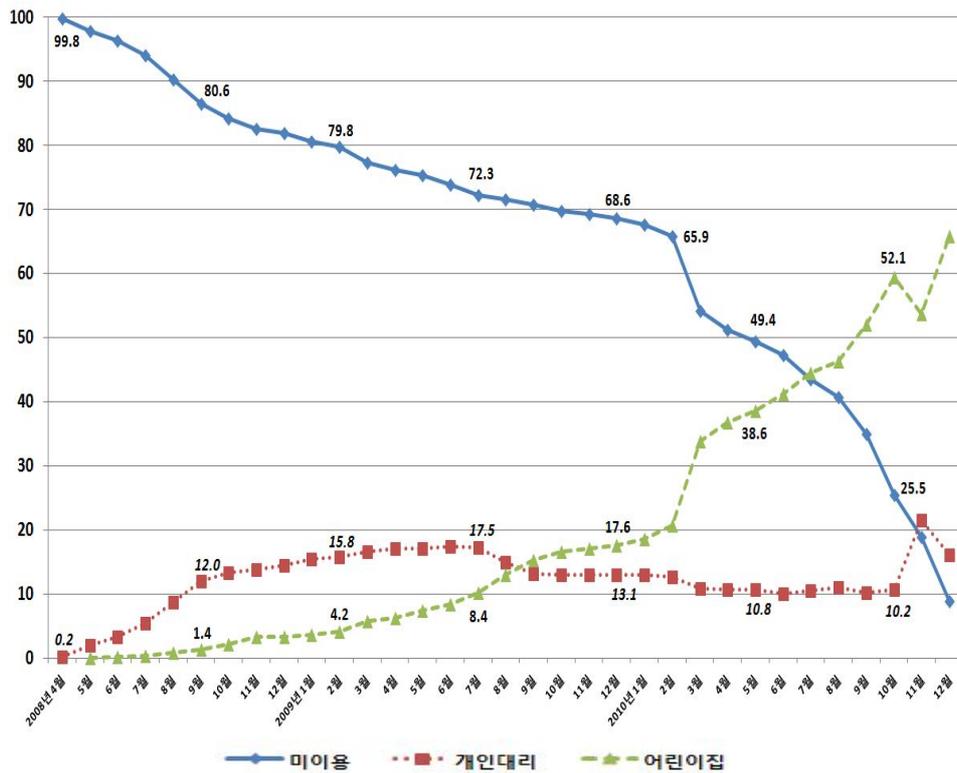
단위: %

| 구분 | 미이용 | 개인 대리양육 | 어린이집 | 반일제 이상학원 | 중복이용 | 기타 | 전체 |
|-------|------|------------|------|-------------|------|-----|-------|
| 2008년 | | | | | | | |
| 4월 | 99.8 | 0.2 | - | - | - | - | 100.0 |
| 5월 | 97.9 | 2.0 | 0.1 | - | - | - | 100.0 |
| 6월 | 96.4 | 3.4 | 0.2 | - | - | - | 100.0 |
| 7월 | 94.0 | 5.5 | 0.5 | - | - | - | 100.0 |
| 8월 | 90.3 | 8.8 | 0.9 | - | - | - | 100.0 |
| 9월 | 86.6 | 12.0 | 1.4 | - | 0.1 | - | 100.0 |
| 10월 | 84.3 | 13.4 | 2.3 | - | 0.1 | - | 100.0 |
| 11월 | 82.6 | 13.8 | 3.4 | - | 0.1 | - | 100.0 |
| 12월 | 82.0 | 14.5 | 3.4 | - | 0.1 | - | 100.0 |
| 2009년 | | | | | | | |
| 1월 | 80.6 | 15.5 | 3.7 | - | 0.2 | 0.0 | 100.0 |
| 2월 | 79.8 | 15.8 | 4.2 | - | 0.2 | 0.0 | 100.0 |
| 3월 | 77.4 | 16.6 | 5.8 | - | 0.1 | 0.0 | 100.0 |
| 4월 | 76.2 | 17.2 | 6.4 | - | 0.2 | 0.0 | 100.0 |
| 5월 | 75.3 | 17.1 | 7.4 | - | 0.2 | 0.0 | 100.0 |
| 6월 | 73.9 | 17.5 | 8.4 | - | 0.2 | 0.0 | 100.0 |
| 7월 | 72.3 | 17.3 | 10.2 | - | 0.1 | 0.0 | 100.0 |
| 8월 | 71.6 | 15.1 | 13.0 | - | 0.1 | 0.2 | 100.0 |
| 9월 | 70.8 | 13.2 | 15.4 | 0.0 | 0.1 | 0.4 | 100.0 |
| 10월 | 69.8 | 13.0 | 16.6 | 0.0 | 0.3 | 0.4 | 100.0 |
| 11월 | 69.3 | 13.0 | 17.1 | 0.0 | 0.2 | 0.4 | 100.0 |
| 12월 | 68.6 | 13.1 | 17.6 | 0.0 | 0.3 | 0.4 | 100.0 |
| 2010년 | | | | | | | |
| 1월 | 67.7 | 13.0 | 18.6 | 0.0 | 0.3 | 0.4 | 100.0 |
| 2월 | 65.9 | 12.7 | 20.7 | 0.0 | 0.3 | 0.4 | 100.0 |
| 3월 | 54.3 | 10.9 | 33.8 | 0.0 | 0.6 | 0.4 | 100.0 |
| 4월 | 51.3 | 10.8 | 36.8 | 0.1 | 0.6 | 0.4 | 100.0 |
| 5월 | 49.4 | 10.8 | 38.6 | 0.1 | 0.6 | 0.5 | 100.0 |
| 6월 | 47.4 | 10.1 | 41.2 | 0.1 | 0.8 | 0.4 | 100.0 |
| 7월 | 43.6 | 10.6 | 44.5 | 0.2 | 0.8 | 0.3 | 100.0 |
| 8월 | 40.8 | 11.1 | 46.3 | 0.2 | 1.1 | 0.5 | 100.0 |
| 9월 | 35.1 | 10.2 | 52.1 | 0.2 | 1.8 | 0.7 | 100.0 |
| 10월 | 25.5 | 10.7 | 59.5 | - | 3.2 | 1.1 | 100.0 |
| 11월 | 19.0 | 21.5 | 53.7 | - | - | 5.9 | 100.0 |
| 12월 | 9.0 | 16.2 | 65.8 | - | - | 9.0 | 100.0 |

주: 2차년도 조사에서 추가된 문항임.

일반적으로 패널 아동들이 생후 5개월이 된 시점인 2008년 8월까지의 약 90%의 가구가 주로 육아지원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부모가 양육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육아지원서비스를 이용하는 약 10%의 가구도 대부분 개인 대리 양육자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부모가 직접 양육하는 비율은 아동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 반면, 육아지원서비스 이용률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육아지원서비스 이용의 경우, 영아기인 만 1세경에는 개인대리양육자를 상대적으로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러한 경향은 만 2세경에 접어드는 2010년부터 감소하였으며, 이와 대비하여 어린이집 이용률은 상승세를 보였다. 개인대리 양육자를 이용하는 경우는 전반적으로 20%를 넘지 않게 나타난 반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는 2010년 3월에 들어 3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 %

[그림 II-4-1] 출생 후 육아지원서비스 이용 현황

어머니의 취업 여부에 따른 출생 이후 육아지원서비스 이용 현황을 살펴본 결과는 <표 II-4-2>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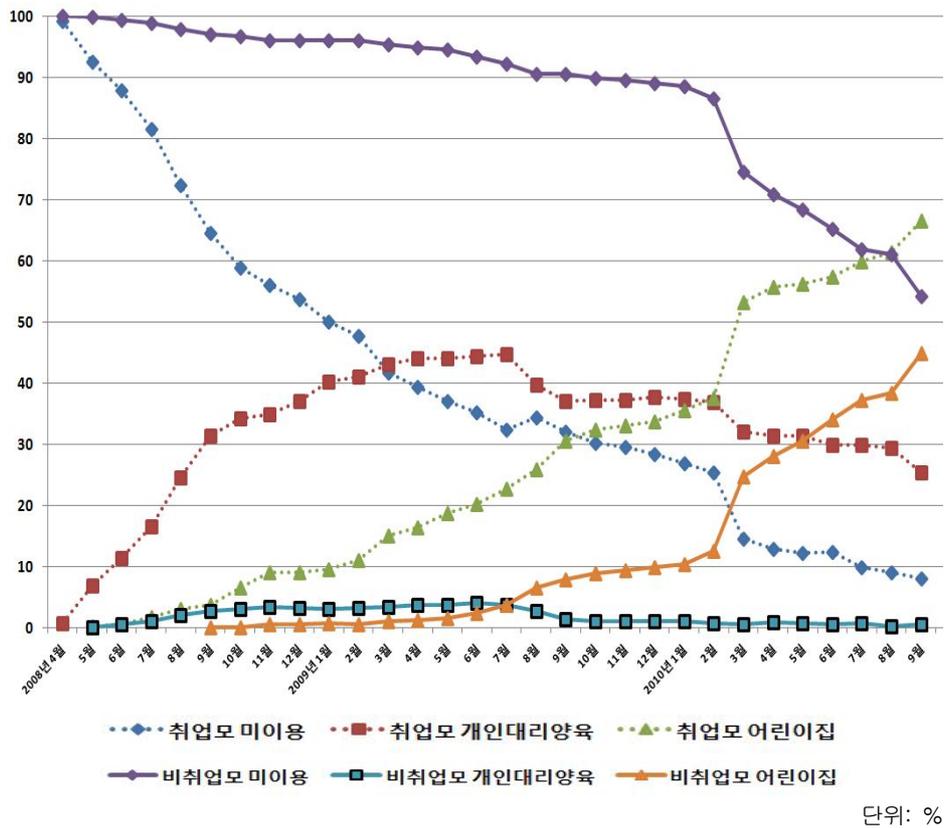
<표 II-4-2> 모 취업 여부에 따른 출생 후 육아지원서비스 이용 현황(중복응답)

단위: %

| 구분 | 취업모 | | | | 비취업모 | | | |
|-------|------|------------|----------|-------|-------|------------|----------|-------|
| | 미이용 | 개인 대리양육 | 어린 이집 | 전체 | 미이용 | 개인 대리양육 | 어린 이집 | 전체 |
| 2008년 | | | | | | | | |
| 4월 | 99.2 | 0.8 | - | 100.0 | 100.0 | - | - | 100.0 |
| 5월 | 92.5 | 7.0 | 0.4 | 100.0 | 99.8 | 0.2 | - | 100.0 |
| 6월 | 87.9 | 11.4 | 0.7 | 100.0 | 99.4 | 0.6 | - | 100.0 |
| 7월 | 81.5 | 16.6 | 1.9 | 100.0 | 98.8 | 1.2 | - | 100.0 |
| 8월 | 72.4 | 24.6 | 3.1 | 100.0 | 97.9 | 2.1 | - | 100.0 |
| 9월 | 64.6 | 31.5 | 3.9 | 100.0 | 97.0 | 2.8 | 0.1 | 100.0 |
| 10월 | 59.0 | 34.3 | 6.7 | 100.0 | 96.7 | 3.1 | 0.2 | 100.0 |
| 11월 | 56.1 | 34.9 | 9.1 | 100.0 | 96.0 | 3.5 | 0.6 | 100.0 |
| 12월 | 53.7 | 37.1 | 9.2 | 100.0 | 96.1 | 3.3 | 0.6 | 100.0 |
| 2009년 | | | | | | | | |
| 1월 | 50.1 | 40.3 | 9.6 | 100.0 | 96.0 | 3.2 | 0.8 | 100.0 |
| 2월 | 47.7 | 41.1 | 11.2 | 100.0 | 96.0 | 3.3 | 0.7 | 100.0 |
| 3월 | 41.8 | 43.1 | 15.2 | 100.0 | 95.4 | 3.5 | 1.1 | 100.0 |
| 4월 | 39.4 | 44.1 | 16.5 | 100.0 | 94.8 | 3.8 | 1.4 | 100.0 |
| 5월 | 37.1 | 44.1 | 18.8 | 100.0 | 94.5 | 3.8 | 1.7 | 100.0 |
| 6월 | 35.3 | 44.4 | 20.3 | 100.0 | 93.4 | 4.1 | 2.5 | 100.0 |
| 7월 | 32.5 | 44.7 | 22.8 | 100.0 | 92.2 | 3.8 | 3.9 | 100.0 |
| 8월 | 34.4 | 39.8 | 25.9 | 100.0 | 90.5 | 2.9 | 6.6 | 100.0 |
| 9월 | 32.2 | 37.1 | 30.7 | 100.0 | 90.6 | 1.5 | 7.9 | 100.0 |
| 10월 | 30.3 | 37.3 | 32.4 | 100.0 | 89.9 | 1.1 | 8.9 | 100.0 |
| 11월 | 29.7 | 37.2 | 33.1 | 100.0 | 89.5 | 1.1 | 9.4 | 100.0 |
| 12월 | 28.5 | 37.7 | 33.8 | 100.0 | 89.0 | 1.1 | 9.9 | 100.0 |
| 2010년 | | | | | | | | |
| 1월 | 27.0 | 37.4 | 35.6 | 100.0 | 88.5 | 1.1 | 10.4 | 100.0 |
| 2월 | 25.4 | 36.9 | 37.6 | 100.0 | 86.5 | 0.9 | 12.6 | 100.0 |
| 3월 | 14.6 | 32.1 | 53.3 | 100.0 | 74.5 | 0.7 | 24.8 | 100.0 |
| 4월 | 12.9 | 31.4 | 55.7 | 100.0 | 70.9 | 1.0 | 28.1 | 100.0 |
| 5월 | 12.3 | 31.4 | 56.2 | 100.0 | 68.4 | 0.9 | 30.7 | 100.0 |
| 6월 | 12.5 | 30.0 | 57.4 | 100.0 | 65.3 | 0.6 | 34.1 | 100.0 |
| 7월 | 10.0 | 29.9 | 60.0 | 100.0 | 61.9 | 0.8 | 37.3 | 100.0 |
| 8월 | 9.1 | 29.5 | 61.4 | 100.0 | 61.1 | 0.4 | 38.5 | 100.0 |
| 9월 | 8.1 | 25.4 | 66.5 | 100.0 | 54.3 | 0.7 | 44.9 | 100.0 |
| 10월 | 6.5 | 25.6 | 67.8 | 100.0 | 42.9 | 57.1 | - | 100.0 |
| 11월 | - | 63.8 | 36.2 | 100.0 | 31.4 | 68.6 | - | 100.0 |
| 12월 | - | 46.6 | 53.4 | 100.0 | 16.0 | 84.0 | - | 100.0 |

주: 2차년도 조사에서 추가된 문항임.

전반적으로 비취업모의 경우 아이가 만 2세가 되는 시점부터 서서히 육아지원서비스 이용률이 증가하는 반면, 취업모의 경우 아이의 출생 후부터 육아지원서비스 이용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취업모는 비취업모에 비하여 육아지원서비스 이용률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일과 가정을 양립하는 취업모에게 나타나는 자연스런 현상으로 이해된다. 3차년도에 육아지원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비취업모는 어린이집을 주로 이용하였다. 취업모는 아이가 만 2세가 되기 전까지는 개인대리양육자를 이용하는 비율이 높다가 점차 어린이집을 더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이가 어렸을 때 취업모들이 개인대리양육자를 더 많이 이용하는 이유는 개인대리양육자의 경우 아이의 가정에서 아이를 양육한다는 장점과 융통성 있는 양육시간의 장점 때문인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단위: %

[그림 11-4-2] 모 취업 여부에 따른 출생 후 육아지원서비스 이용 현황

이를 그래프로 표시한 결과는 <그림 II-4-2>와 같이 나타났다. 3차년도 조사가 완료되어가는 2010년 10월부터는 취업모와 비취업모 각 집단의 응답자 수가 50건 미만이었으므로, 조사 대상 수에 의한 편차를 고려하여 10월부터의 결과는 도표에 반영하지 않았다.

나) 육아지원서비스 이용 역사

2차년도 조사가 이루어진 2009년 이후, 개인대리양육자 혹은 대리양육기관을 한번이라도 변경한 경험이 있었는지에 대한 응답을 살펴보았다. 육아지원서비스 중 어린이집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패널의 46%, 개인대리양육자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패널의 14.9%, 반일제 이상 학원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패널의 1.0%, 기타 기관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패널의 0.9%가 각각을 변경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라 이러한 육아지원서비스 변경 경험 여부를 살펴본 결과, 취업모의 경우 개인대리양육자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가구의 41.4%, 어린이집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가구의 62.2%가 서비스를 변경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취업모의 경우 개인대리양육자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경우의 1.6%. 어린이집의 경우 37.4%가 육아지원서비스를 변경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여 육아지원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한번 결정한 서비스를 변경하는 경우가 더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2차년도 조사 시의 응답과 비교해보면, 2차년도의 경우 육아지원서비스의 이용 빈도가 3차년도에 비해 낮았던 만큼 전반적으로 육아지원서비스를 변경하는 경우도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표 II-4-3> 육아지원서비스 변경 경험(중복응답)

단위: %

| 구분 | 중단비교 | | 3차년도 모 취업 | |
|---------|------|------|-----------|------|
| | 2차년도 | 3차년도 | 취업모 | 비취업모 |
| 개인대리양육자 | 13.7 | 14.9 | 41.4 | 1.6 |
| 어린이집 | 12.0 | 46.0 | 62.2 | 37.4 |
| 반일제이상학원 | na | 1.0 | 0.9 | 1.0 |
| 기타 | na | 0.9 | 0.6 | 1.1 |

주: 1) 2차년도 조사에서 추가된 문항임.

2) na는 당해 연도 질문지에 포함되지 않은 응답을 의미함.

개인대리양육자를 이용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2차년도와 동일하게 대리양육자

를 변동하는 경험이 10%대로 거의 동일한 반면, 어린이집의 경우 2차년도에 12%였던 것에 반해 46%로 3배 이상 증가하였다(표 II-4-3 참조).

육아지원서비스를 변경한 횟수에 대해 <표 II-4-4>와 같이 살펴보면, 개인대리양육자는 평균 1.03회, 어린이집은 평균 1.02회 변경하였으며, 육아지원서비스를 변경하는 경우 대다수 1~2회였다. 취업모와 비취업모의 변경 횟수는 유사한 비율을 보여 대다수 1~2회 변경하였으나, 최대 10회까지 변경한 취업모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변경 횟수는 2차년도 조사와 크게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전반적으로 약간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II-4-4> 육아지원서비스 변경 횟수(중복응답)

단위: 회

| 구분 | | 중단비교 | | 3차년도 모 취업 | |
|--------------|------|------|------|-----------|------|
| | | 2차년도 | 3차년도 | 취업모 | 비취업모 |
| 개인대리양육자 | 평균 | 1.09 | 1.03 | 1.04 | 1.00 |
| | 표준편차 | 0.40 | 0.18 | 0.19 | 0.00 |
| | 최소 | 1 | 1 | 1 | 1 |
| | 최대 | 3 | 2 | 2 | 1 |
| 어린이집 | 평균 | 1.11 | 1.02 | 1.03 | 1.01 |
| | 표준편차 | 0.37 | 0.20 | 0.28 | 0.10 |
| | 최소 | 1 | 1 | 1 | 1 |
| | 최대 | 3 | 10 | 10 | 2 |
| 반일제 이상 학원 | 평균 | | 1.00 | 1.00 | 1.00 |
| | 표준편차 | na | 0.00 | 0.00 | 0.00 |
| | 최소 | | 1 | 1 | 1 |
| | 최대 | | 1 | 1 | 1 |
| 기타 | 평균 | | 1.05 | 1.00 | 1.06 |
| | 표준편차 | na | 0.21 | 0.00 | 0.24 |
| | 최소 | | 1 | 1 | 1 |
| | 최대 | | 2 | 1 | 2 |

주: na는 당해 연도 질문에 포함되지 않은 응답을 의미함.

<표 II-4-3>의 육아지원서비스 변경 경험과 <표 II-4-4>의 육아지원서비스 변경의 횟수에 대한 결과를 바탕으로, 육아지원서비스를 이용 시에 개인대리양육자를 이용하는 경우가 육아지원기관을 이용하는 경우에 비하여 지속적으로 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개인대리양육자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선택의 폭이 적고 구인이 어려움으로 인하여 개인대리양육자에 비하여 적절한 육아지원기관을 탐색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것으로 사료된다.

다) 조사 시점의 주 양육자

패널 아동이 만 2세가 되는 2010년 3차년도 조사 시점의 육아지원서비스 이용 여부를 살펴보기 위하여 조사 시점의 주 양육자에 대해 알아본 결과는 <표 II-4-5>와 같다.

만 2세가 되는 시점에 전체 패널 아동의 51.9%는 개인대리양육자 및 육아지원기관과 같은 부모 외의 육아지원서비스를 이용하였고, 48.1%는 부모가 양육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른 육아지원서비스 이용 여부를 χ^2 검증을 하여 분석한 결과, 두 집단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취업모가 비취업모에 비해 육아지원서비스를 더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육아지원서비스 이용률은 <표 II-4-1>과 마찬가지로 1차년도 15.6%, 2차년도 27.7%, 3차년도 51.9%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육아지원서비스 이용률 증가의 폭도 점차 커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육아지원서비스를 이용하는 패널 가구에서 주로 이용하고 있는 육아지원서비스 유형을 살펴보면, 어린이집이 79.4%로 압도적으로 많이 나타났으며, 개인대리양육자 18.6%, 개인대리양육자와 어린이집을 함께 이용하는 경우 1.2%로 응답되었고, 반일제 이상 학원과 선교원 등 기타 기관을 이용하는 경우도 각 0.4%로 소수 응답되었다.

〈표 II-4-5〉 육아지원서비스 이용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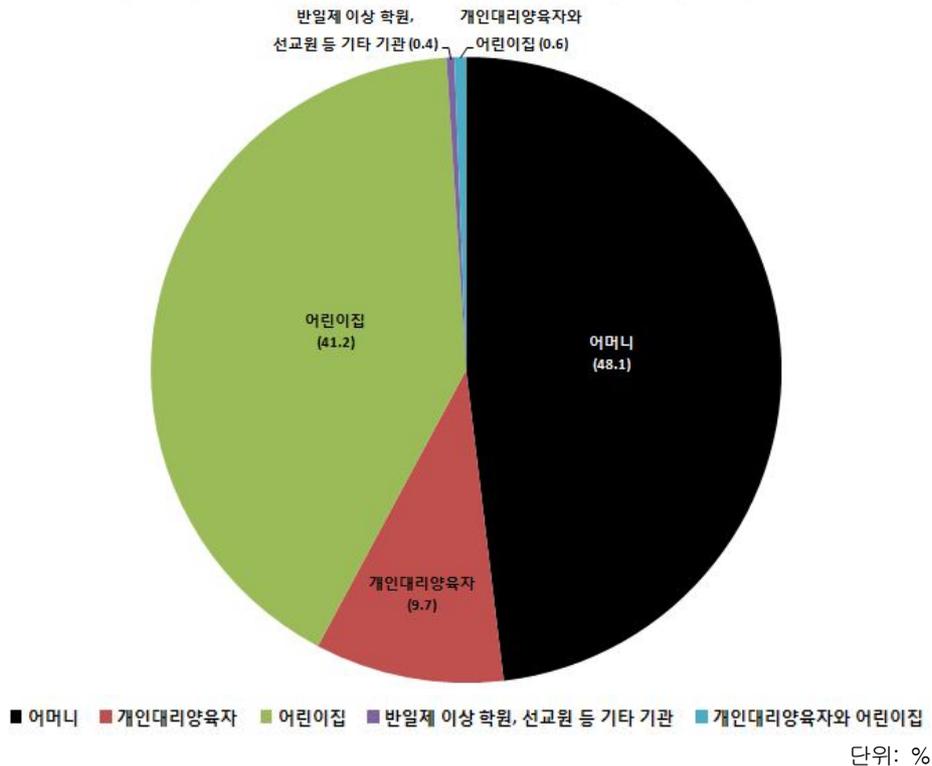
| 구분 | 종단비교 | | | 3차년도 모 취업 | |
|---------------|----------|-------|-------|-----------|-------|
| | 1차년도 | 2차년도 | 3차년도 | 취업모 | 비취업모 |
| 어머니 | 84.4 | 72.3 | 48.1 | 10.9 | 66.3 |
| 부모 외의 육아지원서비스 | 15.6 | 27.7 | 51.9 | 89.1 | 33.7 |
| 계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 | χ^2 | | | 456.29*** | |

주: 소수의 아버지 응답자의 경우 어머니가 양육하는 경우로 간주하여 제시함.

*** $p < .001$.

<표 II-4-5>의 육아지원서비스 이용 여부와 <표 II-4-6>의 주 이용 육아지원서비스를 종합하여 조사 시점의 주 양육자를 살펴보면, [그림 II-4-3]과 같다. 대상 패널아동이 만 2세가 되는 3차년도 조사 시점인 2010년도의 주 양육자는 어머니가 직접 양육을 하는 경우가 전체 응답 대상의 48.1%로 과반수에 가깝게

조사되었으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비율도 전체 응답 대상의 41.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I-4-3] 조사시점의 주 양육자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른 육아지원서비스 유형에 있어서는 취업모의 65.8%와 비취업모의 97.2%가 어린이집의 이용이 우세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나, 취업모의 경우에는 개인대리양육자를 이용하는 비율 31.6%, 개인대리양육자와 어린이집을 동시에 이용하는 경우 2.1%로 응답되어 개인대리양육자를 이용하는 경우도 상당 수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41>과 같이 주로 이용하는 육아지원서비스의 형태에 있어서는 개인대리양육자를 이용하는 비율이 1차년도 86.7%, 2차년도 60.7%, 3차년도 18.6%로 급격히 감소하고 있었다. 이와 대조적으로 어린이집의 경우 1차년도 12.6%, 2차년도 36.3%, 3차년도 79.4%로 현저하게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어 연령이 증가

할수록 양육자 1인이 아이를 돌보는 육아지원서비스인 개인대리양육자 형태보다 다른 아이들과 함께 지낼 수 있는 육아지원기관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4-6〉 주 이용 육아지원서비스

단위: %

| 구분 | 중단비교 | | | 3차년도 모 취업 | |
|----------------|-------|-------|-------|-----------|-------|
| | 1차년도 | 2차년도 | 3차년도 | 취업모 | 비취업모 |
| 개인대리양육자 | 86.7 | 60.7 | 18.6 | 31.6 | 1.6 |
| 어린이집 | 12.6 | 36.3 | 79.4 | 65.8 | 97.2 |
| 반일제 이상 학원 | na | na | 0.4 | - | 0.8 |
| 선교원 등 기타 기관 | na | na | 0.4 | 0.5 | 0.4 |
| 개인대리양육자 & 어린이집 | 0.7 | 3.1 | 1.2 | 2.1 | - |
| 계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주: 1) 빈도수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증이 불가함.

2) na는 당해 연도 질문지에 포함되지 않은 응답을 의미함.

라) 육아지원서비스 미이용 이유

육아지원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부모님이 직접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 그 이유를 살펴보면, ‘이용하고 싶지만 아이가 너무 어려서’ 39.3%, ‘직접 아이를 키우고 싶어서’ 28.1%, ‘이용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가 14.1%로 나타났다(표 II-4-7 참조).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른 육아지원서비스 미이용 이유의 차이를 χ^2 검증하여 분석한 결과, 두 집단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취업모(38.8%)와 비취업모(39.4%) 모두 ‘이용하고 싶지만 아이가 너무 어려서’와 같은 아이의 연령을 주된 미이용 사유로 응답하였다. 다른 선택 이유로는, 취업모의 경우 ‘이용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와 ‘비용이 부담돼서’가 각 14.9%, ‘직접 아이를 키우고 싶어서’가 13.4%로 나타난 반면, 비취업모의 경우 ‘직접 아이를 키우고 싶어서’ 29.4%, ‘이용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14.1%, ‘비용이 부담돼서’ 9.3% 등의 이유로 취업모와는 다소 다른 이유들이었다.

육아지원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가구의 미이용 사유는 2차년도 조사 시점과 3차년도 조사 시점에서 유사한 경향을 보였는데, 두 시점 모두 아이의 연령과 어머니의 자녀양육에 대한 의사가 주요 이유로 나타났다.

〈표 II-4-7〉 육아지원서비스 미이용 이유

단위: %

| 구분 | 종단비교 | | 3차년도 모 취업 | |
|----------------------------|----------|-------|-----------|-------|
| | 2차년도 | 3차년도 | 취업모 | 비취업모 |
| 이용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 19.5 | 14.1 | 14.9 | 14.1 |
| 이용하고 싶지만 아이가 너무 어려서 | 38.6 | 39.3 | 38.8 | 39.4 |
| 주변에 마음에 드는 기관이나 대리양육자가 없어서 | 2.0 | 2.7 | 4.5 | 2.6 |
| 비용이 부담돼서 | 2.3 | 9.7 | 14.9 | 9.3 |
| 직접 아이를 키우고 싶어서 | 36.3 | 28.1 | 13.4 | 29.4 |
| 기관이나 대리양육자와 시간이 맞지 않아서 | 0.5 | 1.2 | 1.5 | 1.2 |
| 아이가 싫어해서 | 0.2 | 1.2 | 1.5 | 1.2 |
| 아이가 질병이나 장애가 있어서 | 0.4 | 0.5 | 1.5 | 0.4 |
| 아이가 다른 양육자나 기관에 적응하지 못해서 | 0.1 | 0.1 | - | 0.1 |
| 기타 | 0.2 | 3.0 | 9.0 | 2.5 |
| 계 | 100.0 | 100.0 | 100.0 | 100.0 |
| | χ^2 | | 19.03* | |

* $p < .05$.

2) 비대가성 양육지원

비대가성 양육지원은 2차년도 조사에서 새로 추가된 변인으로 조사내용은 비대가성 양육지원 여부, 비대가성 양육지원 인원수, 비대가성 양육 지원자, 비대가성 양육 지원자 동거 여부 및 비대가성 양육 지원 시간의 다섯 가지 항목이었다. 비대가성 양육지원이란 어머니가 주 양육자인 경우 배우자 외에 무상으로 도움을 제공받는 양육지원을 의미한다.

가) 비대가성 양육지원 여부

어머니가 주 양육자인 경우 배우자 외에 무상으로 도움을 제공받는 비대가성 양육 지원 여부를 살펴보면, 지원 없이 혼자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91.9%, 지원이 있는 경우 8.1%로 어머니가 주 양육자인 경우 주변의 도움 없이 홀로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가 압도적이었다(표 II-4-8 참조). 이러한 결과는 2차년도에 9.1%의 어머니가 비대가성 양육 지원을 받는 것과 유사하였다.

어머니의 취업 여부에 따라서는, 비취업모의 경우 5.6%만이 지원을 받는 반면, 취업모의 경우 37.5%가 지원을 받고 있었다. 이는 취업모가 양육과 가정의 병행을 위해 주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

〈표 II-4-8〉 비대가성 양육 지원 여부

단위: %

| 구분 | 종단비교 | | 3차년도 모 취업 | |
|----|-------|-------|-----------|-------|
| | 2차년도 | 3차년도 | 취업모 | 비취업모 |
| 있음 | 9.1 | 8.1 | 37.5 | 5.6 |
| 없음 | 90.9 | 91.9 | 62.5 | 94.4 |
| 계 | 100.0 | 100.0 | 100.0 | 100.0 |

주: 1) 빈도수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증이 불가함.
2) 2차년도 조사에서 추가된 문항임.

나) 비대가성 양육 지원 인원수

비가대성 양육 지원을 받는 패널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양육 지원에 대해 살펴 보았다. 비대가성 양육 지원을 제공하는 인원수에 관한 질문에 대해 최소 1명에서 최대 5명까지, 평균적으로 1.40명의 지원을 받는 것으로 응답되었다.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른 비대가성 양육 지원 인원수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종단비교 결과에 있어서도 2차년도 1.22명과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으며, 비대가성 양육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대다수 1명으로부터 양육 지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른 비대가성 양육 지원 인원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종단비교 결과에 있어서도 2차년도 1.22명과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으며, 비대가성 양육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대다수 1명에 의해 양육 지원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

〈표 II-4-9〉 비대가성 양육 지원 인원수

단위: 명

| 구분 | 종단비교 | | 3차년도 모 취업 | |
|----------|------|------|-----------|------|
| | 2차년도 | 3차년도 | 취업모 | 비취업모 |
| 평균 | 1.22 | 1.40 | 1.15 | 1.54 |
| 표준편차 | 0.50 | 0.85 | 0.36 | 1.00 |
| 최소 | 1 | 1 | 1 | 1 |
| 최대 | 3 | 5 | 2 | 5 |
| <i>t</i> | | | -.99 | |

주: 2차년도 조사에서 추가된 문항임.

다) 비대가성 양육 지원자

비가대성 양육 지원을 받는 경우 양육 지원을 해주는 사람과 패널 대상 아동

과의 관계를 비대가성 양육 지원자의 수만큼 응답한 중복응답의 내용을 다중응답 분석을 이용해 살펴본 결과는 <표 II-4-10>과 같다.

비대가성 양육 지원자는 외할머니 32.8%, 친할머니 27.8%, 기타 친인척 11.9%, 친할아버지 10.1%로, 대다수가 조부모를 비롯한 친인척 집단의 지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취업 여부에 따라 비교해 볼 경우 취업모의 양육지원자는 아이의 외할머니 46.8%, 친할머니 31.1%로 나타나, 취업모의 약 80% 정도가 아이의 조부모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었으며, 비취업모의 경우 아이의 외할머니 26.8%, 친할머니 26.3%로 취업모에 비해 다소 낮은 비율이지만 50% 이상이 아이의 조부모 특히 할머니에 의해 지원을 받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취업모의 경우에는 비취업모에 비해 아이의 외조모로부터 비대가성 양육지원받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2차년도 조사 내용과 유사한 경향성을 보이는 것으로, 핵가족화 되어 있는 현 사회에서 조부모 집단의 중요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아이의 양육에 있어서 부모는 물론 아이의 조부모의 영향력도 있음을 시사한다. 더불어 육아지원기관의 부모 교육 프로그램에 조부모 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될 필요성이 제기된다.

<표 II-4-10> 비대가성 양육 지원자(중복응답)

단위: %

| 구분 | 중단비교 | | 3차년도 모 취업 | |
|----------|-------|-------|-----------|-------|
| | 2차년도 | 3차년도 | 취업모 | 비취업모 |
| 친할머니 | 24.7 | 27.8 | 31.1 | 26.3 |
| 친할아버지 | 5.2 | 10.1 | 11.0 | 9.8 |
| 외할머니 | 49.9 | 32.8 | 46.8 | 26.8 |
| 외할아버지 | 2.4 | 6.4 | 2.1 | 8.3 |
| 손위 형제·자매 | 0.9 | 3.5 | 2.0 | 4.2 |
| 기타 친인척 | 10.4 | 11.9 | - | 17.0 |
| 친구 또는 이웃 | 1.7 | - | - | - |
| 가사 도우미 | 2.1 | 4.4 | 7.0 | 3.3 |
| 기타 | 2.7 | 3.1 | - | 4.4 |
| 계 | 100.0 | 100.0 | 100.0 | 100.0 |

주: 2차년도 조사에서 추가된 문항임.

라) 비대가성 양육 지원자 동거 여부

비대가성으로 지원을 받는 경우, 비대가성 양육 지원자가 패널 아동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지를 다중응답 분석을 실시한 결과, 35.9%가 함께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응답되었다.

어머니의 취업 여부를 기준으로 양육지원자의 동거여부를 살펴보면, 취업모의 경우 49.9%가 함께 살고 있는 반면 비취업모의 경우 30.8%가 아이와 함께 거주하고 있었다. 즉, 아동의 어머니가 취업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 양육 지원자가 아이와 함께 살고 있는 비중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대상 아동이 만 1세가 되던 2차년도의 경우 비대가성 양육 지원자의 동거 비율이 21.4%였는데 반해 3차년도에 다소 증가한 추세를 보이는데, 이는 아이의 연령 증가에 따라 취업 활동을 재개한 어머니의 비율이 늘어났다는 점과 대다수의 지원자가 조부모인 점을 고려할 때 취업모를 지원하기 위하여 조부모와 해당 패널 가정의 합가가 이루어진 것으로 추측된다.

〈표 II-4-11〉 비대가성 양육 지원자 동거 여부(중복응답)

단위: %

| 구분 | 종단비교 | | 3차년도 모 취업 | |
|-----|-------|-------|-----------|-------|
| | 2차년도 | 3차년도 | 취업모 | 비취업모 |
| 동거 | 21.4 | 35.9 | 49.9 | 30.8 |
| 비동거 | 78.6 | 64.1 | 50.1 | 69.2 |
| 계 | 100.0 | 100.0 | 100.0 | 100.0 |

주: 2차년도 조사에서 추가된 문항임.

비대가성 양육 지원자가 함께 거주하고 있지 않은 경우의 거주 거리를 모두 합산하여 살펴본 결과, 대다수의 지원자가 평균 19.65분으로 20분 안쪽의 거리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소 1분 거리의 인접한 지역에서 최대 1시간 30분 정도 떨어진 곳에 거주하고 있었다.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라 비대가성 양육 지원자의 거주 거리의 차이가 있는지 *t*검정한 결과, 두 집단 간에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비대가성 양육 지원자의 거주 거리를 2차년도와 비교해보면, 평균 21.22분 거리에 거주했던 것보다 다소 감소하였으며, 이는 친인척으로부터의 양육지원을 받기 위해 근거리로 이사를 하는 사회적 추세와 일치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표 II-4-12〉 비대가성 양육 지원자 거주 거리(중복응답)

단위: 분

| 구분 | 종단비교 | | 3차년도 모 취업 | |
|----------|-------|-------|-----------|-------|
| | 2차년도 | 3차년도 | 취업모 | 비취업모 |
| 평균 | 21.22 | 19.65 | 20.73 | 19.27 |
| 표준편차 | 21.58 | 19.10 | 16.43 | 19.94 |
| 최소 | 1 | 1 | 1 | 1 |
| 최대 | 135 | 90 | 50 | 90 |
| <i>t</i> | | | -.02 | |

주: 2차년도 조사에서 추가된 문항임.

마) 비대가성 양육 지원 시간

비대가성 양육 지원을 받는 경우의 지원 시간을 이용자별로 모두 합하여 살펴보면, 주당 최소 1시간에서 최대 40시간으로 평균 9.85시간의 지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라 비대가성 양육 지원자의 지원 시간의 차이가 있는지 *t*검정한 결과, 두 집단 간에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비대가성 양육 지원 시간을 2차년도와 비교해보면, 평균 8.98시간을 지원 받았던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원 시간이 다소 길어진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비대가성 양육지원을 받는 경우, 아이의 연령 증가와 더불어 어머니의 취업 활동이 활발해 짐에 따라 보다 긴 시간을 지원 받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II-4-13〉 비대가성 양육 지원자 지원 시간(중복응답)

단위: 시간/주

| 구분 | 종단비교 | | 3차년도 모 취업 | |
|----------|------|------|-----------|------|
| | 2차년도 | 3차년도 | 취업모 | 비취업모 |
| 평균 | 8.98 | 9.85 | 10.55 | 9.44 |
| 표준편차 | 6.10 | 6.84 | 6.32 | 7.09 |
| 최소 | 1 | 1 | 1 | 1 |
| 최대 | 27 | 40 | 24 | 40 |
| <i>t</i> | | | .14 | |

주: 2차년도 조사에서 추가된 문항임.

종합해 볼 때, 어머니가 육아지원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직접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주로 아이의 조부모로부터 비대가성 양육 지원을 받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양육을 지원하는 인적자원은 어머니의 취업과 상관없이 유사한 비율을

나타내었지만, 어머니가 취업 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하여 비대가성 양육 지원자가 함께 거주하거나 인근에 거주하고 있으며 보다 장시간의 지원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경향은 아이가 만 1세가 되는 시점인 2차년도 조사에 비하여 만 2세가 되는 3차년도 조사에서 조금씩 강화되는 추세를 보였는데, 이는 자녀의 연령 증가에 따른 어머니의 취업 활동이 활발해 짐에 따른 것으로 추측된다. 이러한 결과는 자녀가 성장하면서 어머니의 취업 활동이 재개됨에 따라 주변 인적 자원 활용에 대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도 육아지원서비스 제공에서 함께 논의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3) 개인대리양육

가) 개인대리양육 이용 이유

육아지원서비스 중 개인대리양육을 이용하는 가구에게 육아지원기관이 아닌 개인대리양육을 이용하는 이유를 물어본 결과는 <표 II-4-14>와 같다.

<표 II-4-14> 개인대리양육 이용 이유

단위: %

| 구분 | 종단비교 | | | 3차년도 모 취업 | |
|---------------------------------|-------|-------|-------|-----------|-------|
| | 1차년도 | 2차년도 | 3차년도 | 취업모 | 비취업모 |
| 아이가 너무 어려서 기관에 적응하기 힘들까봐 | 56.4 | 54.2 | 46.8 | 45.6 | 78.2 |
| 아이의 나이가 너무 어려서 기관에서 받아주지 않으므로 | 3.6 | 2.9 | 4.5 | 4.6 | - |
| 기관이용에 비해서 비용이 적어서 | 2.1 | 0.8 | 1.3 | 1.4 | - |
| 원하는 시간에 이용할 수 있어서 | 1.3 | 2.8 | 1.3 | 1.3 | - |
| 개인대리양육이 더 믿음이 가고 안심인 되어서 | 4.1 | 32.6 | 40.5 | 41.2 | 21.8 |
| 보육시설 또는 학원의 환경이 열악하여서 | 6.0 | 0.6 | - | - | - |
| 한 사람이 여러 아이를 같이 돌보는 것이 불안하여서 | 25.6 | 4.6 | 1.8 | 1.8 | - |
| 주변에 이용할만한 기관이 없어서 | 0.8 | 0.5 | - | - | - |
| 교육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 - | 0.2 | na | na | na |
| 기타 | - | 0.9 | 3.8 | 4.0 | - |
| 계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주: 1) 빈도수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증이 불가함.

2) na는 당해 연도 질문지에 포함되지 않은 응답을 의미함.

개인대리양육을 이용하는 이유에 대하여 이용자들은 ‘아이가 너무 어려서 기관에 적응하기 힘들까봐’가 46.8%, ‘개인대리양육이 더 믿음이 가고 안심이 되어서’ 40.5%로 자녀의 연령과 개인대리양육자에 대한 신뢰를 우선으로 꼽았다 (표 II-4-14 참조).

어머니의 취업 여부에 따라 비교해 본 결과에 있어서도 취업모와 비취업모 모두 ‘아이가 너무 어려서 기관에 적응하기 힘들까봐’를 각 45.6%, 78.2%로 주 이유로 선택하였으며, ‘개인대리양육이 더 믿음이 가고 안심이 되어서’를 각각 41.5%, 21.8%로 응답하였다. 자녀의 연령을 최우선 이유로 선택한 것은 1차년도 조사의 56.4% 응답과 2차년도 조사의 54.2% 응답이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개인대리양육의 이유로 1차년도에는 ‘한 사람이 여러 아이를 같이 돌보는 것이 불안하여서(25.6%)’라는 아이와 양육자 사이의 비율에 대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고려한 반면, 이후의 조사에서는 ‘개인대리양육이 더 믿음이 가고 안심이 되어서’를 2차년도 32.6%, 3차년도 40.5% 선택하여 아이와 양육자와의 비율보다 양육자에 대한 신뢰성을 중점적으로 고려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나) 개인대리양육자 특성

개인대리양육자를 이용하는 경우 개인대리양육자와 아이의 관계는 <표 II-4-15>과 같이 외할머니 42%, 친할머니 38.3%로 비대가성 양육지원자와 마찬가지로 아이의 조부모를 개인대리양육자로 활용하는 경우가 대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4-15〉 개인대리양육자와의 관계

단위: %

| 구분 | 종단비교 | | | 3차년도 모 취업 | |
|---------------|-------|-------|-------|-----------|-------|
| | 1차년도 | 2차년도 | 3차년도 | 취업모 | 비취업모 |
| 친할머니 | 37.6 | 34.3 | 38.3 | 38.1 | 44.8 |
| 친할아버지 | 0.9 | 0.9 | 2.1 | 1.9 | 8.5 |
| 외할머니 | 41.9 | 46.2 | 42.0 | 43.0 | 16.8 |
| 외할아버지 | 0.4 | - | - | - | - |
| 기타 친인척 | 7.1 | 3.9 | 5.7 | 5.6 | 9.8 |
| 비친인척 육아 도우미 | 11.6 | 13.2 | 8.5 | 8.8 | - |
| 가사와 육아 통합 도우미 | 0.5 | 1.5 | 2.9 | 2.2 | 20.0 |
| 기타 | - | 0.1 | 0.4 | 0.5 | - |
| 계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주: 빈도수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증이 불가함.

어머니의 취업에 따라서도 취업모의 경우 개인대리양육자가 외할머니 43%, 친할머니 38.1%, 비취업모의 경우에 있어서도 친할머니 44.8%, 외할머니 16.8%로 과반수 이상이 아이의 조부모가 개인대리양육자로서 육아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응답되었다(표 II-4-15 참조). 즉, 개인대리양육자로서 혈연관계에 있는 친인척을 선호하는 것으로 짐작된다.

친인척이 아닌 비인척자를 개인대리양육자로 활용하는 경우 구인의 경로에 대해서는 <표 II-4-16>와 같이, 주변의 소개를 받은 경우가 44.6%로 가장 많았다. 어머니의 취업 여부에 따라 살펴보면, 취업모의 경우 주변의 소개가 44.8%, 온라인상의 구인·구직 광고 17.4%, 오프라인 상의 구인·구직 광고 15.7%, 평소 알던 사람인 경우 15%로 주변의 소개를 받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비교적 다양한 구인 경로를 활용하는 것으로 응답되었다. 반면 비취업모의 경우 업체·인력전문기관 등의 소개가 60%, 주변의 소개가 40%로 주로 주변의 인적자원을 활용하여 개인대리양육자를 섭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종단비교 시에도 주변의 소개로 구인하는 경우가 1차년도 32.1%, 2차년도 39.3%로 3차년도와 마찬가지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양상을 보였다.

<표 II-4-16> 개인대리양육자 구인 경로

단위: %

| 구분 | 종단비교 | | | 3차년도 모 취업 | |
|------------------|-------|-------|-------|-----------|-------|
| | 1차년도 | 2차년도 | 3차년도 | 취업모 | 비취업모 |
| 평소 알던 사람인 | 16.6 | 15.7 | 14.1 | 15.0 | - |
| 주변의 소개로 | 32.1 | 39.3 | 44.6 | 44.8 | 40.0 |
| 온라인상의 구인·구직 광고로 | 24.2 | 12.9 | 16.4 | 17.4 | - |
| 오프라인상의 구인·구직 광고로 | 15.0 | 20.8 | 14.8 | 15.7 | - |
| 업체·인력전문기관 등의 소개로 | 12.1 | 9.6 | 10.2 | 7.0 | 60.0 |
| 기타 | - | 1.6 | - | - | - |
| 계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주: 빈도수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증이 불가함.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주로 주변의 친인척자원을 활용하여 개인대리양육자로 이용하고 있었다. 이러한 양상은 취업모와 비취업모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므로, 이후의 육아지원서비스 중 개인대리양육자 관련 문항의 분석은 개인대리양육자와 아이의 관계에 있어 친인척관계를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먼저 개인대리양육자의 성별을 살펴본 결과는 <표 II-4-17>과 같다. 개인대리

양육자의 성별특성은 97.9%가 압도적으로 여성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인척 관계에서는 100%가 여성 개인대리양육자를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개인대리양육자를 이용하는 2.4%의 경우가 남성 개인대리양육자로 나타났는데, 이는 친인척 관계인 아동의 할아버지 등이었다.

개인대리양육자 성별의 종단비교 경향은 남성에 비해 여성 개인대리양육자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이 1차년도 조사 시점부터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표 II-4-17〉 개인대리양육자 성별

단위: %

| 구분 | 종단비교 | | | 아이와의 관계 | |
|----|-------|-------|-------|---------|-------|
| | 1차년도 | 2차년도 | 3차년도 | 친인척 | 비인척 |
| 남자 | 1.3 | 0.9 | 2.1 | 2.4 | - |
| 여자 | 98.7 | 99.1 | 97.9 | 97.6 | 100.0 |
| 계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주: 빈도수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증이 불가함.

개인대리양육자의 학력 특성은 중졸 이하가 47.7%, 고졸이 37.9%로 비교적 학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대리양육자의 학력을 아이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친인척의 52.3%가 중졸이며, 36.1%가 고졸로 응답하였다. 친인척이 아닌 경우는 51.4%가 고졸, 13.1%가 중졸 이하로 조사되어, 친인척 관계의 개인대리양육자의 경우에서 비교적 낮은 학력 분포를 보였다. 종단비교 시에도 이와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이는 친인척이 아닌 경우 타인이므로 개인대리양육자의 선택 시 학력과 같은 객관적 지표가 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표 II-4-18〉 개인대리양육자 학력

단위: %

| 구분 | 종단비교 | | | 아이와의 관계 | |
|-----------|-------|-------|-------|---------|-------|
| | 1차년도 | 2차년도 | 3차년도 | 친인척 | 비인척 |
| 중학교 졸업 이하 | 45.9 | 48.6 | 47.7 | 52.3 | 13.1 |
| 고등학교 졸업 | 38.7 | 46.8 | 37.9 | 36.1 | 51.4 |
| 전문대학 졸업 | 1.2 | 1.2 | 2.1 | 1.2 | 8.6 |
| 대학교 졸업 | 5.4 | 3.1 | 4.1 | 4.7 | - |
| 대학원 이상 졸업 | - | 0.4 | 0.9 | 1.0 | - |
| 잘 모름 | 8.8 | - | 7.3 | 4.7 | 26.8 |
| 계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주: 빈도수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증이 불가함.

개인대리양육자의 결혼 상태는 83.2%가 기혼자인 것으로 응답되었으며, 14%가 사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이와의 관계를 보면, 친인척 관계에서는 82.6%, 비인척 관계에서는 87.5%가 기혼인 것으로 응답하였다(표 II-4-19 참조). 친인척의 경우 1.8%의 소수가 미혼이라고 응답한 반면, 비인척 관계에서는 사별 및 이혼을 포함하여 결혼 경험이 있는 사람을 개인대리양육자로 활용하는 것으로 응답되었다. 1차년도부터 3차년도까지의 종단비교에서도 이 비율은 유사하여, 결혼 상태이거나 혹은 결혼 후 이혼이나 사별을 경험한 결혼 생활 유경험자를 개인대리양육자로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4-19〉 개인대리양육자 결혼상태

단위: %

| 구분 | 종단비교 | | | 아이와의 관계 | |
|------|-------|-------|--------|---------|-------|
| | 1차년도 | 2차년도 | 3차년도 | 친인척 | 비인척 |
| 미혼 | 0.2 | 1.1 | 1.6 | 1.8 | - |
| 결혼 | 83.1 | 83.9 | 83.2 | 82.6 | 87.5 |
| 이혼 | 1.9 | 0.9 | 0.3 | - | 2.4 |
| 사별 | 14.8 | 13.4 | 14.0 | 15.3 | 4.7 |
| 잘 모름 | - | - | 0.9 | 0.3 | 5.4 |
| 계 | 100.0 | 100.0 | 100.01 | 100.0 | 100.0 |

주: 빈도수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증이 불가함.

개인대리양육자의 국적을 살펴보면, 대다수인 99.3%가 대다수 한국인으로 응답되었다. 아이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살펴볼 때, 친인척 관계에서는 100% 한국인으로 응답되었으며 비인척 관계에서는 5.8%가 조선족 개인대리양육자를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대리양육자의 국적은, 1차년도부터 3차년도까지 동일하게 한국인인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II-4-20〉 개인대리양육자 국적

단위: %

| 구분 | 종단비교 | | | 아이와의 관계 | |
|--------|-------|-------|-------|---------|-------|
| | 1차년도 | 2차년도 | 3차년도 | 친인척 | 비인척 |
| 한국인 | 98.2 | 98.4 | 99.3 | 100.0 | 94.2 |
| 조선족 | 1.3 | 1.4 | 0.7 | - | 5.8 |
| 기타 외국인 | 0.5 | 0.2 | - | - | - |
| 계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주: 빈도수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증이 불가함.

개인대리양육자의 자녀양육의 경험을 살펴보면, 98.9%가 자녀를 양육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응답되었다. 아이와 친인척 관계인 경우에는 소수지만 자녀양육 경험이 없는 경우에도 이용하고 있으나, 비인척 관계에서는 100% 자녀양육 경험이 있는 개인대리양육자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차년도부터 3차년도까지의 조사 모두에서 자녀를 양육한 경험이 있는 개인대리양육자를 압도적으로 선택하였다. 이러한 종단비교 결과는 개인대리양육자의 자녀양육 경험 유무가 개인대리양육자 결정에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II-4-21〉 개인대리양육자 자녀양육 경험

단위: %

| 구분 | 종단비교 | | | 아이와의 관계 | |
|------|-------|-------|-------|---------|-------|
| | 1차년도 | 2차년도 | 3차년도 | 친인척 | 비인척 |
| 있음 | 95.1 | 98.5 | 98.9 | 98.7 | 100.0 |
| 없음 | 3.9 | 1.5 | 0.8 | 0.9 | - |
| 잘 모름 | 1.0 | - | 0.3 | 0.3 | - |
| 계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주: 빈도수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증이 불가함.

개인대리양육자와의 동거여부를 알아본 결과, 34.8%가 낮시간 동안 아이를 개인대리양육자의 집에서 양육하는 것으로 응답하였으며, 29%는 함께 살고 있고, 19%는 아이만 개인대리양육자의 가정에 거주하는 위탁의 형태를 취하고 있었으며, 18.6%는 개인대리양육자가 아동의 집으로 출퇴근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아이와 개인대리양육자와의 관계에서, 친인척 여부에 상관없이 아이를 개인대리양육자의 거주지에 낮시간 동안 맡기는 형태가 각각 33.6%(친인척), 44.2%(비인척)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친인척 관계에서는, 아이의 가족과 동거 형태를 취하는 경우가 24.4%로 가장 높았다. 이는 개인대리양육자의 대다수가 조부모이며, 가구형태에 있어서도 조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3세대 가정이 증가한 것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이다. 비인척의 경우에는 15.8%가 아이의 가정에서 동거하고 있는 것으로 응답하여 비인척 입주 개인대리양육자를 이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종단비교 시 1차년도의 경우 34.1%가 함께 거주하는 형태를 취한 반면 2차년도부터는 점차 아동을 개인대리양육자의 집에 낮 동안 맡긴다는 응답이 증가하였다. 이는 자녀의 성장으로 인해 증가되는 비대가성 혹은 대가성 양육지원을

위하여, 1차년도에 비하여 2차년도부터 3세대 가족의 증가 등 가족형태의 변화가 요구되기 때문으로 추측된다(II-1-66 참조).

〈표 II-4-22〉 개인대리양육자 거주지

단위: %

| 구분 | 종단비교 | | | 아이와의 관계 | |
|-------------------------|-------|-------|-------|---------|-------|
| | 1차년도 | 2차년도 | 3차년도 | 친인척 | 비인척 |
| 함께 살고 있음 | 34.1 | 29.0 | 23.4 | 24.4 | 15.8 |
| 아기만 이분 집에서 살고 있음 | 19.4 | 19.0 | 16.4 | 18.6 | - |
| 우리 집으로 출퇴근을 하고 있음 | 18.5 | 18.6 | 22.7 | 20.4 | 40.0 |
| 아기를 이분 집에 낮 시간동안 맡기고 있음 | 28.0 | 32.5 | 34.8 | 33.6 | 44.2 |
| 기타 | - | 0.8 | 2.7 | 3.0 | - |
| 계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주: 빈도수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증이 불가함.

다) 개인대리양육자 이용 실제

개인대리양육자를 이용하는 빈도를 살펴보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양육지원을 받는 경우가 74.6%로 가장 많았으며, 일주일 내내 이용하는 경우도 13.9%,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이용하는 경우도 11.5%로 나타났다(표 II-4-23 참조). 아이와의 관계에 따라 개인대리양육자 이용 빈도를 살펴보면, 친인척 여부에 상관없이 주 5일 이용이 각 74.3%(친인척), 77%(비인척)로 가장 높았으며, 개인대리양육자가 친인척일 경우 일주일 내내 이용하는 비율이 14.5%, 주 6일 이용이 11.2%로 응답되었다. 종단비교에서도 주 5일인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표 II-4-23〉 개인대리양육 이용 빈도

단위: %

| 구분 | 종단비교 | | | 아이와의 관계 | |
|----------------|-------|-------|-------|---------|-------|
| | 1차년도 | 2차년도 | 3차년도 | 친인척 | 비인척 |
|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 14.2 | 15.5 | 11.5 | 11.2 | 13.9 |
|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 63.0 | 63.0 | 74.6 | 74.3 | 77.0 |
| 일주일 내내 | 19.0 | 18.4 | 13.9 | 14.5 | 9.0 |
| 일주일에 며칠만 | 3.8 | 3.1 | - | - | - |
| 계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주: 빈도수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증이 불가함.

개인대리양육을 이용하고 있는 응답자들의 실질적인 이용 시간을 알아본 결과, 하루 최소 2시간에서 최대 23.98시간까지 평균 11.61시간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대리양육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의 양육 지원 시작 시간과 종료 시간은 평균적으로 오전 8시대에 시작하여 오후 7시대에 종료되는 것이 가장 보편적인 양상으로 나타났다.

개인대리양육자와의 관계에 따라서 총 이용 시간을 살펴보면, 개인대리양육자가 친인척일 경우 최소 2시간에서 최대 23.98시간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친인척의 경우 최소 4시간에서 최대 15시간을 이용하고 있었다. 개인대리양육자를 이용하는 총 시간에서 평균적으로 친인척의 경우 11.72시간, 비인척의 경우 10.81시간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개인대리양육자가 양육 지원을 시작하는 시간과 종료하는 시간의 평균 시간대에서도 개인대리양육자가 친인척인 경우는 비인척인 경우에 비해 비교적 넓게 나타났다. 즉 개인대리양육자가 친인척인 경우 비인척인 경우에 비해 보다 장시간을 지원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개인대리양육 서비스 이용 시간을 1차년도부터 3차년도까지 살펴보면, 1차년도의 경우 12.08시간으로 2, 3차년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장시간 지원을 한 것으로 응답 되었다.

〈표 II-4-24〉 개인대리양육 이용 시간

단위: 시, 시간/일

| 구분 | | 종단비교 | | | 아이와의 관계 | |
|---------|------|-------|-------|-------|---------|-------|
| | | 1차년도 | 2차년도 | 3차년도 | 친인척 | 비인척 |
| 시작 시 | 평균 | 7.56 | 7.83 | 8.11 | 8.10 | 8.23 |
| | 표준편차 | 2.06 | 2.13 | 2.13 | 2.16 | 1.85 |
| | 중위값 | 8 | 8 | 8 | 8 | 8 |
| | 최소 | 1 | 0 | 1 | 1 | 6 |
| | 최대 | 16 | 18 | 18 | 18 | 15 |
| 종료 시 | 평균 | 19.58 | 19.21 | 19.69 | 19.77 | 19.16 |
| | 표준편차 | 1.90 | 1.85 | 1.76 | 1.80 | 1.31 |
| | 중위값 | 19 | 19 | 19 | 20 | 19 |
| | 최소 | 15 | 10 | 16 | 16 | 17 |
| | 최대 | 23 | 23 | 23 | 23 | 22 |
| 총 이용 시간 | 평균 | 12.08 | 11.39 | 11.61 | 11.72 | 10.81 |
| | 표준편차 | 3.38 | 3.08 | 2.77 | 2.84 | 2.02 |
| | 중위값 | 11.00 | 11.00 | 11.53 | 12.00 | 11.00 |
| | 최소 | 5.50 | 1.00 | 2.00 | 2.00 | 4.00 |
| | 최대 | 22.98 | 23.97 | 23.98 | 23.98 | 15.00 |

주: 빈도수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증이 불가함.

개인대리양육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의 비용 지불방식을 살펴보면 <표 II-4-25>와 같다. 정기적으로 현금을 지불하는 경우가 84.6%로 가장 많았고, 비정기적으로 현금을 지불하는 경우 10%에 해당하였다.

개인대리양육자의 친인척 여부에 따른 이용 비용 지불방식의 경우, 비인척의 경우 100% 정기적으로 현금을 지불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친인척의 경우 82.6%만이 정기적으로 현금을 지불하는 것으로 응답하여 비교적 다양한 방식으로 개인대리양육자에게 대가를 지불 하는 것으로 짐작된다. 개인대리양육자를 이용할 경우 정기적으로 현금을 지불하는 비중이 대다수인 것은 1~3차년도 조사에서 동일한 경향을 보였다.

<표 II-4-25> 개인대리양육자 이용비용 지불방식

단위: %

| 구분 | 종단비교 | | | 아이와의 관계 | |
|--------------|-------|-------|-------|---------|-------|
| | 1차년도 | 2차년도 | 3차년도 | 친인척 | 비인척 |
| 정기적으로 현금 지불 | 82.6 | 89.4 | 84.6 | 82.6 | 100.0 |
| 비정기적으로 현금 지불 | 4.0 | 3.7 | 10.0 | 11.3 | - |
| 현물로 지불 | 2.4 | 0.4 | 0.8 | 0.9 | - |
| 숙식만 제공 | 0.8 | 0.4 | 0.4 | 0.5 | - |
| 지불 안함 | 10.1 | 6.2 | - | - | - |
| 기타 | - | - | 4.2 | 4.7 | - |
| 계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주: 빈도수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증이 불가함.

<표 II-4-26> 개인대리양육 이용비용

단위: 만원

| 구분 | | 종단비교 | | | 아이와의 관계 | |
|-------|------|-------|-------|-------|---------|-------|
| | | 1차년도 | 2차년도 | 3차년도 | 친인척 | 비인척 |
| 현금 지급 | 평균 | 63.73 | 61.46 | 62.40 | 57.20 | 97.92 |
| | 표준편차 | 28.50 | 31.13 | 31.35 | 27.41 | 33.40 |
| | 중위값 | 60.00 | 50.00 | 60.00 | 50.00 | 90.00 |
| | 최소 | 5 | 1 | 5 | 5 | 50 |
| | 최대 | 170 | 180 | 170 | 140 | 170 |
| 현물 지급 | 평균 | 59.81 | 39.19 | 30.00 | 30.00 | - |
| | 표준편차 | 28.70 | 9.99 | 0.00 | 0.00 | - |
| | 중위값 | 50.00 | 30.00 | 30.00 | 30.00 | - |
| | 최소 | 10 | 30 | 30 | 30 | - |
| | 최대 | 100 | 50 | 30 | 30 | - |

주: 빈도수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증이 불가함.

개인대리양육자에게 생활비 또는 용돈을 제외한 아이 양육과 관련되어 지불하는 비용을 살펴본 결과(표 II-4-26 참조), 현금으로 지불할 경우 최소 5만원에서 최대 170만원까지 평균 62.40만원을 지불하는 것으로 있었으며, 현물로 지불할 경우 이를 환산하면 30만원가량을 지불하고 있었다.

개인대리양육자와 아이와의 관계에 따라서는 친인척의 경우 최소 5만원에서 최대 140만원까지 평균 57.20만원을 현금으로 지불하고 있었으며, 비인척의 경우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170만원까지 평균 97.92만원을 지불하는 것으로 응답되어 개인대리양육자의 경우 이용 시간(표 II-4-24 참조)과 마찬가지로 대가 지불에 있어서도 지불의 형태(표 II-4-25 참조)와 비용에 있어서 친인척일 경우 더 유연하게 적용되고 있었다. 개인대리양육자를 이용할 경우의 이용비용은 1차년도부터 3차년도 조사시점까지 유사한 정도를 나타내고 있었다.

개인대리양육자가 아이를 돌보는데 추가적으로 지원을 받는 경우의 추가 지원에 대한 비용 지불 여부에 '0원'을 응답한 경우를 비용 지불을 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하여 비용 지불 여부를 살펴본 결과, 87.3%가 개인대리양육자에게 추가적인 지원이 있을 경우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4-27〉 개인대리양육 이외 추가 지원 비용

단위: %, 만원

| 구분 | | 종단비교 | | 아이와의 관계 | |
|-------|-------|-------|-------|---------|-------|
| | | 2차년도 | 3차년도 | 친인척 | 비인척 |
| 지불 여부 | 지불함 | 94.7 | 87.3 | 88.9 | 75.8 |
| | 지불 안함 | 5.3 | 12.7 | 11.1 | 24.2 |
| | 계 | 100.0 | 100.0 | 100.0 | 100.0 |
| 지불 비용 | 평균 | 37.20 | 23.04 | 26.67 | 11.58 |
| | 표준편차 | 36.78 | 24.42 | 26.96 | 3.65 |
| | 중위값 | 15.00 | 15.00 | 20.00 | 10.00 |
| | 최소 | 5 | 1 | 1 | 10 |
| | 최대 | 100 | 100 | 100 | 20 |

주: 빈도수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증이 불가함.

이를 아이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친인척의 경우 88.9%, 비인척의 경우 75.8%가 무상으로 추가 지원을 받는 것으로 응답되었다. 이는 개인대리양육자의 대다수가 아이의 조부모인 것을 고려할 때(표 II-4-15 참조), 조부모의 배우자에 의한 지원을 받는 것으로 생각된다. 지불되는 비용에 있어서도 개인대리양육자가 친인척일 경우 중위값 20만원으로 비인척 관계일 경우의 10만원에 비

해 다소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추가 지원자에 대한 비용 지불은 2차년도 94.7%였던 것에 비해 비용을 지불하는 가구가 줄어들었으며, 비용 면에 있어서도 평균 37.20만원에서 23.04만원으로 감소하였다.

개인대리양육자에게 지불하는 이용비용에 대한 부담도를 살펴본 결과(표 II-4-28 참조), '적당하다'는 응답이 50.8%로 가장 높은 비율이었으나 '부담되는 편이다'는 응답 또한 27.9%로 비교적 높게 조사되었으며, 5점 척도인 것을 고려할 때 평균 3.15점은 보통보다 약간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표 II-4-28〉 개인대리양육자 이용비용 부담도

단위: 점

| 구분 | 종단비교 | | 아이와의 관계 | |
|-------------|-------|-------|---------|-------|
| | 2차년도 | 3차년도 | 친인척 | 비인척 |
| 전혀 부담되지 않는다 | 4.3 | 5.0 | 5.7 | - |
| 크게 부담되지 않는다 | 15.3 | 11.9 | 13.6 | - |
| 적당하다 | 43.0 | 50.8 | 52.3 | 40.7 |
| 부담되는 편이다 | 32.9 | 27.9 | 23.7 | 57.1 |
| 매우 부담된다 | 4.5 | 4.4 | 4.7 | 2.2 |
| 계 | 100.0 | 100.0 | 100.0 | 100.0 |
| 평균 | 3.18 | 3.15 | 3.08 | 3.61 |
| 표준편차 | 0.90 | 0.87 | 0.88 | 0.53 |

주: 1) 2차년도 조사에서 추가된 문항임.

2) 빈도수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증이 불가함.

개인대리양육자와의 관계에 따라서는 친인척일 경우 평균 3.08, 비인척일 경우 평균 3.61로 친인척인 경우보다 비인척인 경우의 비용 부담도가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비인척 개인대리양육자일 경우 상대적으로 고액의 주 이용비용을 지불하는 것으로 응답된 <표 II-4-26>과 친인척 개인대리양육자에게는 상대적으로 고액의 추가 비용을 지불하는 것으로 응답된 <표 II-4-27>을 고려할 때, 추가적 지원 비용보다는 주 이용비용을 토대로 개인대리양육자 이용 부담을 응답한 것으로 생각된다. 종단비교 시 개인대리양육자 이용비용 지불에 대한 부담도는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으며, 개인대리양육자에게 지불하는 비용이 소폭으로 증가한 것에 비해 부담은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II-4-28 참조).

이용 중인 개인대리양육자에 대한 만족도에 있어서 비교적 만족 59.5%, 매우 만족 28%로 80%대의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5점 척도임을 고려할 때 만족도는 평균 4.11점으로 비교적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II-4-29 참조).

아이와 개인대리양육자의 관계에 따라서는 친인척 개인대리양육자를 이용할 경우 4.14점, 비인척일 경우 3.86점으로 친인척 대리양육자를 이용하는 경우가 약간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개인대리양육자에 대한 만족도는 1차년도부터 3차년도까지 다소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는데, 이는 아이의 성장과 어머니의 취업 등의 환경적 요인의 변화에 따른 개인대리양육자에 대한 기대 수준의 변화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표 II-4-29〉 개인대리양육자 만족도

단위: 점

| 구분 | 종단비교 | | | 아이와의 관계 | |
|---------|-------|-------|-------|---------|-------|
| | 1차년도 | 2차년도 | 3차년도 | 친인척 | 비인척 |
| 매우 불만족 | 0.9 | 0.9 | 0.4 | 0.4 | - |
| 비교적 불만족 | 0.6 | 0.2 | 3.9 | 3.8 | 4.5 |
| 보통 | 9.9 | 6.9 | 8.2 | 7.9 | 10.4 |
| 비교적 만족 | 43.5 | 56.7 | 59.5 | 56.7 | 80.0 |
| 매우 만족 | 45.0 | 35.3 | 28.0 | 31.1 | 5.2 |
| 계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 평균 | 4.31 | 4.25 | 4.11 | 4.14 | 3.86 |
| 표준편차 | 0.75 | 0.67 | 0.74 | 0.75 | 0.56 |

주: 빈도수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증이 불가함.

라) 육아지원서비스 중복 이용 이유

육아지원서비스 중 개인대리양육과 육아지원기관을 중복으로 이용하고 있는 가구에 대해 이유를 물어본 결과, 육아지원서비스를 중복으로 이용하는 가구는 3차년도 조사에서는 모두 취업모로 나타났으며, 그 이유로는 ‘개인대리양육자가 하루 종일 아이를 돌보는 것을 힘들어해서’가 46.8%로 가장 많았으며, ‘기관 이용 시간이 제한되어서’가 23.4%, ‘기타’가 29.8%로 조사되었다(표 II-4-30 참조).

이것은 2차년도의 ‘아이가 너무 어려서 장시간 동안 기관에 있기 힘들까봐’가 과반수를 넘는 68.8%이었던 것과는 다른 반응이었다. 아이가 어렸던 2차년도 조사 시점에서는 아이의 어려움을 주로 고려한 반면, 신체적 발달로 인해 아이의 움직임이 활발해지는 3차년도 시점이 되면서 개인대리양육자의 어려움을 중점적으로 고려하는 것으로 변화된 응답 양상을 보였다. 기타 응답의 대다수는 어머니의 늦은 퇴근을 이유로 응답하였는데, 육아지원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육아지원서비스 자체의 특성에 대한 고려와 함께 일하는 부모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표 II-4-30〉 육아지원서비스 중복 이용 이유

단위: %

| 구분 | 2차년도 | 3차년도 |
|---------------------------------|-------|-------|
| 아이가 너무 어려서 장시간 동안 기관에 있기 힘들까봐 | 68.8 | - |
| 개인대리양육자의 장시간 이용비용이 부담되어서 | - | - |
| 기관 이용 시간이 제한되어서 | 3.0 | 23.4 |
| 아이가 개인 대리양육자와 하루 종일 있기 심심해해서 | - | - |
| 개인대리양육자가 하루 종일 아이를 돌보는 것을 힘들어해서 | 28.2 | 46.8 |
| 아이의 전인적 발달을 위하여 | - | - |
| 특기교육을 위하여 | - | - |
| 기타 | - | 29.8 |
| 계 | 100.0 | 100.0 |

주: 1) 2차년도 조사에서 추가된 문항임.
2) 빈도수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증이 불가함.

4) 육아지원기관

가) 육아지원기관 이용 이유

육아지원서비스 중 육아지원기관을 이용하는 경우, 육아지원기관의 종류에 따라 그 이용의 이유를 조사하였다.

육아지원서비스를 이용하는 가구의 과반수 이상인 79.4%가 이용하고 있는 어린이집의 경우(표 II-4-6 참조), 대리양육자나 학원을 보내지 않고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이유를 물어본 결과, '또래와 어울릴 수 있으므로' 40.6%, '아이에게 보육시설이 교육적으로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33.2%로 응답되었다(표 II-4-31 참조). 어머니의 취업 여부에 따라서는 이용 이유의 순위가 바뀌어, 취업모의 경우 교육적 도움이 35.9%로 가장 많이 응답하였고, 또래 경험을 33%로 응답하였으며, 비취업모의 경우 또래 경험이 47.3%로 가장 많았고, 교육적 도움은 30.7%로 조사되었다.

어린이집 이용 이유에 대해 중단비교를 해보면, 1·2차년도의 경우 비용 부담을 43.1%, 31.8%로 주된 사유로 꼽은 것에 비해 3차년도의 경우에는 교육적 도움 및 또래 경험과 같은 자녀의 발달에 따른 새로운 환경 자극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 주 이유로 나타났다.

〈표 II-4-31〉 어린이집 이용 이유

단위: %

| 구분 | 종단비교 | | | 3차년도 모 취업 | |
|---|-------|-------|-------|-----------|-------|
| | 1차년도 | 2차년도 | 3차년도 | 취업모 | 비취업모 |
| 개인대리양육자나 마땅한 학원을 구하기 힘들어서 | 23.8 | 15.0 | 4.8 | 9.0 | 1.0 |
| 개인대리양육자나 학원이용비용보다 부담이 덜 되어서 | 43.1 | 31.8 | 8.2 | 8.3 | 8.1 |
| 개인대리양육자나 학원을 믿을 수 없어서 또래와 어울릴 수 있으므로 | 7.9 | 5.1 | 0.8 | 1.3 | 0.4 |
| 아이에게 보육시설이 교육적으로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 12.4 | 25.3 | 33.2 | 35.9 | 30.7 |
| 남들이 보내니까 | - | - | 0.2 | - | 0.4 |
| 아이가 원해서 | - | - | 1.1 | - | 2.0 |
| 집에서 가까워서 | - | - | 2.4 | 3.1 | 1.8 |
| 기타 | 11.2 | 6.6 | 8.7 | 9.3 | 8.2 |
| 계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주: 1) '학원'에 대한 사항은 3차년도부터 응답 보기에 반영됨.

2) 빈도수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증이 불가함.

육아지원서비스 중 개인대리양육자나 어린이집이 아닌 반일제 이상 학원이나
선교원 등의 기타 기관을 이용하는 이유는 <표 II-4-32>와 같다.

〈표 II-4-32〉 반일제 이상 학원 및 선교원 등 기타 기관 이용 이유

단위: %

| 구분 | 3차년도 | 3차년도 모 취업 | |
|---|-------|-----------|-------|
| | | 취업모 | 비취업모 |
| 개인대리양육자나 마땅한 어린이집을 찾기 힘들어서 | - | - | - |
| 개인대리양육자나 어린이집 이용비용보다 부담이 덜 되어서 | - | - | - |
| 개인대리양육자나 어린이집을 믿을 수 없어서 또래와 어울릴 수 있으므로 | 10.6 | - | 16.0 |
| 교육내용이 마음에 들어서 | 17.5 | 31.3 | 26.5 |
| 남들이 보내니까 | - | - | - |
| 아이가 원해서 | - | - | - |
| 집에서 가까워서 | - | - | - |
| 기타 | 49.8 | 68.7 | 40.2 |
| 계 | 100.0 | 100.0 | 100.0 |

주: 1) 3차년도 조사에서 추가된 문항임.

2) 빈도수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증이 불가함.

반일제 이상 학원 및 선교원 등 기타 기관의 이용 이유에 대하여 '교육내용이 마음에 들어서' 22.1%, '또래와 어울릴 수 있으므로' 17.5%로 응답되었으며, 기타 응답으로는 어린이집 재원을 위한 순번을 기다거나, 가족이 해당 기관을 운영하는 경우 등이 이용 이유로 조사되었다(표 II-4-32 참조). 반일제 이상 학원 및 선교원 등의 기타 기관을 이용하는 경우는 전체 육아지원서비스 이용에 있어 1% 미만의 소수에 해당하므로 응답자 수에 의한 영향력이 크게 작용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요구된다(표 II-4-6 참조).

나) 육아지원기관 특성

아동이 이용 중인 육아지원기관의 특성 중 물리적 환경 요소인 주변 환경을 알아보면, 일반아파트 지역 60.6%, 일반주택주역 29.9%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이용하는 보육시설이 거주지역과 근거리에 위치하는 것을 고려할 때 해당 아동이 거주하는 지역과 보육시설이 유사한 입지 조건에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어머니의 취업 여부에 따라 살펴보면, 취업모와 비취업모 모두 일반 아파트 지역 또는 일반주택지역에 있는 보육시설을 이용 중인 것으로 응답하였다. 취업모의 1.9%가 응답한 기타 지역에 대해서 주로 대학 부속 어린이집, 사내 건물 등을 응답한 점을 고려할 때 이는 직장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일반아파트나 주택지역과 같은 주거 환경 내의 보육시설을 주로 이용하는 경향은 중단비교에 있어서도 유사하였다.

〈표 II-4-33〉 육아지원기관 입지 조건

| 구분 | 중단비교 | | | 3차년도 모 취업 | |
|---------|-------|-------|-------|-----------|-------|
| | 1차년도 | 2차년도 | 3차년도 | 취업모 | 비취업모 |
| 일반주택지역 | 34.6 | 21.2 | 29.9 | 28.1 | 31.5 |
| 일반아파트지역 | 57.9 | 71.2 | 60.6 | 60.6 | 60.7 |
| 상가·회사지역 | 4.5 | 6.1 | 5.9 | 7.0 | 4.9 |
| 공장(단)지역 | - | 0.5 | 0.6 | 0.7 | 0.5 |
| 농·어가지역 | 2.9 | 1.0 | 2.0 | 1.8 | 2.2 |
| 기타 | - | - | 1.0 | 1.9 | 0.2 |
| 계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주: 빈도수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증이 불가함.

이용하고 있는 육아지원기관의 이용 유형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어린이집(가정어린이집 포함)을 이용하는 경우가 98.9%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어머니의 취업 여부와 상관없이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이용 유형의 실태를 고려하여 육아지원기관 중 어린이집의 특성을 아래에서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표 II-4-34〉 육아지원기관 이용 유형

단위: %

| 구분 | 3차년도 | 3차년도 모 취업 | |
|----------------|-------|-----------|-------|
| | | 취업모 | 비취업모 |
| 어린이집(가정어린이집포함) | 98.9 | 98.7 | 99.1 |
| 놀이학교 | 0.1 | - | 0.3 |
| 선교원 | 0.3 | 0.5 | 0.2 |
| 기타 | 0.6 | 0.8 | 0.5 |
| 계 | 100.0 | 100.0 | 100.0 |

주: 1) 3차년도 조사에서 추가된 문항임.

2) 빈도수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증이 불가함.

육아지원기관 중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가구의 이용 중인 어린이집의 특성에 대한 응답을 토대로 어린이집의 설립 유형과 대상별 시설 유형을 구분하고, 이를 토대로 한국보육진흥원의 평가인증국에 의뢰하여 평가인증 여부를 확인하였다. 평가인증이란 영유아에게 안전한 보호와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일정 수준 이상의 시설에 대해 국가가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조사 대상 중 평가인증을 받은 시설은 전체의 62.5%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어머니의 취업 여부에 따라 비교해 보았을 때도 유사하게 확인되었다.

〈표 II-4-35〉 평가인증 여부

단위: %

| 구분 | 중단비교 | | | 3차년도 모 취업 | |
|-------|-------|-------|-------|-----------|-------|
| | 1차년도 | 2차년도 | 3차년도 | 취업모 | 비취업모 |
| 미인증 | 64.5 | 41.2 | 37.5 | 39.4 | 35.9 |
| 인증 | 35.5 | 57.0 | 62.5 | 60.6 | 64.1 |
| 인증 취소 | - | 1.7 | - | - | - |
| 계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주: 빈도수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증이 불가함.

평가인증 여부를 종단 비교해 본 <표 II-4-35>의 결과, 1차년도에는 35.5%만이 인증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2차년도 57%, 3차년도 62.5%로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이의 연령이 증가하면서 어린이집과 같은 육아지원기관의 선정에 있어 교육적 내용을 중요하게 생각하고(표 II-4-31 참조), 어린이집 평가인증에 대한 육아지원기관의 인식이 높아지면서 평가인증에 참여한 기관이 증가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된다.

어린이집 설립 유형별 특성을 3차년도 조사부터 보육법에 기초하여 분류해 살펴보면, 가정 어린이집 44.4%, 민간 어린이집 39.4%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였다(표 II-4-36 참조). 어머니의 취업 여부에 따라 비교해 보면, 취업모의 경우 가정 어린이집 47.9%, 민간 어린이집 33.1%를 이용하고 있으며, 비취업모의 경우 민간 어린이집 47.9%, 가정 어린이집 41.3%를 이용하고 있었다.

<표 II-4-36> 어린이집 설립 유형

| 구분 | 종단비교 | | | 3차년도 모 취업 | |
|------|-------|-------|-------|-----------|-------|
| | 1차년도 | 2차년도 | 3차년도 | 취업모 | 비취업모 |
| 국공립 | 5.1 | 3.6 | 7.1 | 9.2 | 5.3 |
| 법인 | 1.8 | 2.3 | 3.9 | 2.7 | 5.0 |
| 직장 | - | - | 2.4 | 4.4 | 0.7 |
| 민간 | 27.0 | 30.5 | 39.4 | 33.1 | 45.2 |
| 가정 | 63.7 | 61.9 | 44.4 | 47.9 | 41.3 |
| 부모협동 | - | - | 0.1 | 0.3 | - |
| 기타 | 1.8 | 2.3 | 2.5 | 2.5 | 2.5 |
| 계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 주: 1) 1·2차년도의 '법인 외(단체)'는 '기타'로 분류함.
 2) 3차년도 조사부터 보육법에 기초하여 분류함.
 3) 빈도수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증이 불가함.

종단 비교시 어린이집 설립 유형에서 1·2차년도의 가정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비율이 높았던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감소한 추세를 나타냈다(표 II-4-36 참조). 이를 <표 II-4-31>의 어린이집 이용 이유와 함께 고려해 볼 때 어린 연령일 경우 보호와 양육에 중점을 둔 소규모의 가정 어린이집을 선호하나 아동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가정 어린이집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 활동 및 프로그램이 다채로워지는 민간 및 국공립 어린이집을 선호하는 것을 반영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의 연령에 적합한 어린이집 설립 유형의 특성화에 대한 논의가 육아지원서비스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한다.

어린이집 대상별 시설 유형을 3차년도부터 보육법에 기초하여 살펴보면 <표 II-4-37>과 같이 일반 어린이집이 67.1%로 가장 많았으며, 시간 연장을 하고 있는 어린이집도 22.6%로 응답되었다. 어머니의 취업 여부에 따라 비교해 보면, 일반 어린이집이 취업모와 비취업모 집단에서 각각 65.6%, 68.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시간 연장을 실행하고 있는 곳도 각각 25.5%, 20.9%로 조사되었다.

<표 II-4-37> 어린이집 대상별 시설 유형(중복응답)

단위: %

| 구분 | 3차년도 | 3차년도 모 취업 | |
|--------|-------|-----------|-------|
| | | 취업모 | 비취업모 |
| 일반 | 67.1 | 65.6 | 68.4 |
| 영아 전담 | 4.0 | 4.2 | 3.8 |
| 장애아 전담 | - | - | - |
| 장애아 통합 | 2.6 | 3.1 | 2.2 |
| 시간 연장 | 22.6 | 24.5 | 20.9 |
| 24시간 | 1.2 | 1.1 | 1.3 |
| 휴일 | 1.5 | 1.5 | 1.6 |
| 방과후 | 0.9 | - | 1.7 |
| 기타 | 0.1 | - | 0.2 |
| 계 | 100.0 | 100.0 | 100.0 |

주: 1) 3차년도 조사부터 보육법에 기초하여 중복응답으로 변경함에 따라 종단비교를 하지 않음.
2) 빈도수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증이 불가함.

대상 보육시설이 서울에 설립된 경우 서울시에서 객관적 기준을 토대로 민간 어린이집을 국·공립 어린이집 수준으로 인증하여 지원하는 서울형 어린이집 여부를 살펴본 결과, 39.2%만이 서울형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것으로 응답되었다. 어머니의 취업 여부에 따라 비교해 보면, 취업모 44.7%, 비취업모 31.4%로 취업모 집단의 서울형 어린이집 이용도가 상대적으로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4-38> 서울형 어린이집 여부

단위: %

| 구분 | 3차년도 | 3차년도 모 취업 | |
|--------------|-------|-----------|-------|
| | | 취업모 | 비취업모 |
| 서울형 어린이집 | 39.2 | 44.7 | 31.4 |
| 서울형 어린이집이 아님 | 60.8 | 55.3 | 68.6 |
| 계 | 100.0 | 100.0 | 100.0 |

주: 1) 3차년도 조사에서 추가된 문항임.
2) 빈도수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증이 불가함.

다) 육아지원기관 이용 실제

아동이 이용하는 육아지원기관의 이용 빈도를 살펴보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이용하는 경우가 96%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러한 육아지원기관 이용률은 개인대리양육자를 이용하는 경우(표 II-4-23 참조)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로 주 5일 이상의 보육지원을 받는 것으로 응답되었으며, 어머니의 취업 여부에 따라서도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 종단비교 시, 육아지원기관 이용의 빈도는 주 5일 이용이 1차년도부터 꾸준히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으며, 소수이기는 하나 주 6일 이상을 이용하는 경우는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표 II-4-39〉 육아지원기관 이용 빈도

단위: %

| 구분 | 종단비교 | | | 3차년도 모 취업 | |
|----------------|-------|-------|-------|-----------|-------|
| | 1차년도 | 2차년도 | 3차년도 | 취업모 | 비취업모 |
|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 16.0 | 13.3 | 3.3 | 4.1 | 2.5 |
|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 78.1 | 85.7 | 96.0 | 95.7 | 96.4 |
| 일주일 내내 | - | 1.0 | 0.7 | 0.2 | 1.2 |
| 일주일에 며칠만 | 5.9 | - | - | - | - |
| 계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주: 빈도수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증이 불가함.

육아지원기관을 이용하고 있는 응답자들의 실질적인 이용 시간을 알아본 결과는 <표 II-4-40>과 같다. 하루 최소 1시간에서 최대 15.50시간까지, 평균 7.79 시간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육아지원기관을 이용하는 경우의 등원 시간과 하원 시간은 평균적으로 오전 8시대에 등원하여 오후 7시대에 하원하는 것이 가장 보편적인 양상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취업 여부에 따라 육아지원기관을 이용하는 경우의 총 시간을 t검증하여 분석한 결과, 두 집단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취업모의 경우 8.68 시간으로 비취업모의 6.98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차년도 응답을 비교해 보면, 육아지원기관을 이용하는 시간은 1차년도 12.44시간, 2차년도 8.76시간, 3차년도 7.79시간으로 다소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1·2차년도의 육아지원서비스 중 어린이집 등의 육아지원기관을 이용하는 가구의 사례가 소수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는 일반화에 다소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3차년도에는 응답자의 과반수 이상이 육아지원기관을 이

용하는 것으로 보아 1·2차년도에 비해 대표성을 가진다고 하겠다.

〈표 II-4-40〉 육아지원기관 이용 시간

단위: 시, 시간/일

| 구분 | | 종단비교 | | | 3차년도 모 취업 | |
|------------|------|-------|-------|-------|----------------------|-------|
| | | 1차년도 | 2차년도 | 3차년도 | 취업모 | 비취업모 |
| 시작 시 | 평균 | 8.48 | 8.79 | 8.11 | 8.10 | 8.23 |
| | 표준편차 | 0.99 | 1.22 | 2.13 | 2.16 | 1.85 |
| | 중위값 | 8 | 9 | 8 | 8 | 8 |
| | 최소 | 7 | 7 | 1 | 1 | 6 |
| | 최대 | 11 | 14 | 18 | 18 | 15 |
| 종료 시 | 평균 | 20.93 | 17.57 | 19.69 | 19.77 | 19.16 |
| | 표준편차 | 2.60 | 1.52 | 1.76 | 1.80 | 1.31 |
| | 중위값 | 22 | 18 | 19 | 20 | 19 |
| | 최소 | 10 | 13 | 16 | 16 | 17 |
| | 최대 | 24 | 23 | 24 | 24 | 22 |
| 총 이용 시간 | 평균 | 12.44 | 8.76 | 7.79 | 8.68 | 6.98 |
| | 표준편차 | 3.25 | 2.08 | 1.86 | 1.76 | 1.55 |
| | 중위값 | 13.50 | 9.00 | 8.00 | 9.00 | 7.00 |
| | 최소 | 2.00 | 3.00 | 1.10 | 1.10 | 2.07 |
| | 최대 | 16.83 | 13.98 | 15.50 | 13.50 | 15.50 |
| <i>t</i> | | | | | 14.66 ^{***} | |

주: 빈도수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증이 불가함.

^{***} $p < .001$.

육아지원기관 등/하원 시간에 대해 살펴본 결과, 평균적으로 등원 8.09분, 하원 8.31분을 소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취업 여부에 따라 *t*검증하여 분석한 결과, 두 집단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취업모에 비해 비취업모의 경우 조금 더 장거리의 육아지원기관을 이용하는 것으로 응답되었다.

〈표 II-4-41〉 육아지원기관 등/하원 시간

단위: 분

| 구분 | | 종단비교 | | | 3차년도 모 취업 | |
|----------|------|------|------|------|-------------------|------|
| | | 1차년도 | 2차년도 | 3차년도 | 취업모 | 비취업모 |
| 등원 | 평균 | 7.68 | 9.48 | 8.09 | 9.00 | 7.26 |
| | 표준편차 | 4.73 | 7.65 | 6.82 | 7.90 | 5.52 |
| | 최소 | 2 | 1 | 1 | 1 | 1 |
| | 최대 | 30 | 45 | 60 | 60 | 60 |
| <i>t</i> | | | | | 2.19 [*] | |

| 구분 | | 종단비교 | | | 3차년도 모 취업 | |
|----|------|----------|------|------|-----------|------|
| | | 1차년도 | 2차년도 | 3차년도 | 취업모 | 비취업모 |
| 하원 | 평균 | 7.91 | 9.66 | 8.31 | 9.43 | 7.27 |
| | 표준편차 | 5.70 | 7.88 | 7.40 | 8.87 | 5.56 |
| | 최소 | 2 | 1 | 1 | 1 | 1 |
| | 최대 | 40 | 45 | 60 | 60 | 60 |
| | | <i>t</i> | | | 2.79** | |

* $p < .05$. ** $p < .01$.

육아지원 기관을 이용하는 경우의 차량이용비, 특기적성비 등 모든 비용 지불 금액에 대한 질문에서 '0'원으로 응답한 경우,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하여 살펴봤을 때, 3차년도 이용 대상자의 72.1%가 육아지원 기관에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지불하는 비용을 살펴보면 최소 1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평균 23.36만원을 지불하고 있었으며, 1~3차 종단 비교시 금액이 점차 감소하였다. 어머니의 취업 여부에 따라 *t*검증하여 분석한 결과, 두 집단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취업모의 경우 평균 27.92만원을 지불하여 비취업모가 21.16만원을 지불하는 것에 비해 육아지원기관 이용에 상대적으로 많은 비용을 지불하는 것으로 응답되었다. 이는 취업모의 육아지원기관 1일 평균 이용 시간이 비취업모보다 많은 결과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표 II-4-42〉 육아지원 기관 이용비용

단위: %, 만원

| 구분 | | 종단비교 | | | 3차년도 모 취업 | |
|------|------|----------|-------|-------|-----------|-------|
| | | 1차년도 | 2차년도 | 3차년도 | 취업모 | 비취업모 |
| 지불여부 | 비지불 | 1.5 | 22.4 | 27.9 | 23.3 | 32.1 |
| | 지불 | 98.5 | 77.6 | 72.1 | 76.7 | 67.9 |
| | 계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 지불비용 | 평균 | 29.94 | 28.85 | 23.36 | 27.92 | 21.16 |
| | 표준편차 | 11.38 | 12.56 | 15.11 | 19.06 | 27.87 |
| | 중위값 | 37.00 | 31.00 | 26.00 | 34.00 | 18 |
| | 최소 | 5 | 3 | 1 | 1 | 1 |
| | 최대 | 50 | 60 | 100 | 340 | 400 |
| | | <i>t</i> | | | 2.88** | |

주: 지불비용은 기관의 종류에 상관없이 분석되었으며,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의 지불 비용의 최대값은 60만원임.

** $p < .01$.

육아지원 기관 이용 부담도에 대해 살펴보면, '부담되는 편이다'라는 응답이 38.3%로 가장 많았으며, '적당하다'고 응답한 경우는 21.1%였다. 5점 척도로 보면 평균 3.25점으로 약간 높게 나타났다.

어머니의 취업 여부에 따라 육아지원 기관 이용 부담도를 *t*검증하여 분석한 결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즉, 취업모가 육아지원기관 이용비용에 대해 비취업모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육아지원 기관 이용비용 부담도에 대하여 2차년도와 비교하여 살펴보았을 때, 2차년도의 경우 3.38점으로 부담도를 응답한 것에 비해 비용 부담을 적게 느끼는 것으로 응답되었다.

〈표 II-4-43〉 육아지원 기관 이용비용 부담도

단위: 만원

| 구분 | 종단비교 | | 3차년도 모 취업 | |
|-------------|-------|-------|-----------|-------|
| | 2차년도 | 3차년도 | 취업모 | 비취업모 |
| 전혀 부담되지 않는다 | 10.2 | 13.8 | 9.1 | 18.5 |
| 크게 부담되지 않는다 | 43.5 | 13.3 | 13.3 | 13.4 |
| 적당하다 | 26.7 | 21.1 | 24.1 | 18.0 |
| 부담되는 편이다 | 13.3 | 38.3 | 40.6 | 35.8 |
| 매우 부담된다 | 6.3 | 13.6 | 12.9 | 14.2 |
| 계 | 100.0 | 100.0 | 100.0 | 100.0 |
| 평균 | 3.38 | 3.25 | 3.35 | 3.14 |
| 표준편차 | 1.04 | 1.24 | 1.14 | 1.34 |
| <i>t</i> | | | 2.15* | |

* $p < .05$.

육아지원 기관 이용 만족도에 대해 살펴본 결과, '비교적 만족하고 있다'는 응답이 64.3%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했다. 이를 5점 척도로 환산할 경우 3.95점으로 비교적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었다.

어머니의 취업 여부에 따른 육아지원 기관 이용 만족도를 *t*검증하여 분석한 결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즉, 비취업모 4.01점, 취업모 3.89점으로 비취업모가 취업모에 비해 육아지원 기관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육아지원 기관의 이용 만족도에 대하여 1~3차년도를 종단적으로 살펴본 결과, 1차년도 3.71점, 2차년도 3.83점, 3차년도 3.95점으로 점진적으로 만족도가 상승하고 있었다.

〈표 II-4-44〉 육아지원 기관 이용 만족도

단위: 만원

| 구분 | 종단비교 | | | 3차년도 모 취업 | |
|---------|----------|-------|-------|-----------|-------|
| | 1차년도 | 2차년도 | 3차년도 | 취업모 | 비취업모 |
| 매우 불만족 | 1.6 | 1.2 | 0.5 | 0.9 | 0.2 |
| 비교적 불만족 | 5.9 | 4.4 | 2.6 | 2.2 | 3.0 |
| 보통 | 27.7 | 18.5 | 15.3 | 17.5 | 13.3 |
| 비교적 만족 | 48.1 | 61.7 | 64.3 | 65.4 | 63.3 |
| 매우 만족 | 16.7 | 14.2 | 17.2 | 13.9 | 20.3 |
| 계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 평균 | 3.71 | 3.83 | 3.95 | 3.89 | 4.01 |
| 표준편차 | 0.86 | 0.77 | 0.69 | 0.69 | 0.69 |
| | <i>t</i> | | | -2.55* | |

* $p < .05$.

육아지원 기관 중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국가로부터 보육비용을 면제 또는 감면받는지에 대한 여부를 살펴본 결과, 48.4%가 국가로부터 전액 면제를 받고 있었으며, 일부 감면을 받는 경우도 17.2%로 나타나 어린이집 이용자의 65.6%의 과반수 이상이 보육비 지원을 받는 것으로 응답되었다.

어머니의 취업 여부에 따라 살펴보면 취업모의 경우 52.3%가 전액 면제 또는 일부 감면을 받고 있으며, 비취업모의 경우 77.8%가 보육비 지원을 받는 것으로 응답되어 상대적으로 비취업모의 경우 국가로부터 보육비 지원을 받으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1~3차년도 종단 비교 시 이러한 국가로부터의 보육비 지원을 받는 비율은 65%대로 유사하였으나, 세부적으로는 전액 면제를 받는 비율이 1차년도 9.9%, 2차년도 28.4%, 3차년도 48.4%로 증가하였다.

〈표 II-4-45〉 어린이집 보육비 지원 여부

단위: %

| 구분 | 종단비교 | | | 3차년도 모 취업 | |
|-----------|-------|-------|-------|-----------|-------|
| | 1차년도 | 2차년도 | 3차년도 | 취업모 | 비취업모 |
| 전액 면제 | 9.9 | 28.4 | 48.4 | 37.8 | 58.1 |
| 일부 감면 | 56.5 | 38.1 | 17.2 | 14.5 | 19.7 |
| 아무런 혜택 없음 | 33.6 | 33.5 | 34.4 | 47.8 | 22.2 |
| 계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주: 빈도수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증이 불가함.

어린이집을 이용하며 국가로부터 보육비 지원을 받는 경우 지원 사유에 대해 혜택을 수여 받는다고 응답한 경우를 다중응답분석으로 살펴본 결과, 영유아가구 소득하위 50% 이하로 월 337,000원 가량의 보육료 전액을 감면받는 가구는 47.4%, 기타 저소득층으로 월 101,100원의 보육료 일부를 차등보육료로 감면받고 있는 가구 28.3%, 두 자녀 이상에 해당하여 월 134,800~235,900원의 보육료 일부를 추가로 감면받는 가구 25.2%, 농어업인 자녀로 통상 236,000원의 현금을 지원받는 가구 3.2%, 기타 지원 1.5%로 응답되었다.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라 비교해 보면, 취업모의 경우 소득하위 50% 이하의 보육료 전액 감면과 두 자녀 이상으로 보육료 일부 추가 감면이 각 44.4%, 28.3%로 비취업모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로 선택된 것으로 나타났다. 1~3차년도 종단비교시에 소득하위 50%이하로 보육료 전액을 지원 받는 경우는 1차년도 17.1%, 2차년도 13.8%, 3차년도 47.4%로 비율이 점점 상승한 것으로 응답되었다. 반면 차등보육료 지원 및 두 자녀 이상으로 보육료 지원을 받는 경우는 다소 감소되었다.

〈표 II-4-46〉 어린이집 보육비 지원 이유(중복응답)

단위: %

| 구분 | 종단비교 | | | 3차년도 모 취업 | |
|---------------------------------|-------|-------|-------|-----------|-------|
| | 1차년도 | 2차년도 | 3차년도 | 취업모 | 비취업모 |
| 영유아가구 소득하위 50% 이하로 보육료 전액 감면 | 17.1 | 13.8 | 47.4 | 44.4 | 49.1 |
| 기타 저소득층으로 보육료 일부 감면(차등보육료) | 35.9 | 34.9 | 28.3 | 30.0 | 27.3 |
| 두 자녀 이상으로 보육료 일부를 추가로 감면 | 33.9 | 35.9 | 25.2 | 28.3 | 23.4 |
| 농어업인 자녀로 현금을 지급받음 | - | 2.6 | 3.2 | 0.5 | 4.9 |
| 기타 | 19.4 | 17.4 | 1.5 | 2.0 | 1.1 |
| 계 | 106.3 | 104.6 | 105.6 | 105.1 | 105.9 |

주: 1) 다중응답분석의 케이스 퍼센트를 제시함.
2) 빈도수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증이 불가함.

5) 육아지원기관 내 특별활동

3차년도에는 아동이 다니는 육아지원기관에서 이용 중인 특별활동 프로그램에 관하여 조사하였다. 육아지원기관 내 특별활동에 대한 결과는 다중응답 분석으로 제시하였다.

가) 육아지원기관 내 특별활동 프로그램 수

아동이 다니는 육아지원기관에서 받고 있는 특별활동 프로그램에 관해 조사한 결과, 음악프로그램 39.4%을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었으며, 그 다음으로 체육 35.3%, 미술 31.4% 순으로 이용하고 있었다. 그 외에 영어는 28.1%와 교구이용 프로그램이 21.0%이었다(표 II-4-47 참조).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라 비교해 보면, 취업모와 비취업모 모두 유사한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취업모와 비취업모 모두 특별활동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 음악, 체육, 미술 등의 예체능 계열의 특별활동 프로그램을 이용하거나 영어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II-4-47〉 특별활동 프로그램 수(중복응답)

단위: %

| 구분 | 3차년도 | 3차년도 모 취업 | |
|------------|-------|-----------|-------|
| | | 취업모 | 비취업모 |
| 미술 | 31.4 | 14.6 | 15.3 |
| 음악 | 39.4 | 17.5 | 20.0 |
| 체육 | 35.3 | 17.8 | 15.9 |
| 과학 | 2.2 | 0.6 | 0.7 |
| 수학 | 2.2 | 0.9 | 1.2 |
| 한글(국어) | 5.2 | 2.4 | - |
| 컴퓨터 | 0.1 | - | 0.1 |
| 교구 이용 프로그램 | 21.0 | 9.9 | 10.4 |
| 한자 | 0.1 | 0.1 | - |
| 영어 | 28.1 | 13.7 | 13.0 |
| 기타 외국어 | 0.7 | 0.7 | - |
| 통합 | 10.9 | 5.4 | 5.1 |
| 기타 | 9.8 | 3.6 | 5.7 |
| 미이용 | 24.5 | 12.9 | 10.5 |
| 계 | 100.0 | 100.0 | 100.0 |

주: 3차년도 조사에서 추가된 문항임.

나) 특별활동 프로그램 부모의 선택여부

아동이 이용하고 있는 육아지원기관 내의 특별활동 프로그램을 부모가 선택 가능한지를 조사한 결과, 86.5%의 부모가 선택 없이 무조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어머니의 취업 여부에 따라 부모의 프로그램 선택 유무를 살펴본 결과, 취업모의 87.7%, 비취업모의 85.5%가 육아지원기관 내의 특별활동 프로그램을 무조건 이용한다고 응답하여, 취업모와 비취업모 모두 큰 차이 없이 다른 곳에서 프로그램을 선택하기보다는 자녀가 이미 다니고 있는 기관에서 제공하는 특별활동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표 II-4-48〉 부모의 프로그램 선택 유무(중복응답)

단위: %

| 구분 | 3차년도 | 3차년도 모 취업 | |
|--------|-------|-----------|-------|
| | | 취업모 | 비취업모 |
| 선택 가능 | 9.9 | 10.6 | 9.3 |
| 무조건 이용 | 86.5 | 87.7 | 85.5 |
| 모름 | 3.6 | 1.7 | 5.3 |
| 계 | 100.0 | 100.0 | 100.0 |

주: 3차년도 조사에서 추가된 문항임.

육아지원기관에서 받는 특별활동 프로그램에 대해서 별도의 비용을 지불하는지에 대한 조사 결과, 56.7%의 부모들은 따로 지불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하였고, 39.4%의 부모들은 별도의 비용을 지불하여 특별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취업 여부에 따라 이를 살펴본 결과, 취업모 59.7%, 비취업모 53.8%가 프로그램 이용에 대한 별도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II-4-49〉 프로그램 별도 비용 지불(중복응답)

단위: %

| 구분 | 3차년도 | 3차년도 모 취업 | |
|---------|-------|-----------|-------|
| | | 취업모 | 비취업모 |
| 지불함 | 39.4 | 37.4 | 41.2 |
| 지불하지 않음 | 56.7 | 59.7 | 53.8 |
| 모름 | 4.0 | 2.9 | 5.0 |
| 계 | 100.0 | 100.0 | 100.0 |

주: 3차년도 조사에서 추가된 문항임.

다음은 특별활동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강사의 유형이 어떠한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기관의 정규교사 또는 정규강사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는 40.5%, 따로 특별활동 강사가 와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는 좀 더 많은 52.7%로

집계되었다. 어머니의 취업 여부에 따라 이를 살펴본 결과, 선택 여부와 마찬가지로 취업모와 비취업 모 두 각각 52.3%, 53.1%의 유사한 비율로 특별활동 강사가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II-4-50〉 프로그램 강사 유형(중복응답)

단위: %

| 구분 | 3차년도 | 3차년도 모 취업 | |
|-------------------|-------|-----------|-------|
| | | 취업모 | 비취업모 |
| 기관의 정규교사 또는 정규 강사 | 40.5 | 40.5 | 40.5 |
| 특별 활동 강사 | 52.7 | 52.3 | 53.1 |
| 모름 | 6.8 | 7.2 | 6.5 |
| 계 | 100.0 | 100.0 | 100.0 |

주: 3차년도 조사에서 추가된 문항임.

특별활동을 받는데 지불하는 월 평균 비용을 모두 합산하여 분석한 결과, 특별활동 프로그램을 받는데 평균 23,411원을 지불하고 있었으며, 취업모는 23,446원을, 비취업모는 23,445원 정도를 지불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어머니의 취업 여부에 따라 프로그램 월 평균 비용을 t 검정한 결과,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표 II-4-51〉 프로그램 월 평균 비용(중복응답)

단위: 원

| 구분 | 3차년도 | 3차년도 모 취업 | |
|------|---------|-----------|---------|
| | | 취업모 | 비취업모 |
| 평균 | 23,411 | 23,446 | 23,445 |
| 표준편차 | 27,111 | 18,748 | 16,369 |
| 중위값 | 20,000 | 20,000 | 20,000 |
| 최소 | 3,000 | 5,000 | 3,000 |
| 최대 | 130,000 | 130,000 | 100,000 |
| t | | .79 | |

주: 3차년도 조사에서 추가된 문항임.

일주일 간 참여한 특별활동 프로그램의 이용시간을 개방식 질문으로 조사한 결과를 모두 합산하여 10분 단위로 묶어서 <표 II-4-52>와 같이 제시하였다. 일주일 간 특별활동 프로그램 이용의 시간은 30~39분 이용이 43.1%로 가장 높은 비율이었고, 40~49분 20.2%, 60분 이상 19.6%, 20~29분 12.2% 순으로 나타났

다.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라 프로그램 월 평균 이용시간을 t 검증한 결과,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표 II-4-52〉 프로그램 이용 시간(중복응답)

단위: %

| 구분 | 3차년도 | 3차년도 모 취업 | |
|------------|-------|-----------|-------|
| | | 취업모 | 비취업모 |
| 10 분 ~ 19분 | 2.6 | 3.5 | 1.8 |
| 20 분 ~ 29분 | 12.2 | 10.0 | 14.1 |
| 30 분 ~ 39분 | 43.1 | 41.3 | 44.8 |
| 40 분 ~ 49분 | 20.2 | 19.4 | 20.9 |
| 50 분 ~ 59분 | 2.3 | 2.8 | 1.8 |
| 60 분 이상 | 19.6 | 22.9 | 16.5 |
| 계 | 100.0 | 100.0 | 100.0 |
| 평균 | 52.13 | 54.73 | 50.02 |
| 표준편차 | 44.03 | 43.46 | 44.38 |
| t | | .29 | |

주: 3차년도 조사에서 추가된 문항임.

특별활동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약 62.0%가 '만족한다'고 응답하였고 29.9% 정도가 '보통'이므로,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는 99.0%로 높은 만족도를 보여 대부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라 비교해 보면, 취업모의 경우 만족한다는 응답과 매우 만족한다는 응답이 71.4%로 비취업모의 66.9%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조사되었다.

〈표 II-4-53〉 프로그램 이용만족도

단위: %

| 구분 | 3차년도 | 3차년도 모 취업 | |
|--------|-------|-----------|-------|
| | | 취업모 | 비취업모 |
| 매우 불만족 | 0.2 | - | 0.4 |
| 불만족 | 0.8 | 0.7 | 0.9 |
| 보통 | 29.9 | 27.9 | 31.8 |
| 만족 | 62.0 | 64.7 | 59.4 |
| 매우 만족 | 7.1 | 6.7 | 7.5 |
| 계 | 100.0 | 100.0 | 100.0 |
| 평균 | 3.73 | 3.74 | 3.72 |
| 표준편차 | 0.59 | 0.55 | 0.62 |
| t | | .82 | |

주: 3차년도 조사에서 추가된 문항임.

6) 육아지원기관 외 프로그램

2차년도부터 조사된 육아지원기관 외 프로그램 이용에 대하여 알아보기 위하여, 프로그램의 이용 여부와 이용 프로그램의 수, 프로그램의 특성(내용, 진행방식, 장소, 학습지 이용 여부, 교사 유무, 월별 참여 횟수, 시간, 기간, 비용)을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중복응답으로 조사된 육아지원기관 내 특별활동에 대한 결과는 다중응답 분석으로 제시하였다.

가) 육아지원 기관 외 프로그램 이용

(1) 육아지원 기관 외 프로그램 이용 여부

개인 대리 양육이나 어린이집 외에 아동이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프로그램이나 기관이 있는지의 여부를 조사하였다. 전체 아동의 22.5%가 정기적으로 육아지원 기관 외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취업모의 14.9%, 비취업모의 경우 26.3%가 육아지원 기관 외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다고 하였다.

육아지원 기관 외 프로그램의 이용에 대해 취업모와 비취업모의 차이를 χ^2 검정한 결과,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즉, 비취업모(26.3%)가 취업모(14.9%)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이 육아지원 기관 외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4-54〉 육아지원 기관 외 프로그램 이용 여부

| 구분 | 중단비교 | | 3차년도 모 취업 | |
|-----------|----------|-------|-----------|-------|
| | 2차년도 | 3차년도 | 취업모 | 비취업모 |
| 참여프로그램 없음 | 83.6 | 77.2 | 85.1 | 73.7 |
| 참여프로그램 있음 | 16.4 | 22.5 | 14.9 | 26.3 |
| 계 | 100.0 | 100.0 | 100.0 | 100.0 |
| | χ^2 | | 25.87*** | |

주: 2차년도 조사에서 추가된 문항임.

*** $p < .001$.

2차년도와 3차년도의 프로그램 이용 여부를 비교해 보면, 2차년도에 16.4%가 참여프로그램을 이용한 것에 비해 3차년도에는 22.5%로 아동의 기관 외 프로그램 이용이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었다(표 II-4-54 참조). 즉, 아동의 연령이 증가하면서 기관의 프로그램의 이용이 많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어머니의 비취업모의 아동이 육아지원기관 외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육아지원 기관 외 프로그램 이용 수

정기적으로 육아지원 기관 외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최소 1개에서 9개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평균 1.37개의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II-4-55 참조).

취업모는 1.38개의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비취업모의 경우는 1.37개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그러나 취업모와 비취업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2차년도와 3차년도를 비교해 볼 때 프로그램 이용 수에 있어서는 1.25개에서 1.37개로 약간 증가하였다. 아동의 연령 증가와 함께 프로그램 이용 수도 증가할 것이 예상되므로 향후 조사 결과의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표 II-4-55〉 육아지원 기관 외 프로그램 이용 수

| 구분 | 종단비교 | | 3차년도 모 취업 | |
|----------|------|------|-----------|------|
| | 2차년도 | 3차년도 | 취업모 | 비취업모 |
| 평균 | 1.25 | 1.37 | 1.38 | 1.37 |
| 표준편차 | 0.55 | 0.76 | 0.69 | 0.77 |
| 최소 | 1 | 1 | 1 | 1 |
| 최대 | 4 | 9 | 4 | 9 |
| <i>t</i> | | | 1.45 | |

단위: 개

주: 2차년도 조사에서 추가된 문항임.

나) 육아지원 기관 외 프로그램 특성

(1) 육아지원 기관 외 프로그램 내용

3차년도의 육아지원 기관 외 프로그램 내용은 아동이 성장하면서 보다 다양한 내용의 프로그램 내용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어 좀 더 구체적인 실제 프로그램 내용을 추가하여 질문하였다.

육아지원 기관 외 프로그램 내용을 조사한 결과, 3차년도의 육아지원 기관 외 프로그램 내용은 통합프로그램이 39.7%로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었고, 체육 프로그램은 13.1%, 한글(국어) 10.8%, 교구이용 프로그램 10.4%의 순으로 많이 이용하였다.

어머니의 취업 여부에 따라서는, 취업모와 비취업모는 모두 통합 프로그램을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체육과 교구이용 프로그램을 그 다음으로 많

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흥미로운 점은 취업모의 경우 한글 프로그램이 15.5%, 영어 프로그램이 4.7%로 비취업모에 비해 높은 비율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이른 시기부터 정기교육과정을 준비하는 것으로 짐작되며, 비취업모의 경우는 통합 프로그램, 미술과 음악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표 II-4-56〉 육아지원 기관 외 프로그램 내용(중복응답)

단위: %

| 구분 | 2차년도 | 구분 | 3차년도 | | |
|-------|-------|----------|-------|-------|-------|
| | | | 전체 | 취업모 | 비취업모 |
| 미술 | 4.5 | 미술 | 7.1 | 6.7 | 7.2 |
| 음악 | 18.8 | 음악 | 9.1 | 7.6 | 9.6 |
| 체육 | 7.1 | 체육 | 13.1 | 15.2 | 12.6 |
| 과학 | 0.1 | 과학 | - | - | - |
| 수학 | 0.3 | 수학 | 0.5 | - | 0.7 |
| 한글 | 2.5 | 한글(국어) | 10.8 | 15.5 | 9.5 |
| | | 컴퓨터 | - | - | - |
| 감각·조작 | 31.8 | 교구이용프로그램 | 10.4 | 11.7 | 10.0 |
| | | 한자 | 0.4 | 0.7 | 0.3 |
| 외국어 | 1.0 | 영어 | 2.6 | 4.7 | 2.0 |
| | | 기타 외국어 | - | - | - |
| 통합 | 36.8 | 통합 | 39.7 | 32.1 | 41.8 |
| | | 기타 | 6.3 | 5.8 | 6.4 |
| 계 | 100.0 | 계 | 100.0 | 100.0 | 100.0 |

주: 2차년도 조사에서 추가된 문항임.

(2) 육아지원 기관 외 프로그램 진행 방식

정기 프로그램의 진행 방식은 전체의 70.7%가 다른 아동들과 함께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개별적으로 진행하는 경우도 29.3% 정도였다. 취업모는 개별적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39.0%로 나타나 비취업모의 26.6%보다 많은 비율을 보였다(표 II-4-57 참조).

이처럼 취업모의 경우 개별 진행의 이용률이 높는데, 이는 자녀를 데리고 직접 기관을 방문하기가 쉽지 않은 취업모의 사정을 보완하기 위하여 상대적으로 개별 진행을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2차년도와 3차년도를 비교하자면, 전반적으로 개별진행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취업모가 비취업모보다 개별 진행을 더 많이 이용하고 비취업모는 약간 감소하기는 했지만 다른 아기와 함께 진행하는 비율은 여전히 비슷하게 나타났다.

〈표 11-4-57〉 육아지원 기관 외 프로그램 진행 방식(중복응답)

단위: %

| 구분 | 종단비교 | | 3차년도 모 취업 | |
|---------------|-------|-------|-----------|-------|
| | 2차년도 | 3차년도 | 취업모 | 비취업모 |
| 개별로 진행 | 16.0 | 29.3 | 39.0 | 26.6 |
| 다른 아기들과 함께 진행 | 84.0 | 70.7 | 61.0 | 73.4 |
| 계 | 100.0 | 100.0 | 100.0 | 100.0 |

주: 2차년도 조사에서 추가된 문항임.

(3) 육아지원 기관 외 프로그램 진행 장소

정기적으로 육아지원 기관 외 서비스를 이용하는 주된 장소로는 백화점 및 마트 등의 사설 문화센터가 54.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만 취업모의 경우 해당 아동 혹은 다른 아동의 집과 같은 가정방문 형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40.3%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가정방문 방식으로 기관 방문 프로그램을 대체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어머니의 취업 여부에 따라서는 취업모와 비취업모 모두 40.3%, 58.5%로 사설 문화센터를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비취업모의 경우 취업모에 비해 그 비율이 다소 높았다.

〈표 11-4-58〉 육아지원 기관 외 프로그램 진행 장소(중복응답)

단위: %

| 구분 | 종단비교 | | 3차년도 모 취업 | |
|-------------|-------|-------|-----------|-------|
| | 2차년도 | 3차년도 | 취업모 | 비취업모 |
| 집 | 13.0 | 29.3 | 40.3 | 26.2 |
| 공공기관 | 6.0 | 3.5 | 2.4 | 3.8 |
|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 | 2.8 | 0.1 | 0.6 | - |
| 기타 비영리 기관 | 2.9 | 2.8 | 1.9 | 3.0 |
| 사설 문화센터 | 62.1 | 54.5 | 40.3 | 58.5 |
| 사설 학원 | 7.3 | 7.9 | 12.0 | 6.7 |
| 종교단체, 사회단체 | 1.5 | 1.7 | 1.1 | 1.9 |
| 어린이집 | 1.6 | - | 1.4 | - |
| 기타 | 2.8 | 0.3 | - | - |
| 계 | 100.0 | 100.0 | 100.0 | 100.0 |

주: 2차년도 조사에서 추가된 문항임.

(4) 육아지원 기관 외 프로그램 진행 시 학습지 이용 여부

육아지원 기관 외 프로그램을 이용 시 학습지를 사용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있어 75.1%의 프로그램에서는 학습지를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일부 24.9%에 해당하는 프로그램에서는 학습지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비율을 고려할 때, 취업모와 비취업모는 유사한 비율 정도로 학습지 사용을 하고 있으며, 약간의 비율 차이로 취업모가 학습지를 더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차년도와 비교할 때, 3차년도의 전체 학습지 이용 비율이 약 8% 증가되었다고 할 수 있겠고, 취업모와 비취업모의 학습지 사용 비율은 크게 차이를 나타내지 않으나, 취업모의 학습지 이용 비율이 높아졌다.

〈표 II-4-59〉 육아지원 기관 외 프로그램 진행 시 학습지 이용 여부(중복응답)

단위: %

| 구분 | 중단비교 | | 3차년도 모 취업 | |
|---------|-------|-------|-----------|-------|
| | 2차년도 | 3차년도 | 취업모 | 비취업모 |
| 이용함 | 16.2 | 24.9 | 28.4 | 23.9 |
| 이용하지 않음 | 83.8 | 75.1 | 71.6 | 76.1 |
| 계 | 100.0 | 100.0 | 100.0 | 100.0 |

주: 2차년도 조사에서 추가된 문항임.

(5) 육아지원 기관 외 프로그램 진행 시 교사 유무

육아지원 기관 외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 교사가 함께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3차년도에 추가하였다. 학습지를 할 때 교사가 함께 하는지 여부를 질문한 결과, 대부분의 프로그램의 진행시에 대부분 81.2% 정도가 교사가 함께 있었고, 교사 없이 부모가 진행하는 경우는 18.8%로 나타났다.

〈표 II-4-60〉 육아지원 기관 외 프로그램 진행 시 교사 유무(중복응답)

단위: %

| 구분 | 3차년도 | 3차년도 모 취업 | |
|---------------|-------|-----------|-------|
| | | 취업모 | 비취업모 |
| 학습지 교사 있음 | 81.2 | 95.1 | 76.7 |
| 교사 없이 부모가 진행함 | 18.8 | 4.9 | 23.3 |
| 계 | 100.0 | 100.0 | 100.0 |

주: 3차년도 조사에서 추가된 문항임.

한편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른 교사 유무를 살펴보면, 취업모의 대부분인 95.1%가 학습지 교사가 있는 것으로 응답했으며, 비취업모의 경우는 취업모에 비해 교사가 없이 부모가 진행하는 경우가 23.3%나 되어, 4.9%인 취업모보다 상대적인 비율을 높게 응답하였다(표 II-4-60 참조).

(6) 육아지원 기관 외 프로그램 월별 참여횟수

육아지원 기관 외 프로그램의 월 평균 이용횟수는 4.19회로 대부분의 프로그램을 주 1회 정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모는 4.04회, 비취업모의 경우 4.23회로 취업모에 비하여 비취업모가 약간 높은 비율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월별 프로그램의 횟수는 2차년도에 비해 조금 감소하는 비율을 나타내고 있지만, 개인에 따라 참여하는 프로그램의 횟수의 범위는 더 커진 것으로 조사됐다.

〈표 II-4-61〉 육아지원 기관 외 프로그램 월별 참여횟수(중복응답)

단위: 회

| 구분 | 종단비교 | | 3차년도 모 취업 | |
|----------|------|------|-----------|------|
| | 2차년도 | 3차년도 | 취업모 | 비취업모 |
| 평균 | 4.98 | 4.19 | 4.04 | 4.23 |
| 표준편차 | 2.40 | 1.65 | 0.86 | 1.81 |
| 최소 | 1 | 1 | 1 | 1 |
| 최대 | 16 | 20 | 12 | 20 |
| <i>t</i> | | | -.06 | |

주: 2차년도 조사에서 추가된 문항임.

(7) 육아지원 기관 외 프로그램 회별 참여 시간

육아지원 기관 외 프로그램의 회별 참여시간은 평균적으로 37.94분으로 나타났으나 최소 10분에서 최대 180분까지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응답되어 프로그램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였다.

〈표 II-4-62〉 육아지원 기관 외 프로그램 회별 참여 시간(중복응답)

단위: 분

| 구분 | 종단비교 | | 3차년도 모 취업 | |
|----------|-------|-------|-----------|-------|
| | 2차년도 | 3차년도 | 취업모 | 비취업모 |
| 평균 | 48.97 | 37.94 | 35.81 | 38.53 |
| 표준편차 | 24.25 | 15.17 | 13.51 | 15.55 |
| 최소 | 10 | 10 | 10 | 60 |
| 최대 | 200 | 180 | 60 | 180 |
| <i>t</i> | | | -2.90* | |

주: 2차년도 조사에서 추가된 문항임.

* $p < .05$.

전체적으로 각 프로그램은 35분에서 40분정도로 이용하고 있었다. *t*검증 결

과, 취업모와 비취업모 간의 참여시간에 대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비취업모의 회별 참여 시간이 더 많은 것으로 볼 수 있겠다. 특히 참여시간의 최소 시간과 최대 시간을 고려할 때 비취업모가 시간활용이 용이한 관계로 좀 더 많은 시간동안 아이와 함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으로 보인다.

(8) 육아지원 기관 외 프로그램 월별 참여 기간

정기적으로 육아지원 기관 외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 평균적으로 7개월 가량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적게는 1개월에서 길게 사용하는 경우 24개월가량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취업모의 경우 약 7.93개월 정도, 비취업모가 6.73 개월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차년도와 비교해 볼 때, 3차년도에 평균적으로 월별 참여기간이 증가했으며, 비취업모보다 취업모의 월별 참여기간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4-63〉 육아지원 기관 외 프로그램 월별 참여 기간(중복응답)

단위: 개월

| 구분 | 중단비교 | | 3차년도 모 취업 | |
|----------|------|------|-----------|------|
| | 2차년도 | 3차년도 | 취업모 | 비취업모 |
| 평균 | 3.99 | 7.00 | 7.93 | 6.73 |
| 표준편차 | 3.68 | 5.51 | 5.26 | 5.55 |
| 최소 | 1 | 1 | 1 | 1 |
| 최대 | 19 | 24 | 24 | 24 |
| <i>t</i> | | | 1.26 | |

주: 2차년도 조사에서 추가된 문항임.

(9) 육아지원 기관 외 서비스 월별 참여 비용

정기적으로 육아지원 기관 외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의 월별 참여비용은 무료에서부터 최대 32만원까지 지불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평균적으로 4.77만원 가량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프로그램을 주 1~2회 정도 이용하는 것으로 보았을 때, 회당 이용비용은 1만원 안팎으로 계산되는 것으로 여겨진다.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라 살펴보면, 취업모는 5.34만원을, 비취업모의 경우 4.61만원을 월별 비용으로 지불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취업모가 상대적으로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2차년도와 비교하여 볼 때, 전반적으로 월별 평균 비용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취업모와 비취업모의 평균

비용은 약간의 차이를 보였다.

〈표 II-4-64〉 육아지원 기관 외 프로그램 월별 참여 비용(중복응답)

단위: 만원

| 구분 | 종단비교 | | 3차년도 모 취업 | |
|----------|------|------|-----------|------|
| | 2차년도 | 3차년도 | 취업모 | 비취업모 |
| 평균 | 6.19 | 4.77 | 5.34 | 4.61 |
| 표준편차 | 6.47 | 3.77 | 3.54 | 3.82 |
| 최소 | 0 | 0 | 0 | 0 |
| 최대 | 46 | 32 | 20 | 32 |
| <i>t</i> | | | 0.39 | |

주: 2차년도 조사에서 추가된 문항임.

7) 가정 내 영어 학습

3차년도에는 가정 내 영어 학습에 대해 알아보고자 문항을 새롭게 구성하여 조사하였다. 가정에 가지고 있는 학습 자료의 종류와 개수, 함께 하는 사람, 시간, 구입에 드는 비용에 대하여 질문하였다. 가정 내 영어 학습에 대한 결과는 다중응답으로 제시하였다.

〈표 II-4-65〉 영어 학습 자료(중복응답)

단위: %

| 구분 | 3차년도 | 3차년도 모 취업 | |
|--------------|-------|-----------|-------|
| | | 취업모 | 비취업모 |
| 책 | 15.6 | 14.8 | 16.0 |
| 그림카드 | 4.8 | 3.8 | 5.3 |
| 그림판 | 3.2 | 2.3 | 3.7 |
| 보드게임 | 0.8 | 1.1 | 0.7 |
| 장난감 | 3.3 | 4.4 | 2.8 |
| TV 프로그램 | 7.2 | 5.2 | 8.1 |
| 오디오 테이프, CD | 15.3 | 14.5 | 15.7 |
| 비디오 테이프, DVD | 10.6 | 10.0 | 10.9 |
| 인터넷 콘텐츠 | 2.1 | 1.6 | 2.3 |
| 기타 | 0.3 | 0.5 | 0.2 |
| 없음 | 36.7 | 41.7 | 34.3 |
| 계 | 100.0 | 100.0 | 100.0 |

주: 3차년도 조사에서 추가된 문항임.

가정 내의 보유하고 있는 영어 학습 자료들에 대한 분석결과는 <표 II-4-65>

와 같이, 책이 가장 많은 15.6%를 차지했고, 다음은 오디오 테이프와 CD, 비디오 테이프, CD 순이었다. 한편 이러한 영어 학습 자료들이 없다고 응답한 사람들도 36.7%였다.

비취업모의 영어 학습 자료 보유 비율이 취업모보다 조금 높은 것으로 보였다. 학습 자료들이 없다는 문항에 취업모의 응답율이 41.7%나 되었다.

가정 내의 영어 학습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개방식 질문으로 조사한 결과를 5개월 단위로 묶어서 제시하면, 33.9%의 어머니들이 11~15개월 사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16~20개월, 21~25개월, 6~10개월 순으로 집계되었다. 대부분이 두 살 전후로 가정 내에서 영어 학습을 시작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II-4-66〉 영어 학습 시작 시기

단위: %

| 구분 | 3차년도 | 3차년도 모 취업 | |
|----------|-------|-----------|-------|
| | | 취업모 | 비취업모 |
| 1~5 개월 | 9.6 | 10.50 | 9.20 |
| 6~10 개월 | 16.8 | 16.50 | 17.00 |
| 11~15 개월 | 33.9 | 34.20 | 33.80 |
| 16~20 개월 | 21.5 | 22.40 | 21.20 |
| 21~25 개월 | 17.0 | 15.60 | 17.60 |
| 26~29 개월 | 1.0 | 0.80 | 1.20 |
| 계 | 100.0 | 100.0 | 100.0 |
| 평균 | 14.85 | 14.76 | 6.32 |
| 표준편차 | 6.22 | 14.86 | 6.18 |
| <i>t</i> | | -.25 | |

주: 3차년도 조사에서 추가된 문항임.

한편, 영어 학습 자료를 구입하거나 이용하는데, 월평균 얼마나 지출하는지 알아본 결과, 평균적으로 34,407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작게는 1,000원에서 많게는 800,000원의 큰 차이를 나타내었다.

취업모와 비취업모의 영어 학습 자료를 위한 지출금의 월 평균은 비슷한 비율로 소비하는 것으로 응답하였으나, 표준편차와 최대값을 고려할 때, 실제 취업모는 비취업모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불할 수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취업모와 비취업모 간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표 II-4-67 참조).

〈표 II-4-67〉 영어 학습 자료 월 평균 지출금

단위: 원

| 구분 | 3차년도 | 3차년도 모 취업 | |
|----------|---------|-----------|---------|
| | | 취업모 | 비취업모 |
| 평균 | 34,407 | 39,889 | 32,105 |
| 표준편차 | 67,178 | 93,886 | 51,844 |
| 중위값 | 10,000 | 17,500 | 10,000 |
| 최소 | 1,000 | 1,000 | 1,000 |
| 최대 | 800,000 | 800,000 | 300,000 |
| <i>t</i> | | 1.22 | |

주: 3차년도 조사에서 추가된 문항임.

영어 능력 향상을 위해 주당 영어 학습 자료를 이용하는 시간을 조사한 결과, 평균 주당 227.85분(3.80시간)이었고, 가장 작게는 10분에서 많게는 4,380분(73시간)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모의 영어 학습 자료이용 시간은 221.19분(3.69시간), 비취업모의 자료 이용시간은 230.64분(3.84시간)으로 나타났다. 평균 시간은 비취업모의 영어 학습 자료 이용 시간이 취업모보다 약간 더 높게 나타났지만, 두 집단 간의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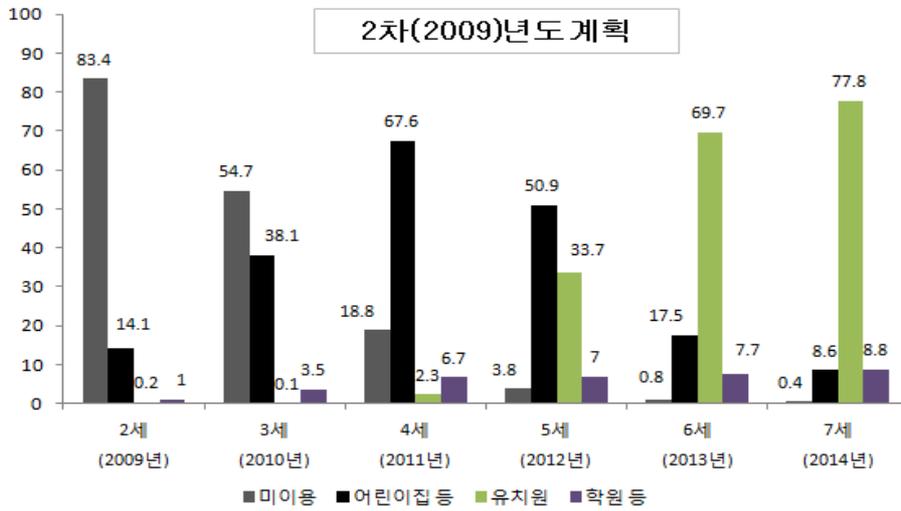
〈표 II-4-68〉 영어 학습 자료 이용 시간

단위: 분

| 구분 | 3차년도 | 3차년도 모 취업 | |
|----------|--------|-----------|--------|
| | | 취업모 | 비취업모 |
| 평균 | 227.85 | 221.19 | 230.64 |
| 표준편차 | 273.57 | 294.26 | 264.36 |
| 최소 | 10 | 10 | 10 |
| 최대 | 4380 | 2400 | 4380 |
| <i>t</i> | | -0.70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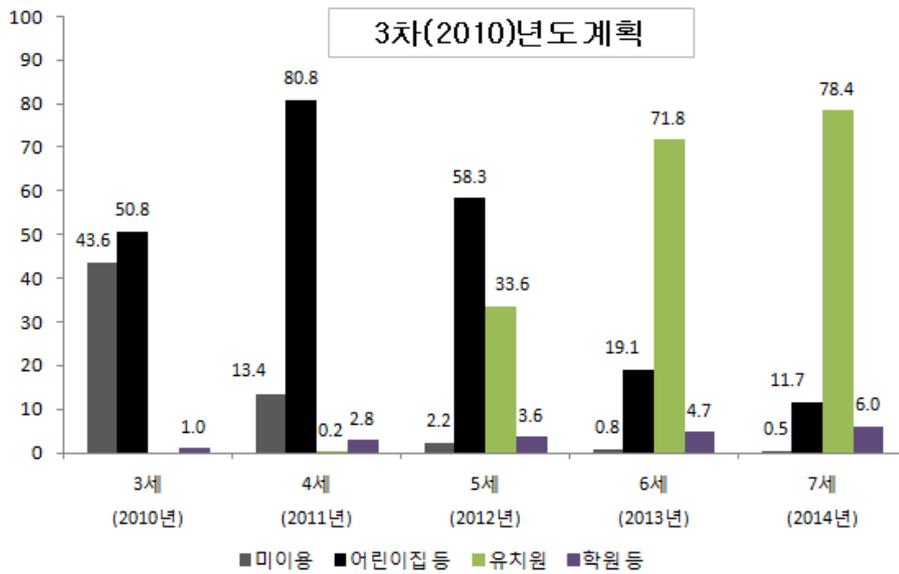
주: 3차년도 조사에서 추가된 문항임.

영어 학습을 위해 자료이용을 누구와 함께 하는지 알아본 결과, 70.6%가 부모와 함께 하는 것으로 응답하였고, 그 다음으로 형제/자매가 19.9%, 혼자 6.9% 순으로 나타났다(표 II-4-69 참조). 어머니의 취업 여부에 따라서 영어 학습 공유자를 살펴보면, 취업모 69.5%, 비취업모 71.0%로 부모와 함께 이용하는 경우가 과반수 이상으로 가장 많이 응답되었다.



단위: %

[그림 II-4-4] 기관/시설 이용 계획 - 2차(2009)년도 계획



단위: %

[그림 II-4-5] 기관/시설 이용 계획 - 3차(2010)년도 계획

육아지원 기관/시설 이용 계획에 대한 응답을 기관 및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와 주로 이용하는 어린이집, 유치원과 기타 학원 등을 이용하는 경우로 나누어 살펴보면 [그림 II-4-4], [그림 II-4-5]와 같다. 2차년도 조사 결과와 마찬가지로 3차년도 조사에서도 4세를 기점으로 기관을 이용하려는 계획이 증가하고 있으며, 5세부터 유치원을 이용할 것이라는 비율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5세를 중심으로 대다수의 아동이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으로 이용기관을 변경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나. 육아 지원 정책 특성

1) 정책의 방향

가) 바람직한 육아 지원 정책의 방향

바람직한 육아지원 정책의 방향으로 육아휴직, 탄력근무 등 모성보호 제도와 저렴하고 질 높은 육아지원서비스의 확대 가운데 어떤 것이 더 적절한지 묻는 질문에 전체 54.9%가 '두 가지 모두'라고 답했으며, 비용이 적절하면서도 질 높은 육아지원서비스 확대 28.4%, 육아휴직, 탄력근무 등의 모성보호 제도의 정착 및 확대 16.7% 순으로 나타났다.

〈표 II-4-71〉 바람직한 육아 지원 정책의 방향

| 구분 | 종단비교 | | | 3차년도 모 취업 | |
|--------------------------------|----------|-------|-------|-----------|-------|
| | 1차년도 | 2차년도 | 3차년도 | 취업모 | 비취업모 |
| 육아휴직, 탄력근무 등의 모성보호 제도의 정착 및 확대 | 23.6 | 19.6 | 16.7 | 19.7 | 15.2 |
| 비용이 적절하면서도 질 높은 육아지원서비스의 확대 | 36.0 | 27.6 | 28.4 | 28.9 | 28.1 |
| 두 가지 모두 | 40.4 | 52.8 | 54.9 | 51.5 | 56.6 |
| 계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 | χ^2 | | | 6.54* | |

* $p < .05$.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른 차이를 χ^2 검증으로 살펴본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취업모의 경우 육아휴직, 탄력근무 등의 모성보호 제도의

정착 및 확대하는 방향으로 육아지원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난 반면, 비취업모의 경우는 두 가지 육아지원서비스 모두가 바람직한 육아지원 정책의 방향으로 정착 및 확대되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가지 육아지원서비스에 대해 1차년도와 2차년도의 경우 각 23.6%, 36.0%로 응답되었던 것에 반해 3차년도에는 전체의 52.8%가 두 가지 모두라고 답했으며, 나머지 두 가지 중에서는 육아지원서비스의 확대를 바람직한 정책방향으로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3차년도 조사 결과도 이와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2) 일과 가정의 양립 정책

가) 출산 및 육아 지원 제도 필요성

(1) 휴가 및 휴직

(가) 출산휴가

직장에서 실시하는 출산 및 육아지원제도 가운데 여성의 출산 휴가와 남성의 출산 휴가에 대한 필요성을 질문한 결과, 직장에서 실시하는 출산 및 육아지원제도 가운데 여성의 출산휴가에 대해 86.8%가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남성의 출산휴가에 있어서도 56.6%가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여성의 출산휴가와 남성의 출산휴가 모두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2차년도 조사와 동일한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남성의 출산휴가 보다 여성의 출산휴가에 대한 필요성을 더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II-4-72〉 출산휴가

단위: %, 점

| 구분 | 종단비교 | | | 3차년도 모 취업 | | |
|-------------|---------|-------|-------|----------------------|-------|-------|
| | 1차년도 | 2차년도 | 3차년도 | 취업모 | 비취업모 | |
| 여성의 출산휴가 | 매우 불필요 | 0.9 | 2.6 | 2.2 | 1.9 | 2.3 |
| | 대체로 불필요 | 0.2 | 0.3 | 0.3 | 0 | 0.4 |
| | 보통 | 0.7 | 1.1 | 1.5 | 1.4 | 1.6 |
| | 대체로 필요 | 3.8 | 7.7 | 9.2 | 7.1 | 10.3 |
| | 매우 필요 | 94.4 | 88.3 | 86.8 | 89.6 | 85.4 |
| | 계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 | 평균 | 4.91 | 4.79 | 4.79 | 4.83 | 4.76 |
| | 표준편차 | 0.47 | 0.73 | 0.67 | 0.02 | 0.02 |
| <i>t</i> | | | | -1.98 ^{***} | | |

| 구분 | | 종단비교 | | | 3차년도 모 취업 | |
|-------------|---------|-------|-------|-------|-----------|-------|
| | | 1차년도 | 2차년도 | 3차년도 | 취업모 | 비취업모 |
| 남성의 출산휴가 | 매우 불필요 | 0.8 | 1.9 | 1.6 | 1.2 | 1.9 |
| | 대체로 불필요 | 1.1 | 2.3 | 1.6 | 2.4 | 1.3 |
| | 보통 | 4.2 | 10.6 | 9.7 | 11.4 | 8.8 |
| | 대체로 필요 | 23.3 | 29.2 | 30.4 | 30.4 | 30.4 |
| | 매우 필요 | 70.5 | 56.0 | 56.6 | 54.6 | 57.7 |
| | 계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 | 평균 | 4.62 | 4.35 | 4.40 | 4.35 | 4.41 |
| | 표준편차 | 0.70 | 0.90 | 0.84 | 0.86 | 0.84 |
| <i>t</i> | | | | | -1.34* | |

* $p < .05$. *** $p < .001$.

여성의 출산휴가의 경우 어머니의 취업 여부에 따라 *t*검증하여 분석한 결과, 취업모와 비취업모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취업모의 경우 비취업모보다 출산휴가의 필요성을 더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남성의 출산휴가에 대해서도 어머니의 취업 여부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남성의 출산휴가에 대해서는 비취업모가 필요성을 더 높이 인식하고 있었다.

(나) 육아휴직

직장에서 실시하는 출산 및 육아지원제도 가운데 여성과 남성의 육아 휴직에 대한 필요성을 질문한 결과는 <표 II-473>과 같다. 여성의 육아휴직에 대한 응답은 출산휴가와 마찬가지로 '매우 필요하다'라는 응답이 81.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남성의 육아휴직의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로 응답되었으나, 매우 필요하다는 응답이 43.3%를 차지하고 있었다(표 II-473 참조). 이러한 결과는 2차년도 조사와 동일한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남성 육아휴직보다 여성의 육아휴직이 더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많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여성과 남성의 육아 휴직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 어머니의 취업 여부에 따른 차이를 *t*검증하여 분석한 결과, 여성의 육아휴직의 경우 취업모가 필요성을 더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성의 육아휴직의 경우 두 집단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취업모와 비취업모 모두 남성의 육아휴직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표 II-4-73〉 육아휴직

단위: %, 점

| 구분 | 중단비교 | | | 3차년도 모 취업 | | |
|-------------|----------|-------|-------|-----------|-------|-------|
| | 1차년도 | 2차년도 | 3차년도 | 취업모 | 비취업모 | |
| 여성의 육아휴직 | 매우 불필요 | 0.8 | 2.7 | 2.0 | 2.0 | 2.0 |
| | 대체로 불필요 | 0.3 | 0.6 | 0.3 | 0 | 0.4 |
| | 보통 | 1.0 | 1.7 | 10.7 | 1.5 | 10.8 |
| | 대체로 필요 | 5.8 | 14.3 | 14.6 | 14.3 | 14.8 |
| | 매우 필요 | 92.1 | 80.8 | 81.4 | 82.1 | 81.0 |
| | 계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 | 평균 | 4.88 | 4.70 | 4.73 | 4.74 | 4.72 |
| | 표준편차 | 0.49 | 0.77 | 0.69 | 0.68 | 0.71 |
| | <i>t</i> | | | 0.64* | | |
| 남성의 육아휴직 | 매우 불필요 | 0.6 | 2.1 | 2.1 | 1.7 | 2.3 |
| | 대체로 불필요 | 2.8 | 4.7 | 3.8 | 4.9 | 3.2 |
| | 보통 | 13.9 | 18.7 | 16.7 | 21.0 | 14.6 |
| | 대체로 필요 | 27.6 | 32.9 | 34.0 | 33.6 | 34.3 |
| | 매우 필요 | 55.0 | 41.7 | 43.3 | 38.8 | 45.6 |
| | 계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 | 평균 | 4.34 | 4.07 | 4.11 | 4.03 | 4.18 |
| | 표준편차 | 0.86 | 0.99 | 0.96 | 0.97 | 0.95 |
| | <i>t</i> | | | -3.03 | | |

* $p < .05$.

(2) 보육지원

(가) 직장 보육시설

직장에서 실시하는 대표적인 보육지원 방식 가운데 직장보육에 대한 필요성을 질문한 결과 전체의 71.3%가 매우 필요, 20.7%가 필요하다고 응답해 전체 응답자의 92.0%가 직장 보육시설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II-4-74 참조).

평균적으로 취업모와 비취업모의 직장 보육시설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취업모의 경우는 직장 보육시설이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72.3%로 비취업모의 70.9%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대체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에서는 취업모 18.2% 비취업모 22.0%로 비취업모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취업 여부에 따른 직장 보육시설 지원의 필요성 인식을 *t*검증하여 분석한 결과, 두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취업모와 비취업모 모두 직장 보육시설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

었다. 1·2·3차년도 조사 결과를 종단적으로 비교하여 살펴보면, 3차년도 결과 또한 1·2차년도 조사 결과와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직장 보육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지속적으로 높게 나타나 직장 보육시설에 대한 요구가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II-4-74〉 직장 보육시설

단위: %, 점

| 구분 | 종단비교 | | | 3차년도 모 취업 | |
|----------|-------|-------|-------|-----------|-------|
| | 1차년도 | 2차년도 | 3차년도 | 취업모 | 비취업모 |
| 매우 불필요 | 0.9 | 2.6 | 1.8 | 1.5 | 1.9 |
| 대체로 불필요 | 0.5 | 0.5 | 0.7 | 1.0 | 0.6 |
| 보통 | 2.4 | 4.7 | 5.5 | 7.0 | 4.7 |
| 대체로 필요 | 15.2 | 22.0 | 20.7 | 18.2 | 22.0 |
| 매우 필요 | 81.0 | 70.2 | 71.3 | 72.3 | 70.9 |
| 계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 평균 | 4.75 | 4.57 | 4.60 | 4.59 | 4.59 |
| 표준편차 | 0.61 | 0.83 | 0.76 | 0.79 | 0.77 |
| <i>t</i> | | | | -0.21 | |

(나) 보육비 지원

직장에서 실시하는 보육지원 방식 가운데 보육비 지원에 대한 필요성을 질문한 결과는 <표 II-4-75>와 같다.

〈표 II-4-75〉 보육비 지원

단위: %, 점

| 구분 | 종단비교 | | | 3차년도 모 취업 | |
|----------|-------|-------|-------|-----------|-------|
| | 1차년도 | 2차년도 | 3차년도 | 취업모 | 비취업모 |
| 매우 불필요 | 0.9 | 2.7 | 2.3 | 2.0 | 2.4 |
| 대체로 불필요 | 0.1 | 0.4 | 0.2 | 0.2 | 0.3 |
| 보통 | 1.2 | 1.4 | 1.1 | 1.2 | 1.0 |
| 대체로 필요 | 10.6 | 12.7 | 10.8 | 11.1 | 10.7 |
| 매우 필요 | 87.1 | 82.7 | 85.6 | 85.5 | 85.6 |
| 계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 평균 | 4.83 | 4.72 | 4.77 | 4.78 | 4.77 |
| 표준편차 | 0.54 | 0.76 | 0.69 | 0.67 | 0.70 |
| <i>t</i> | | | | 0.26 | |

3차년도 조사 결과 보육비 지원에 대해 전체의 85.6%가 매우 필요, 10.8%가

필요하다고 응답해 전체 응답자의 96.4%가 보육비 지원을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취업 여부에 따른 보육비 지원의 필요성을 *t*검증하여 분석한 결과 두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취업모와 비취업모 모두 보육비 지원의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1·2·3차년도 조사결과를 종단적으로 비교해서 살펴본 결과 1차년도에 비해 다소 줄어들긴 했지만 2·3차 모두 여전히 보육비 지원의 필요성을 높이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모성보호

(가) 수유실 설치

직장에서 실시하는 출산 및 육아 지원 방식 중 수유실 설치에 대해서는 ‘매우 필요하다’는 응답이 66.2%, ‘대체로 필요하다’는 응답이 25.0%를 차지했다(표 II-4-76 참조). 수유실 설치의 필요성을 *t*검증하여 분석한 결과, 어머니의 취업 여부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수유실 설치에 대한 응답에 있어서는 이용가능성이 있으며, 수유실 설치시 직접적인 수혜자인 취업모보다 비취업모들이 필요성을 더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4-76〉 수유실 설치

| 구분 | 종단비교 | | | 3차년도 모 취업 | |
|---------|----------|-------|-------|----------------------|-------|
| | 1차년도 | 2차년도 | 3차년도 | 취업모 | 비취업모 |
| 매우 불필요 | 1.3 | 2.3 | 1.9 | 1.7 | 2.0 |
| 대체로 불필요 | 0.6 | 1.0 | 0.7 | 0.9 | 0.6 |
| 보통 | 3.6 | 5.6 | 6.3 | 9.1 | 4.9 |
| 대체로 필요 | 13.9 | 23.1 | 25.0 | 28.7 | 23.1 |
| 매우 필요 | 80.6 | 68.0 | 66.2 | 59.7 | 69.4 |
| 계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 평균 | 4.72 | 4.53 | 4.53 | 4.44 | 4.58 |
| 표준편차 | 0.68 | 0.84 | 0.80 | 0.82 | 0.78 |
| | <i>t</i> | | | -3.34 ^{***} | |

^{***} $p < .001$.

1·2·3차년도 조사결과를 종단적으로 비교해서 살펴보면 수유실 설치를 가장 필요로 했던 1차년도(만 4, 5개월경) 결과보다 수유실 설치 필요성의 비율이 줄어들긴 했지만, 2차년도와 3차년도 모두 매우 필요하다는 응답과 필요하다라는 응

답이 90% 이상을 상회하는 것으로 볼 때, 직장에서의 수유실 설치에 대한 요구는 여전히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나) 근무 중 수유시간 부여 또는 유급 수유시간

근무 중 수유시간 부여 및 유급 수유시간 제공에 대한 필요성 인식의 결과는 <표 II-4-77>과 같다.

근무 중 수유시간 부여 및 유급 수유시간 제공에 대해서는 ‘매우 필요하다’는 응답이 58.8%, ‘대체로 필요하다’는 응답이 27.9%로 수유실 설치에 비해 상대적으로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 취업여부에 따른 근무 중 수유시간 부여 및 유급 수유시간 제공의 필요성을 t검증하여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즉, 근무 중 수유시간 부여 또는 유급 수유시간에 대해서는 두 집단 모두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1·2·3차년도 조사결과를 종단적으로 비교해보면, 수유실 설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1차년도보다 근무 중 수유시간 부여 및 유급 수유시간 제공의 필요성의 비율이 줄어들긴 했지만, 2차년도와 3차년도에도 여전히 그 필요성을 높이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4-77> 근무 중 수유시간 부여 또는 유급 수유시간

단위: %, 점

| 구분 | 종단비교 | | | 3차년도 모 취업 | |
|---------|----------|-------|-------|-----------|-------|
| | 1차년도 | 2차년도 | 3차년도 | 취업모 | 비취업모 |
| 매우 불필요 | 1.1 | 2.2 | 1.6 | 1.5 | 1.6 |
| 대체로 불필요 | 0.8 | 2.0 | 1.4 | 1.5 | 1.4 |
| 보통 | 4.7 | 10.0 | 10.3 | 12.9 | 9.0 |
| 대체로 필요 | 21.0 | 28.0 | 27.9 | 29.0 | 27.4 |
| 매우 필요 | 72.3 | 57.9 | 58.8 | 55.0 | 60.7 |
| 계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 평균 | 4.63 | 4.37 | 4.41 | 4.34 | 4.44 |
| 표준편차 | 0.72 | 0.90 | 0.85 | 0.87 | 0.83 |
| | <i>t</i> | | | -2.25 | |

(4) 유연성 있는 노동환경

(가) 시차 출근제

직장에서 실시하는 출산 및 육아 지원 정책 중 유연성 있는 노동환경의 제공을 위한 시차 출근제에 대해서는 매우 필요하다는 응답이 56.9%, 대체로 필요하

다는 응답이 29.8%로 나타났다(표 II-4-78 참조).

어머니 취업여부에 따른 시차 출근제에 대한 필요성을 *t*검증하여 분석한 결과 두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취업모의 경우 시차 출근제에 대한 필요성을 더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3차년도 조사결과를 종단적으로 비교해서 살펴보면 1·2·3차년도 조사 결과 모두 시차 출근제에 대해서는 매우 필요하다는 응답과 대체로 필요하다는 응답이 80% 이상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 시차 출근제의 필요를 지속적으로 높게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II-4-78〉 시차 출근제

| 구분 | 종단비교 | | | 3차년도 모 취업 | |
|----------|-------|-------|-------|-----------|-------|
| | 1차년도 | 2차년도 | 3차년도 | 취업모 | 비취업모 |
| 매우 불필요 | 0.6 | 2.1 | 1.5 | 1.5 | 1.5 |
| 대체로 불필요 | 1.7 | 2.2 | 1.3 | 1.7 | 1.1 |
| 보통 | 9.9 | 12.9 | 10.5 | 11.4 | 10.1 |
| 대체로 필요 | 24.4 | 29.8 | 29.8 | 25.7 | 31.8 |
| 매우 필요 | 63.5 | 53.0 | 56.9 | 59.6 | 55.5 |
| 계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 평균 | 4.48 | 4.29 | 4.40 | 4.40 | 4.39 |
| 표준편차 | 0.79 | 0.92 | 0.83 | 0.87 | 0.83 |
| <i>t</i> | | | | 0.36* | |

* $p < .05$.

(나) 대체인력풀 운영

유연성 있는 노동환경을 위한 대체인력풀 운영에 대해서 응답한 결과는 <표 II-4-79>과 같다. 대체인력풀 운영의 경우 '매우 필요하다'는 응답이 52.0%, '대체로 필요하다'는 응답이 32.1%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취업 유무에 따른 대체인력풀 운영의 필요성을 *t*검증하여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즉, 취업모와 비취업모 모두 대체인력풀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1·2·3차년도 조사결과를 종단적으로 비교해서 살펴보면 1·2·3차년도 조사 결과가 모두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고 있었다. 즉, 응답자 대다수는 1·2차년도와 동일하게 과반수 이상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여전히 필요성이 높은 제도로 인식하고 있었다.

〈표 II-4-79〉 대체인력풀 운영

단위: %, 점

| 구분 | 중단비교 | | | 3차년도 모 취업 | |
|----------|-------|-------|-------|-----------|-------|
| | 1차년도 | 2차년도 | 3차년도 | 취업모 | 비취업모 |
| 매우 불필요 | 0.5 | 1.8 | 1.3 | 1.2 | 1.4 |
| 대체로 불필요 | 1.6 | 2.2 | 1.8 | 1.7 | 1.8 |
| 보통 | 9.9 | 14.8 | 12.8 | 13.0 | 12.8 |
| 대체로 필요 | 26.6 | 33.3 | 32.1 | 29.2 | 33.6 |
| 매우 필요 | 61.3 | 47.9 | 52.0 | 54.9 | 50.5 |
| 계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 평균 | 4.46 | 4.23 | 4.31 | 4.35 | 4.30 |
| 표준편차 | 0.78 | 0.91 | 0.84 | 0.85 | 0.85 |
| <i>t</i> | | | | 1.14 | |

(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서 응답한 결과는 <표 II-4-80>과 같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매우 필요하다는 응답이 60.2%, 대체로 필요하다는 응답이 27.4%로 나타나 전체 응답자의 87.6%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취업 유무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필요성을 *t*검증하여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취업모의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필요를 더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4-80〉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단위: %, 점

| 구분 | 3차년도 | 3차년도 모 취업 | |
|----------|-------|-----------|-------|
| | | 취업모 | 비취업모 |
| 매우 불필요 | 1.5 | 1.4 | 1.6 |
| 대체로 불필요 | 1.6 | 1.5 | 1.6 |
| 보통 | 9.3 | 8.7 | 9.6 |
| 대체로 필요 | 27.4 | 26.4 | 27.9 |
| 매우 필요 | 60.2 | 62.0 | 59.2 |
| 계 | 100.0 | 100.0 | 100.0 |
| 평균 | 4.43 | 4.46 | 4.42 |
| 표준편차 | 0.83 | 0.82 | 0.85 |
| <i>t</i> | | 1.08* | |

주: 3차년도 조사에서 추가된 문항임.

* $p < .05$.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직장에서 실시하는 대표적인 출산 및 육아 지원 제도 및 방식은 항목에 따라 다소간의 차이는 있었으나, 각각의 제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모두 필요성이 높은 제도로 인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향후 이와 같은 정책들이 다양한 의견 수렴과 제도 개선을 통해 지속성을 가지고 추진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나) 출산 및 육아 지원 제도 우선 순위

각각의 출산 및 육아지원 제도에 대해 우선 순위를 세 가지만 순서대로 응답하도록 한 결과 중 1순위로 선택된 항목은 <표 II-4-81>과 같다. 어머니가 생각하는 육아지원 제도 중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으로는 여성의 출산휴가가 55.1%로 다른 항목에 비해 큰 비율을 나타냈다. 어머니의 취업 여부에 따른 출산 및 육아지원 제도 우선 순위의 차이를 χ^2 검증으로 살펴본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즉, 취업모와 비취업모 모두 여성의 출산휴가를 가장 필요한 제도로 인식하고 있었다.

1·2·3차년도 조사결과를 종단적으로 비교해서 살펴보면, 1·2·3차년도 조사 결과와 동일한 경향을 나타내고 있는데, 여전히 출산 및 육아지원 제도 중에서 여성의 출산휴가를 가장 필요한 제도로 인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II-4-81> 출산 및 육아지원 제도 우선순위 - 1순위

단위: %

| 구분 | 종단비교 | | | 3차년도 모 취업 | |
|-------------|----------|-------|-------|-----------|-------|
| | 1차년도 | 2차년도 | 3차년도 | 취업모 | 비취업모 |
| 여성의 출산휴가 | 62.9 | 61.4 | 55.1 | 52.0 | 56.6 |
| 여성의 육아휴직 | 13.8 | 15.3 | 18.3 | 19.6 | 17.7 |
| 남성의 출산휴가 | 1.2 | 1.5 | 2.0 | 1.5 | 2.3 |
| 남성의 육아휴직 | 1.0 | 1.2 | 0.9 | 0.6 | 1.1 |
| 직장 보육시설 | 6.5 | 6.3 | 5.2 | 7.4 | 4.1 |
| 보육비 지원 | 12.5 | 11.4 | 13.9 | 12.5 | 14.6 |
| 수유실 설치 | 0.6 | 0.6 | 0.2 | 0.2 | 0.3 |
| 유급 수유시간 | 0.3 | 0.1 | 0.1 | 0.2 | 0.1 |
| 시차 출근제 | 0.7 | 2.0 | 2.0 | 3.0 | 1.5 |
| 대체인력풀 운영 | 0.5 | 0.2 | 0.2 | 0.4 | 0.2 |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na | na | - | - | - |
| 계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 | χ^2 | | | 20.47 | |

주: na는 당해 연도 질문지에 포함되지 않은 응답을 의미함.

출산 및 육아지원 제도의 우선순위 중 두 번째 순위로 선택된 항목은 <표 II-4-82>와 같다.

어머니가 생각하는 육아 지원 제도 중 두 번째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으로는 여성의 육아 휴직이 36.4%로 응답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1·2차년도 조사와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라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취업모의 경우 직장 보육시설, 시차 출근제 등을 필요로 하는 반면, 비취업모의 경우 보육비 지원 등 이외의 항목들을 더 중점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II-4-82> 출산 및 육아지원 제도 우선순위 - 2순위

| 구분 | 중단비교 | | | 3차년도 모 취업 | |
|-------------|----------|-------|-------|-----------|-------|
| | 1차년도 | 2차년도 | 3차년도 | 취업모 | 비취업모 |
| 여성의 출산휴가 | 10.3 | 7.6 | 7.4 | 7.4 | 7.4 |
| 여성의 육아휴직 | 45.6 | 42.2 | 36.4 | 34.6 | 37.3 |
| 남성의 출산휴가 | 6.0 | 8.2 | 8.2 | 4.8 | 9.8 |
| 남성의 육아휴직 | 4.1 | 3.9 | 3.9 | 2.8 | 4.5 |
| 직장 보육시설 | 11.4 | 12.9 | 14.3 | 15.2 | 13.8 |
| 보육비 지원 | 16.9 | 18.3 | 20.2 | 23.0 | 18.8 |
| 수유실 설치 | 1.6 | 1.2 | 0.6 | 0.4 | 0.7 |
| 유급 수유시간 | 1.3 | 0.8 | 0.4 | 0.2 | 0.5 |
| 시차 출근제 | 2.1 | 4.6 | 3.9 | 5.2 | 3.3 |
| 대체인력풀 운영 | 0.7 | 0.4 | 0.9 | 1.1 | 0.7 |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na | na | 3.8 | 5.2 | 3.2 |
| 계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 | χ^2 | | | 27.61** | |

주: na는 당해 연도 질문지에 포함되지 않은 응답을 의미함.

** $p < .01$.

출산 및 육아지원 제도의 우선순위 중 마지막으로 선택된 항목은 <표 II-4-83>과 같다. 어머니가 생각하는 육아 지원 제도 중 세 번째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으로는 여성의 보육비 지원이 25.6%, 시차 출근제와 직장 보육시설이 각각 11.3%, 여성의 육아휴직이 9.6% 등으로 응답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1·2차년도 조사와 동일한 경향을 나타내는 것이었으나, 어머니의 취업에 따라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취업모의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보

육비 지원에 대한 필요성을 더 인식하고 있었으며, 비취업모의 경우 보육비 지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더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4-83> 출산 및 육아지원 제도 우선순위 - 3순위

단위: %

| 구분 | 종단비교 | | | 3차년도 모 취업 | |
|-------------|----------|-------|-------|-----------|-------|
| | 1차년도 | 2차년도 | 3차년도 | 취업모 | 비취업모 |
| 여성의 출산휴가 | 4.3 | 3.9 | 3.3 | 3.9 | 3.0 |
| 여성의 육아휴직 | 12.7 | 11.6 | 9.6 | 9.0 | 10.0 |
| 남성의 출산휴가 | 9.8 | 9.3 | 6.5 | 6.7 | 6.4 |
| 남성의 육아휴직 | 6.9 | 5.8 | 4.9 | 2.8 | 6.0 |
| 직장 보육시설 | 17.8 | 14.3 | 11.3 | 13.1 | 10.5 |
| 보육비 지원 | 31.8 | 27.0 | 25.6 | 21.1 | 27.8 |
| 수유실 설치 | 3.6 | 4.4 | 2.7 | 1.9 | 3.2 |
| 유급 수유시간 | 2.5 | 1.9 | 2.4 | 3.0 | 2.1 |
| 시차 출근제 | 8.8 | 19.1 | 11.3 | 12.5 | 10.7 |
| 대체인력풀 운영 | 2.0 | 2.8 | 2.0 | 3.9 | 1.1 |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na | na | 20.2 | 22.2 | 19.3 |
| 계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 | χ^2 | | | 37.60***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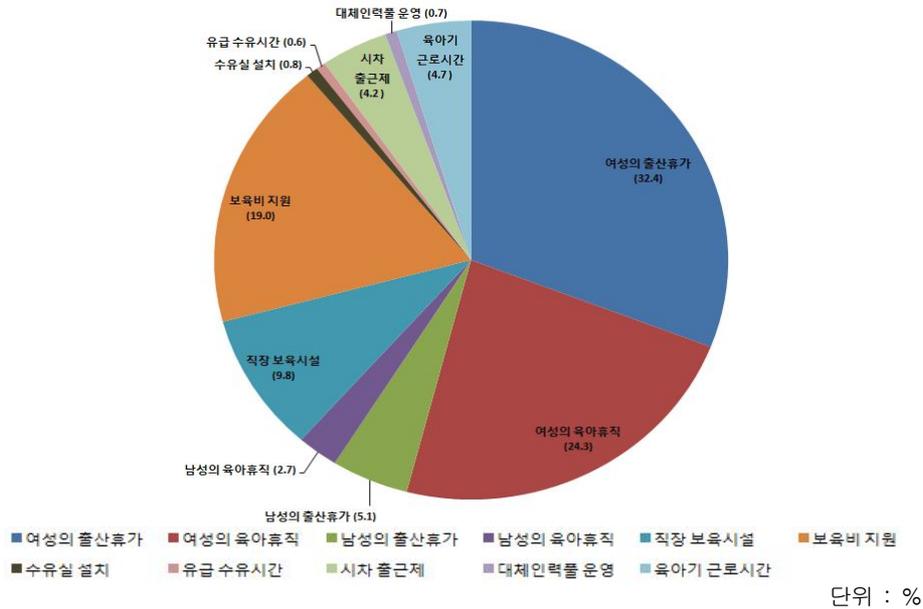
주: na는 당해 연도 질문지에 포함되지 않은 응답을 의미함.

*** $p < .001$.

<표 II-4-81>, <표 II-4-82>, <표 II-4-83>에 제시된 출산 및 육아지원제도의 1순위부터 3순위를 상·중·하로 가정하여, 3~1점의 가중치를 적용, 비율로 분석한 결과를 종합적으로 나타내면 [그림 II-4-6]과 같다.

출산 및 육아지원제도의 우선순위를 종합하여 살펴본 결과, 여성의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각각 32.4%와 24.3%로, 두 제도가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보육비 지원으로 19.0%였다. 직장보육시설 및 다른 제도들은 10%미만으로 나타났다.

제도 및 정책의 수행에 있어서는, 수혜자가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는 제도 및 정책을 우선적으로 실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여성의 자녀 출산 및 양육을 위한 시간적 배려와 관련된 제도인 여성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경제적 지원에 해당하는 보육비 지원 등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도의 강화와 확대 적용이 요구된다.



[그림 11-4-6] 출산 및 육아지원제도 우선순위

3) 육아 지원 서비스 정책

가) 정부지원 현금 육아지원정책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육아지원 서비스 중 현금 육아지원정책에 해당하는 양육수당, 농어민가정 육아비, 출산지원금,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기타에 포함된 다자녀 지원 등의 수혜 여부, 지원액, 만족도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II-4-84 참조).

농어민가정 육아비,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의 경우 응답자 대부분이 수혜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양육수당과 출산지원금의 경우 전체 응답자의 10% 정도가 수혜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농어민가정 육아비 수혜 여부의 경우 3차년도 조사 결과는 1·2차년도 조사에서 각각 2.2%, 2.4%가 수혜경험이 있는 것으로(이정림 외, 2010) 응답한 것보다 다소 낮아져서 전체 패널의 약 1.1%가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농어민가정 육아비 지원의 수혜 대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금지원액의 범위를 살펴보면 출산지원금의 경우 최소 5만원~최대 600만원

까지로 지원액의 폭이 가장 컸으며, 농어민가정 육아비는 20만원~200만원, 양육수당은 최소 10만원~최대 60만원,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은 3만원~34만원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현금 육아지원정책의 만족도를 살펴본 결과, 가장 만족스러운 제도는 양육수당 지원으로 응답자의 64.8%가 만족 또는 매우 만족하는 것으로 응답하였으며,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의 경우 62.9%가 불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4-84〉 정부지원 육아정책 - 현금지원(중복응답)

단위: %, 원, 점

| 구분 | | 양육수당 | 농어민 가정 육아비 | 출산지원금 |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 기타 |
|-------------|-------|------------|--------------|------------|--------------------|------------|
| 수혜여부 | 수혜 | 10.2 | 1.1 | 10.0 | 0.1 | 0.2 |
| | 비수혜 | 89.8 | 98.9 | 90.0 | 99.9 | 99.8 |
| | 계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 현금 지원액 (총액) | 평균 | 137,644.94 | 1,115,078.95 | 558,611.42 | 237,747.97 | 186,303.39 |
| | 표준편차 | 83,084.311 | 901,134.06 | 684,408.27 | 1,187,72.51 | 81,919.67 |
| | 중위값 | 100,000 | 200,000 | 300,000 | 260,000 | 150,000 |
| | 최소 | 100,000 | 200,000 | 50,000 | 30,000 | 100,000 |
| | 최대 | 600,000 | 2,000,000 | 6,000,000 | 340,000 | 300,000 |
| 만족도 | 매우불만족 | 5.5 | 3.3 | 11.2 | - | - |
| | 불만족 | 12.0 | 26.8 | 32.3 | 62.9 | 30.6 |
| | 보통 | 17.8 | 13.1 | 27.2 | - | 31.6 |
| | 만족 | 29.1 | 33.4 | 28.0 | 37.1 | 15.1 |
| | 매우만족 | 35.7 | 23.4 | 1.2 | - | 22.6 |
| | 계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 | 평균 | 3.77 | 3.47 | 2.76 | 2.74 | 3.30 |
| 표준편차 | 1.21 | 1.21 | 1.02 | 0.97 | 1.13 | |

주: 농어촌 가정 육아비의 수혜여부를 제외하고 모두 3차년도 조사에서 추가된 문항임.

나) 정부지원 현물 육아지원정책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육아지원 서비스 중 현물 육아지원정책에 해당하는 아이돌보미, 산모도우미, 아동인지능력향상 서비스, 출산용품 지원, 신생아장애 예방검사, 신생아난청 조기진단, 영유아 필수 예방접종, 영유아 건강검진, 임신부·영유아 영양플러스 등의 수혜 여부, 비용지불 여부, 만족도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II-4-85 참조).

현물 육아지원정책 중 영유아 필수 예방접종은 전체 응답자의 14.9%가, 영유

아 건강검진의 경우는 전체의 8.9%가 수혜경험이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으나, 두 서비스를 제외한 현물 육아지원정책들은 응답자 대부분이 수혜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이돌보미 서비스 수혜여부의 조사 결과를 종단적으로 살펴보면, 3차년도 조사 결과에서는 전체 조사 대상의 0.2%가 아이돌보미 서비스 수혜경험이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는데, 1차년도와 2차년도 조사에서는 각각 전체 조사대상의 1.4%, 2.8%가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이용한 것으로(이정림 외, 2010) 나타나 전반적으로 아이돌보미 서비스 수혜 비율이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현물 육아지원정책에 대한 비용지불 여부를 살펴본 결과 출산용품 지원과 임신부·영유아 영양플러스의 경우 무료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산모도우미(42.1%)와 아이돌보미(39.1%) 서비스는 비용을 지불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현물 육아지원정책의 만족도를 살펴본 결과, 가장 만족스러운 제도는 임신부·영유아 영양플러스 서비스로 응답자의 80.6%가 만족하는 것으로 응답하였으며, 아이돌보미 서비스의 경우 46.2%가 불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4-85〉 정부지원 육아정책 - 현물지원(중복응답)

단위: %, 원, 점

| 구분 | | 아이돌보미 | 산모도우미 |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 출산용품지원 | 신생아장애예방검사 | 신생아난청조기진단 | 영유아국가필수예방접종 | 영유아건강검진 | 임산부·영유아영양플러스 | 기타 |
|--------|-------|-------|-----------|-------------|-------------|-------------|-------------|-------------|-------------|--------------|-------------|
| | | 수혜여부 | 수혜 비수혜 | 0.2 99.8 | 2.0 98.0 | 0.2 99.8 | 0.7 99.3 | 0.4 99.6 | 0.8 99.2 | 14.9 85.1 | 8.9 91.1 |
| | 계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 비용지불여부 | 무료 | 60.9 | 57.9 | 65.4 | 100.0 | 73.0 | 64.1 | 98.9 | 97.4 | 100.0 | - |
| | 유료 | 39.1 | 42.1 | 34.6 | - | 27.0 | 35.9 | 1.1 | 2.6 | - | - |
| | 계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 |
| 만족도 | 매우불만족 | - | - | 34.6 | - | - | - | 1.2 | 11.3 | - | - |
| | 불만족 | 46.2 | 11.7 | - | 21.2 | 30.0 | 14.6 | 10.5 | 23.2 | 6.2 | - |
| | 보통 | - | 22.9 | 18.5 | 41.2 | 21.0 | 9.5 | 27.3 | 26.9 | 13.1 | 100.0 |
| | 만족 | - | 41.7 | 46.9 | 37.6 | 38.9 | 59.0 | 38.6 | 31.0 | 78.1 | - |
| | 매우만족 | 53.8 | 23.7 | - | - | 10.2 | 16.9 | 22.5 | 7.7 | 2.5 | - |
| | 계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 | 평균 | 3.61 | 3.77 | 2.78 | 3.16 | 3.29 | 3.78 | 3.71 | 3.00 | 3.77 | 3.00 |
| | 표준편차 | 1.50 | 0.94 | 1.34 | 0.75 | 1.01 | 0.90 | 0.97 | 1.14 | 0.59 | 0.00 |

주: 아이돌보미의 수혜여부를 제외하고 모두 3차년도 조사에서 추가된 문항임.

4) 직장의 육아지원 정책

가) 직장 육아 지원 제도 시행 여부

직장에 다니는 취업모를 대상으로 직장에서 실시하고 있는 육아지원제도의 시행여부를 응답하도록 한 결과는 <표 II-4-86>과 같다.

3차년도 조사 결과 취업모의 98.7%인 대다수의 직장에서 출산휴가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성의 육아휴직을 시행하는 직장도 80.7%에 해당했다. 남성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에 있어서도 각 59.0%, 46.2%로 과반수 이상의 직장에서 출산 및 육아지원을 위한 휴가 및 휴직 관련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1·2차년도 조사와 유사한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대체로 많은 직장에서 출산 및 육아지원을 위한 휴가 및 휴직 관련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I-4-86> 직장육아지원제도 시행여부(중복응답)

| 구분 | 단위: % | | |
|----------|-------|------|------|
| | 1차년도 | 2차년도 | 3차년도 |
| 여성의 출산휴가 | 96.3 | 97.9 | 98.7 |
| 여성의 육아휴직 | 72.5 | 78.5 | 80.7 |
| 남성의 출산휴가 | 44.1 | 56.9 | 59.0 |
| 남성의 육아휴직 | 32.6 | 45.2 | 46.2 |
| 직장 보육시설 | 14.7 | 19.3 | 21.6 |
| 보육비 지원 | 25.2 | 30.0 | 29.5 |
| 수유실 설치 | 19.6 | 20.7 | 18.5 |
| 유급 수유시간 | 19.8 | 16.4 | 15.3 |
| 시차 출근제 | 21.2 | 21.9 | 22.3 |
| 대체인력풀 운영 | 18.4 | 32.9 | 35.9 |

나) 직장 육아 지원 제도 이용 여부

직장에서 시행 중인 육아지원제도에 대해 각각의 이용 여부를 질문한 결과, 87.4%에 해당하는 거의 대부분의 여성들이 출산휴가를 이용하였으며, 대체인력풀을 이용한 경우도 36.1%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던 반면, 전반적인 이용에 있어 직장 보육시설, 수유실 설치, 유급 수유시간 등은 낮은 비율로 나타났다(표 II-4-87 참조). 1·2·3차년도 조사 모두에서 대체로 출산휴가, 육아휴직, 대체인력풀을 이용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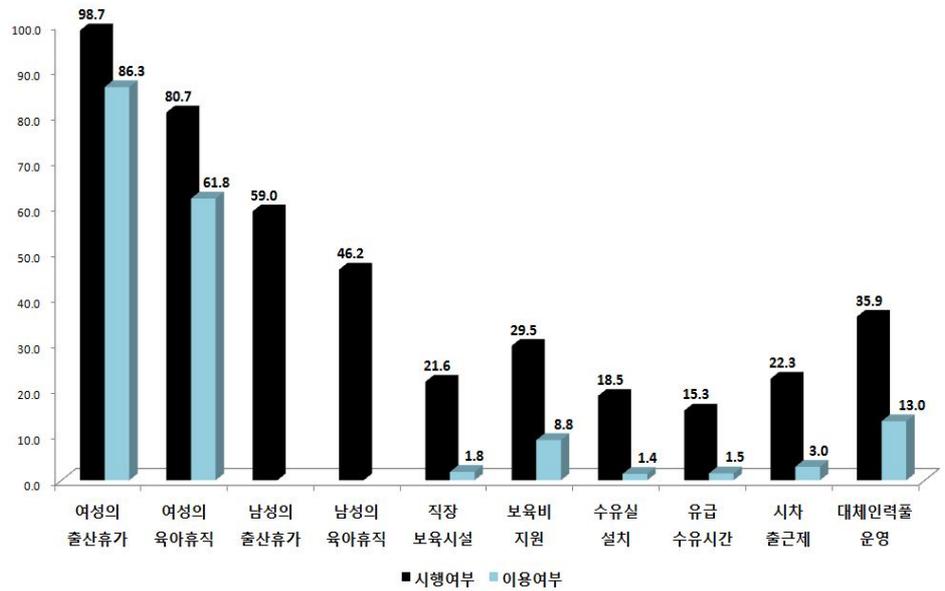
직장 육아 지원 제도 이용 여부를 시행 여부에 따라 살펴본 결과는 [그림 II-4-7]과 같다. 직장에서 육아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용률을 살펴본 결과, 여성의 출산휴가와 여성의 육아휴직의 경우 과반수 해당 제도를 시행할 경우 이를 이용하고 있었으나, 기타 다른 지원 제도에 있어서는 지원 제도 대비 이용률에 있어서도 낮은 비율로 나타났다.

〈표 II-4-87〉 직장육아지원제도 이용여부(중복응답)

단위: %

| 구분 | 1차년도 | 2차년도 | 3차년도 |
|----------|------|------|------|
| 여성의 출산휴가 | 97.3 | 93.2 | 87.4 |
| 여성의 육아휴직 | 57.6 | 60.9 | 76.6 |
| 직장 보육시설 | 20.5 | 40.7 | 8.5 |
| 보육비 지원 | 61.4 | 60.7 | 29.9 |
| 수유실 설치 | 50.5 | 44.3 | 7.6 |
| 유급 수유시간 | 47.1 | 47.0 | 9.9 |
| 시차 출근제 | 37.5 | 40.9 | 13.3 |
| 대체인력풀 운영 | 64.4 | 77.6 | 36.1 |

주. 응답자가 어머니이므로 남성의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해당되지 않음.



[그림 II-4-7] 직장육아지원제도 시행 및 이용여부(중복응답)

다) 직장 육아 지원 제도 이용 만족도

(1) 휴가 및 휴직

(가) 출산휴가

직장에서 운영하고 있는 휴가 및 휴직 관련 제도를 이용해본 경험이 있는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이용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 중 만족했다는 응답이 72.6%로 높게 나타났으나, 불만족하다는 의견도 7.5%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1·2차년도 조사와 동일한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직장에서 운영하고 있는 휴가 및 휴직 관련 제도에 대한 만족도는 대체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4-88〉 출산휴가

단위: %

| 구분 | 1차년도 | 2차년도 | 3차년도 |
|---------|-------|-------|-------|
| 매우 불만족 | 1.7 | 1.2 | 1.6 |
| 대체로 불만족 | 8.5 | 6.4 | 5.9 |
| 보통 | 16.0 | 18.7 | 19.9 |
| 대체로 만족 | 52.4 | 52.6 | 54.0 |
| 매우 만족 | 21.4 | 21.1 | 18.6 |
| 계 | 100.0 | 100.0 | 100.0 |
| 평균 | 3.83 | 3.86 | 3.79 |
| 표준편차 | 0.91 | 0.86 | 0.87 |

(나) 육아휴직

직장에서 시행하는 육아휴직 제도를 이용하는 경우, 전체 응답자의 81.2%가 만족하는 것으로 응답하였으나, 불만족한다는 의견도 4.2%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1·2차년도와 조사와 비슷한 경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직장에서 시행하는 육아휴직 제도에 대한 만족도가 대체로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II-4-89〉 육아휴직

단위: %

| 구분 | 1차년도 | 2차년도 | 3차년도 |
|---------|-------|-------|-------|
| 매우 불만족 | 1.0 | 1.3 | 1.8 |
| 대체로 불만족 | 2.5 | 4.2 | 2.4 |
| 보통 | 9.0 | 11.1 | 14.7 |
| 대체로 만족 | 58.6 | 57.0 | 54.3 |
| 매우 만족 | 28.9 | 26.5 | 26.9 |
| 계 | 100.0 | 100.0 | 100.0 |

| 구분 | 1차년도 | 2차년도 | 3차년도 |
|------|------|------|------|
| 평균 | 4.12 | 4.03 | 4.05 |
| 표준편차 | 0.74 | 0.81 | 0.81 |

(2) 보육지원

(가) 직장 보육시설

직장에서 지원하는 보육지원 중 직장 보육시설 이용에 대한 만족도를 분석한 결과, '대체로 만족한다'와 '매우 만족한다'는 비중이 91.3%를 차지하였다(표 II-4-90 참조). 이러한 결과는 매우 불만족하다는 응답이 4.0% 있었던 1차년도와 대체로 불만족한다는 응답이 6.1%가 있었던 2차년도 조사보다 다소 나아진 것으로 직장 보육시설에 대한 이용만족도는 다소 높아진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II-4-90〉 직장 보육시설

| 구분 | 1차년도 | 2차년도 | 3차년도 |
|---------|-------|-------|-------|
| 매우 불만족 | 4.0 | - | - |
| 대체로 불만족 | - | 6.1 | - |
| 보통 | 21.1 | 21.7 | 8.7 |
| 대체로 만족 | 45.0 | 59.3 | 69.2 |
| 매우 만족 | 29.8 | 12.9 | 22.1 |
| 계 | 100.0 | 100.0 | 100.0 |
| 평균 | 3.97 | 3.79 | 4.10 |
| 표준편차 | 0.93 | 0.74 | 0.53 |

단위: %

(나) 보육비 지원

직장에서 지원하는 보육지원 중 보육비 지원에 대한 만족도를 보면, '매우 만족한다'와 '대체로 만족한다'는 비중이 56.4%를 차지했으며, '매우 불만족한다'와 '대체로 불만족한다'는 응답도 14.9%로 나타났다.

보육비 지원에 대한 만족도는 전체적으로 과반수 이상은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으나 전체 응답자 중 불만족한다는 의견도 14.9%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1·2차년도 조사와 비슷한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직장에서 지원하는 다른 출산휴가, 육아휴직, 직장 보육시설의 만족도 보다는 낮지만 대체로 만족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표 II-4-91 참조).

〈표 II-4-91〉 보육비 지원

단위: %

| 구분 | 1차년도 | 2차년도 | 3차년도 |
|---------|-------|-------|-------|
| 매우 불만족 | 0.9 | 1.2 | 3.3 |
| 대체로 불만족 | 9.4 | 10.9 | 11.6 |
| 보통 | 36.4 | 32.2 | 28.7 |
| 대체로 만족 | 47.2 | 42.0 | 41.5 |
| 매우 만족 | 6.1 | 13.7 | 14.9 |
| 계 | 100.0 | 100.0 | 100.0 |
| 평균 | 3.48 | 3.56 | 3.47 |
| 표준편차 | 0.78 | 0.90 | 1.04 |

(3) 모성보호

(가) 수유실 설치

직장에서 수유실을 설치하고 있고, 이를 이용해 본 경험이 있는 취업모의 경우 87.0%가 비교적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직장 수유실 이용 경험에 대한 만족도에 있어서 대체로 불만족하다는 응답이 8.9%였던 1차년도 조사와 불만족하다는 응답이 4.9%를 차지하였던 2차년도 조사보다 다소 나아진 것으로 수유실 설치에 대한 만족도는 점점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I-4-92〉 수유실 설치

단위: %

| 구분 | 1차년도 | 2차년도 | 3차년도 |
|---------|-------|-------|-------|
| 매우 불만족 | - | 1.8 | - |
| 대체로 불만족 | 8.9 | 3.1 | - |
| 보통 | 49.6 | 33.6 | 12.9 |
| 대체로 만족 | 32.8 | 48.6 | 75.4 |
| 매우 만족 | 8.8 | 12.9 | 11.6 |
| 계 | 100.0 | 100.0 | 100.0 |
| 평균 | 3.42 | 3.68 | 4.00 |
| 표준편차 | 0.77 | 0.80 | 0.57 |

(나) 근무 중 수유시간 부여 또는 유급 수유시간

모성보호를 위한 지원 정책 중 근무 중 수유시간 부여 또는 유급 수유시간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만족한다는 응답이 89.2%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대체로 불만족을 느낀다는 응답이 3.6%였던 1차년도 조사와

매우 불만족을 느낀다는 응답이 3.6%였던 2차년도 조사보다 나아진 것으로 근무 중 수유시간 부여나 유급 수유시간 제도에 대한 만족도도 다소 높아진 것을 알 수 있다.

〈표 II-4-93〉 근무 중 수유시간 부여 또는 유급 수유시간

단위: %

| 구분 | 1차년도 | 2차년도 | 3차년도 |
|---------|-------|-------|-------|
| 매우 불만족 | - | 3.6 | - |
| 대체로 불만족 | 3.6 | - | - |
| 보통 | 28.9 | 12.0 | 10.8 |
| 대체로 만족 | 52.0 | 75.7 | 65.9 |
| 매우 만족 | 15.5 | 8.6 | 23.3 |
| 계 | 100.0 | 100.0 | 100.0 |
| 평균 | 3.79 | 3.86 | 4.05 |
| 표준편차 | 0.73 | 0.72 | 0.57 |

(4) 유연성 있는 노동환경

(가) 시차 출근제

직장에서 실시하는 출산 및 육아 지원 정책 중 유연성 있는 노동환경의 제공을 위한 시차 출근제에 대해서는 만족한다 84.6%, 보통이라는 응답이 10.2%, 불만족한다는 응답이 5.2%를 차지했다. 이러한 결과는 1·2차년도의 매우 만족한다는 비율보다는 감소되었지만, 대체로 만족한다는 비율이 2차년도 조사보다 다소 높아진 것으로 시차 출근제에 대한 만족도는 높아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II-4-94〉 시차 출근제

단위: %

| 구분 | 1차년도 | 2차년도 | 3차년도 |
|---------|-------|-------|-------|
| 매우 불만족 | - | 3.2 | 2.3 |
| 대체로 불만족 | 4.6 | 2.6 | 2.9 |
| 보통 | 26.0 | 17.8 | 10.2 |
| 대체로 만족 | 38.1 | 56.4 | 77.0 |
| 매우 만족 | 31.2 | 19.9 | 7.6 |
| 계 | 100.0 | 100.0 | 100.0 |
| 평균 | 3.96 | 3.87 | 3.81 |
| 표준편차 | 0.86 | 0.87 | 0.79 |

(나) 대체인력풀 운영

유연성 있는 노동환경 지원을 위한 대체인력풀 운영의 경우 이용자의 77.2%가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불만족하는 경우도 0.8%에 해당했다. 1·2·3차년도 조사결과를 종단적으로 비교해서 살펴보면, 1·2차년도에 비해 대체인력풀 운영에 대하여 대체로 만족하는 비율은 더 증가하였으나, 매우 만족한다는 비율은 2차년도에 증가하였다가 다시 3차년도에 감소하는 양상을 나타내었고, 2차년도 조사 결과에서는 불만족하는 경우도 5.4%나 되었다.

〈표 II-4-95〉 대체인력풀 운영

단위: %

| 구분 | 1차년도 | 2차년도 | 3차년도 |
|---------|-------|-------|-------|
| 매우 불만족 | - | 2.6 | 0.8 |
| 대체로 불만족 | - | 2.8 | - |
| 보통 | 20.3 | 11.3 | 21.9 |
| 대체로 만족 | 58.7 | 60.3 | 64.9 |
| 매우 만족 | 21.0 | 23.0 | 12.3 |
| 계 | 100.0 | 100.0 | 100.0 |
| 평균 | 4.01 | 3.98 | 3.91 |
| 표준편차 | 0.64 | 0.83 | 0.67 |

(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유연성 있는 노동환경 지원을 위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이용자의 97.1%가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나(표 II-4-96 참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만족도는 상당히 높은 편임을 알 수 있다.

〈표 II-4-96〉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단위: %

| 구분 | 3차년도 |
|---------|-------|
| 매우 불만족 | 2.2 |
| 대체로 불만족 | 4.1 |
| 보통 | 5.5 |
| 대체로 만족 | 76.6 |
| 매우 만족 | 11.5 |
| 계 | 100.0 |
| 평균 | 3.87 |
| 표준편차 | 0.88 |

주: 3차년도 조사에서 추가된 문항임.

5) 재정 지원 관련 정책

가) 유치원/어린이집 무상 이용에 따른 향후 자녀 출산 계획

(1) 어린이집 무상 지원 시 자녀 출산 의향

해당 패널 자녀의 출산 이후 2012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국가에서 미취학 아동의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을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 어머니의 임신과 출산에 대한 의향을 결정하는데 있어 영향력이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는 <표 II-4-97>과 같다.

전체 응답자의 과반수 이상인 75.8%의 응답자가 출산을 고려할 의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출산의 의향이 없다는 응답 7.0%, 잘 모르겠다는 응답도 17.2%로 나타났다. 3차년도의 경우 2차년도 조사에 비해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줄어들고 출산의향이 매우 많다는 응답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국가에서 미취학 아동의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을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경우 출산 의향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취업 여부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즉, 취업모와 비취업모 모두 어린이집 무상 지원 시 자녀 출산을 고려할 의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I-4-97> 어린이집 무상 지원 시 자녀 출산 의향

단위: %

| 구분 | 종단비교 | | 3차년도 모 취업 | |
|----------|-------|-------|-----------|-------|
| | 2차년도 | 3차년도 | 취업모 | 비취업모 |
| 전혀 없음 | 5.8 | 3.1 | 0.0 | 4.5 |
| 거의 없음 | 6.5 | 3.9 | 2.5 | 4.5 |
| 조금 있음 | 52.2 | 50.8 | 52.5 | 50.0 |
| 매우 많음 | 14.2 | 25.0 | 22.5 | 26.1 |
| 잘 모르겠음 | 21.2 | 17.2 | 22.5 | 14.8 |
| 계 | 100.0 | 100.0 | 100.0 | 100.0 |
| 평균 | 3.39 | 3.45 | 0.36 | 0.34 |
| 표준편차 | 1.07 | 0.69 | 0.86 | 0.95 |
| <i>t</i> | | | 1.29 | |

주: 2차년도 조사에서 추가된 문항임.

(2) 양육비용 일부 지원 시 자녀 출산 계획

국가에서 미취학 아동의 양육비용 중 일정 금액을 매월 지불할 경우의 자녀 출산 의도를 묻는 질문에 전체적으로 응답자의 70.3%가 양육비용을 지원할 경

우 자녀를 출산할 의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잘 모르겠다와 없다는 응답도 각각 24.2%, 5.5%를 차지했다.

이러한 결과는 2차년도에 비해 양육비용 일부 지원 시 자녀 출산 계획이 있다는 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취업 여부에 따라서도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즉, 양육비용 일부 지원 시 취업모의 경우 비취업모 보다 출산 계획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4-98〉 양육비용 일부 지원 시 자녀 출산 계획

단위: %

| 구분 | 종단비교 | | 3차년도 모 취업 | |
|----------|-------|-------|-----------|-------|
| | 2차년도 | 3차년도 | 취업모 | 비취업모 |
| 있음 | 63.4 | 70.3 | 74.4 | 68.5 |
| 없음 | 8.5 | 5.5 | 0.0 | 7.9 |
| 잘 모르겠음 | 28.2 | 24.2 | 25.6 | 23.6 |
| 계 | 100.0 | 100.0 | 100.0 | 100.0 |
| χ^2 | | | 3.24** | |

주: 2차년도 조사에서 추가된 문항임.

** $p < .01$.

나) 양육 비용 보조에 따른 향후 자녀 출산 계획 및 적정 지원 금액

출산 비용을 지원할 경우 어느 정도의 금액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있어서는 30만원 이상이 56.7%로 과반수가 응답하였다. 20만원 이상에서 30만원 미만은 33.3%, 10만원 이상에서 20만원 미만은 8.9%, 10만원 미만이 1.1%로 금액이 높아질수록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다.

〈표 II-4-99〉 양육비용 보조 희망 금액

단위: %

| 구분 | 종단비교 | | 3차년도 모 취업 | |
|-----------------|-------|-------|-----------|-------|
| | 2차년도 | 3차년도 | 취업모 | 비취업모 |
| 10만원 미만 | 0.3 | 1.1 | 0.0 | 1.6 |
| 10만원 이상~20만원 미만 | 12.3 | 8.9 | 17.2 | 4.9 |
| 20만원 이상~30만원 미만 | 36.9 | 33.3 | 24.1 | 37.7 |
| 30만원 이상 | 50.5 | 56.7 | 58.6 | 55.7 |
| 계 | 100.0 | 100.0 | 100.0 | 100.0 |
| χ^2 | | | 4.94* | |

주: 2차년도 조사에서 추가된 문항임.

* $p < .05$.

이는 2차년도 조사 결과와도 동일한 경향으로,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라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즉, 양육비용 보조 금액이 많을 경우 취업모가 비취업 모보다 출산 계획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참 고 문 헌

- 강희경(1998). 3세 이하 자녀를 둔 전문·사무직 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 어머니 역할관과 지원체계를 중심으로. 미출판 박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서울.
- 김기현·강희경(1997). 양육스트레스 척도의 개발. **대한가정학회지**, 35(5), 141-150.
- 김미곤·여유진·이봉주·손창균·김계연·김문길(2006). **2006 한국복지패널 기초분석 보고서**.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 김승권·조애저·김유경·도세록·이건우(2006). **2006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 복지실태조사**.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남재량·성재민·이상호·최효미·신선옥(2007). **한국노동패널(KLI) 9차년도 설문지-개인공통(취업)**. <http://www.kli.re.kr/>에서 2008년 2월 13일에 인출.
- 보건복지가족부·질병관리본부. (2009). **국민건강영양조사 제4기 3차년도 건강설문 조사표: 소아**. <http://knhanes.cdc.go.kr/> 2009년 3월 30일에 인출.
- 보건복지부(2005). **보건복지통계연보**. 서울: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2007). **2007년도 영유아 건강검진 지침**. <http://www.cdc.go.kr> 에서 2008년 3월 2일에 인출.
- 서문희·조애저·김유경·최은영·박지혜·최진원(2005). **2004년도 전국 보육·교육 실태조사 1-보육·교육 이용 및 욕구 실태조사 보고**. 서울: 여성가족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서문희·최혜선(2007). **영아 양육지원 종합대책 방안**. 서울: 육아정책개발센터.

- 신희선·한경자·오가실·오진주·하미나(2002). **한국형 Denver II 검사**. 서울: 현문사.
- 영유아보육법(법률 제11003호). 법제처 홈페이지. <http://www.klaw.go.kr> 에서 2011년 11월 17일 인출.
- 유한구·김안국·민주홍·류지영·신동준·손희전·최기산(2006). **한국 교육고용 패널 조사**. 서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이경상·김기현·조주연·김현희·박영실(2006). **한국 청소년패널조사(KYPS) IV-조사개요 보고서**.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이삼식·정운선·김희경·최은영·박세경·조남훈·신인철·도세록·조숙경·강주희(2005). **2005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서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정림·이정원·김진경·송신영·왕영희·이예진(2010). **한국아동패널 2009 기초분석보고서**.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 질병관리본부. (2005). **표준예방접종일정표(소아용)**. <http://nop.cdc.go.kr/introduce.do?MnLv1=1&MnLv2=4>에서 2011년 11월 17일 인출.
- 질병관리본부·대한소아과학회. (2007). **소아·청소년 표준 성장도표**. 서울: 저자
- 통계청(2000). **가구소비실태조사**. 대전: 통계청.
- 통계청(2006). **가계자산조사**. 대전: 통계청.
- 통계청(2007). **한국표준 직업 분류 2007**. 서울: 통계청.
- 통계청(2005). **2005 인구주택총조사**. http://meta.nso.go.kr/img/meta_file/josa/주택총조사/주택총조사200501Y/2005%20인구주택총조사%20표본조사표.pdf에서 2006년 5월 14일에 인출.⁸⁾
- 통계청(2007). **2007년 사회통계조사**. 대전: 저자.
- 한국아동학회·한솔교육문화연구원. (2001). **아동발달백서**. 서울: 한솔교육.
- 허계형·Squires, J., 이소영·이준식(2006). **K-ASQ(한국형 Ages & Stages Questionnaires) 부모작성형 유아 모니터링 체계**. 서울: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8) Site 변경. <http://kosis.kr> 2010년 6월 21일.

- 홍성례(1995). 30대 남편의 가족역할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인 연구. 미출판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서울.
- Allen, K. E., & Martoz, L. R. (2003). *Developmental profiles: Pre-birth through twelve* (4th ed.). Clifton Park, NY: Delmar Learning.
- Bornstein, M. H., Tamis-LeMonda, C. S., Pascual, L., Haynes, M. O., Painter, K. M., Galperin, C. Z., & Pecheux, M. G. (1996). Ideas about parenting in Argentina, France, and the United States,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19(2), 347-367.
- Buss, A. H. & Plomin, R. (1984). *Temperament: Early developing personality traits*.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Chung, H. (2004). Application and revision of the Kansas Marital Satisfaction Scale for use of Korean couples. *Psychological Reports*, 95, 1015-1022.
- European Value Study Foundation. (2008). *Final questionnaire for European Value Survey*. <http://www.europeanvalues.nl> 에서 2008년 4월 20일에 인출.
- Fagerstrom, K. O., Heatherton, T. F., & Kozlowski, L. T. (1991). Nicotine addiction and its assessment. *Ear, Nose and Throat Journal*, 29, 763-765.
- Kessler, R. C., Andrew, G., Cople, L. J., Hiripi, E., Mroczek, D. K., Normand, S. L. T., Walters, E. E., & Zaslavsky, A. (2002). Short screening scales to monitor population prevalences and trends in nonspecific psychological distress. *Psychological Medicine*, 32(6), 959-976.
- MacPhee, D. (2002). *Knowledge of Infant Development Inventory: Survey of child care experience & manual* (2nd ed.). Unpublished manuscript, Colorado State University.
- Markman, H., Stanley, S., & Blumberg, S. (1994). *Fighting for your marriage*. San Francisco: Jossey-Bass Publishers.
- National Institute of Child Health and Human Development. (1999). *NICHD Study of Early Child Care Phase I Manuals*. <http://secc.rti.org/manuals.cfm>에서 2007년 2월 4일에 인출.

National Women's Education Center of Japan (2007). *International comparative research on "Home Education" 2008: Survey on children and the family life*. Saitama, Japan: Author.

Pearlin, L. I., Lieberman, M. A., Menaghan, E. G., & Mullan, J. T. (1981). The stress process.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22, 337-356.

Rosenberg, M. (1986). *Conceiving the self*. New York: Basic Books.

부 록

3차년도 기초분석 질문지⁹⁾

부록 1. 어머니대상 질문지

부록 2. 아버지대상 질문지

부록 3. 면접조사용 질문지

부록 4. 한국아동패널 2010 일반 조사 도구 출처

9) 2011년 8월 4일 일부 개정된 영유아보육법 2조 2항, 5항에 근거, 기초분석보고서 작성에는 '어린이집'으로 용어를 통일하여 기술하였으나, 질문지에는 2009년 조사 당시 사용된 '보육시설'로 용어를 유지함.

부록 1. 어머니대상 질문지

ID - 

어머니대상 질문지

※ 본 조사에 조사된 모든 내용은 통계목적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할 수 없으며,
그 비밀이 보호되도록 통계법(제33조 및 제3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 | | |
|---------------------|----------------------------|----------------|---------|
| 아동 이름 | | 아동 성별 | ① 남 ② 여 |
| 아동 생일 | 양력 / 음력 _____년 ____월 ____일 | | |
| 아동 출생순위 | _____남 _____녀 중 _____째 | | |
| 질문지 작성자 이름 | | | |
| 질문지 작성일 | _____월 ____일 | | |
| 조사방법 (조사원 기입 사항) | ① 가구면접 ④ e-mail 조사 | ② 우편조사 ⑤ 기타 | ③ 전화면접 |

본 질문지는 2008년 4월~7월 사이에 출생하여 한국아동패널 조사에 참여한 아기와 가족에 관한 것으로, **아기의 어머니께서 응답**하시는 질문입니다.

사별, 이혼 등의 이유로 식구 중 어머니가 없는 경우 아버지 또는 그 외 대상 아기를 주로 돌보시는 주양육자께서 응답하셔도 무방합니다. 단, 주양육자에는 육아도우미와 같이 대상 아기와 친인척관계가 아닌 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본 질문지에 응답하는 데에는 **약 25분가량** 소요됩니다.

질문지에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주관기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7층
육아정책연구소 『한국아동패널』 연구팀

Tel (02) 398-7713, Fax (02) 730-3317,

e-mail: panel@kicce.re.kr

<조사수행기관>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625-1

(주)밀워드브라운미디어리서치

『한국아동패널』 조사팀

Tel (02) 3488-2783, Fax (02) 598-7652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4. 다음은 ○○의 양육 시 남편의 협조에 관한 내용입니다. 문항별로 해당되는 보기에 ✓표해주시시오.

| 문항 내용 | 전혀 그렇지 않다 | 별로 그렇지 않다 | 보통이다 | 대체로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
| 1) 남편은 아이에게 필요한 장난감이나 물품을 사다준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2) 남편은 아이의 습관이나 생활에 관심을 갖고 지도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3) 남편은 아이에게 음식 또는 우유를 먹이거나 목욕을 시키는 등의 일을 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4) 남편은 아이와 함께 자주 놀아주거나 이야기 상대가 되어 준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다음은 임신과 출산에 대하여 귀하의 의견을 묻는 질문입니다.

5. 현재 자녀 외에 앞으로 자녀를 더 낳으실 계획입니까?

| | | | |
|--|---|--|--|
| <p>① 낳겠음 (또는 임신 중)</p> | ⇨ | <p>5-1. 더 낳으실 계획인 경우, 현재 자녀 외에 앞으로 몇 명을 더 계획하고 계십니까? 현재 임신 중인 경우 태아를 포함하여 응답하여 주십시오.</p> <p style="text-align: center;">① 1명 ② 2명 ③ 3명 ④ 4명 이상</p> <p>5-2. 다음 자녀는 언제쯤 출산할 계획입니까?</p> <p style="text-align: center;">① 1년 이내(또는 현재 임신 중) ② 1년~2년 이내 ③ 2년~3년 이내 ④ 3년 이후 ⑤ 미정(또는 잘 모르겠음) ⑥ 기타 _____</p> <p style="text-align: center;">⇨ 6번 문항으로</p> | |
| <p>② 낳지 않겠음</p> | ⇨ | <p>5-3. 더 낳지 않으실 계획인 경우,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음 보기 중 한 가지만 선택하여 주십시오.</p> <p style="text-align: center;">① 자녀 양육비용 때문에(아기 관련 생필품, 육아 도우미 비용 등) ② 자녀 교육비용 때문에(유치원/보육시설/학교 등의 기관 이용비용, 그 외 학원 등의 사교육비용 등) ③ 직장/학업 때문에 ④ 개인시간/여가 또는 자아성취를 위하여 ⑤ 이미 계획한 수만큼의 아이를 낳아서 ⑥ 나이가 많아서 ⑦ 육체적으로 힘들어서(출산 및 양육 등) ⑧ 기타 _____</p> <p style="text-align: center;">⇨ 6번 문항으로</p> | |
| <p>③ 잘 모르겠음 ⇨ ④ 기타 _____ ⇨</p> | | <p>5-4. 국가에서 미취학 아동의 유치원 또는 보육시설을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면, 자녀를 더 낳으실 생각이 있으십니까?</p> <p style="text-align: center;">① 전혀 없음 ② 거의 없음 ③ 조금 있음 ④ 매우 많음 ⑤ 잘 모르겠음</p> <p>5-5. 국가에서 미취학 아동의 양육비용 중 일정 금액을 매월 지원한다면 자녀를 더 낳으실 생각이 있으십니까?</p>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auto; margin-right: auto;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padding: 5px;"> <p>① 있음 ⇨ 5-5-1. 매월 어느 정도 금액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p> <p style="text-align: center;">① 10만원 미만 ② 10만원 이상 - 20만원 미만 ③ 20만원 이상 - 30만원 미만 ④ 30만원 이상</p> </td> </tr> </table> <p style="text-align: center;">② 없음 ③ 잘 모르겠음</p> | <p>① 있음 ⇨ 5-5-1. 매월 어느 정도 금액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p> <p style="text-align: center;">① 10만원 미만 ② 10만원 이상 - 20만원 미만 ③ 20만원 이상 - 30만원 미만 ④ 30만원 이상</p> |
| <p>① 있음 ⇨ 5-5-1. 매월 어느 정도 금액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p> <p style="text-align: center;">① 10만원 미만 ② 10만원 이상 - 20만원 미만 ③ 20만원 이상 - 30만원 미만 ④ 30만원 이상</p> | | | |

11. 다음은 ○○의 장래에 대하여 귀하가 부모로서 갖는 기대에 관한 질문입니다. 아래의 각 문항에 대해 귀하가 원하는 정도를 ✓표 해주십시오.

| 우리 ○○는 장래에..... | 매우 원한다 | 다소 원한다 | 별로 개의치 않는다 | 전혀 개의치 않는다 |
|------------------------|--------|--------|------------|------------|
| 1) 돈을 잘 번다. | ① | ② | ③ | ④ |
| 2) 명성을 얻거나 유명해진다. | ① | ② | ③ | ④ |
| 3) 높은 사회적 지위를 갖는다. | ① | ② | ③ | ④ |
| 4) 다른 사람을 기꺼이 도와려고 한다. | ① | ② | ③ | ④ |
| 5) 행복한 가정을 갖는다. | ① | ② | ③ | ④ |
| 6) 일보다 취미나 여가를 더 중시한다. | ① | ② | ③ | ④ |

다음은 육아정책에 대하여 귀하의 의견을 묻는 질문입니다.

12. 여성의 경제활동을 위하여 정부가 육아를 지원하기 위한 방법은 크게 다음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 1) 어머니가 직장과 병행하여 집에서 아이를 돌볼 수 있도록 모성을 보호하고 탄력적인 근무조건을 보장하는 것 (예: 육아휴직, 탄력근무 등)
- 2) 어머니를 대신하는 육아지원서비스(예: 육아도우미, 어린이집, 유치원 종일반 등)에 아이를 맡고 맡길 수 있도록 질 높고 비싸지 않은 관련 서비스를 확대하는 것

귀하께서는 이 둘 중 어디에 더 중점을 두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육아휴직, 탄력근무 등의 일-가정 양립 제도의 정착 및 확대
- ② 비용이 적절하면서도 질 높은 육아지원서비스의 확대
- ③ 두 가지 모두

13. 다음은 근로 장소에서 실시하는 대표적인 출산 및 육아 지원 제도/방식입니다. 각각의 필요 정도에 대하여 해당하는 보기에 ✓표해주시시오.

| 구 분 | | 매우 불필요 | 대체로 불필요 | 보통 | 대체로 필요 | 매우 필요 |
|-------------|----------------------------|--------|---------|----|--------|-------|
| 휴가 및 휴직 | 1) 여성의 출산휴가 | ① | ② | ③ | ④ | ⑤ |
| | 2) 여성의 육아휴직 | ① | ② | ③ | ④ | ⑤ |
| | 3) 남성의 출산휴가 | ① | ② | ③ | ④ | ⑤ |
| | 4) 남성의 육아휴직 | ① | ② | ③ | ④ | ⑤ |
| 보육지원 | 5) 직장 보육시설 | ① | ② | ③ | ④ | ⑤ |
| | 6) 보육비 지원 | ① | ② | ③ | ④ | ⑤ |
| 모성보호 | 7) 수유실 설치 | ① | ② | ③ | ④ | ⑤ |
| | 8) 근무 중 수유시간 부여 또는 유급 수유시간 | ① | ② | ③ | ④ | ⑤ |
| 유연성 있는 노동환경 | 9) 시차 출근제 | ① | ② | ③ | ④ | ⑤ |
| | 10) 대체인력풀 운영 | ① | ② | ③ | ④ | ⑤ |
| | 1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① | ② | ③ | ④ | ⑤ |

※ 여성의 출산휴가: 임신 중의 여성에게 산전과 산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주는 것(근로기준법 제74조의 산전후휴가)

※ 남성의 출산휴가: 배우자의 출산에 따라 남성에게 3일의 휴가를 주는 것

- ※ 육아휴직: 생후 1년 미만의 영유아(2008.1.1 이후 출생한 영유아는 만6세까지)를 가진 근로자가 그 영유아의 양육을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것(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 육아휴직)
- ※ 시차출근제: 근로자가 사정에 맞게 출퇴근 시간을 정하는 것(근로기준법 제52조의 선택적 근로시간제)
-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육아휴직 대신 최대 1년간 주당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로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것(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2항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단, 육아휴직과 근로시간 단축의 총 사용기간은 1년을 넘을 수 없음.

13-1. 위의 출산 및 육아 지원 제도/방식 중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3가지를 순서대로 선택하여 주십시오.

① _____, ② _____, ③ _____

14. 부모의 취업으로 취학 전 자녀를 부모 외의 사람이 대리 양육할 경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점은 무엇입니까? 다음의 보기 중 한 가지만 선택하여 주십시오.
- ① 아이가 부모가 돌보는 것과 같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되는 것
 - ② 보호 뿐 아니라 양질의 교육적인 경험이 함께 제공되는 것
 - ③ 저녁이나 휴일 등 상황에 따라 이용시간이 다양해지는 것
 - ④ 비용이 저렴해 지는 것
 - ⑤ 잘 모르겠음
 - ⑥ 기타 _____

다음은 귀하의 음주인 흡연 습관에 대한 질문입니다.

15. 귀하는 평소에 술을 얼마나 자주 마십니까? 최근 1년을 기준으로 말씀하여 주십시오.
- ① 최근 1년간 전혀 마시지 않음 ⇒ **18번 문항으로**
 - ② 월 1회 이하
 - ③ 월 2~4회
 - ④ 주 2회~3회
 - ⑤ 일주일에 4회 이상
16. 술을 마시면 보통 몇 잔정도 마시는 편입니까? 소주, 양주 구분 없이 각각의 술잔으로 계산합니다. 단, 캔맥주 1개(355cc)는 맥주 1.6잔과 같습니다.
- ① 1잔 또는 2잔
 - ② 3잔 또는 4잔
 - ③ 5잔 또는 6잔
 - ④ 7잔 또는 9잔
 - ⑤ 10잔 또는 그 이상
17. 한번의 술좌석에서 5잔 이상(또는 맥주 3캔 정도)을 마시는 횟수는 어느 정도입니까? 아버지께서 응답하시는 경우, 7잔 이상(또는 맥주 5캔 정도)을 기준으로 응답하여 주십시오.
- ① 전혀 없음
 - ② 한 달에 1번미만
 - ③ 한 달에 1번 정도
 - ④ 1주일에 1번 정도
 - ⑤ 거의 매일
18. 귀하는 평소에 담배를 피우십니까?
- ① 피움
 - ② 피우지 않음 ⇒ **25번 문항으로**
19. 귀하는 보통 아침에 일어나서 얼마 만에 담배를 피우십니까?
- ① 5분 이내
 - ② 6~30분 이내
 - ③ 31~60분 이내
 - ④ 한 시간 이후
20. 귀하는 금연 구역에서 담배를 참기가 어려웠던 적이 있습니까?
- ① 예
 - ② 아니오

21. 하루 중 담배가 가장 맛있을 때는 언제입니까?
 ① 기상 후 첫 담배 ② 그 외의 담배
22. 하루에 담배를 몇 개비 정도 피우십니까?
 ① 10개비 미만 ② 11~20개비 ③ 21~30개비 ④ 31개비 이상
23. 기상 후 1시간 이내에 피우는 담배가 그 외 시간에 피는 담배보다 더 많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24. 몸이 아파 누워 있어야 하는 경우에도 담배를 피우십니까?
 ① 예 ② 아니오

다음은 귀하께서 자녀를 양육하는 특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25. 다음은 ○○를 키우면서 느끼는 어려움에 관한 내용입니다. 문항별로 귀하의 평소 느낌이나 생각과 일치한다고 생각하시는 보기에 ✓표해주시시오.

| 문 항 내 용 | 전혀 그렇지 않다 | 별로 그렇지 않다 | 보통 이다 | 대체로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
| 1)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2)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지 자신이 없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3) 내가 부모 역할을 잘못하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다른 아이보다 뒤처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들 때가 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4) 아이로부터 도망치고 싶을 때가 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5) 아이를 더 친근하고 따뜻하게 대해야 한다는 것이 어렵게 여겨진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6) 요즘은 육아정보가 너무 다양하여 어떤 것을 선택해야할지 혼란스럽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7) 아이가 태어난 후 예전만큼 나의 생활이 즐겁지 않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8) 양육비용이 부담스럽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9) 아이가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면 내 탓인 것 같아 괴롭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10) 피곤할 때 아이가 놀아달라고 보채면 귀찮은 생각이 든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11) 모임에 가면서도 아이 때문에 그리 즐겁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26. 다음은 ○○에 대한 귀하의 양육 스타일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항별로 해당되는 보기에 ✓표해주시시오.

| 문 항 내 용 | 전혀 그렇지 않다 | 별로 그렇지 않다 | 보통 이다 | 대체로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
| 1) 나는 우리 아이와 함께 놀면서 시간을 보낸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2) 나는 우리 아이가 힘들어하거나 불편해하면 즉시 적절하게 반응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3) 나는 우리 아이에게 필요한 일들(예: 먹이기, 목욕시키기, 옷 입히기 등)을 잘 만족시켜준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4) 나는 우리 아이에게 긍정적이고 애정적이며 따뜻한 관심을 보인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5) 나는 우리 아이에게 기대하고 있는 행동에 대해 어느 정도 융통성을 가지고 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6) 나는 우리 아이가 무엇을 원하는지 또는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알고 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7) 나는 내 아이가 놀이 집단이나 모임 등을 통하여 같은 또래 친구들과 다양한 사회적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마련해 준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8) 나는 내 아이에게 말을 하거나 대화를 주고받으며 시간을 보낸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9) 나는 내 아이가 관심이나 주의를 끌기 위한 행동을 할 때, 즉시 긍정적으로 반응해 준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27. 다음은 아기의 정상적인 발달과 양육에 관한 문항입니다. 문항별로 대상 아기가 아닌 일반적인 아기에 관한 지식을 바탕으로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항 내용 | 그렇다 | 아니다 | 잘 모르겠다 |
|--|-----|-----|--------|
| 1) 아이들은 말의 올바른 사용법을 알려줘도 얼마 동안은 종종 틀린 말을 계속 사용할 것이다. | ① | ② | ③ |
| 2) 아이들은 자기가 말할 수 있는 단어들만 이해한다. | ① | ② | ③ |
| 3) 아이가 낯선 상황에서 수줍어하거나 칭얼댄다면 이는 대개 정서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이다. | ① | ② | ③ |
| 4) 아이를 양육하는 방식은 그 아이의 지능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 ① | ② | ③ |
| 5) 아기가 아주 어린 경우, 부모가 아기를 돌보는 방식은 아기로부터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다. | ① | ② | ③ |
| 6) 동생이 태어나면 아이들은 밤에 오줌을 싸거나 손가락을 빨기도 한다. | ① | ② | ③ |
| 7) 대부분의 미숙아들은 결국에는 학대받거나 방치되거나 정신적으로 발달이 지체된다. * 미숙아는 체중이 2.5kg이 못 된 채 태어난 아기와 임신 37주 이전에 태어난 조산아를 통칭함. | ① | ② | ③ |
| 8) 건강한 아기와 하더라도 새로운 음식에 익숙해질 때까지는 대개 그 음식을 뱉어내기도 한다. | ① | ② | ③ |
| 9) 아기의 성격 또는 기질은 생후 6개월이면 결정되고, 그 이후에는 잘 변하지 않는다. | ① | ② | ③ |
| 10) 부모가 아기에게 생후 첫 몇 개월 동안 반응하는 방식은 이후 아기가 행복하고 잘 적응된 아이로 성장할 것인가, 아니면 우울하고 부적응적인 아이로 성장할 것인가를 결정짓는다. | ① | ② | ③ |
| 11) 아이들의 모든 언어는 어른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따라함으로써 습득된다. | ① | ② | ③ |
| 12) 소음이 심하거나 불거리가 너무 많으면 아기는 자기 주변 상황에 집중하지 못한다. | ① | ② | ③ |
| 13) 정상적인 아이 중에서도 몇몇 아이들은 안기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 ① | ② | ③ |

다음은 귀하의 가족에 대한 질문입니다.

28. 아래의 사건들 중 귀하를 포함한 귀하의 가족이 지난 1년 동안 경험한 경우 해당하는 칸에 모두 ✓표해주시시오. (중복응답 가능).

| 지난 1년간 | 경험함 |
|--|-----|
| 1) 경기가 좋지 않아 수입에 영향을 받았다. | |
| 2) 병원비(임신·출산관련 비용 포함)나 치료비 등의 지출로 가계에 부담이 되었다. | |
| 3) 의·식·주에 드는 비용이 가계에 부담이 되었다. | |
| 4) 자녀에게 드는 비용이 가계에 부담이 되었다. | |
| 5) 자동차 또는 인테리어 개조 등 값비싼 물품 구입 등으로 목돈을 지출하였다. | |
| 6) 부동산이나 주식투자 등으로 손해를 입었다. | |
| 7) 빚을 지거나 대출을 받았다. | |
| 8) 식구 중 직장을 옮긴 사람이 있다. | |
| 9) 식구 중 일을 그만 두거나 해고를 당한 사람이 있다. | |
| 10) 식구 중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 사람이 있었다. | |
| 11) 식구 중 일(주부로서의 일 포함)에 대한 만족도가 낮아진 사람이 있다. | |
| 12) 식구 중 일하면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어려움을 느낀 사람이 있다. | |
| 13) 나 또는 배우자가 해외나 지방(다른 지역)으로 근무하게 되었다. | |
| 14)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하였다. | |
| 15) 식구 중 직장에서 승진을 하거나 책임이 커진 사람이 있었다. | |
| 16) 자녀의 학교 성적이 떨어졌다. | |

29. 아래의 사건들 중 귀하를 포함한 귀하의 가족이 지난 1년 동안 경험한 경우 해당하는 칸에 모두 ✓표해주시시오 (중복응답 가능).

| 지난 1년간 | 경험함 |
|---|-----|
| 1) 내 자신, 부모 또는 배우자가 심하게 아프거나 다쳤다. | |
| 2) 자녀가 심하게 아프거나 다쳤다. | |
| 3) 가까운 친척이나 친구가 심하게 아프거나 다쳤다. | |
| 4) 신체장애가 있거나 오랫동안 병을 앓는 식구를 돌보는 것이 힘들어졌다. | |
| 5) 시부모나 친정 부모를 직접 돌보거나 금전적으로 도와야 할 책임이 커졌다. | |
| 6) 배우자가 사망했다. | |
| 7) 자녀가 사망했다. | |
| 8) 친정부모, 시부모, 가까운 친척, 친구 중 사망한 사람이 있었다. | |
| 9) 식구 중 법을 어겨 조사를 받거나 체포를 당한 사람이 있었다. | |
| 10) 가정폭력이 있었다. | |
| 11) 식구 중 가출한 사람이 있었다. | |

30. 다음은 귀 가족과 함께 살지 않는 사람들(따로 사는 시댁식구와 친정식구, 친척, 친구, 이웃, 종교·사회단체 등 모두 포함)과의 관계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항별로 해당되는 보기에 ✓표해주시시오.

| 상 황 | 전혀 그렇지 않다 | 별로 그렇지 않다 | 보통 이다 | 대체로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
| 1) 내가 외로울 때 솔직히 털어놓고 의지할 수 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2) 내가 급하게 돈을 써야 할 때 빌려준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3) 특별한 일이 없어도 서로 자주 방문하거나 전화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4) 항상 나의 일에 관심을 갖고 함께 걱정해준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5) 갑자기 물품이 필요할 때 빌려준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6) 큰 일(잔치, 김장 등)이 있어서 일손이 필요할 때 도와준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7) 중요한 일(주택구입 등)을 결정할 때 정보를 준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8) 자녀양육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9) 살림살이나 취미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준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10) 같이 물건을 사거나 외식을 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11) 집안 길흉사에 서로 방문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12) 여가나 휴가 때 같이 놀러간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다음은 귀하 자신에 대한 평소 느낌이나 생각에 관한 질문입니다.

31. 다음의 각 문장에 대하여 얼마나 동의하는지 해당하는 보기에 ✓표해주시시오.

| 문 항 내 용 | 전혀 그렇지 않다 | 별로 그렇지 않다 | 보통 이다 | 대체로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
| 1) 내가 가진 문제들 중 몇몇 문제는 도저히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2) 나는 살면서 때때로 뭔가 휘둘리는 느낌을 받는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3) 나는 내게 일어나는 일들을 거의 통제하지 못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4) 삶의 문제들을 내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것 같다고 자주 느낀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32. 다음의 각 문장에 대하여 얼마나 동의하는지 해당하는 보기에 ✓표해주시시오.

| 나는..... | 전혀 그렇지 않다 | 별로 그렇지 않다 | 대체로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
| 1) 내가 적어도 다른 사람만큼은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느낀다. | ① | ② | ③ | ④ |
| 2) 내가 좋은 자질(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느낀다. | ① | ② | ③ | ④ |
| 3) 대체로 내가 실패자라고 느끼는 경향이 있다. | ① | ② | ③ | ④ |
| 4) 남들이 하는 만큼은 일을 할 수 있다. | ① | ② | ③ | ④ |
| 5) 내가 자랑스러워할 만한 것이 별로 없다고 느낀다. | ① | ② | ③ | ④ |
| 6) 나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다. | ① | ② | ③ | ④ |
| 7) 대체로 나 자신에게 만족한다. | ① | ② | ③ | ④ |
| 8) 나 자신을 좀 더 존중할 수 있으면 하고 바란다. | ① | ② | ③ | ④ |
| 9) 가끔씩 내가 쓸모없다고 느낀다. | ① | ② | ③ | ④ |
| 10) 때때로 내가 무익한 존재라고 생각한다. | ① | ② | ③ | ④ |

33. 귀하는 지난 30일 동안 다음의 느낌을 얼마나 자주 느끼셨습니까?

| 얼마나 자주 | 전혀 안 느낌 | 별로 안 느낌 | 종종 느낌 | 대체로 느낌 | 항상 느낌 |
|---|---------|---------|-------|--------|-------|
| 1) 지난 30일 동안 불안하셨습니까? | ① | ② | ③ | ④ | ⑤ |
| 2) 지난 30일 동안 무기력하셨습니까? | ① | ② | ③ | ④ | ⑤ |
| 3) 지난 30일 동안 안절부절 못하셨습니까? | ① | ② | ③ | ④ | ⑤ |
| 4) 지난 30일 동안 매사에 힘이 드셨습니까? | ① | ② | ③ | ④ | ⑤ |
| 5) 지난 30일 동안 너무 슬퍼서 뭘 해도 기운이 나지 않으셨습니까? | ① | ② | ③ | ④ | ⑤ |
| 6) 지난 30일 동안 자기 자신이 가치 없는 존재라고 느끼셨습니까? | ① | ② | ③ | ④ | ⑤ |

다음은 조사 대상 아기(이하 ○○)의 특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34. 다음은 ○○의 특성에 대한 문항들입니다. 문항별로 해당되는 보기에 ✓표해주시시오.

| 문 항 내 용 | 전혀 그렇지 않다 | 별로 그렇지 않다 | 보통 이다 | 대체로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
| 1) 우리 아이는 수줍음을 타는 편이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2) 우리 아이는 잘 운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3) 우리 아이는 사람들과 함께 있기를 좋아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4) 우리 아이는 항상 끊임없이 움직인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5) 우리 아이는 혼자 놀기보다 다른 아이들과 놀기를 좋아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6) 우리 아이는 다소 감정적인 편이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7) 우리 아이는 활동할 때 대개 천천히 움직이는 편이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8) 우리 아이는 친구(혹은 사람)를 쉽게 사귀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9) 우리 아이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열심히 움직인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문항내용 | 전혀 그렇지 않다 | 별로 그렇지 않다 | 보통이다 | 대체로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
| 10) 우리 아이는 무엇보다 사람들을 좋아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11) 우리 아이는 종종 보채면서 우는 편이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12) 우리 아이는 사교적이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13) 우리 아이는 매우 활동적이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14) 우리 아이는 낯선 사람과 친해지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15) 우리 아이는 쉽게 기분이 나빠진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16) 우리 아이는 어느 정도 외톨이인 편이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17) 우리 아이는 활동적인 놀이보다는 조용하고 정적인 놀이를 더 좋아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18) 우리 아이는 혼자 있을 때면 외로워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19) 우리 아이는 화가 났을 때 격하게 반응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20) 우리 아이는 낯선 이와 잘 친해진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35. 다음은 ○○의 생활 중 수면 습관에 관한 문항입니다. 문항별로 해당되는 보기에 ✓표해주시시오.

| 문항내용 | 전혀 그렇지 않다 | 거의 그렇지 않다 | 때때로 그렇다 | 대체로 그렇다 | 항상 그렇다 |
|--|-----------|-----------|---------|---------|--------|
| 1) 밤에 9~12시간 정도는 잔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2) 낮잠을 자는 편이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3) 잠자리에 들기 싫어하는 편이지만, 여러 번 타이르거나 잠자기 전에 하는 일상적인 습관(책읽기, 대화하기, 좋아하는 장난감을 두기 등)이 있다면 순순히 따른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4) 피곤한 날에는 특히 잠이 들기까지 시간이 더 걸린다. (노래나 혼잣말을 하며 시간을 보내거나 침대 위에서 뛰고 부모님과 시간을 더 보내려고 하는 등 쉽게 잠자리에 들지 않고 시간을 보낸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36. 다음은 ○○의 생활 중 식습관에 관한 문항입니다. 문항별로 해당되는 보기에 ✓표해주시시오.

| 문항내용 | 전혀 그렇지 않다 | 거의 그렇지 않다 | 때때로 그렇다 | 대체로 그렇다 | 항상 그렇다 |
|---|-----------|-----------|---------|---------|--------|
| 1) 좋아하는 음식과 싫어하는 음식이 분명하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2) 늘 먹던 친숙한 음식만을 고집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3) 혼자서 먹는 식사 습관이 형성되어 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4) 어른이나 손위 형제자매의 식사예절을 모방하면서 배운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5) 물을 쏟을 때도 있지만 컵이나 유리잔을 사용해서 물(우유)을 마실 수 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37. 다음은 ○○의 생활 중 배변/씻기 습관에 관한 문항입니다. 문항별로 해당되는 보기에 ✓표해주시시오.

| 문 항 내 용 | 전혀 그렇지 않다 | 거의 그렇지 않다 | 때때로 그렇다 | 대체로 그렇다 | 항상 그렇다 |
|--|-----------|-----------|---------|---------|--------|
| 1) 남이 씻겨주는 것을 싫어하고 혼자 씻으려 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2) 머리감는 것을 싫어하거나 저항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3) 보통 옷을 스스로 벗을 수 있고 입힐 때 잘 따른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4) 다른 사람들이 화장실 사용하는 것을 지켜보거나 자기 스스로 대·소변을 참을 수 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5) 몇 분 동안 유아용 변기에 앉아 있으려고 하거나 젖은 상태에 대한 불편함을 표현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38. 다음은 ○○의 생활 중 놀이와 사회적 활동에 관한 문항입니다. 문항별로 해당되는 보기에 ✓표해주시시오.

| 문 항 내 용 | 전혀 그렇지 않다 | 거의 그렇지 않다 | 때때로 그렇다 | 대체로 그렇다 | 항상 그렇다 |
|--|-----------|-----------|---------|---------|--------|
| 1) 앞치마를 두르고 엄마 흉내를 내는 등 가족의 행동을 흉내 내는 것을 즐거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2) 다른 아이들과 함께 놀이를 하지는 않지만 다른 아이들과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하고 놀이를 따라 하기도 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3) 부모나 아이를 돌보는 사람의 말을 순순히 따르지 않고 고집부리거나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4) 상상속의 친구가 실제의 친구인 것처럼 행동한다(예: 인형을 실제 친구처럼 대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5) 주변 모든 환경에 호기심을 가지고 탐색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39. ○○는 평상시 하루에 낮잠을 얼마나 잡니까?

- ① 낮잠을 자지 않는다. ⇨ **41번 문항으로** ② 하루에 1번 ③ 하루에 2번 ④ 하루에 3번 이상

40. ○○가 평상시 하루에 자는 낮잠 시간은 총 몇 분입니까? 분 단위로 응답하여 주십시오. _____ 분

41. ○○는 평상시 밤에 몇 시에 잠들어 아침 몇 시에 일어납니까? 저녁 ____시 ____분 ~ 아침 ____시 ____분

42. ○○는 밤에 깨지 않고 잡니까?

① 예

② 아니요 ⇨

42-1. 하루 밤 평균 몇 번이나 깡니까? 평균 _____ 번

43. ○○가 하루(평일 기준)에 다음의 활동을 보통 얼마동안 하는지 기록하여 주십시오.
(모든 항목을 응답할 필요는 없으며, 주로 많이 하는 활동 중심으로 작성하십시오.)

| 활동 내용 | 활동 시간 |
|-----------------------|------------------|
| 1) 혼자 집안에서 놀기 | _____ 시간 _____ 분 |
| 2) 친구와 놀기 | _____ 시간 _____ 분 |
| 3) 주양육자와 놀기 | _____ 시간 _____ 분 |
| 4) 혼자 밖에서 놀거나 돌아다니기 | _____ 시간 _____ 분 |
| 5) 교육·보육기관에서 교육 및 활동 | _____ 시간 _____ 분 |
| 6) 학원, 복지관 등 기관에서의 교육 | _____ 시간 _____ 분 |
| 7) 학습지 등 방문교육 | _____ 시간 _____ 분 |
| 8) TV, 비디오 시청 | _____ 시간 _____ 분 |
| 9) 오락, 컴퓨터 게임하기 | _____ 시간 _____ 분 |
| 10) 성인과외출 | _____ 시간 _____ 분 |
| 11) 책 읽기 | _____ 시간 _____ 분 |
| 12) 특별히 하는 것 없이 그냥 있기 | _____ 시간 _____ 분 |
| 13) 기타() | _____ 시간 _____ 분 |

44. ○○는 **최근 1년 동안** 병의원이나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아야 했던 사고나 중독이 발생한 적이 있습니까?

- ① 있다
- ② 없다

⇒

44-1. 있다면 사고 또는 중독은 몇 번 발생했습니까? _____ 번

45. ○○는 **최근 1년 동안** 입원한 적이 있습니까?

- ① 있다
- ② 없다

⇒

45-1. 입원한 적이 있다면 몇 번입니까? _____ 번

45-2. 1년 중 며칠 동안 입원했습니까? 입원횟수가 2회 이상이면 총 입원일 수를 말씀해주시십시오.
_____개월 _____일

46. ○○는 **최근 2주간** 입원을 하지 않고 병원(치과 포함)이나 보건소,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_____번

47. ○○는 장애아로 판정받았습니까?? 장애아는 장애 등급을 판정 받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아래의 보기 중 해당하는 장애의 번호에 ✓표시하신 후 장애 등급을 기입하여 주십시오. **중복장애의 경우**는 판정 받은 모든 장애에 대해 기입하여 주십시오.

- ① 있다
- ② 없다

⇒

47-1. ○○의 장애는 어떤 유형이며, 판정받은 등급은 몇 급입니까?

- ① 지체장애 (___급)
- ② 뇌병변 장애 (___급)
- ③ 시각장애 (___급)
- ④ 청각장애 (___급)
- ⑤ 언어장애 (___급)
- ⑥ 안면장애 (___급)
- ⑦ 신장장애 (___급)
- ⑧ 심장장애 (___급)
- ⑨ 간 장애 (___급)
- ⑩ 호흡기장애 (___급)
- ⑪ 장루, 요루 장애 (___급)
- ⑫ 간질장애 (___급)
- ⑬ 지적장애 (___급)
- ⑭ 정신장애 (___급)
- ⑮ 자폐성 장애 (___급)

48. ○○는 지금까지 다음의 각 질환을 의사로부터 진단 받은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몇 개월 때입니까?

해당 질환이 3개월 이상 계속된 경우에 한해 응답해 주십시오.

| 질 환 명 | 의사진단여부 | 진단 시 개월수 |
|--------------|--------|----------|
| 1) 선천성 심장질환 | | |
| 2) 간질 | | |
| 3) 당뇨 | | |
| 4) 천식 | | |
| 5) 주의력 결핍 장애 | | |
| 6) 아토피 피부염 | | |
| 7) 만성 부비동염 | | |
| 8) 만성 중이염 | | |
| 9) 만성 요로감염 | | |

49. ○○의 **현재** 몸무게는 몇 kg입니까? _____ kg

50. ○○의 **현재** 키는 몇 cm입니까? _____ cm

51. 다음의 표는 생후 24개월까지의 국가필수 예방접종 목록입니다. 예방접종 목록 각각에 대해 접종 여부 및 횟수를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 아기수첩 등의 병원 방문기록을 참조하여 작성해 주십시오.**

| 대상 전염병(백신종류) | 접종 여부 및 횟수 |
|--------------------------|---------------------------------------|
| 1) 결핵(BCG) | ① 접종함: ___ 회 ② 접종 안함 ③ 잘 모르겠음 |
| 2)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DTaP) | ① 접종함: ___ 회 ② 접종 안함 ③ 잘 모르겠음 |
| 3) B형 간염(HepB) | ① 접종함: ___ 회 ② 접종 안함 ③ 잘 모르겠음 |
| 4) 소아마비(폴리오) | ① 접종함: ___ 회 ② 접종 안함 ③ 잘 모르겠음 |
| 5) 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MMR) | ① 접종함: ___ 회 ② 접종 안함 ③ 잘 모르겠음 |
| 6) 수두(Var) | ① 접종함: ___ 회 ② 접종 안함 ③ 잘 모르겠음 |
| 7) 일본뇌염(JEV) | ① 접종함: ___ 회 ② 접종 안함 ③ 잘 모르겠음 |

다음은 귀하께서 살고 계신 동네에 관한 질문입니다.

52. 귀하가 현재 사시는 동네는 주로 어떤 지역입니까?

- ① 일반주택지역 ② 일반아파트지역 ③ 상가·회사지역
- ④ 공장(단)지역 ⑤ 농·어가지역 ⑥ 기타 _____

53. 귀하가 현재 살고 계시는 동네에는 자녀를 보낼만한 **보육시설(어린이집 또는 놀이방)**이 충분히 있습니까?

*** 보육시설이란 어린이집과 놀이방으로, 선교원은 제외됨.**

- ① 매우 불충분함 ② 불충분함 ③ 보통임 ④ 충분함 ⑤ 매우 충분함

54. 귀하가 현재 살고 계시는 동네에는 자녀를 보낼만한 **유치원(영어유치원, 놀이학교 제외)**이 충분히 있습니까?

*** 놀이학교는 기관 명칭에 '유치원'이라는 명칭이 포함되어있지 않으며, 통상 상가 또는 주상복합건물에 별도의 실의 놀이터 없이 4세(만 3세) 이하의 어린이부터 대상으로 함. 예로는 위즈아일랜드, 하바 등이 있음.**

- ① 매우 불충분함 ② 불충분함 ③ 보통임 ④ 충분함 ⑤ 매우 충분함

부록 2. 아버지대상 질문지

ID - 

아버지대상 질문지

※ 본 조사에 조사된 모든 내용은 통계목적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할 수 없으며,
그 비밀이 보호되도록 통계법(제33조 및 제3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 | | |
|---------------------|----------------------------|----------------|---------|
| 아동 이름 | | 아동 성별 | ① 남 ② 여 |
| 아동 생일 | 양력 / 음력 _____년 ____월 ____일 | | |
| 질문지 작성자 이름 | | | |
| 질문지 작성일 | _____월 ____일 | | |
| 조사방법 (조사원 기입 사항) | ① 가구면접 ④ e-mail 조사 | ② 우편조사 ⑤ 기타 | ③ 전화면접 |

본 질문지는 2008년 4월~7월 사이에 출생하여 한국아동패널 조사에 참여한 아기와 가족에 관한 것으로, **아기의 아버지께서 응답**하시는 질문입니다.

단, 사별, 이혼 등의 이유로 식구 중 어머니가 없는 경우 본 질문지 대신 어머니용 질문지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은 다른 가족의 도움 없이 아버지께서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질문에 응답하는 데에는 **약 5분가량** 소요됩니다.

질문에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주관기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1층

육아정책연구소 『한국아동패널』 연구팀

Tel (02) 398-7713, Fax (02) 730-3319,

e-mail: panel@kicce.re.kr

<조사수행기관>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625-1

(주)밀워드브라운미디어리서치

『한국아동패널』 조사팀

Tel (02) 3488-2783, Fax (02) 598-7652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다음은 자녀에 대한 태도에 관하여 귀하의 의견을 묻는 질문입니다.

1. 자녀에 대한 다음의 태도에 대해 귀하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항별로 해당되는 보기에 ✓표해주시시오.

| 문 항 내 용 | 전혀 그렇지 않다 | 별로 그렇지 않다 | 보통 이다 | 대체로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
| 1) 부모가 되는 것은 인생에서 가치 있는 일이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2) 자녀는 부모간의 관계를 더 굳건하게 해준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3) 자녀가 있는 사람들은 노년에 덜 외롭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4) 자녀가 있으면 노후에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5) 결혼을 한 부부는 반드시 자녀가 있어야 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6) 집안의 대를 잇기 위해 자녀를 두는 것은 당연하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7) 자녀를 갖는 것은 사회에 대한 의무이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2. 다음은 자녀에 대한 부모의 책임을 나타내는 견해를 진술한 것입니다. 귀하는 둘 중 어디에 더 동의하십니까?

- ① 자신의 행복을 희생해서라도 자녀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부모의 의무이다
- ② 부모도 자신의 삶이 있으므로, 자녀 때문에 본인의 행복을 희생하도록 요구해서는 안 된다

3. 다음은 아이들이 가정에서 배울 수 있는 자질과 특성을 나열한 것입니다. 이 중 귀하께서 특별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자질을 5가지만 골라 주십시오(우선순위 없이 선택).

1) _____ 2) _____ 3) _____ 4) _____ 5) _____

- ① 예의바른 생활습관
- ② 독립심
- ③ 근면함
- ④ 책임감
- ⑤ 상상력
- ⑥ 타인에 대한 포용과 존중
- ⑦ 검소함, 저축하고 절약하기
- ⑧ 결단력과 끈기
- ⑨ 종교적 신념
- ⑩ 이타심
- ⑪ 어른 말씀 잘 듣기

4. 일반적으로 자녀는 몇 명을 두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무자녀
- ② 1명 ⇨
- ③ 2명 ⇨
- ④ 3명 ⇨
- ⑤ 4명 ⇨
- ⑥ 5명 이상 ⇨
- ⑦ 잘 모르겠음

4-1. 딸·아들 구분해서 입니까? 구분 없이 입니까?

- ① 딸·아들 구분 없이
- ② 딸·아들 구분해서(아들 _____ 명, 딸 _____ 명)
- ③ 딸·아들 구분없이 동성으로
- ④ 잘 모르겠음
- ⑤ 기타 _____

5. 다음은 조사 대상 아기(이하 ○○)의 장래에 대하여 귀하가 부모로서 갖는 기대에 관한 질문입니다. 아래의 각 문항에 대해 귀하가 원하는 정도를 ✓표 해주십시오.

| 우리 ○○는 장래에..... | 매우 원한다 | 다소 원한다 | 별로 개의치 않는다 | 전혀 개의치 않는다 |
|------------------------|--------|--------|------------|------------|
| 1) 돈을 잘 번다. | ① | ② | ③ | ④ |
| 2) 명성을 얻거나 유명해진다. | ① | ② | ③ | ④ |
| 3) 높은 사회적 지위를 갖는다. | ① | ② | ③ | ④ |
| 4) 다른 사람을 기꺼이 도우려고 한다. | ① | ② | ③ | ④ |
| 5) 행복한 가정을 갖는다. | ① | ② | ③ | ④ |
| 6) 일보다 취미나 여가를 더 중시한다. | ① | ② | ③ | ④ |

다음은 귀 부부에 대한 평소 느낌이나 생각에 관한 질문입니다.

6. 귀 부부에 대하여 다음의 문항별로 얼마나 만족하시는지 해당하는 보기에 ✓표 해주십시오.

| 문 항 내 용 | 매우 불만족 | 비교적 불만족 | 보통 이다 | 비교적 만족 | 매우 만족 | 해당 없음 |
|-----------------------------------|--------|---------|-------|--------|-------|-------|
| 1) 귀하는 배우자로서의 아내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 ① | ② | ③ | ④ | ⑤ | ☹ |
| 2) 귀하는 결혼생활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 ① | ② | ③ | ④ | ⑤ | ☹ |
| 3) 귀하는 아내와의 관계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 ① | ② | ③ | ④ | ⑤ | ☹ |
| 4) 귀하는 어머니로서의 아내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 ① | ② | ③ | ④ | ⑤ | ☹ |

7. 다음은 부부간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각 문항별로 귀 부부가 해당하는 보기에 ✓표 해주십시오.

| 문 항 내 용 | 전혀 그렇지 않다 | 별로 그렇지 않다 | 보통 이다 | 대체로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해당 없음 |
|--|-----------|-----------|-------|---------|--------|-------|
| 1) 사소한 말다툼이 큰 싸움으로 변해 서로 욕설하고 비난하며, 과거의 잘못을 다시 들추면서 싸운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
| 2) 아내는 내 생각이나 기분 혹은 내가 원하는 것을 비난하고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
| 3) 아내는 내 생각과 말을 내가 의도한 것보다도 더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
| 4) 아내는 나를 존중하지 않는 것 같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
| 5) 내 진짜 생각과 느낌 혹은 우리 관계에 대한 요구를 아내에게 말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
| 6) 다른 사람과 사귀거나 결혼하면 어떨까 하고 심각하게 생각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
| 7) 나는 지금 결혼생활에서 외로움을 느낀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
| 8) 우리는 다투면 더 이상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 그 자리를 피해버린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

다음은 귀하의 음주와 흡연 습관에 대한 질문입니다.

8. 귀하는 평소에 술을 얼마나 자주 마십니까? 최근 1년을 기준으로 말씀하여 주십시오.
 ① 최근 1년간 전혀 마시지 않음 ⇒ 11번 문항으로
 ② 월 1회 이하 ③ 월 2~4회 ④ 주 2회~3회 ⑤ 일주일에 4회 이상
9. 술을 마시면 보통 몇 잔정도 마시는 편입니까? 소주, 양주 구분 없이 각각의 술잔으로 계산합니다.
 단, 캔맥주 1개(355cc)는 맥주 1.6잔과 같습니다.
 ① 1잔 또는 2잔 ② 3잔 또는 4잔 ③ 5잔 또는 6잔
 ④ 7잔 또는 9잔 ⑤ 10잔 또는 그 이상
10. 한번의 술자리에서 7잔 이상(또는 맥주 5캔 정도)을 마시는 횟수는 어느 정도입니까?
 ① 전혀 없음 ② 한 달에 1번미만 ③ 한 달에 1번 정도
 ④ 1주일에 1번 정도 ⑤ 거의 매일
11. 귀하는 평소에 담배를 피우십니까?
 ① 피움 ② 피우지 않음 ⇒ 18번 문항으로
12. 귀하는 보통 아침에 일어나서 얼마 만에 담배를 피우십니까?
 ① 5분 이내 ② 6~30분 이내 ③ 31~60분 이내 ④ 한 시간 이후
13. 귀하는 금연 구역에서 담배를 참기가 어려웠던 적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14. 하루 중 담배가 가장 맛있을 때는 언제입니까?
 ① 기상 후 첫 담배 ② 그 외의 담배
15. 하루에 담배를 몇 개비 정도 피우십니까?
 ① 10개비 미만 ② 11~20개비 ③ 21~30개비 ④ 31개비 이상
16. 기상 후 1시간 이내에 피우는 담배가 그 외 시간에 피는 담배보다 더 많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17. 몸이 아파 누워 있어야 하는 경우에도 담배를 피우십니까?
 ① 예 ② 아니오

다음은 귀하의 인구학적 특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18. 귀하는 대한민국 국민입니까?
 ① 예 ⇨
 18-1.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귀화하셨습니까?
 ① 예 ⇨ 18-2번 문항으로 ② 아니오 ⇨ 19번 문항으로
 18-2. 귀화 전 국적은 어느 나라였습니까? _____
 ② 아니오 (국적: _____)

19. 귀하는 평소에 가족과 같이 살고 계십니까?

① 예

⇒ 20번 문항으로

② 아니오

⇨

19-1. 가족과 같이 살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 | |
|--------------------|--------------|
| ① 타지역(해외 포함)에 근무 중 | ② 학업관계 |
| ③ 군복무 | ④ 장기입원, 요양 중 |
| ⑤ 별거 | ⑥ 가출 |
| ⑦ 기타 _____ | |

20. 귀하는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까?

① 예

⇨

20-1. 있다면, 어느 종교입니까?

- | | |
|------------|-------------------|
| ① 불교 | ② 기독교(개신교) |
| ③ 기독교(천주교) | ④ 유교 |
| ⑤ 원불교 | ⑥ 증산교(대순진리회, 증산도) |
| ⑦ 천도교 | ⑧ 대종교 |
| ⑨ 기타 _____ | |

② 아니오

⇒ 21번 문항으로

21. 귀하의 현재 직업은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응답하지 않는 경우 분류가 어려우니, 아래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21-1. 귀하가 현재 일하시는 직장(사업체)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소속되어 있는 지점이나 공장의 이름까지 구체적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 일반 회사인 경우 회사명과 지점명까지, 교사인 경우 근무 학교명까지, 공무원인 경우 중앙부처 또는 시군구명 또는 읍면동사무소까지 기입(예: OO전자 OO공장, OO초등학교)

직장(사업체)명: _____

21-2. 위 직장(사업체)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 직장명으로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알 수 없는 기업체인 경우 제조업, 유통업, 서비스업 등의 업종 기입

직장의 사업 내용(업종): _____

21-3. 위 직장(사업체)에서 귀하가 주로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 사무직인 경우 행정직, 전산직, 기술직 등, 음식점인 경우 조리, 서빙 등, 교사인 경우 과목명까지 기입

주로 하는 일: _____

21-4. 위 직장(사업체)에서 귀하의 직위는 무엇입니까?

※ 프리랜서, 공무원의 경우 급수, 회사원인 경우 평사원/대리/과장/부장 등의 직위, 음식점인 경우 사장/매니저/일반직원 등 직장(사업체) 내 직위: _____

22. 귀하의 현재 종사상 지위는 어떻습니까?

- ① 정규직/상용직(1년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이나 원하면 계속 일할 수 있는 경우)
- ② 비정규직 중 임시직(1개월 이상 1년 미만의 근로계약기간)
- ③ 비정규직 중 일용직(1개월 미만의 근로계약기간 또는 일당제 급여)
- ④ 고용주/자영업자
- ⑤ 무급가족종사자
- ⑥ 기타 _____

♣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자료로 사용하겠습니다.

부록 3. 면접조사용 질문지

ID 

면접조사용

※ 본 조사에 조사된 모든 내용은 통계목적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할 수 없으며,
그 비밀이 보호되도록 통계법(제33조 및 제3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 | | |
|-----------|--|--|---|
| 아동 이름 | | 아동 성별 | ① 남 ② 여 |
| 조사날짜 | ____년 ____월 ____일 | 아동 생일 | ____년 ____월 ____일 |
| 아동 출생순위 | ____째 | 출생순위 변동 사유 | ① 순위 형제 사망 ② 순위 형제 입양 ③ 재혼으로 형제순위 변동 ④ 기타_____ |
| 아동과의 관계 | ① 어머니 ② 아버지 ③ 형·오빠, 언니·누나 ④ 친조부·친조모 ⑤ 외조부·외조모 ⑥ 형제자매의 배우자 ⑦ 고모·삼촌 ⑧ 고모부·숙모 ⑨ 고종사촌·친사촌 ⑩ 이모·외삼촌 ⑪ 이모부·외숙모 ⑫ 이종사촌·외사촌 ⑬ 기타 _____ | | |
| 응답자 변경 여부 | ① 작년과 동일함 ② 작년과 동일하지 않음 | 응답자 성별 | ① 남 ② 여 |
| 응답자 이름 | | 응답자 생년월일 | 양력/음력 ____월 ____일 |
| 응답자 연락처 | 집 전화: _____ 휴대폰: _____ 배우자 휴대폰: _____ 이메일: _____ | | |
| 현주소 | ____시·도 ____군·구 ____동·읍·면 _____ | | |
| 변경사유 | ① 기존 정보 오류 ② 이사 ③ 분가 ④ 합가 | 현주소 이사 날짜 | ____년 ____월 |
| 조사 횟수 | 조사 일시 | 조사 결과 | |
| 1 | __월 __일 : __시 __분 ~ __시 __분 | <input type="checkbox"/> ① 완료 <input type="checkbox"/> ② 미완료 <input type="checkbox"/> ③ 기타() | |
| 2 | __월 __일 : __시 __분 ~ __시 __분 | <input type="checkbox"/> ① 완료 <input type="checkbox"/> ② 미완료 <input type="checkbox"/> ③ 기타() | |
| 조사원 성명 | | 조사원 전화번호 | |

다음은 귀하의 인구학적 특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1. 귀하의 현재 결혼 상태는 다음 중 어느 것에 해당합니까?

- ① 미혼 ⇒ 2번 문항으로
- ② 유배우-초혼 ⇒
- ③ 유배우-재혼 ⇒
- ④ 사별 ⇒
- ⑤ 이혼 ⇒
- ⑥ 별거 ⇒

1-1. 현재의 결혼 상태는 언제부터입니까? **유배우**에 해당하는 경우는 가장 최근의 결혼을 기준으로 응답해주시고, **초혼**인 경우 초혼날짜, **재혼**인 경우 재혼날짜, **사별**인 경우 사별 날짜, **이혼**의 경우 이혼날짜, **별거**인 경우 별거한 날짜를 응답해 주십시오.
_____년 _____월

다음은 귀하의 취업/학업 상태에 대한 질문입니다.

2. 현재 귀하의 취업/학업 상태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두 가지 보기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직장과 학교 병행)는 **지난 6개월간 주로 한 것**으로 응답해주시십시오.

- ※ 육아휴직, 출산휴가, 기타 질병/사고 등 특별한 사유로 **잠시 휴직 중인 경우**도 취업 중에 해당됩니다.
- ※ 시간제로 일하는 경우 또는 가족/친지가 경영하는 사업체에서 일정한 보수 없이 일하는 경우에도 **일주일에 18시간 이상 일하면 취업 중에** 해당됩니다.
- ※ **휴학한 경우**도 학업 중에 해당됩니다.

- ① 취업 중 ⇒ 3번 문항으로
- ② 학업 중 ⇒ 17번 문항으로
- ③ 미취업/미학업 ⇒ 25번 문항으로

다음은 현재 취업 중인 어머니만 답하여 주십시오.

3. 현재 귀하의 취업관련 상태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아래 왼쪽의 보기 ①~②중 하나를 선택하신 후 해당하는 오른쪽 추가 문항에 답해주시십시오.

- ① 휴직 중 ⇒
 - 4. 귀하의 휴직 사유는 무엇입니까?
 ① ○○ 육아휴직 ② ○○ 동생 출산으로 인한 출산/육아휴직
 ③ 기타 _____
 - 5. 귀하의 휴직 시기는 언제입니까?
 ① ○○ 임신 전
 ② ○○ 임신 중(임신__개월) ③ ○○ 출산 후(생후__개월)
 - 6. ○○가 몇 개월이 될 때 직장에 복귀하실 계획이십니까?
 ① 생후 __개월 ⇒ 12번 문항으로
 ② 복귀할 생각이 없음 ⇒ 11번 문항으로
 ③ 잘 모르겠음 ⇒ 12번 문항으로

② 재직 중 ⇨

7. 지난 1년간 휴직을 한 적이 있습니까?
 ① 예 ⇨ 7-1번 문항으로 ② 아니오 ⇨ 8번 문항으로

7-1. 휴직 사유는 무엇입니까?
 ① ○○ 육아휴직 ② ○○ 동생 출산으로 인한 출산/육아휴직
 ③ 기타 _____

7-2. 귀하의 휴직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였습니까?
 _____년 ____월 ~ _____년 ____월

8. 귀하는 평소 일주일에 총 몇 시간을 근무하십니까?
 출퇴근에 걸리는 시간을 제외하여 응답해 주십시오. 단, 업무시간에는 업무성
 회식 등의 시간이 포함됩니다.
 주당 총 _____시간

9. 귀하는 평소 근무지까지 출퇴근하는데 일주일에 총 몇 시간을 소모하십니까?
 주당 총 _____시간 _____분

10. 앞으로의 취업계획은 어떠하십니까?
 ① 현 직장에 계속 근무할 계획임 ⇨ 12번 문항으로
 ② 이직할 계획임 ⇨ 11번 문항으로
 ③ 일을 그만둘 계획임 ⇨ 11번 문항으로
 ④ 기타 _____ ⇨ 12번 문항으로

11. 현재의 직장을 그만 두거나 이직하려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음의 보기 중 하나만 선택해 주십시오.

- ① 아이로 인한 직장에서의 분위기 또는 불이익 때문에 ② 아이를 믿고 맡길 곳이 없어서
- ③ 아이를 맡길 만큼 보수가 넉넉하지 않아서 ④ 직장/학교생활과 아이 양육을 병행하는 것이 힘들어서
- ⑤ 아이를 직접 돌보고 싶어서 ⑥ 가족이 원해서
- ⑦ 다른 일자리나 공부를 시작하기 위해 ⑧ 건강상의 이유로
- ⑨ 일을 하고 싶지 않아서 ⑩ ○○ 동생 임신 또는 출산으로
- ⑪ 기타 _____

12. 귀하의 현재 직업은 작년과 비교하여 볼 때 직장 또는 직위의 변동이 있습니까?

- ① 아니오(변동 없음) ⇨ 13번 문항으로
- ② 직장이 바뀜 ⇨ 12-1번 문항으로
- ③ 직장은 그대로이나, 직위가 바뀜 ⇨ 12-5번 문항으로

12-1. 이직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고용상태 등이 보다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기 위해 ②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일자리를 찾기 위해
- ③ 장래의 발전 가능성이 높은 일자리를 찾기 위해 ④ 자신의 능력이나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찾기 위해
- ⑤ 임금 또는 수입이 많은 일자리를 찾기 위해 ⑥ 출산 및 육아에 장애가 없는 일자리를 찾기 위해
- ⑦ 근무환경이 안전한 일자리를 찾기 위해 ⑧ 업무평가 및 승진이 공정한 일자리를 찾기 위해
- ⑨ 사내 복지가 잘되어 있는 일자리를 찾기 위해 ⑩ 나의 생활터전과 가까운 일자리를 찾기 위해
- ⑪ 기타 _____

12-2. 귀하가 현재 일하시는 직장(사업체)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소속되어 있는 지점이나 공장의 이름까지 구체적으로 응답해주시시오.
 ※ 일반 회사인 경우 회사명과 지점명까지, 교사인 경우 초등/중등/고등학교까지, 공무원인 경우 중앙부처/시군구명/읍면동사무소까지(예: ○○전자 ○○공장, ○○초등학교 혹은 서울시청)
 직장(사업체)명: _____

12-3. 위 직장(사업체)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 직장으로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알 수 없는 중소기업체인 경우 제조업, 유통업, 서비스업 등의 업종 표기 요망
 직장의 사업 내용(업종): _____

12-4. 위 직장(사업체)에서 귀하가 주로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 사무직인 경우 행정직/전산직/기술직, 음식점인 경우 조리/서빙 등, 교사인 경우 영어/수학 등 과목 명 기입
 주로 하는 일: _____

12-5. 위 직장(사업체)에서 귀하의 직위는 무엇입니까?
 ※ 프리랜서, 공무원의 경우 급수, 회사원인 경우 평의원/대리/과장/부장 등의 직위, 음식점인 경우 사장/매니저/일반직원 등
 직장(사업체) 내 직위: _____

13. 귀하의 현재 종사상 지위는 어떻습니까?
 ① 정규직/상용직(1년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이나 원하면 계속 일할 수 있는 경우)
 ② 비정규직 중 임시직(1개월 이상 1년 미만의 근로계약기간)
 ③ 비정규직 중 일용직(1개월 미만의 근로계약기간 또는 일당제 급여)
 ④ 고용주/자영업자
 ⑤ 무급가족종사자
 ⑥ 기타 _____

14. 귀하의 (주된) 일과 관련하여 아래의 항목들에 얼마나 만족하고 계십니까? 아래 왼쪽의 보기 ①과 ②중 하나를 선택하신 후 해당되는 오른쪽 문항에서 본인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곳에 ✓표해주시시오.

| | | 보기 | 매우 불만족 | 불만족 | 보통 | 만족 | 매우 만족 |
|--|---|-------------------|-----------|-----|----|----|----------|
| ① 임금 근로자 | ⇒ | 14-1. 임금 또는 소득 | ① | ② | ③ | ④ | ⑤ |
| | | 14-2. 취업의 안정성 | ① | ② | ③ | ④ | ⑤ |
| | | 14-3. 하고 있는 일의 내용 | ① | ② | ③ | ④ | ⑤ |
| | | 14-4. 근로환경 | ① | ② | ③ | ④ | ⑤ |
| | | 14-5. 근로시간 | ① | ② | ③ | ④ | ⑤ |
| | | 14-6. 개인의 발전가능성 | ① | ② | ③ | ④ | ⑤ |
| | | 14-7. 의사소통 및 인간관계 | ① | ② | ③ | ④ | ⑤ |
| | | 14-8. 인사고과의 공정성 | ① | ② | ③ | ④ | ⑤ |
| | | 14-9. 복지후생 | ① | ② | ③ | ④ | ⑤ |
| ② 비임금 근로자 (개인사업, 프리랜서, 자영업 혹은 농림수산업종사자, 무급가족종사자) | ⇒ | 14-1. 임금 또는 소득 | ① | ② | ③ | ④ | ⑤ |
| | | 14-2. 취업의 안정성 | ① | ② | ③ | ④ | ⑤ |
| | | 14-3. 하고 있는 일의 내용 | ① | ② | ③ | ④ | ⑤ |
| | | 14-4. 근로환경 | ① | ② | ③ | ④ | ⑤ |
| | | 14-5. 근로시간 | ① | ② | ③ | ④ | ⑤ |
| | | 14-6. 개인의 발전가능성 | ① | ② | ③ | ④ | ⑤ |
| | | 14-7. 의사소통 및 인간관계 | ① | ② | ③ | ④ | ⑤ |

15. 그렇다면 귀하의 (주된) 일자리에 대해 전반적으로 얼마나 만족하고 계십니까?

- ① 매우 불만족스럽다 ② 불만족스럽다 ③ 보통이다 ④ 만족스럽다 ⑤ 매우 만족스럽다

→14번 ②번 응답자는 30번으로

16. 다음은 출산휴가, 육아휴직, 보육비 지원, 시차출근제 등 직장에서 시행 가능한 출산 및 양육 지원제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아래의 보기 중 귀하의 현재 직장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와 귀하가 이를 이용해본 경험이 있는 경우 ✓표해주시시오. 또한 ○○에 대해서 이용경험이 있는 경우, 그에 대한 만족 정도에 대하여 해당하는 보기를 골라주십시오. 단, 귀하께서 프리랜서이거나 무급으로 가족업에 종사하는 경우 등은 취업 중임에도 본 문항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구 분 | 세부 정책 | 시행 여부 | 이용 여부 | 이용 만족도 | | | | |
|-------------|--------------------|-----------------|-----------|--------|---------|----|--------|-------|
| | | | | 매우 불만족 | 대체로 불만족 | 보통 | 대체로 만족 | 매우 만족 |
| 휴가 및 휴직 | 16-1. 여성의 출산휴가 | ① 예 ② 아니오 ③ 잘모름 | ① 예 ② 아니오 | ① | ② | ③ | ④ | ⑤ |
| | 16-2. 여성의 육아휴직 | ① 예 ② 아니오 ③ 잘모름 | ① 예 ② 아니오 | ① | ② | ③ | ④ | ⑤ |
| | 16-3. 남성의 출산휴가 | ① 예 ② 아니오 ③ 잘모름 | | | | | | |
| | 16-4. 남성의 육아휴직 | ① 예 ② 아니오 ③ 잘모름 | | | | | | |
| 보육지원 | 16-5. 직장 보육시설 | ① 예 ② 아니오 ③ 잘모름 | ① 예 ② 아니오 | ① | ② | ③ | ④ | ⑤ |
| | 16-6. 보육비 지원 | ① 예 ② 아니오 ③ 잘모름 | ① 예 ② 아니오 | ① | ② | ③ | ④ | ⑤ |
| 모성보호 | 16-7. 수유실 설치 | ① 예 ② 아니오 ③ 잘모름 | ① 예 ② 아니오 | ① | ② | ③ | ④ | ⑤ |
| | 16-8. 유급수유시간 | ① 예 ② 아니오 ③ 잘모름 | ① 예 ② 아니오 | ① | ② | ③ | ④ | ⑤ |
| 유연성 있는 노동환경 | 16-9. 시차 출근제 | ① 예 ② 아니오 ③ 잘모름 | ① 예 ② 아니오 | ① | ② | ③ | ④ | ⑤ |
| | 16-10. 대체인력풀 운영 | ① 예 ② 아니오 ③ 잘모름 | ① 예 ② 아니오 | ① | ② | ③ | ④ | ⑤ |
| | 16-1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① 예 ② 아니오 ③ 잘모름 | ① 예 ② 아니오 | ① | ② | ③ | ④ | ⑤ |

※ 여성의 출산휴가: 임신 중의 여성에게 산전과 산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주는 것(근로기준법 제74조의 산전후휴가)
 남성의 출산휴가: 배우자의 출산에 따라 남성에게 3일의 휴가를 주는 것
 육아휴직: 생후 1년 미만의 영유아(2008.1.1 이후 출생한 영유아는 만6세까지)를 가진 남성 또는 여성 근로자가 그 영유아의 양육을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것(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 육아휴직)
 시차출근제: 근로자가 사정에 맞게 출퇴근 시간을 정하는 것(근로기준법 제52조의 선택적 근로시간제)
 유급수유시간: 생후 1년 미만의 영아를 가진 여자 근로자가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 근무 중 수유시간을 부여받는 것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육아휴직 대신 최대 1년간 주당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로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것(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2항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단, 육아휴직과 근로시간 단축의 총 사용기간은 1년을 넘을 수 없음

→ 30번 문항으로

다음은 현재 학업 중인 어머니만 답하여 주십시오.

17. 현재 학업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아래 왼쪽의 보기 ①, ② 중 하나를 선택하신 후 해당하는 오른쪽 문항에 답해 주십시오.

① 재학 중 ⇒

18. 귀하께서는 지난 1년간 휴학한 적이 있습니까?

- ① 예 → 18-1번 문항으로
 ② 아니오 → 19번 문항으로

18-1. 귀하께서 휴학을 하셨던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음의 보기 중 하나만 선택해 주십시오.

- ①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서
- ② 경제적 부담 때문에
- ③ 학업과 아이 양육을 병행하는 것이 힘들어서
- ④ 아이를 직접 돌보고 싶어서
- ⑤ 가족이 원해서
- ⑥ 다른 일자리나 공부를 시작하기 위해
- ⑦ 건강상의 이유로
- ⑧ 공부를 하고 싶지 않아서
- ⑨ ○○ 동생 임신 또는 출산으로
- ⑩ 기타 _____

18-2. 귀하의 휴학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_____년 _____월 ~ _____년 _____월

19. 귀하는 평소 학업에 할애하는 시간이 총 몇 시간입니까? 일주일에 학업에 총 몇 시간을 할애하시는지 등학교에 걸리는 시간을 제외하여 응답해 주십시오.
 주당 총 _____시간

20. 귀하는 평소 등학교하는데 일주일에 총 몇 시간을 소모하십니까?
 주당 총 _____시간 _____분

⇒ 30번 문항으로

② 휴학 중 ⇒

21. 언제 휴학하셨습니다?
 ① ○○ 임신 전 ② ○○ 임신 중 (임신 __개월) ③ ○○ 출산 후 (생후 __개월)

22. 귀하께서 휴학을 하신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음의 보기 중 하나만 선택해 주십시오.

- ①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서
- ② 경제적 부담 때문에
- ③ 학업과 아이 양육을 병행하는 것이 힘들어서
- ④ 아이를 직접 돌보고 싶어서
- ⑤ 가족이 원해서
- ⑥ 다른 일자리나 공부를 시작하기 위해
- ⑦ 건강상의 이유로
- ⑧ 공부를 하고 싶지 않아서
- ⑨ ○○ 동생 임신 또는 출산으로
- ⑩ 기타 _____

23. ○○가 몇 개월이 될 때 학업에 복귀하실 계획이십니까?
 ① 학업에 복귀하지 않을 생각임 ⇒ 24번 문항으로
 ② 생후 _____개월 ⇒ 30번 문항으로
 ③ 잘 모르겠음 ⇒ 30번 문항으로

24. 학업을 그만두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음의 보기 중 하나만 선택해 주십시오.

- ①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서
- ② 경제적 부담 때문에
- ③ 학업과 아이 양육을 병행하는 것이 힘들어서
- ④ 아이를 직접 돌보고 싶어서
- ⑤ 가족이 원해서
- ⑥ 다른 일자리나 공부를 시작하기 위해
- ⑦ 건강상의 이유로
- ⑧ 공부를 하고 싶지 않아서
- ⑨ ○○ 동생 임신 또는 출산으로
- ⑩ 기타 _____

⇒ 30번 문항으로

다음은 현재 미취업 또는 미취학 중인 어머니만 답하여 주십시오.

25. 언제 일 또는 학업을 그만두셨습니까? (가장 최근을 기준으로 대답해주시시오.)

- ① 결혼 후 지금까지 직장 또는 학교에 다닌 적이 없음 → 29번 문항으로
- ② ○○ 임신 전에 그만 둠 → 29번 문항으로
- ③ ○○ 임신 중에 그만 둠 (임신 ____개월) → 29번 문항으로
- ④ ○○ 출산 후에 그만 둠 →

26. ○○가 몇 개월이 될 때 그만두셨습니까?

생후 _____개월

27. 그만 둘 당시 취업 또는 학업 상태는 어떠하였습니까?

- ① 휴학 또는 방학 중 ② 학업 중
- ③ 출산휴가 중 ④ 육아휴직 중
- ⑤ 재직 중 ⑥ 기타 _____

→ 28번 문항으로

28. 일 또는 학업을 그만 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음의 보기 중 하나만 선택해주시시오.

- ① 직장에서의 분위기 또는 불이익 때문에 ② 아이를 믿고 맡길 곳이 없어서
- ③ 아이를 맡길 만큼 보수가 넉넉하지 않아서 ④ 직장/학교생활과 아이 양육을 병행하는 것이 힘들어서
- ⑤ 아이를 직접 돌보고 싶어서 ⑥ 가족이 원해서
- ⑦ 다른 일자리나 공부를 시작하기 위해 ⑧ 건강상의 이유로
- ⑨ 일 또는 공부를 하고 싶지 않아서 ⑩ ○○ 동생 임신 또는 출산으로
- ⑪ 기타 _____

29. 앞으로의 취업 또는 취학 관련 계획은 어떠하십니까?

- ① 계획이 전혀 없음 ② 6개월 이내 취업 또는 취학할 계획임
- ③ 6개월~1년 이내에 취업 또는 취학할 계획임 ④ 1년~2년 이내에 취업 또는 취학할 계획임
- ⑤ 2년~3년 이내에 취업 또는 취학할 계획임 ⑥ 3년~5년 이내에 취업 또는 취학할 계획임
- ⑦ 기타 _____

다음은 어머니님이 자녀를 양육하는 특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30. 귀하는 지난 조사에서 ○○에게 모유수유를 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습니다. 현재도 모유수유를 하고 계십니까?

- ① 예 → 33번 문항으로
- ② 아니오

31. 모유수유를 언제까지 하셨습니까? 생후 _____개월 까지

32. 모유수유를 그만두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젖이 나오질 않아서 ② 젖을 떼어야 할 시기가 되어서
- ③ 아기가 젖을 잘 빨지 못해서 ④ 직장/학교생활 등으로 낮 시간 동안 수유가 어려워서
- ⑤ 육체적으로 힘들어서 ⑥ 질병, 약 복용 등 의사의 권유로
- ⑦ 기타 _____

33. 귀하는 ○○를 돌보는데 일주일에 총 몇 시간을 할애하십니까?

주중: 총 ____시간 ____분 주말: 총 ____시간 ____분

다음은 ○○를 돌보시는 분 또는 ○○를 맡기는 기관에 대한 질문입니다.

39. 지난 조사 이후 ○○를 **낮 시간(오전 8시~오후 8시)동안 주로 돌보아준 대리양육자**를 개인 대리양육자, 보육시설, 반일제 이상 학원인지를 구분하여 월별로 응답해 주십시오. 먼저 작년에는 ○○를 돌보아준 대리양육자가 있었나요? 월 중에 대리양육자가 바뀐 경우는 해당 달에 가장 많은 일수를 차지한 서비스를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부모님이 직접 ○○를 돌보신 경우는 미이용에 응답해 주십시오. (중복응답 가능)

※ 대리양육자는 **주중의 낮 시간 동안 부모보다 아기를 가장 많은 시간 돌보는 주된 양육자**로, 조부모, 기타 친인척, 유급·무급 도우미, 보육시설 등의 이용 기관 교사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특히 보육시설이나 반일제 이상 학원(영어유치원, 놀이학교 등)과 같은 **기관의 경우는 주중에 해당하는 3일 이상 하루 반나절 이상을 이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 2009년 | 2010년 |
|-----|---|---|
| 1월 | | ① 개인대리양육자 ② 보육시설 ③ 반일제이상학원 ④ 기타____ ⑤ 미이용 |
| 2월 | | ① 개인대리양육자 ② 보육시설 ③ 반일제이상학원 ④ 기타____ ⑤ 미이용 |
| 3월 | | ① 개인대리양육자 ② 보육시설 ③ 반일제이상학원 ④ 기타____ ⑤ 미이용 |
| 4월 | | ① 개인대리양육자 ② 보육시설 ③ 반일제이상학원 ④ 기타____ ⑤ 미이용 |
| 5월 | | ① 개인대리양육자 ② 보육시설 ③ 반일제이상학원 ④ 기타____ ⑤ 미이용 |
| 6월 | ① 개인대리양육자 ② 보육시설 ③ 반일제이상학원 ④ 기타____ ⑤ 미이용 | ① 개인대리양육자 ② 보육시설 ③ 반일제이상학원 ④ 기타____ ⑤ 미이용 |
| 7월 | ① 개인대리양육자 ② 보육시설 ③ 반일제이상학원 ④ 기타____ ⑤ 미이용 | ① 개인대리양육자 ② 보육시설 ③ 반일제이상학원 ④ 기타____ ⑤ 미이용 |
| 8월 | ① 개인대리양육자 ② 보육시설 ③ 반일제이상학원 ④ 기타____ ⑤ 미이용 | ① 개인대리양육자 ② 보육시설 ③ 반일제이상학원 ④ 기타____ ⑤ 미이용 |
| 9월 | ① 개인대리양육자 ② 보육시설 ③ 반일제이상학원 ④ 기타____ ⑤ 미이용 | ① 개인대리양육자 ② 보육시설 ③ 반일제이상학원 ④ 기타____ ⑤ 미이용 |
| 10월 | ① 개인대리양육자 ② 보육시설 ③ 반일제이상학원 ④ 기타____ ⑤ 미이용 | ① 개인대리양육자 ② 보육시설 ③ 반일제이상학원 ④ 기타____ ⑤ 미이용 |
| 11월 | ① 개인대리양육자 ② 보육시설 ③ 반일제이상학원 ④ 기타____ ⑤ 미이용 | ① 개인대리양육자 ② 보육시설 ③ 반일제이상학원 ④ 기타____ ⑤ 미이용 |
| 12월 | ① 개인대리양육자 ② 보육시설 ③ 반일제이상학원 ④ 기타____ ⑤ 미이용 | ① 개인대리양육자 ② 보육시설 ③ 반일제이상학원 ④ 기타____ ⑤ 미이용 |

40. 이달 현재 낮 시간(오전8시~오후8시)동안 ○○를 주로 돌보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달 중에 주로 돌보는 사람이 바뀐 경우는 응답일을 기준으로 이달 낮 시간동안 가장 많이 ○○를 돌본 사람을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 ① 어머니 ➡ 41-1번 문항으로
- ② 아버지 ➡ 41-1번 문항으로
- ③ 부모외의 대리양육자 또는 대리양육기관(보육시설, 반일제 이상 학원 포함) ➡ 42번 문항으로

40-1. 대리양육기관이나 대리양육자를 이용하지 않고 부모님이 ○○를 직접 돌보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이용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 ② 이용하고 싶지만 아이가 너무 어려서
- ③ 주변에 마음에 드는 기관이나 대리양육자가 없어서
- ④ 비용이 부담돼서
- ⑤ 직접 아이를 키우고 싶어서
- ⑥ 기관이나 대리양육자와 시간이 맞지 않아서
- ⑦ 아이가 싫어해서
- ⑧ 아이가 질병이나 장애가 있어서
- ⑨ 아이가 다른 양육자나 기관에 적응하지 못해서
- ⑩ 기타 _____

40-2. 부모님이 ○○를 돌보는 데 있어 배우자 외에 도움을 주시는 분이 있습니까? 단, 도움 주시는 분에게 양육에 대한 사례로 도움에 대한 현금 또는 현물을 정기적으로 드리는 경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① 없음
- ② 있음 ☞ _____명

| | |
|------------------|---|
| 40-2-1. 도움 주는 분 | ① 친할머니 ② 친할아버지 ③ 외할머니 ④ 외할아버지 ⑤ 아기의 손위 형제·자매 ⑥ 기타 친인척(아동과의 관계 : _____) ⑦ 친구 또는 이웃 ⑧ 파출부 등 가사를 주로 담당하는 가사 도우미 ⑨ 기타 _____ |
| 40-2-2. 동거 여부 | ① 동거 ② 비동거(집으로부터 _____분 거리에 거주) |
| 40-2-3. 도움 받는 시간 | 주당 _____ 시간 |

41. ○○는 지난 1년간 몇 명의 대리양육자 혹은 몇 개의 대리양육기관을 이용하였습니까? (중복응답 가능)

- ① 개인 대리양육자 _____명
- ② 기관 ☞ _____

| |
|--|
| 41-1. 기관 ① 보육시설 _____개 기관 ② 반일제 이상 학원(놀이학교, 영어유치원 등) _____개 기관 ③ 기타 _____개 기관 |
|--|

⇒ 41-1번 응답 후, 40번 ①, ②번 응답자는 67번 문항으로, 40번 ③번 응답자는 42번으로

42. 이달 현재 낮 시간(오전 8시~오후 8시)동안 대리양육을 목적으로 ○○를 주로 돌보는 사람(혹은 기관)은 누구입니까? (중복응답 가능)

- ① 개인대리양육
⇒ 42-1번 문항으로
- ② 보육시설
⇒ 42-2번 문항으로
- ③ 반일제 이상 학원
⇒ 42-3번 문항으로
- ④ 선교원 등 기타 기관
⇒ 42-3번 문항으로

42-1. 개인대리양육을 이용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보기 중 한 가지만 선택하여 주십시오.

- ① 아이가 너무 어려서 기관에 적응하기 힘들까봐
- ④ 원하는 시간에 이용할 수 있어서
- ② 아이의 나이가 너무 어려서 기관에서 받아주지 않으므로
- ⑤ 개인대리양육이 더 믿음이 가고 안심이 되어서
- ③ 기관이용에 비해서 비용이 적어서
- ⑥ 보육시설 또는 학원의 환경이 열악하여서
- ⑦ 한 사람이 여러 아이를 같이 돌보는 것이 불안하여서
- ⑧ 주변에 이용할만한 기관이 없어서
- ⑨ 기타 _____

⇒ 43번 문항으로

42-2. 대리양육자나 학원을 보내지 않고 보육시설에서 ○○를 돌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개인 대리양육자나 마땅한 학원을 찾기 힘들어서
- ② 개인대리양육자나 학원이용비용보다 부담이 덜 되어서
- ③ 개인대리양육자나 학원을 믿을 수 없어서
- ④ 또래와 어울릴 수 있으므로
- ⑤ 아이에게 보육시설이 교육적으로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 ⑥ 남들이 보내니까
- ⑦ 아이가 원해서
- ⑧ 집에서 가까워서
- ⑨ 기타 _____

⇒ 52번 문항으로

- 42-3. 대리양육자나 보육시설을 보내지 않고 반일제 이상 학원이나 선교원 등 기타 기관 에서 ○○를 돌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개인 대리양육자나 마땅한 보육시설을 찾기 힘들어서
 - ② 개인대리양육자나 보육시설 이용비용보다 부담이 덜 되어서
 - ③ 개인대리양육자나 보육시설을 믿을 수 없어서
 - ④ 또래와 어울릴 수 있으므로
 - ⑤ 교육내용이 마음에 들어서
 - ⑥ 남들이 보내니까
 - ⑦ 아이가 원해서
 - ⑧ 집에서 가까워서
 - ⑨ 기타 _____

⇒ 52번 문항으로

- 42-4. 둘 이상의 기관 혹은 대리양육자를 이용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아이가 너무 어려서 장시간 동안 기관에 있기 힘들까봐
 - ② 개인 대리양육자의 장시간 이용비용이 부담되어서
 - ③ 기관 이용 시간이 제한되어서
 - ④ 아이가 개인 대리양육자와 하루 종일 있기 심심해해서
 - ⑤ 개인 대리양육자가 하루 종일 아이를 돌보는 것을 힘들어해서
 - ⑥ 아이의 전인적 발달을 위하여
 - ⑦ 특기교육을 위하여
 - ⑧ 기타 _____

⇒ 42번 문항에서 ①을 응답한 경우는 43번으로, 그 외는 52번 문항으로

다음은 부모님을 대신하여 친인척이나 도우미를 포함한 개인 대리양육자가 대상 아기를 돌보는 가구(개인 양육지원 서비스 이용 가구)만 응답해 주십시오.
개인 대리양육자와 보육시설은 모두 이용하는 가구도 응답하여 주십시오.

43. 부모를 대신하여 낮 시간동안 ○○를 주로 돌보는 분은 누구입니까?
- ① 친할머니 ⇒ 45번 문항으로 ② 친할아버지 ⇒ 45번 문항으로
 - ③ 외할머니 ⇒ 45번 문항으로 ④ 외할아버지 ⇒ 45번 문항으로
 - ⑤ 기타 친인척 (아동과의 관계: _____) ⇒ 45번 문항으로
 - ⑥ 베이비시터, 이웃탁아모, 보모 등 아기를 전담해서 돌보는 비혈연 도우미 ⇒ 44번 문항으로
 - ⑦ 파출부 등 가사와 육아를 함께 담당하는 도우미 ⇒ 44번 문항으로
 - ⑧ 기타(_____) ⇒ 44번 문항으로
44. 이분은 어떤 경로로 아시게 되었습니까?
- ※ 온라인상으로 업체를 검색한 후 해당업체를 이용한 경우는 ③번이 아니라, ⑤번에 해당함.
- ① 평소 알던 사람임 ② 주변의 소개로
 - ③ 온라인상의 구인·구직 광고로(구인구직 사이트, 정보공유 커뮤니티 등)
 - ④ 오프라인상의 구인·구직 광고로(지역신문, 아파트 전단지 등)
 - ⑤ 업체, 인력전문기관 등의 소개로 ⑥ 기타 _____
45. 이분은 어디에 사십니까?
- ① 함께 살고 있음 ② 아지만 이분 집에서 살고 있음
 - ③ 우리 집으로 출퇴근을 하고 있음 ④ 아기를 이분 집에 낮 시간동안 맡기고 있음
 - ⑤ 기타 _____
46. 이분에게 ○○를 맡기기 시작한 시기는 언제입니까? 생후 _____개월

47. 현재 이분은 ○○를 일주일에 보통 며칠 동안 돌보십니까?
 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②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③ 일주일 내내 ④ 일주일에 며칠만 (_____일)
48. 평상시 이분은 주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를 돌보십니까? 함께 살면서 대리양육자가 **전적으로 양육을 하는 경우는 아침에 아기가 일어나서 저녁에 자는 시간까지를** 응답해주시시오.
 (오전/오후) _____시 _____분부터 (오전/오후) _____시 _____분 까지

49. 이분에게 ○○를 돌보는데 대한 비용을 지불하십니까?
 ① 정기적으로 현금 지불 ➔ 49-1번 문항으로
 ② 비정기적으로 현금 지불 ➔ 49-1번 문항으로
 ③ 현물로 지불 ➔ 49-2번 문항으로
 ④ 숙식만 제공 ➔ 50번 문항으로
 ⑤ 기타 _____ ➔ 50번 문항으로

49-1. 이분에게 ○○를 돌보는데 지불하는 비용은 얼마입니까? 단, 아이 양육과 관계없이 대리양육자가 귀덕 으로부터 받는 생활비 또는 용돈은 제외하여 답해주시시오. 비정기적으로 지불하는 경우 현 대리양육자 가 아기를 돌보기 시작한 이후 지불한 금액의 월평균으로 답해주시시오.
 월평균 _____만원 ➔ 49-3번 문항으로

49-2. 이분에게 ○○를 돌보는데 대한 비용을 현물로 지급하는 경우 이를 현금으로 환산하여 금액의 월평균을 내 주십시오. 월평균 _____만원

49-3. 이분 이외에 ○○를 돌보는데 다른 분의 도움을 받아 추가적으로 비용을 지불하십니까? (예를 들어 육아 도우미가 퇴근한 이후 친정어머니가 저녁시간에 ○○를 돌보는 경우 등) 추가 비용은 얼마입니까? 추가 비용이 들지 않는 경우는 0원으로 응답하여 주십시오.
 월평균 _____만원

➔ 49-1번~49-3번 응답 값이 모두 "0"이면 50문항으로

49-4. 귀 덕의 생활수준에 비추어볼 때, 현재 ○○의 개인 대리양육에 드는 총 비용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현물을 지급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① 전혀 부담되지 않음 ② 크게 부담되지 않음 ③ 적당함
 ④ 부담되는 편임 ⑤ 매우 부담됨

50. 지금 ○○를 돌보는 대리양육자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① 매우 불만족 ② 비교적 불만족 ③ 보통
 ④ 비교적 만족 ⑤ 매우 만족

51. 지금 ○○를 돌보는 대리양육자의 특성에 대해 응답해주시시오.

| 특성 | 보기 | | |
|--------------|---|---------|--------|
| 51-1. 성별 | ① 남자 | ② 여자 | |
| 51-2. 최종학력 | ① 중졸이하 | ② 고졸 | ③ 전문대졸 |
| | ④ 대졸 | ⑤ 대학원이상 | ⑥ 잘 모름 |
| 51-3. 결혼상태 | ① 미혼 | ② 결혼 | ③ 이혼 |
| | ④ 사별 | ⑤ 잘 모름 | |
| 51-4. 국적 | ① 한국인 ② 조선족 ③ 기타 외국인 (국가: _____) | | |
| 51-5. 자녀양육경험 | ① 있음 | ② 없음 | ③ 잘 모름 |

➔ 42번에서 ①만 응답한 경우 67번, ②, ③, ④를 응답한 경우 52번 문항으로

다음은 ○○가 이용하는 기관 또는 프로그램 및 기관 이용에 관한 문항입니다.

67. 지난 조사 이후 ○○가 주기적으로 다닌 프로그램이나 기관이 있다면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사의 가정방문, 부모님이나 기타 아기를 돌보는 성인이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 등을 모두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십시오. (중복응답 가능)

단, 보육시설, 반일제이상학원(영어유치원, 놀이학교 등)에서 받고 있는 특별활동 프로그램은 제외하고 응답하여 주십시오.

① 참여프로그램 없음

② 참여프로그램 있음 ⇨
_____개

| 67-1. 프로그램 명 | _____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7-2. 프로그램 내용 | ① 미술 ② 음악 ③ 체육 ④ 과학 ⑤ 수학 ⑥ 한글(국어) ⑦ 컴퓨터 ⑧ 교구 이용프로그램 ⑨ 한자 ⑩영어 ⑪기타 외국어_____ ⑫ 통합(위의 내용 중 2개 이상을 같은 비중으로 함께 하는 프로그램) ⑬ 기타 _____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7-3. 진행 방식 | ① 우리 아기만 개별로 진행 ② 다른 아기들과 함께 진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7-4. 장소 | ① 집(자택 외 다른 아기들의 집포함) ② 시청·구청·구청·교육청 등의 공공기관 ③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 ④ 기타 비영리 기관 (도서관, 복지관, 건강가정지원센터, 지역아동센터 등) ⑤ 백화점/마트 등의 사설 문화센터 ⑥ 사설 학원(짐보리, 발레, 피아노학원 등) ⑦ 종교단체, 사회단체 ⑧ 기타_____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7-5. 학습지 이용 여부 | ① 이용함 ② 이용하지 않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7-6. 교사유무 | ① 학습지 교사가 있음 ② 교사 없이 부모가 진행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7-7. 월별 참여횟수 | _____ 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7-8. 회별 참여시간 | _____ 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7-9. 월별 비용 | _____ 만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7-10. 참여 기간 (해당 월에 체크) | <table border="1"> <thead> <tr> <th></th> <th>1월</th> <th>2월</th> <th>3월</th> <th>4월</th> <th>5월</th> <th>6월</th> <th>7월</th> <th>8월</th> <th>9월</th> <th>10월</th> <th>11월</th> <th>12월</th> </tr> </thead> <tbody> <tr> <td>2009년</td> <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 </tr> <tr> <td>2010년</td> <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 </tr> </tbody> </table> |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2009년 | | | | | | | | | | | | | 2010년 | | | | | | | | | | | | |
|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09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10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감각·조작 프로그램은 퍼즐, 블록, 끼우기, 레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의미함. 통합 프로그램은 개별 교과목만 하는 것이 아닌 여러 내용을 통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의미함. 예를 들어, 체육 프로그램 진행을 위해 수업 초반에 노래로 주의집중을 하는 것은 음악과 체육의 통합으로 볼 수 없음.

68. 다음은 ○○의 영어 학습에 관한 질문입니다. 가정에 가지고 있는 영어 학습 관련 자료의 종류와 개수, 함께 하는 사람, 실시횟수와 시간, 구입에 드는 비용에 대하여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프로그램이나 기관, 보육시설이나 학원 등 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영어교육에 관한 사항은 제외하고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 |
|--|--|---|--|--|
| 69-1. 귀댁에서 ○○의 영어능력 향상을 위해 이용하고 있는 자료는 다음 중 무엇입니까? (중복응답 가능) | 69-2. 귀하께서 ○○의 영어능력 향상을 위해 자료를 최초로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는 언제입니까? | 69-5. 영어능력 향상을 위한 위 자료이용은 누구와 함께 진행합니까? | 69-3. ○○의 영어능력 향상을 위한 자료를 구입 또는 이용하는 데 지출하는 비용은 월평균 얼마입니까? | 69-4. ○○의 영어능력 향상을 위해 주당 영어 관련 자료를 이용하는 시간은 몇 시간입니까? |
| | 생후 _____ 개월 | ① 부모 ② 형제/자매 ③ 대리 양육자 ④ ○○ 혼자 ⑤ 기타(_____) ⑥ 비 해당 | 월 평균 _____ 원 | 주당 총 _____시간 _____분 |
| ① 책 | | | | |
| ② 그림카드 | | | | |
| ③ 그림판 | | | | |
| ④ 보드게임 | | | | |
| ⑤ 장난감 | | | | |
| ⑥ TV프로그램 | | | | |
| ⑦ 오디오테이프, CD | | | | |
| ⑧ 비디오테이프, DVD | | | | |
| ⑨ 인터넷 콘텐츠 | | | | |
| ⑩ 기타() | | | | |
| ⑪ 없음 → 69번 문항으로 | | | | |

※ 아이를 위한 테이프 활용, DVD 시청, TV영어프로그램 시청 등이 모두 포함

69. ○○가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주중 반나절 이상을 주당 3일 이상 이용할 수 있는 기관으로는 보육시설, 유치원, 유아 대상 영어 학원(영어유치원), 놀이학교, 선교원, 기타 미술 또는 태권도 등의 각종 학원 등 여러 유형이 있습니다. 다음은 ○○가 앞으로 이용할 기관에 관련한 문항입니다. 올해에는 다음 기관 중 ○○를 보내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보내실 계획이시면 몇 월부터 몇 월까지인가요? ○○가 3세가 되는 2010년에는 다음 기관 중 ○○를 보내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보내실 계획이시면 몇 월부터 몇 월까지인가요? (7세까지 반복하여 질문) 두 기관 이상을 계획 중인 경우는 1순위로 고려하시는 기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 ※ ④ 놀이학교 : 위즈아일랜드, 하바 등으로 보통 3세부터 이용이 가능하며, 일반 유치원이나 학원보다 고가임
- ⑥ 미술, 태권도 등의 각종 학원 : 짐보리 등 각종 사설기관은 대부분 기타 학원에 해당함
- ⑦ 기타 : YMCA 아گی스포츠탄 등
- ※ 4세 이하는 '②유치원' 응답 불가

| 2010년(3세) | |
|-----------|--|
| 5월 | ① 보육시설 ② 유치원 ③ 영어유치원 ④ 놀이학교 ⑤ 선교원 ⑥ 미술, 태권도 등의 각종 학원 ⑦ 기타 기관 _____ ⑧ 미이용 ⑨ 잘모르겠음 |
| 6월 | ① 보육시설 ② 유치원 ③ 영어유치원 ④ 놀이학교 ⑤ 선교원 ⑥ 미술, 태권도 등의 각종 학원 ⑦ 기타 기관 _____ ⑧ 미이용 ⑨ 잘모르겠음 |

다음은 귀 가구의 경제적 특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어머니께서 응답하시기 어려운 경우는 다른 식구의 도움을 받아도 무방합니다.

70. 귀댁의 지난 1년 동안의 월 평균 가구소득은 얼마입니까?

월 평균 _____ 만원

※ 가구소득: 근로소득, 금융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 이전소득, 기타소득 등을 모두 포함하며, 이와 같은 소득을 모든 가구원에 대해 합산한 것을 지칭함. 단, 소득세, 주민세, 재산세, 이자소득세 등을 비롯하여 국민연금, 의료보험료 등을 제외한 **실수령액**

70-1. (무응답일 경우), 그럼 귀 댁의 월평균 가구소득은 다음 중 어디에 가깝습니까?

- | | |
|----------------|---------------|
| ① 100만원 이하 | ② 101만원~200만원 |
| ③ 201만원~300만원 | ④ 301만원~400만원 |
| ⑤ 401만원~500만원 | ⑥ 501만원~700만원 |
| ⑦ 701만원~800만원 | ⑧ 801만원~900만원 |
| ⑨ 901만원~1000만원 | ⑩ 1000만원 이상 |

71. 주택, 건물, 임야 또는 토지 등 귀댁에서 소유하신 부동산의 총액은 얼마입니까?

시가 _____ 만원

71-1. (무응답일 경우), 그럼 귀 댁에서 소유하신 부동산의 총액은 다음 중 어디에 가깝습니까?

- | | |
|-----------------|-----------------|
| ① 1000만원 이하 | ② 1001만원~3000만원 |
| ③ 3001만원~5000만원 | ④ 5001만원~7000만원 |
| ⑤ 7001만원~1억원 | ⑥ 1억 1만원~2억 |
| ⑦ 2억 1만원~3억 | ⑧ 3억 1만원~5억 |
| ⑨ 5억 1만원~10억 | ⑩ 10억 이상 |

72. 은행예금, 저축성 보험, 주식, 채권, 타지 않은 계, 빌려준 돈 등의 금융자산은 얼마입니까?

전월세 보증금 또한 포함하여 응답하여 주십시오.

※ 단, 전월세 보증금에는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임대하고 받으신 임대보증금도 포함하여 말씀하여 주십시오.

총 _____ 만원

72-1. (무응답일 경우), 그럼 귀 댁에서 소유하신 금융자산의 총액은 다음 중 어디에 가깝습니까?

- | | | |
|-----------------|-----------------|-----------------|
| ① 1000만원 이하 | ② 1001만원~3000만원 | ③ 3001만원~5000만원 |
| ④ 5001만원~7000만원 | ⑤ 7001만원~1억원 | ⑥ 1억 1만원~2억 |
| ⑦ 2억 1만원~3억 | ⑧ 3억 1만원~5억 | ⑨ 5억 1만원~10억 |
| ⑩ 10억 이상 | | |

73. 귀댁은 부채가 있습니까? 있다면 갚아야 할 부채의 총액과 월 상환금은 각각 얼마입니까?

※ 전월세 보증금에는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임대하고 받으신 임대보증금도 포함하여 말씀하여 주십시오.

총 부채 _____ 만원 월 상환금(원금 또는 이자) _____ 만원

74. 지난 12개월간 귀댁의 소비성 지출은 월평균 얼마나 되었습니까? 소비성 지출에는 식비, 주거비, 보육·교육비, 의료비, 현물 구입비, 기타 잡비 등이 포함됩니다.

월평균 _____ 만원

75. 월평균 소비성 지출 중 ○○를 위해 지난 12개월간 지출한 비용은 월평균 얼마나 되었습니까?

월평균 _____ 만원

다음은 귀 가구의 가구원에 대한 질문입니다.

83. ○○는 귀 댁에서 귀하와 함께 살고 있습니까?

① 그렇다

② 취업, 건강 등의 이유로 다른 집(조부모 등 친인척의 가구)에서 주로 살고 있다

※ 주중에 다른 집에서 지내며 주말에만 부모님과 지내는 등 다른 집에서 살고 있으며 서로 방문하는 경우도 ②에 포함

83-1. 지난 조사 때 ○○를 맡겼던 가구와 동일한 가구입니까?

- ① 지난 조사 때와 동일한 가구임
- ② 지난 조사 때와 다른 가구임
- ③ 지난 조사 때에는 ○○를 맡기지 않았음

83-2. 언제부터 해당 가구에 아이를 맡겼습니까?

_____년 _____월

83-3. 아이를 직접 키우지 않고 위탁가구에 맡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① 건강상의 이유로
- ② 취업, 학업으로
- ③ 동생 임신, 출산 또는 다른 형제자매 양육으로
- ④ 기타 _____

84. 다음은 가구원, 즉 식구들에 관한 질문입니다. 가구원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기준에 따라 귀 댁에서 **○○를 제외한 가구원**은 부모님을 포함하여 모두 몇 명입니까? _____명

| 가구원 | 비가구원 |
|--|---|
| 가. 함께 살고 있는 친인척 전원: 아기의 부모, 형제, 조부모, 기타 친척(삼촌, 고모/이모 등) 및 인척(고모부/이모부, 숙모 등) 나. 생계, 교육, 군복무, 시설 및 친지위탁 등의 이유로 떨어져 살고 있는 식구 | 가. 입주 도우미, 운전사 등의 비혈연 고용인 나. 하숙생 등의 비혈연 동거자 다. 미혼자녀 중 생계, 교육, 군복무, 시설 및 친지위탁 등의 이유가 아니면서 독립한 경우 |

85. 다음은 위탁가구원에 관한 질문입니다. 위탁가구 가구원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기준에 따라 아기를 돌보아주시는 댁에서 **○○를 제외한 위탁가구원**은 모두 몇 명입니까? _____명

| 가구원 | 비가구원 |
|--|---|
| 가. 함께 살고 있는 친인척 전원: 아기의 부모, 형제, 조부모, 기타 친척(삼촌, 고모/이모 등) 및 인척(고모부/이모부, 숙모 등) 나. 생계, 교육, 군복무, 시설 및 친지위탁 등의 이유로 떨어져 살고 있는 식구 | 가. 입주 도우미, 운전사 등의 비혈연 고용인 나. 하숙생 등의 비혈연 동거자 다. 미혼자녀 중 생계, 교육, 군복무, 시설 및 친지위탁 등의 이유가 아니면서 독립한 경우 |

86. 지난 조사에서 ○○ 가족의 가구원은 다음과 같다고 응답하였습니다. 아래의 가구원 외에 혼인, 출산, 입양, 합가 등의 이유로 새로 들어온 가구원이나 혼인, 이혼, 경제적 독립으로 분가하거나 사망한 가구원이 있습니까? 아래의 사항 중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수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항 | 86-1. ○○와의 관계 | 86-2. 가구원 변동 여부 | 86-3. 가구원 변동 사유 | 86-4. 생년월일 | 86-5. 양/음력 | 86-6. 성별 | 86-7. 최종학력 | 86-8. 1,2급 장애 유무 | 86-9. 회귀 난치성 유전병 | 86-10. 소득활동여부 |
|------|--|--|--|---------------|---------------|--------------|--|------------------------|---------------------------|--|
| 보기 | ① 부모 ② 형/오빠누나/언니 ③ 동생 ④ 친조부친조모 ⑤ 외조부외조모 ⑥ 형제자매의 배우자 ⑦ 형제자매의 자녀 ⑧ 고모삼촌 ⑨ 고모부숙모 ⑩ 고종사촌친사촌 ⑪ 이모외삼촌 ⑫ 이모부외숙모 ⑬ 이종사촌외사촌 ⑭ 기타 _____ | ① 동일 가구원 ② 새로 들어옴 ③ 분가하였음 (혼인, 이혼, 경제적 독립 등) ④ 사망하였음 ⑤ 해당없음 | ① 출생 ② 입양 ③ 혼인 ④ 합가 ⑤ 기타 ① 혼인 ② 이혼 ③ 경제적 독립 ④ 기타 | 예) 19750211 | ① 양력 ② 음력 | ① 남자 ② 여자 | ① 미취학-기관 미이용 ② 미취학-보육시설이용 ③ 미취학-유치원이용 ④ 미취학-학원 등의 기타 기관 또는 시설 이용 (주 3회 반일제 이상) ⑤ 무학 ⑥ 초등학교 ⑦ 중학교 ⑧ 고등학교 ⑨ 전문대 (3년제 이하 기능대학) ⑩ 대학교(4년제 이상) ⑪ 대학원 석사 ⑫ 대학원 박사 ⑬ 모름 | ① 예 ② 아니오 | ① 예 ② 아니오 | ① 일을 하고 있음 ② 학교에 다님 (휴학생 포함) ③ 전업주부임 (집안일, 가사) ④ 무직임 ⑤ 미취학 ⑥ 기타 _____ |
| 가구원1 | | | | | | | | | | |
| 가구원2 | | | | | | | | | | |
| 가구원3 | | | | | | | | | | |
| 가구원4 | | | | | | | | | | |
| 가구원5 | | | | | | | | | | |
| 가구원6 | | | | | | | | | | |
| 가구원7 | | | | | | | | | | |
| 가구원8 | | | | | | | | | | |
| 가구원9 | | | | | | | | | | |

※ **소득활동의 경우** 계속 일을 해왔으나 질병, 사고 등의 특별한 사유로 잠시 일을 쉬고 있는 경우는 **평소에 하는 일을 기준으로** 답해주십시오. 가족 사업을 일주일에 **18시간 이상** 무보수로 도와주는 경우도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포함됩니다. 두 가지 보기에 해당하는 경우(직장과 학교 병행 등)는 **지난 6개월간 주로 한 것**으로 응답해주십시오.

- 86-11. 학생인 경우 다음 중 어느 과정에 해당됩니까?
- ① 초등학교 ____ 학년 ② 중학교 ____ 학년 ③ 고등학교 ____ 학년
 - ④ 전문대 ____ 학년 ⑤ 대학교 ____ 학기 ⑥ 대학원 석사 ____ 학기
 - ⑦ 대학원 박사 ____ 학기

⇒ 83번 ①번 응답자는 조사종료

87. 다음은 위탁가구의 가구원에 대한 질문입니다. ○○를 제외한 모든 식구에 대해 다음의 질문을 각각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항 | 87-1. ○○와의 관계 | 87-2. 가구원 변동 여부 | 87-3. 가구원 변동 사유 | 87-4. 생년월일 | 87-5. 양/음력 | 87-6. 성별 | 87-7. 최종학력 | 87-8. 1,2급 장애 유무 | 87-9. 회귀 난치성 유전병 | 87-10. 소득활동여부 |
|------|---|--|---|----------------|---------------|--------------|--|------------------------|---------------------------|--|
| 보기 | ① 형/오빠누나/언니 ② 동생 ③ 친조부친조모 ④ 외조부외조모 ⑤ 형제지매의 배우자 ⑥ 형제지매의 자녀 ⑦ 고모삼촌 ⑧ 고모부숙모 ⑨ 고종사촌친사촌 ⑩ 이모외삼촌 ⑪ 이모부외숙모 ⑫ 이종사촌외사촌 ⑬ 기타_____ | ① 동일 가구원 ② 새로 들어옴 ③ 분가하였음 (혼인, 이혼, 경제적 독립 등) ④ 사망하였음 ⑤ 해당없음 | ① 출생 ② 입양 ③ 혼인 ④ 합가 ⑤ 기타 ① 혼인 ② 이혼 ③ 경제 적 독립 ④ 기타 | 예) 19750211 | ① 양력 ② 음력 | ① 남자 ② 여자 | ① 미취학-기관 미이용 ② 미취학-보육시설이용 ③ 미취학-유치원이용 ④ 미취학-학원 등의 기타 기관 또는 시설 이용 (주 3회 반일제 이상) ⑤ 무학 ⑥ 초등학교 ⑦ 중학교 ⑧ 고등학교 ⑨ 전문대 (3년제 이하 기능대학) ⑩ 대학교(4년제 이상) ⑪ 대학원 석사 ⑫ 대학원 박사 ⑬ 모름 | ① 예 ② 아니오 | ① 예 ② 아니오 | ① 일을 하고 있음 ② 학교에 다님 (휴학생 포함) ③ 전업주부임 (집안일, 가사) ④ 무직임 ⑤ 미취학 ⑥ 기타 _____ |
| 가구원1 | | | | | | | | | | |
| 가구원2 | | | | | | | | | | |
| 가구원2 | | | | | | | | | | |
| 가구원4 | | | | | | | | | | |
| 가구원5 | | | | | | | | | | |
| 가구원6 | | | | | | | | | | |
| 가구원7 | | | | | | | | | | |
| 가구원8 | | | | | | | | | | |
| 가구원9 | | | | | | | | | | |

※ **소득활동의 경우** 계속 일을 해왔으나 질병, 사고 등의 특별한 사유로 잠시 일을 쉬고 있는 경우는 **평소에 하는 일을 기준으로** 답해주시시오. 가족 사업을 일주일에 **18시간 이상** 무보수로 도와주는 경우도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포함됩니다. 두 가지 보기에 해당하는 경우(직장과 학교 병행 등)는 **지난 6개월간 주로 한 것으로** 응답해주시시오.

⇒ 87-10번 ②번 응답자만 87-11번으로, 87-10번 ①, ④~⑥번 응답자는 88번으로

87-11. 학생인 경우 다음 중 어느 과정에 해당됩니까?

- ① 초등학교 ____ 학년 ② 중학교 ____ 학년 ③ 고등학교 ____ 학년
- ④ 전문대 ____ 학년 ⑤ 대학교 ____ 학기 ⑥ 대학원 석사 ____ 학기
- ⑦ 대학원 박사 ____ 학기

다음은 위탁가구가 위치한 동네에 대한 질문입니다.

88. 위탁가구의 주소지는 어떻게 됩니까?

_____시/도 _____시/군/구 _____동/읍/면 _____

89. 위탁가구에서 현재 ○○를 주로 돌봐주시는 분이 현재 사시는 동네로 언제 이사 오셨습니까?
_____년 _____월
90. ○○를 돌봐주시는 분이 사시는 동네는 주로 어떤 지역입니까?
① 일반주택지역 ② 일반아파트지역 ③ 상가·회사지역
④ 공장(단)지역 ⑤ 농·어가지역 ⑥ 기타 _____
91. ○○를 돌봐주시는 분이 지금 살고 계시는 동네에는 자녀를 보낼만한 보육시설(어린이집 또는 놀이방)이 충분히 있습니까?
* 보육시설이란 어린이집과 놀이방으로, 선교원은 제외됨.
① 매우 불충분함 ② 불충분함 ③ 보통임 ④ 충분함 ⑤ 매우 충분함
92. ○○를 돌봐주시는 분이 지금 살고 계시는 동네에는 자녀를 보낼만한 유치원(영어유치원, 놀이학교 제외)이 충분히 있습니까?
* 놀이학교는 기관 명칭에 '유치원'이라는 명칭이 포함되어있지 않으며, 통상 상가 또는 주상복합건물에 별도의 실외 놀이터 없이 5세(만 3세) 미만의 어린이부터 대상으로 함. 예로는 위즈아일랜드, 하바 등이 있음
① 매우 불충분함 ② 불충분함 ③ 보통임 ④ 충분함 ⑤ 매우 충분함
93. ○○를 돌봐주시는 분이 지금 살고 계시는 동네에는 자녀를 보낼만한 기타 시설이나 학원 등 사교육기관이 충분히 있습니까?
* 사교육기관이란 각종 학원, 영어유치원, 놀이학교, 문화센터 등을 모두 포함함
① 매우 불충분함 ② 불충분함 ③ 보통임 ④ 충분함 ⑤ 매우 충분함
94. ○○를 돌봐주시는 분이 지금 살고 계시는 동네는 놀이터, 공원, 산책로 등 공공 여가 공간·시설 이용이 편리합니까?
① 매우 불편함 ② 불편한 편임 ③ 보통임 ④ 편리한 편임 ⑤ 매우 편함
95. ○○를 돌봐주시는 분이 지금 살고 계시는 동네에는 박물관, 기념관, 미술관, 공연시설, 도서관 등 문화시설 이용이 편리합니까?
① 매우 불편함 ② 불편한 편임 ③ 보통임 ④ 편리한 편임 ⑤ 매우 편함
96. ○○를 돌봐주시는 분이 지금 살고 계시는 동네는 치안 측면에서 자녀를 키우기에 안전합니까?
① 매우 위험함 ② 비교적 위험함 ③ 보통임 ④ 비교적 안전함 ⑤ 매우 안전함
97. ○○를 돌봐주시는 분이 지금 살고 계시는 동네는 안전사고 측면(교통사고, 화재, 추락 등)에서 자녀를 키우기에 안전합니까?
① 매우 위험함 ② 비교적 위험함 ③ 보통임 ④ 비교적 안전함 ⑤ 매우 안전함
98. ○○를 돌봐주시는 분이 지금 살고 계시는 동네는 전반적으로 아이를 키우기에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좋지 않음 ② 좋지 않음 ③ 보통임 ④ 좋음 ⑤ 매우 좋음

♣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자료로 사용하겠습니다.

부록 4. 한국아동패널 2010 일반 조사 도구 출처

< 조사 도구 >

| 대상 | 구분 | 도구명 및 출처 | |
|-------------|------------------|---|------------------------|
| 아동특성 | 인구학적 특성 | 질병관리본부·대한소아과학회(2007) | |
| | 건강특성 | 신체정보 | 자체제작 |
| | | 예방접종 | 국가필수예방접종표(보건복지부, 2007) |
| | | 병력 | 질병관리본부·대한소아과학회(2007) |
| | 모유수유 | 김승권·조애저·김유경·도세록·이건우(2006) | |
| 부모특성 | 인구학적 특성 | 김미곤 외(2006), 서문희 외(2005) | |
| | 건강특성 | | 장애 및 난치성 질환 |
| | | | 음주 |
| | 흡연 | FND Test(Fagerstrom et al., 1991) | |
| 아버지 특성 | 근로특성 | NICHD(1999), 서문희·최혜선(2007), 남재량·성재민·이상호·최효미·신선옥(2007), 자체 제작 | |
| 어머니 특성 | 근로특성 | | |
| | 취업모 대상 근로특성 | | |
| | 학업모 대상 근로특성 | | |
| | 미취업/미학업모 대상 근로특성 | | |
| 가구 및 가구원 특성 | 일반적 특성 | 김미곤 외(2006), 서문희 외(2005), 유한구 외(2005), 유한구 외(2006), 이경상 외(2006), 이삼식 외(2005), 통계청(2007) | |
| | 경제적 특성 | 유한구 외(2006), 통계청(2000, 2006) | |
| | 사회적 특성 | 자체제작 | |
| | 물리적 환경 | 서문희 외(2005) | |
| | 사회보장지원 | 자체제작 | |
| 지역사회 특성 | 일반적 특성 | 서문희·최혜선(2007) | |
| | 가용 육아지원 기관 | | |
| | 양육 적절성 | 자체 제작 | |
| 위탁가구 특성 | 위탁 여부 | 자체제작 | |
| | 가용 육아지원 기관 | 서문희·최혜선(2007) | |
| | 양육 적절성 | 자체 제작 | |
| 아동발달 특성 | K-ASQ | K-ASQ | |
| | 한국형 Denver-II | 한국형 Denver II | |
| | 기질 | EAS Temperament Survey (Buss et al., 1984) | |
| | 기초생활습관 | Developmental Profiles: Daily Routines (Allen et al., 2003) | |
| | 아동의 하루일과시간 | 자체 제작 | |

| 대상 | 구분 | 도구명 및 출처 |
|----------------|--------------|---|
| 부모됨 특성 | 향후 출산계획 | 출산계획 |
| | | 이상자녀수 |
| | | 이상성비 |
| | 부모됨의 태도 | 이삼식 외(2005) |
| 어머니 특성 | 자기효능감 | Pearlin Self-Efficacy Scale (Pearlin et al., 1981) |
| | 자아존중감 | Rosenberg Self-Esteem Scale (Rosenberg, 1986) |
| | 우울 | K6(Kessler et al., 2002) |
| 부부관계 특성 | 결혼만족도 | RKMSS(Chung, 2004) |
| | 부부갈등 | 부부갈등 척도(Markman et al., 1994) |
| 양육특성 | 자녀양육참여 | 강희경(1998), 홍성례(1995) |
| | 자녀기대 | NWEC(2007) |
| | 양육신념 | EVS Foundation(2008) |
| | 양육실제 | PSQ(Bornstein et al., 1996) |
| | 양육지식 | KIDI (MacPhee, 2002) |
| | 양육스트레스 | 김기현·강희경(1997) |
| 육아지원 서비스 이용 | 서비스 이용 현황 | 서문희 외(2005) |
| | 비대가성 양육 지원 | |
| | 개인 대리 양육 | |
| | 육아지원기관 | |
| | 기관 내 특별활동 | 자체 제작 |
| | 기관 외 프로그램 | |
| | 가정 내 영어 학습 | |
| 육아지원 정책 특성 | 기관/시설 이용 계획 | 서문희 외(2005) |
| | 정책의 방향 | 서문희·최혜선(2007) |
| | 일과 가정의 양립 정책 | 자체 제작 |
| | 육아지원 서비스 정책 | |
| | 직장의 육아지원 정책 | |
| 재정지원 관련 정책 | | |

연구보고 2011-26

한국아동패널 2010 기초분석보고서

발행일 2011년 12월
발행인 이 영
발행처 육아정책연구소
주 소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7층, 10층, 11층
전화: 02) 730-7070
팩스: 02) 730-3313
<http://www.kicce.re.kr>
인쇄처 대명기획 02) 2263-1292

보고서 내용의 무단 복제를 금함.

ISBN 978-89-97492-00-8